


발 간 등 록 번 호

11-1790387-100625-10

 Vaccination for Tomorrow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

보건소용

2026 국가예방접종 지침 안내문

1. 본 지침은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높은 이해도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2.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26-27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의 세부 사항은 각 사업 시작 전 공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3. 본 지침에 대한 오류정정, 내용 수정, 보완 및 제언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예방접종관리과로 연락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043-719-8362)

I. 목적 및 개요

1. 배경	008
1) 목적	008
2) 목표	008
3) 정의	008
2. 근거	009
3. 개요	010
1) 대상	010
2) 주요 내용	010

II. 추진 체계

1. 체계도	018
2. 주체별 역할	019
1) 질병관리청	019
2) 지방자치단체	020
3) 위탁의료기관	021

III. 운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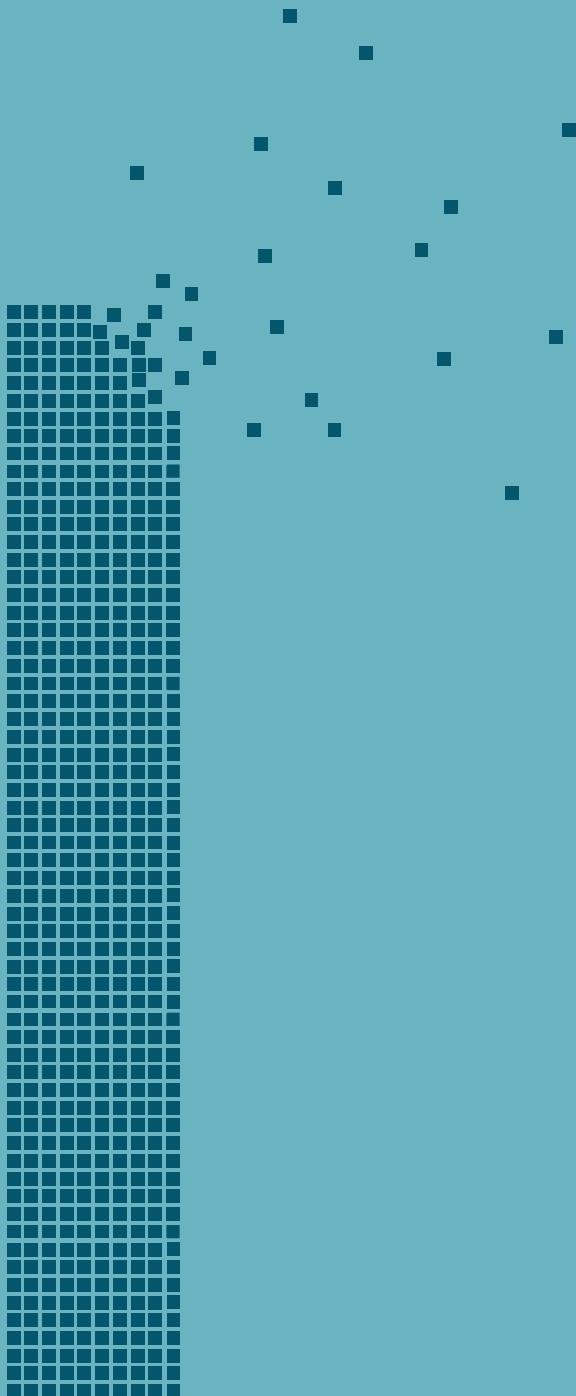
1. 접종 실시 및 운영	024
1) 접종 실시	024
2) 접종 운영	030
2. 접종 기록 관리 등	043
1) 등록	043
2) 관리	046
3) 안내	048
3. 접종 안전	050
1) 안전 관리	050
2) 이상반응 관리	054
3) 아나필락시스 대응	061
4. 백신 공급 및 보관 등	070
1) 공급 방식별 구매 방법	070
2) 사업용 백신 관리	072
3) 백신 인수, 보관 및 관리	073

IV. 계약 및 기준

1. 위탁 계약	076
1) 개요	076
2) 위탁의료기관 교육	076
3) 체결	077
4) 관리	079
5) 해지 등	080
2. 비용 상환	082
1) 개요	082
2) 절차	083
3) 금액	095
3. 실시 기준	098
1) 대상자	100
2) 백신	101
3) 접종 용량 및 범위	103
4) 접종 시기 및 간격	104
5) 접종 금기 및 주의사항	106
6) 일반적 실시기준	109
7) 예외적 실시기준	140

V. 부록

1. 법령	149
2. 서식	167
3. 주요 민원	214
1) 사업 운영	214
2) 교육	221
3) 감염병별 주요 민원	225
4) 부대사업 관리 문의	251
5) 비용상환	260
6) 백신 수급·관리	268
7) 이상반응	270
8)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274



목적 및 개요

1. 배경

- 1) 목적
- 2) 목표
- 3) 정의

2. 근거

3. 개요

- 1) 대상
- 2) 주요내용

1

배경

1). 목적

- 국가예방접종은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질병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2). 목표

- 공공기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강화,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를 목표로 한다.

3). 정의

- (필수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 (국가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중 국가가 보조하는 예방접종
 -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예방접종에 대해 국가에서 지정한 백신으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임시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는 예방접종

[참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분류

구분	내용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19종)	디프테리아 / 결핵 / 수두 / A형간염 / 폴리오 / B형간염 / 일본뇌염 /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그룹 A형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 홍역 / 풍진 / 폐렴구균감염증 / 신증후군출혈열 / 파상풍 / 장티푸스 / 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2종)	코로나19 / 엠폭스

2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18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의4, 제40조, 제40조의6, 제46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79조의4, 제81조, 제8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1조의6,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0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3, 제31조의6, 제34조, 제47조

3

개요

1). 대상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 [별표1]의 국가예방접종 대상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본 지침에서 규정한 대상

2). 주요 내용

(1). 접종 실시

- 예방접종 대상자 안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 전후 안전 관리 및 접종 기록 관리

(2). 비용 지원

- 접종 비용(①백신 비용, ②시행 비용) 전액 지원
- 그 외 예방접종과 관련된 비용(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치료료 및 HPV 여성청소년 건강 상담료) 지원을 포함

(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예방접종 관련 업무를 위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예방접종 홍보

- 예방접종 주간행사(4월 마지막 주차) 운영
- 접종률 제고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인식 제고 및 접종 홍보 실시

[참고] 국가 및 임시예방접종 대상 감염병별 백신명

		감염병	백신명	비고 (세부 백신종류)
국가 예방접종	1	디프테리아	<혼합백신> D(d) : 디프테리아 T : 파상풍 aP : 백일해 IPV : 폴리오 HepB : B형간염	DTaP
				DTaP-IPV
	2	파상풍		DTaP-IPV/ Hib
				DTaP-IPV- Hib-HepB
	3	백일해		Tdap
			Td	
	4	폴리오	IPV	
	5	B형간염	HepB	
	6	결핵	BCG	피내용
	7	홍역	MMR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IJEV	불활성화 백신
			LJEV	약독화 생백신
	12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13	A형간염	HepA	
	14	로타바이러스	RV	RV1, RV5
	15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HPV 4가
16	폐렴구균	PCV	PCV15, PCV20	
		PPSV	PPSV23	
17	인플루엔자	IIV	IIV 3가 - 유행란, 세포배양	
18	장티푸스	ViCPS		
19	신증후군출혈열	HFRS		
임시 예방접종	20	코로나19	COVID-19	
	21	엠폭스	Mpox	

[참고] 백신명 및 주요 용어 설명

구분	두문자어	세부어
백신명	HepB	Hepatitis B vaccine
	BCG	Intradermal Bacille Calmette-Gúerin vaccine
	DTaP	Diphtheria and tetanus toxoids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Td	Tetanus and diphtheria toxoids adsorbed
	Tdap	Tetanus toxoid, reduced diphtheria toxoid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DTaP-IPV	Diphtheria and tetanus toxoids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and 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IPV	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Hib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vaccine
	DTaP-IPV/Hib	DTaP, IPV,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conjugate vaccine
	DTaP-IPV-Hib-HepB	DTaP, IPV,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Hepatitis B conjugate vaccine
	PCV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PSV	Pneumococcal polysaccharide vaccine
	RV1	Rotavirus vaccine(monovalent)
	RV5	Rotavirus vaccine(pentavalent)
	MMR	Measles, mumps, and rubella vaccine
	VAR	Varicella vaccine
	HepA	Hepatitis A vaccine
	IJEV	Inactivated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LJEV	Live-attenuated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HPV	Human papillomavirus vaccine
IIV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	
주요 용어	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국가예방접종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ACIP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미국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IR	Immunization Registry 예방접종 전산 등록
	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 예방접종 안내문
	HBIG	Hepatitis B Immunoglobulin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참고] 국가 및 임시예방접종 주요 연혁

연도	감염병	백신	주요 변경사항	
2009	필수예방접종(14종)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BCG(피내용) HepB Td DTap IPV MMR VAR IJEV(불활성화) ViCPS(장티푸스) HFRS IIV(3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종 감염병 백신비용 일부 지원 시작 • 12세 이하 보건소·위탁의료기관 접종 지원 • 신증후군출혈열 보건소 임시예방접종(1992~) •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보건소 접종 지원 	
	2011	DTaP-IPV		
	2012	Td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세 이하 백신비용 및 시행비용 일부지원 (부담금 5,000원) 	
	2013	필수예방접종(16종) 신규b형 해모필루스인플루엔자 신규폐렴구균	Hib PPSV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렴구균 65세 이상 보건소 접종 지원
		2014	LJEV(약독화 생백신, 일본뇌염) PCV10, PCV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세 이하 백신비용 및 시행비용 전액지원 • 폐렴구균 12세 이하 접종 지원
	2015	필수예방접종(17종) 신규A형간염	HepA IJEV(불활성화, 베로세포 유래 일본뇌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위탁의료기관 접종 전액 지원
	2016	필수예방접종(18종) 신규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V 12세 여성 청소년 대상 접종 및 건강상담 지원 • 인플루엔자 생후 6개월~12개월 미만 대상 확대
	2017		DTaP-IPV/H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생후 12개월~59개월 대상 확대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생후 60개월~12세 대상 확대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임신부 대상 확대
	2020		IIV(4가 전환, 인플루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13세 대상 확대

연도	감염병	백신	주요 변경사항
2021	임시예방접종(1종) 신규코로나19	COVID-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12세 이상 임시예방접종 • 폐렴구균 65세 이상 위탁의료기관 접종 전액 지원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V 13~17세 여성, 18~26세 저소득층 여성 대상 확대 • 코로나19 5세~11세 임시예방접종 확대 • 외국인 관리번호 발급자 위탁의료기관 접종 전액 지원
2023	필수예방접종(19종) 신규로타바이러스 임시예방접종(2종) 신규엠펙스	RV MP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생후 6개월~4세 임시예방접종 확대
2024		PCV15(폐렴구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으로 대상 축소
2025		DTaP-IPV-Hib-HepB IIV(3가 전환, 인플루엔자) PCV20(폐렴구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폐렴구균 고위험군 접종대상 18세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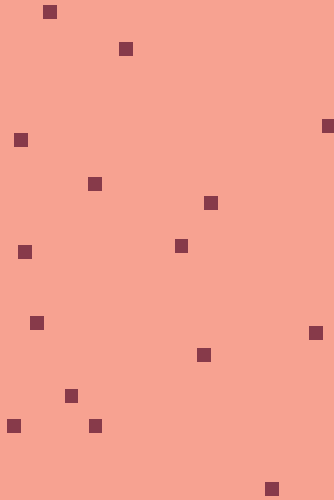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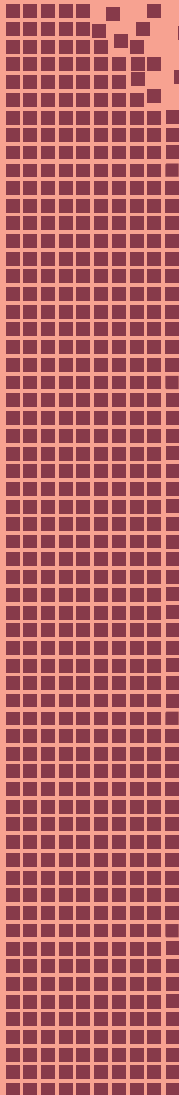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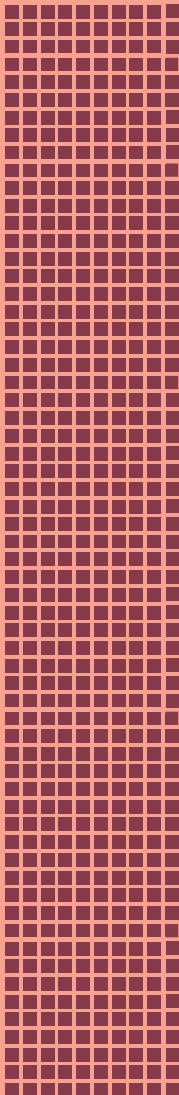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추진 체계

1. 체계도

2. 주체별 역할

- 1) 질병관리청
- 2) 지방자치단체
- 3) 위탁의료기관

1 체계도



질병관리청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 사업목표 수립 및 전략 수립
 - 대국민 홍보
- 백신 수요 예측 및 조사
- 백신 조달계약 관리
- 백신수급/접종현황 관리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 예방접종 비용심의위원회 | 예방접종 교육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 관리 (교육, 점검, 실시기준 준수 등)
- 비용상환 심사·지급관리
 - 미접종자 관리
 - 백신 수요조사/수급현황 모니터링
- 위탁의료기관 백신 재분배/추가공급

백신 조달계약업체

- 공급일정 수립
- 접종기관 백신 납품
- 보건소에서 백신 비용 수금
 - 잔여백신 반품
- 위탁의료기관 백신 재분배/추가공급

위탁의료기관

- 예방접종 교육 수료
- 백신 수요 제출
-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
- 접종결과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업무협조체계 유지/백신 재분배 협조

접종
대상자

백신 수요 제출
←
지침 안내, 예산 지원

→ 접종 제공

→ 접종 제공

기관별 공급량 전달, 반품 요청
↑
백신 공급 결과 공유, 백신 반품 처리

백신비 지급(총괄)
백신납품

백신 수요 제출, 비용상환 신청
↑
백신 수요 승인, 재분배 및 추가공급, 시행비 지급

2

주체별 역할

1). 질병관리청

(1). 예방접종관리과

-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 총괄
-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신규 백신 도입 총괄
- 국가 및 임시 예방접종사업 교육과정 운영
- 국가 및 임시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운영 총괄
- 국가 및 임시 예방접종사업 대국민 홍보
- 국가예방접종 지침 제개정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지원 기준 마련 및 관리
- 국가 및 임시예방접종 효과 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
- 사업별 접종률 모니터링 및 관리
- 예방접종 인식도 조사 수행

(2). 백신수급과

- 백신 수요 예측 및 조사
- 백신 조달계약 체결, 체결결과 안내, 공급방식 특성에 따른 접종 기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백신 공급 등
- 백신 수급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사도 간 백신 재분배 및 질병관리청 추가공급용 백신 공급·관리 등
- 백신 부족 상황(예상) 시 긴급도입 등 추가·대체 백신 확보

(3). 예방접종정책과

-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송 대응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운영

2). 지방자치단체

(1). 시·도

- 시·도 지역의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도 예방접종 담당자 전문교육과정 이수
- 시·도 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접종 관리
- 시·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 및 점검(지역 내 접종 현황 및 접종률 관리, 백신 수급 관리, 위탁의료기관 관리 등)
- 시·도 백신 수급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 보건소 수요량 검토, 관할 보건소 내 백신 재분배, 총액계약 백신 추가공급 요청(필요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소액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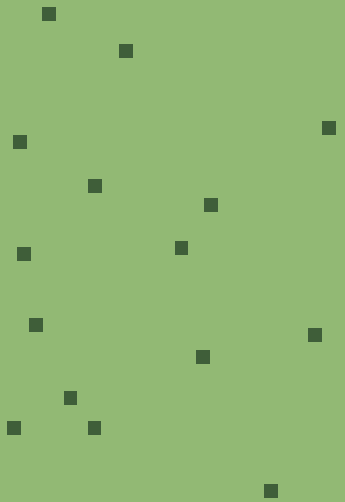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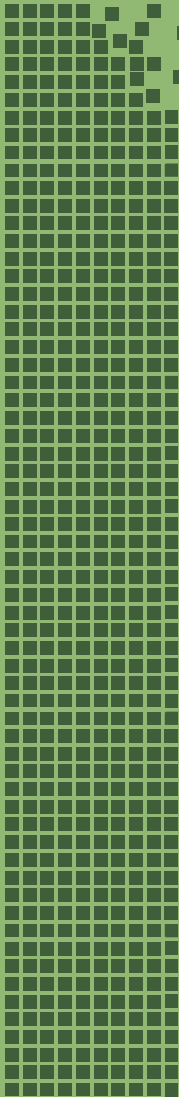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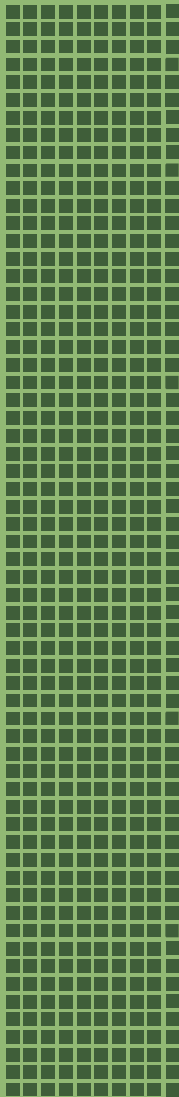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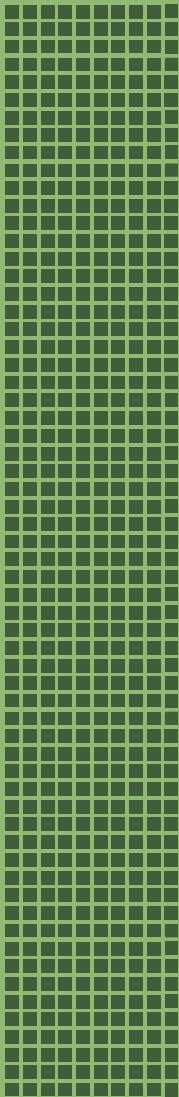
(2). 시·군·구

- 시·군·구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군·구 예방접종 담당자 전문교육과정 이수
- 국가 및 임시예방접종 사업 주민 대상 홍보
- 시·군·구 사업 현황 모니터링 및 대상자 관리
 - ※ 사업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인적정보 관리 등 포함
-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의료기관 관리(교육, 시행비 및 백신비 지급, 점검 등)
 - ※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계약 체결
 - ※ (위탁의료기관의 공고) 위탁의료기관명, 위탁기간, 참여 백신명 등을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 필요
- 시·군·구 백신 관리(수요 조사, 현황 모니터링, 백신 재분배, 추가공급 등)
 - ※ 백신의 원활한 공급 및 안전접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지자체-지역사회 협의체 구성·운영을 권장

- 임시예방접종 공고 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변경사항 사전공고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관리 및 국가피해 보상 접수
-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 기초조사

3). 위탁의료기관

-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위탁계약 체결, 교육 이수 등 포함)
-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환경 구비
- 접종 시행 전 예진표 작성, 대상자 본인 여부 및 과거 접종력 확인, 예진 및 접종 후 이상반응 설명 등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사업 대상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 내역의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 내역 등록 시 개인정보 관리 철저
 - ※ 예방접종 내역 등록,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 준수
- 예방접종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요청 또는 자료요구 적극 협조
- 백신 수요 제출, 백신 회수 및 재분배(사전현물공급 백신) 등 적극 협조
 - ※ 총량구매-사전현물방식 백신은 수요량 입력 전까지 자율 점검표 제출
- 백신 관리 철저(백신 보관 온도 관리, 유효기간 만료 백신 투여 금지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



운영 관리

1. 접종 실시 및 운영

- 1) 접종 실시
- 2) 접종 운영

2. 접종 기록 관리 등

- 1) 등록
- 2) 관리
- 3) 안내

3. 접종 안전

- 1) 안전 관리
- 2) 이상반응 관리
- 3) 아나필락시스 대응

4. 백신 공급 및 보관 등

- 1) 공급 방식별 구매 방법
- 2) 사업용 백신 관리
- 3) 백신 인수, 보관 및 관리

1

접종 실시 및 운영

1). 접종 실시

[접종 실시 개요도]



(1). 피접종자 본인 확인

- 신분증 등을 통해 피접종자 본인을 확인한다.
 - 피접종자가 예방접종만을 위해 방문했는지, 다른 진료를 함께 받을 것인지와 무관하게 신분증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간 개인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자는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번호(47P)를 발급받아 재방문 하도록 안내한다.
 -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사실을 예진표에 별도 기록한다.
 - ※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예진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전자예진표, 사진, 팩스 등의 방법으로 예진표를 받아 접종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예진표는 현장에서 작성한 예진표에 부착하여 함께 보관

- 미성년자의 경우, ¹⁾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행한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²⁾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행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작성한 **예진표와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며, 의사는 **예방접종 전·후 주의 사항** (27P)과 이상반응에 대해 접종 대상자와 보호자(유선 및 SMS 문자 등)에게 설명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최근 판례(대법원 2023.3.9. 선고 2020다218925) 등을 참고할 때,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6조에서 규율하는 바와 같이 의료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게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충실히 설명한 후 해당 미성년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시행한 예방접종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과 관련한 미성년자 본인 및 보호자의 책임이 다를 수 있음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8의2호

(2). 대상자 및 예방접종 내역 사전확인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령 등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임신부) 산모 수첩과 같이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시
 - (면역저하자)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등 본인이 면역저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 예진 의사가 예진 과정에서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증빙서류 없이 접종 가능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시설 입소 확인서 등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 방문 예방접종 또는 의료기관 자체접종 방식으로 접종하는 경우 등은 증빙서류 없이 접종 가능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임시관리번호를 통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건소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 ※ 3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전 접종력을 확인하여 권고 시기(162p), 접종 간격(138p) 등 실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3). 예진표 작성

-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피접종자”라 한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 정의를 준용

- 예진표는 종이*로 작성 후 보관** 또는 전자예진표로 처리***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 후 보관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1](162p)

** 종이로 작성 후 보관: 종이 그대로 보관 또는 스캔한 파일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또는 전자무기록부)에 업로드

*** 예방접종도우미를 통해 피접종자가 작성한 전자예진표를 예진의사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서명: 전자예진표는 작성 후 24시간 동안 시스템에 표출되며, 검토·서명한 날짜 기준으로 저장됨

**** 모바일 기기 등으로 예진표를 작성·검토·서명하는 경우는 해당 파일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무기록부에 저장하는 방식만 가능

※ 고시된 예진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접종 기관 여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은 테두리 여백·뒷면을 자유롭게 활용(고무인/자필 권장)

[참고] 출생 직후 신생아 대상 B형간염 예방접종 관련 산모 동의를 위한 예진표 작성

- (산모에게 검진 기간 중 또는 출산 시, 신생아 대상 B형간염 예방접종 필요성 설명)
- (접종 동의 여부 확인 후 예진표 작성(출산 전 미리 작성 가능))
 - :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임신신생아번호를 기재
 - :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 사항] 체크
 - : [접종대상자에 대한 확인사항] 중 1~11은 공란으로 남겨두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서명)/접종 대상자와의 관계/접종대상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부분만 작성
 - : [의사 예진 결과]에서 필요한 부분 작성 후 의사성명 기재 및 서명
 - : 출산 및 접종 후 시스템 업로드 등 보관
- 같은 날 하나의 접종 기관에서 동시 접종을 할 경우, 예진표는 한 장만 작성한다.
- 예진표를 접종 기관에서 미리 서명/날인한 후 피접종자에게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4). 예진 및 실시 여부 동의 확인

- 작성된 예진표를 기반으로 충분한 병력청취, 신체 진찰 및 접종 금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예진하여 예방접종 실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예방접종 전·후 주의 사항,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을 설명하고 피접종자에게 예방접종 실시 여부 동의를 확인한다.
 - 다문화가정 방문시, 12개 언어*로 번역된 설명자료(예방접종 절차 안내서, 예진표, 자녀의 예방접종기록 확인, 연령별·시기별 권장 예방접종)를 참고 안내
 - ※ [제공 언어] 네팔어, 라오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 ※ [다운로드 경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관리 → 관련자료 다운로드(‘안내서’ 검색)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각종서식 다운로드(‘안내서’ 검색)

[참고] 예방접종 전·후 주의 사항

- 예방접종 전 주의 사항
 - 건강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접종 기관에 사전 확인 후 방문
 - 접종 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
 - 예방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기
 - 예방접종 전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상담
- 예방접종 후 주의 사항
 -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 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
 -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
 - 접종 당일 반나절 이상 충분히 쉬고, 음주나 지나친 운동은 피하기
 - 예방접종 후 2~3일간은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 받기

(5). 예방접종 실시

- 예진 결과 기반으로 예방접종 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참고] 예방접종 시 주의 사항

- 백신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 접종
 - 최소접종 연령, 최소접종 간격, 백신간 접종 간격, 교차접종, 권장 연령, 추가접종 등
- 접종 전 예진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과거 병력 확인
-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충분히 설명
- 백신의 상태 및 유효기간 확인 등을 확인하고 백신별 허가된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접종
- 의료관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독 및 위생 등을 철저히 관리

- 예방접종은 「의료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건진료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
- (학교) 시·군·구청장은 「학교보건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게 접종요원으로서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의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방문 예방접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참고에 따라 방문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참고] 방문 예방접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보건소의 관리하에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방문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음
- 주체별 역할

시설 등	• 원활한 방문 예방접종을 위해 사전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구득
위탁의료기관	• 방문하고자 하는 시설 등 관할 보건소와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예방접종 계획(장소, 접종 규모, 일자 등) 제출
시설 등 관할 보건소	• 관할 구역 내 방문 예방접종 수요 파악 및 백신 확보 • 방문 예방접종 필요성, 안전한 환경 구비 여부 등을 검토 및 승인 • 위탁의료기관에서 제출한 방문 예방접종 계획 시스템 등록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 계약 및 오접종 등 관리 • 시설 등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필요시 백신 지원

※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방문 예방접종 계획 등록

- 코로나19/현물공급백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록시스템 → 접종관리 → 방문접종관리 → 엑셀 샘플 파일 다운로드 → 작성 후 엑셀 업로드

※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방문 예방접종 백신 지원

- 방문 예방접종 백신은 ① 위탁의료기관이 사전 신청으로 보유하고 있는 백신, ② 시설 등 관할 보건소 보유 백신, ③ 협의에 따라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보유 백신 순서로 지원 가능

• 방문 예방접종 가이드라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입원·입소하여 생활하는 거동불편자로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 • 재가와상환자 등 신체적 제약으로 거동이 불가하여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
접종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진 및 접종,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해 의사, 간호사를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 방문 ※ 방문하는 시설 등에 간호사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하다, 간호사의 예방접종 등의 의료행위는 관련 법령(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접종 시 유의 사항	<p><백신 콜드체인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청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2~8℃ 유지 - 온도계가 부착된 아이스박스 등 이동 중 백신 온도관리 철저
	<p><접종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의사는 접종 시행 전 예진 및 접종 동의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접종할 백신 종류, 유효기한 등을 확인 후 시행 • 접종 후 20~30분 머무르며 접종자의 이상반응 등을 관찰
	<p><응급상황 대비></p> <p>① 아나필락시스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 약품 및 장비 구비 후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준비 약품 : 에피네프린 등 - 사전 준비 장비 : 청진기, 혈압계,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산소 마스크,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정맥주사세트, 기도확보장치 등 * 단, 구급차를 대동하는 경우, 구급차에 구비된 약품 및 장비로 대체 가능 <p>②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 대동 등 사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관내 이송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전화번호 위치 등 파악 - 구급차가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 지원, 사설 또는 시설 구급차 등을 통해 구급차를 대동하거나 119 신고를 통해 대응
	<p><응급상황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파악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동 준비 - 접종 후 응급상황 발생 시 방문 의사는 환자 상태 평가 및 응급처치 지휘, 간호사는 응급처치 보조, 응급구조사 또는 행정요원은 이송 - 이외 아나필락시스 대응 관련 내용은 「아나필락시스 대응」(61p) 참고

(6). 이상반응 관찰 및 접종 기록 등록

- 예방접종 실시 후 20~30분 간 접종 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을 관찰한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또는 전자의무기록부*에) 해당 접종 기록을 등록**한다.
 - * 전자의무기록부에 입력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이 즉시(상시) 연계되어야 한다. 연계가 불가능하다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 감염병예방법 제28조에 따른 기록/보고 의무를 같은법 제33조의4에 따른 시스템 입력 의무이행으로 같음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9조제2항)]
-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고 그 기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1호
-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7호

2). 접종 운영

(1). 교육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접종 업무 담당자는 전문성 향상 및 예방접종 사업 운영 능력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 (대상) 시도, 시·군·구 예방접종 업무 담당자 및 보건소 근무 중인 공중보건 등의
 - (시기) 집합교육(매년 2~11월 중), 온라인교육(매년 3~11월 중)
 - ※ 정확한 교육 시기 및 내용은 교육 전 공문을 통해 별도 안내
 - (내용)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한다.

[표] 집합 교육

구분	내용	시기
시도 담당자 교육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에 대한 정부와 시도 간의 의견 조율, 당해연도 예방접종 예산운영 방안,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계획 및 예방접종률 향상 등에 관한 의견 교류 등	연간 1회 시행
예방접종 기본 교육	예방접종 실무 및 운영체계, 예방접종 방법과 이상반응 관리, 예방접종 시스템 등 예방접종 사업의 현장 운영과 관련한 실무, 체계, 시스템 등 교육을 통한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예방접종 사업 운영 능력 제고를 위한 과정 ※ 대상 : 예방접종업무 12개월 미만 근무자(신규자)	연간 총 6회 시행
예방접종 보수 교육	당해연도 사업운영 방안, 백신의 이해와 예방접종, 예방접종 시스템 등 교육을 통해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예방접종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정 ※ 대상 : 이전 년도 기본교육 이수자 및 예방접종업무 12개월 이상 근무자	연간 총 5~6회 시행

[표] 온라인 교육

구분	내용	비고
예방접종 기본교육	국가예방접종사업 개요,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백신의 취급 및 보관,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	공무원 상시학습 6시간 인정
인플루엔자 기본교육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계획 이해	공무원 상시학습 2시간 인정
코로나19 기본교육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계획 이해	공무원 상시학습 1시간 인정

- (위탁의료기관 교육 이수 관리) 보건소는 위탁계약 체결(사업갱신) 및 비용상환 신청을 위해 관내 위탁의료기관 의료인 등의 교육 이수를 관리한다.
 - ※ 해당 업무를 위해서는 '교육관리 사용자(학습자관리)' 권한 필요(보건소 당 위탁계약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1~2인에게 해당 권한 부여)
- (위탁의료기관) 위탁의료기관은 신규 위탁 또는 위탁 계약 중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예방접종 예진을 시행하는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함
 - (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개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 '교육관리 사용자(학습자)' 권한 신청
 - ※ 해당 권한은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82, 913-2352)에서 승인함
 - (시기) 지자체-위탁의료기관 간 위탁계약 체결 전 또는 사업 갱신 시
 - ① (기본교육) 신규 위탁계약 체결 전 6개월 또는 위탁계약 갱신 6개월 이내에 이수
 - ② (심화교육) 참여하는 사업(어린이 또는 성인)에 한해 ¹⁾신규 위탁계약 체결 전 6개월 또는 위탁계약 갱신 6개월 이내에 이수하고, ²⁾계약 후 3년 이내에 이수
 - ※ 온라인 교육 과정은 매년 3월~다음해 2월까지 운영
 - ※ 심화교육은 어린이 또는 성인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으로 구성
 - (방법) 온라인교육(기본교육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별*(어린이 또는 성인) 심화교육)
 - * (어린이 심화교육) : 어린이, B형간염 주사기, HPV 사업,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
 - (성인 심화교육) : 성인(임신부,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폐렴구균, 코로나19 사업
 -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

[참고] 위탁의료기관 교육 세부 내용

구분	신청 대상
기본교육 (매 5년마다 이수)	① 신규 위탁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 기한 만료 6개월 전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종등록 시 팝업창을 통해 의료기관에 안내됨
심화교육 (매 3년마다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하는 사업(어린이 또는 성인)에 한해 ① 신규 위탁계약 체결 또는 갱신 전 이수 ② 신규 위탁계약 체결 또는 갱신 후 추가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 만료 6개월 전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종등록 시 팝업창을 통해 의료기관에 안내됨 ※ 교육 미이수시 비용상환 신청이 불가능하며, 교육이수 및 계약갱신 후 비용상환 신청 가능

(2).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개요) 지자체와 지역의사회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방접종 계획 수립, 백신 분배 등 예방접종 전 과정에서의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공중보건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구성) 시·도-지역의사회, 시·군·구 보건소-지역의사회
 - (기능) 예방접종 계획, 실시기준 변경사항 등 안내, 예방접종 교육, 지역 내 의료기관 건의 사항 논의, 예방접종 접종률 제고 방안 논의, 백신 배정 계획 논의, 백신 공급 방안 논의, 백신 재분배 및 회수 협력, 백신 폐기 최소와 방안 논의 등
- 협의체 구성원별 역할

구분	역할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역의사회 협의체 운영 및 관리 • 시·도 예방접종 계획 안내 및 독려 • 시·군·구-지역의사회 협의체 운영 지원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지역의사회 협의체 운영 및 관리 • 시·군·구 예방접종 계획 안내 및 독려
지역의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예방접종 계획 전파 및 협조 • 지역 내 의료기관 의견수렴 및 공유 • 지역 내 의료기관 예방접종 독려

(3). 운영 관련 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의 출생아
 ※ 산모의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시 참여 가능
- (내용)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 비용(97p) 지원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1회), B형간염 접종비용(최대 6회*),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최대 3회)
 *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접종여부 결정

[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세부 내용

접종 및 검사		권장 시기	비고
기본 일정	1~3차 기초접종*	예방접종의 실시기준에 생후 0-1-6개월 따라 실시	
	1차 항원·항체 검사	생후 9~15개월	최소 연령 : 생후 9개월 이상 권장되는 검사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검사 비용 지원
추가 일정	1차 재접종(백신)	1차 항원·항체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	1차 항원·항체 검사 결과 항체 미형성자 실시 (HBsAg(-), anti-HBs(-))
	2차 항원·항체 검사	접종 1개월 후	-
추가 일정	2차 재접종(백신)	2차 항원·항체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 (1차 재접종일로부터 1개월 후)	2차 항원·항체 검사 결과 항체 미형성자 (HBsAg(-), anti-HBs(-))
	3차 재접종(백신)	2차 재접종일로부터 5개월 후	
	3차 항원·항체 검사	접종 1개월 후	-

* (미숙아) 출생시 체중 2KG 미만 출생아는 0-1-2-6~7개월 간격 4회 기초접종 실시
 ※ 항원·항체 검사 결과 '항체 미형성'인 경우 추가접종 및 검사 결정
 ※ 예방처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산 등록된 경우에만 비용지원이 가능하므로, 누락된 검사 및 재접종 내역 없이 등록을 완료하도록 안내 필요

- (항원·항체 검사) 면역글로불린(HBIG) 투여에 의한 수동항체가 아닌 예방접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생후 9~15개월 항원·항체 검사를 권장하며, 표면항원 및 항체검사 방법 중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권장
 ※ 접종이 지연되었을 경우 3차 접종 후 최소 1개월의 간격을 두고 검사 시행

[표] B형간염 항원·항체 권장 검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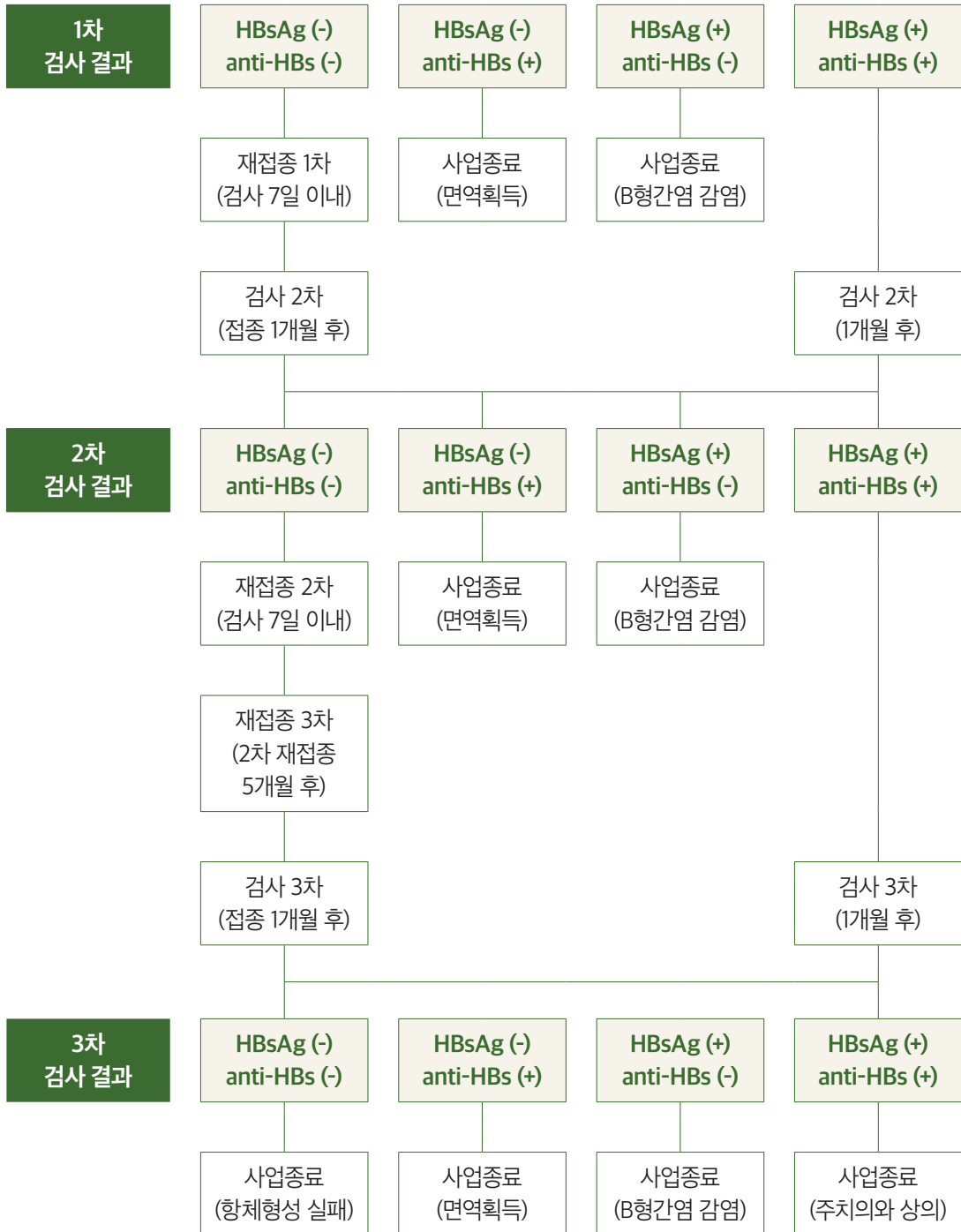
검사방법		인정여부
권장	효소면역검사법 (Enzyme immunoassay, EIA) : EIA는 RIA와 비슷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있으며, 항체량의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하여 권장됨 - 미세입자효소면역검사법(microparticle enzyme immunoassay, MEIA) - 형광효소면역측정법(fluorescent enzyme immunoassay, FEIA) - 효소면역측정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O
	화학발광 미세입자 면역측정법 (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CIA, CLA, CLIA 등) : CLIA는 화학발광을 일으키는 물질을 표지자로 사용한 면역측정법으로 자동화가 쉽고 재현성과 검사 속도가 매우 우수함	O
	전기화학발광 면역측정법 (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ECL)	O
비권장	방사면역측정법 (Radioimmunoassay, RIA) : 방사선동위원소를 표지자로 이용하여 항원·항체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방사능의 위험성과 취급 난이도의 문제점이 있으며 항체가 측정을 위한 별도검사단계가 필요함	X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Immunochromatography assay, ICA) : 검사실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도 간단히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민감도가 많이 떨어짐	X
	수동혈구응집법 (Passive hemagglutination, PHA) : EIA나 RIA보다 민감도가 1,000배 정도 낮아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X

※ (자문기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 (결과판독) 정량검사 결과 ①항체가가 양성(10mIU/mL 이상)인 경우 예방 가능한 것으로 보며, ②항원이 음성이고 항체가가 음성(10mIU/mL)인 경우 재접종 필요

※ (결과등록) 모든 항원·항체 검사 결과(양성/음성) 및 정량 결과(항원·항체가/단위)는 전산 등록 및 검사 결과지 파일 업로드 필요(결과지 상 대상자정보(이름, 생년월일 등)를 확인 가능해야 함)

[참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검사 결과에 따른 처치 일정표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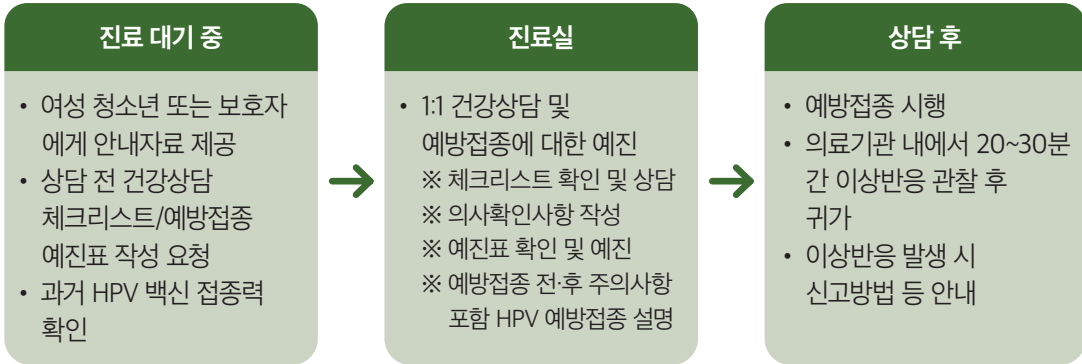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 HPV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 (대상) 12세 여성 청소년
- (내용) HPV 백신 접종과 함께 사춘기 성장 발달·초경 등에 대한 상담을 접종과 함께 제공하며,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생략 가능하나 의료기관에서 선택적 제공은 불가능.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 ※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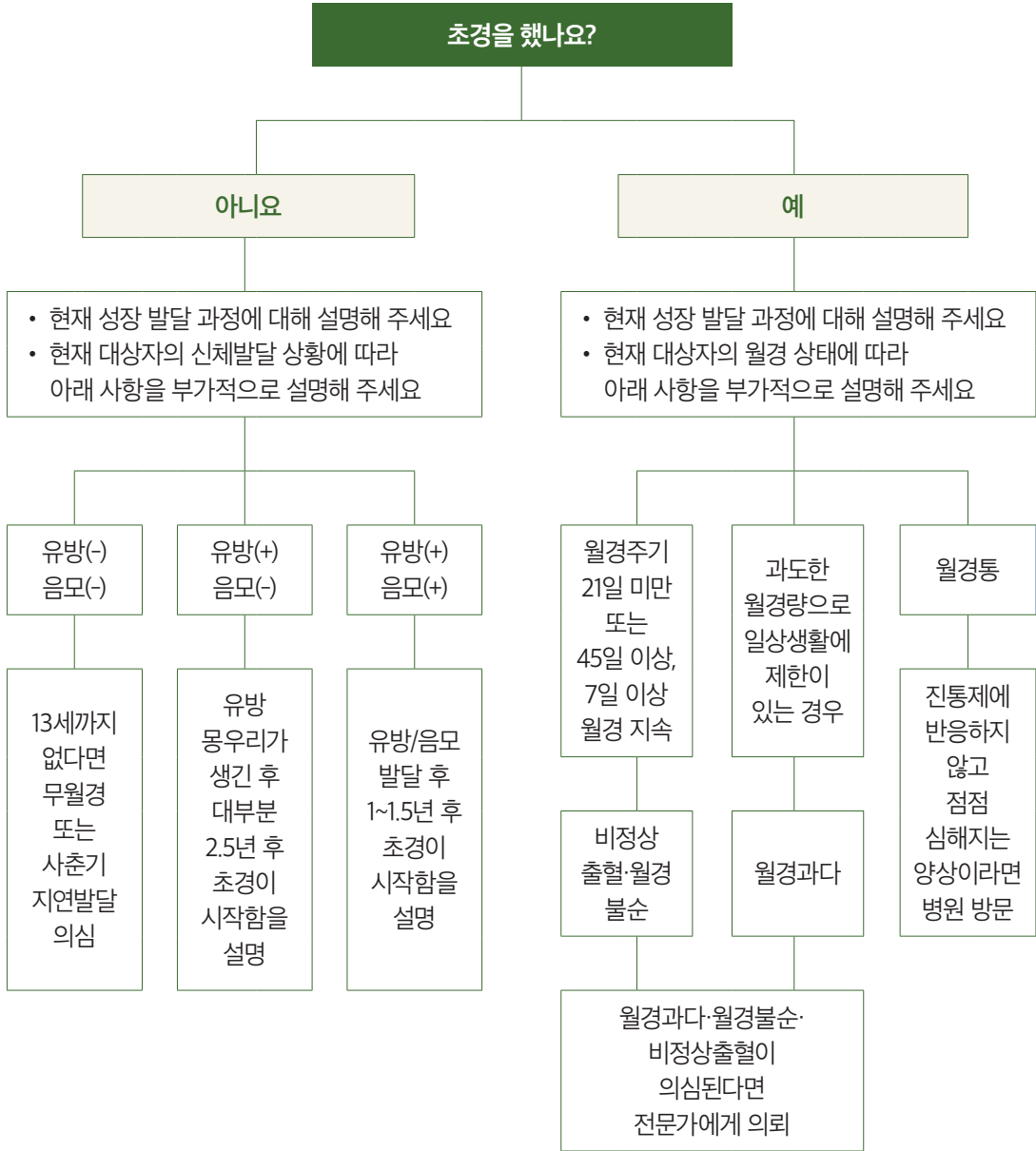
[참고] HPV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건강상담 절차



[표] HPV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세부 내용

상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보호자 진료 대기 시 사업 안내 자료(보호자용 리플렛, 건강상담 대상자용 안내문, HPV 예방접종 안내문)를 제공하고 ‘표준여성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177p) 작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진표와 함께 작성 및 보관(5년) • 사춘기 성장 발달·초경 등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가 작성한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내용을 토대로 건강상담 제공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프로그램/매뉴얼에 게재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의료인용 상담 교육자료’ 숙지 및 활용 •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상담은 진료실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며, 대상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 확인 후 의사 확인사항을 작성하고, 건강상담 업무 흐름도를 활용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성장발달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상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춘기 성장발달 개요, 대상자의 성장발달 상황, 여성 청소년에게 흔한 부인과적 질환(무월경, 월경통, 월경 이상) 설명, 질환 유무 확인 등 ※ 상담 내용에 따라 필요 시 추가 검사 또는 전문가 의뢰 등 조치 (이 경우 추가 검사·진료 등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함을 대상자·보호자에게 설명 및 동의 구득 필요) ※ 상담에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 암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백신 안전성과 권장 접종 시기 등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시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급여대상자)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급여대상 외) 보건소

[참고] HPV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업무 흐름도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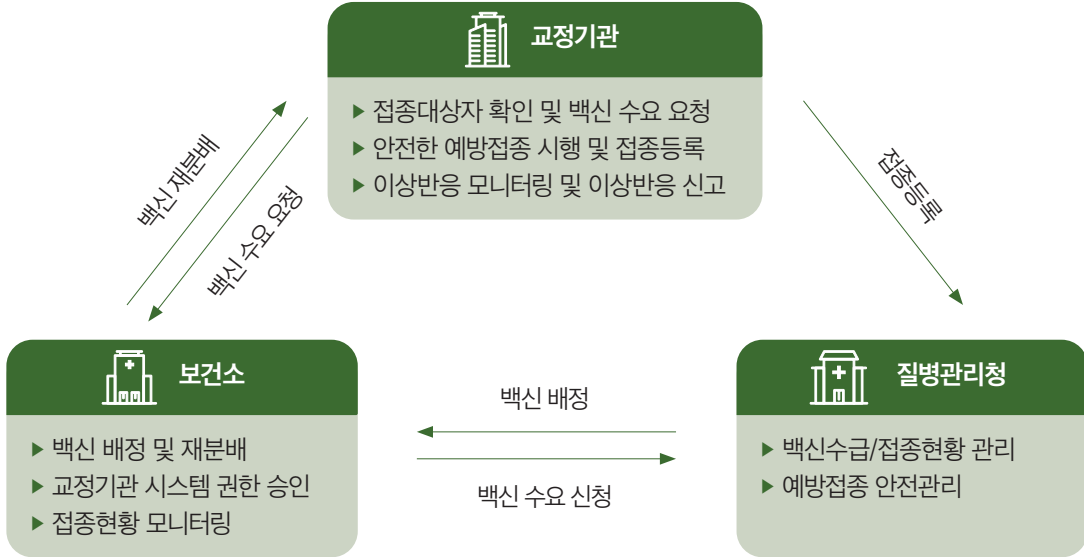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 교정시설 수용자 예방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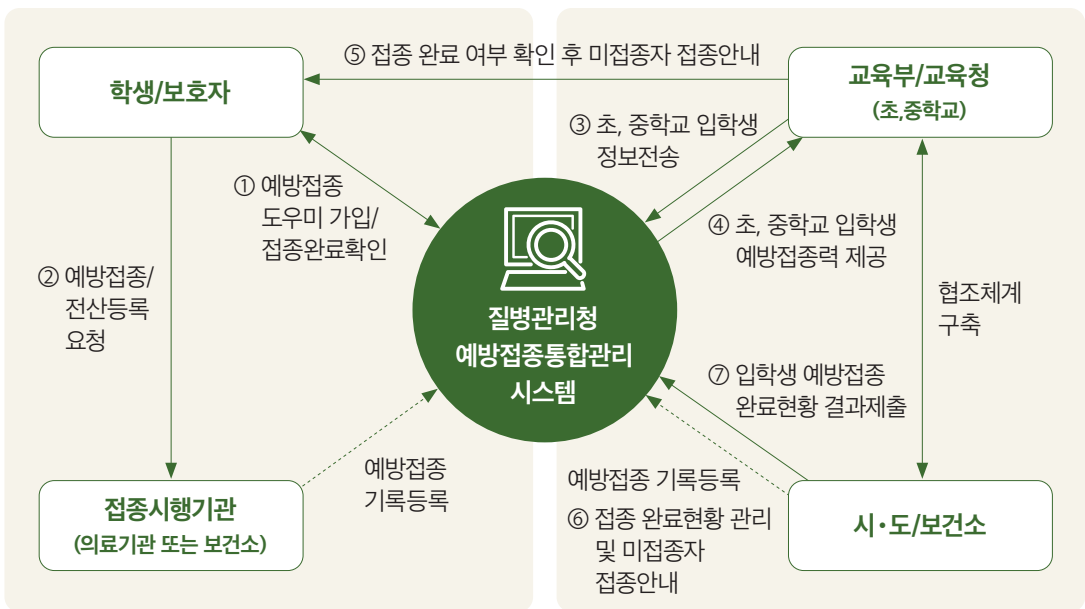
- (대상) 인플루엔자, 코로나19, 폐렴구균 국가 및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 (시기) 교정시설의 상황에 따라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접종을 실시한다.
- (주체별 역할)



교정시설	시스템 권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이수 및 예방접종 기록을 위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GPKI 인증서(본인), 개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권한 신청 필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 ※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팀 User' 권한 신청 ※ (교육) 교육이수를 위해 '교육관리 사용자(학습자)' 권한 신청
	온라인 교육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의원 의료인은 '기본교육'과 참여할 접종 백신 사업의 '심화교육 (65세 이상 폐렴구균, 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수 필요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서 처음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이수 후, 2년 0개월~12개월에 심화교육 추가 이수하며, 수료증은 부속의원, 관할 보건소에서 각 1부씩 보관(2년)
	자율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점검이 불가하므로, 부속의원에서 자체 점검 후 관할 보건소에 점검결과 서면 제출(연 1회, 하반기)
	백신 공급 및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대상 수 확인 후 관할 보건소에 백신 공급 신청(협조 공문 발송) 및 백신 수령 ※ (폐렴구균 백신 요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지 않으며 관할 보건소에서 백신 재분배 출고 진행 ※ (인플루엔자 백신요청) 현물공급 인플루엔자등록시스템 → 백신관리 → 백신 요청 → 추가요청량 메뉴에서 신청 ※ (코로나19 백신 요청) 교정시설은 시스템으로 신청하지 않으며 관할 보건소에서 백신 재분배출고만 진행(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 → 백신관리 → 백신 재분배출고)

보건소	권한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교정기관에서 신청한 '예방접종관리 Use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팀 User(의료기관)' 권한 승인
	백신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교정기관에서 백신 지원 협조 의뢰 시 공급(재분배) 및 신청 백신은 보건소로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렴구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사업 → 백신 관리 → 교정시설 부속의원 ※ (인플루엔자) '현물공급인플루엔자등록시스템' → 백신관리 → 백신모니터링 (현물공급) 메뉴에서 백신 입고량, 사용량 등 확인 ※ (코로나19) 코로나19예방접종시스템 → 백신관리 → 백신재분배출고

·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참고]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주체별 역할)

학생·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학교 입학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 후, 누락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 누락된 접종은 접종시행기관에 등록요청 ※ 단, 예방접종금기자는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
위탁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 미완료 아동의 접종시행 및 접종기록 전산 등록, 전산 미등록된 접종기록 등록 예방접종금기자는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에 한해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예방접종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학생(보호자)이 학교 또는 보건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교육부, 교육청 (초·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안내 및 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안내문 배포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문>은 관할 초등학교장이 예비 중학생(6학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서 교육부로 요청, 교육부에서 교육청(학교)으로 배포 초·중학교 입학생 정보를 질병관리청으로 전송(3~5월) 초·중학교장은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NEIS) 및 미완료자에게 접종 안내 학생(보호자)이 제출한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금기사유 진단서(확인서 등)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안내문 배포(시·도 및 교육부)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계획 수립 확인사업 안내 및 의료기관 협조요청(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보건소 신규자 대상 교육 초·중학교 입학생 정보에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부 전송(3~5월)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결과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환류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문> 시·군·구로 배포 예방접종 완료현황 모니터링 및 시·군·구 완료현황 결과 취합 제출 지역의사회 및 의료기관, 시·도 교육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 담당자 교육,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문> 배포* *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문>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에게 취학통지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요청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문>은 관할 초등학교장이 예비 중학생(6학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서 교육부로 요청 초·중학교 입학생 학부모, 의료기관 및 의사회, 학교에 확인사업 홍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할지역 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미완료자에게 접종 독려, 미완료자 관리 기능을 통해 미접종 사유 등록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금기사유 진단서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폐업의료기관 및 국외기관의 예방접종 기록 관리(전산등록) 예방접종 완료현황 모니터링 및 완료현황 결과 시·도로 제출 지역의사회 및 의료기관, 시·도 교육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 (대상 및 백신)

- (확인 대상) 당해 연도 초·중학교 입학 예정자
 - (확인 백신)
 - (초등학교) 4~6세 추가 예방접종 4종(DTaP 5차, IPV 4차, MMR 2차, IJEV 4차 또는 LJEV 2차)
 - (중학교) 11~12세 추가 예방접종 3종(Tdap* 6차, IJEV 5차 또는 LJEV 2차, HPV 1차(12세 여아 한정))
- *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의사와 상담 후 Td 백신으로 대체 접종 가능

- (세부 절차)

- 연계된 교육부(입학생 정보) 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 정보) 시스템을 통해 학교장 및 지자체장은 확인 대상자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 미접종자 접종 독려
 - (학교장) 교육정보시스템, (지자체장)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 단,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학생(학부모)은 접종 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거나,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고 학교는 이를 보건소에 제출
 - ※ 예방접종금기자*의 경우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 단,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하다면 예방접종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를 통해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직접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필요
- 의료기관 폐업·과거 접종력 미등록·국외 접종 등으로 시스템상 접종력 확인이 안될 때
 - [국내 접종력]
 - (의료기관 폐업) 초중학교 입학생의 관할 보건소는 폐업의료기관의 관할보건소 또는 폐업의료기관장이 보관 중인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아동의 접종내역 전산등록
 - (접종력 미등록) 피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접종명, 접종차수, 접종 기관, 접종 기관서명(또는 날인)을 포함하고 있는 예방접종 확인 서류(아기수첩 등은 동 정보를 모두 포함한 것만 인정)에 한해 등록
 - ※ 단, 등록일 기준 5년 내의 기록은 백신제조번호(라벨지도 인정)까지 확인되어야 함
 - [국외 접종력]
 - 해당 국가의 접종 기관 또는 보건/공공기관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등록(직인, 서명 등 필히 포함)
 - ※ 증명서·관련 서류 등의 진위 여부 등이 모호하거나 번역이 필요할 때는 담당자 재량으로 공증 또는 번역공증을 요구할 수 있음

(4). 예방접종 휴가 (위기경보(심각) 발령 시)

- 사업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유급휴가를 미사용한 대상**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

-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지원과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 되었을 것
- ② 사업주가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거나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접종 기록 관리 등

1). 등록

(1). 개요

- 예방접종 기록은 피접종자의 접종 누락과 중복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접종 기관 간 공유하며, 해당 개인정보를 예방접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탁 계약 해지 가능
- (시스템 등록) 접종 누락·중복접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당일에 자체 전산시스템 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이 필요하다.
 -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접종 내역은 PHIS → 보건사업 → 예방접종 → 예방접종관리 → 전송 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송 실패 시 미전송 사유를 확인 후 수정하여 재전송(시스템 오류시 PHIS 문의)
 - ※ 같은 접종을 여러 기관에서 시행한 경우, 시스템 입력 날짜·시간을 기준으로 우선 등록한 기관에만 비용상환

(2). 신규 등록

- 보건소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기 등록된 정보가 없는 경우 신규 등록한다.
 -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경우, 생후 1개월까지 피접종자의 생년월일 및 성별 정보와 보호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함께 등록한다.
 - ※ 생후 1개월 내 시행하는 B형간염 1차, BCG 접종에 한해 등록 가능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 완료 시 인적정보가 통합 관리되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전환되지 않은 정보는 생후 2개월까지 행안부 정보와 연계하여 정보를 보완(단, 등록된 정보와 보호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는 자동보완 불가 주의)

(3). 기타

- (예방접종 차수 등록 유의) 다음 참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한다.

[참고] 예방접종 차수 등록 안내 사항

DTaP-IPV, DTaP-IPV/Hib, DTaP-IPV- Hib-HepB 혼합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TaP-IPV 4가 혼합백신으로 기초접종(1~3차) → 'DTaP-IPV 1~3차'에 등록 • DTaP-IPV/Hib 5가 혼합백신으로 기초접종(1~3차) → 'DTaP-IPV/Hib 1~3차'에 등록 • DTaP-IPV-Hib-HepB 6가 혼합백신으로 기초접종(1~3차) → 'DTaP-IPV-Hib-HepB 1~3차'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TaP 기초접종은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 - DTaP-IPV, DTaP-IPV/Hib, DTaP-IPV-Hib-HepB 혼합백신과 DTaP, IPV 단독백신을 중복등록 하지 않도록 주의 - DTaP 4차 접종은 DTaP 단독백신으로 접종 → DTaP 4차에 등록 • DTaP 4차, IPV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4~6세 어린이가 DTaP-IPV 혼합백신으로 추가접종 → 'DTaP-IPV 추가(4차)'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TaP-IPV 추가(4차) 접종 전 DTaP 4차 단독백신 접종력 확인 - DTaP-IPV 추가(4차) 접종은 DTaP 5차, IPV 4차 접종과 동일
Tdap, Td 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TaP 접종을 완료*한 11~12세 어린이가 Tdap** 백신 접종 → 'Tdap 6차(Td 6차)'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4세 이후 DTaP 4차 접종자(5차 접종 생략 대상) ** 단,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Tdap 백신을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백신으로 대체 가능) • DTaP 접종력이 불완전한 7세 이상 어린이가 'Tdap/Td 따라잡기 일정'에 맞춰 접종 → Td 백신은 'Td 그 외 1차'에, Tdap 백신은 'Tdap 6차(Td 6차)'에(적합한 의학적 소견 선택 후 중복등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적 소견) 7~9세 따라잡기 일정 접종, 10세 이상 따라잡기 일정 접종 중 선택 • DTaP 기초접종을 한번도 받지 않은 7세 이상 어린이가 Td 백신으로 3회 기초접종(1차는 Tdap 백신 접종 권고) → ①Tdap 백신 접종은 'Tdap 6차'에 등록, ②Td 백신 접종은 'Td(그외) 1, 2차'에 순차적으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는 4주, 2~3차는 6개월의 접종간격을 준수하고 첫 1회 때 Tdap 백신으로 접종
Hib, PCV 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시작 연령에 따라 필요한 접종횟수가 달라지더라도 1차부터 순차적으로 등록
MMR 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역 유행으로 생후 6~11개월 영아에게 접종 → 'MMR 1차'에 등록(의학적 소견 등록) • 생후 12개월 이전 1차 접종,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생후 12~15개월에 접종 → 'MMR 1차'에 중복등록(의학적 소견 '이전 접종력 불인정으로 인한 재접종' 선택입력)
일본뇌염 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을 4~9세에 실시(6세 추가접종 생략)하고 12세에 추가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에 등록 • 약독화 생백신 1차 접종 후,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으로 교차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차'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접종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완료하고 등록 • 약독화 생백신 간 교차접종 → 교차시행한 2차에 순차적 등록

로타바이러스, HPV 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접종 후 교차접종 → 교차시행한 백신의 2차에 순차적 등록
인플루엔자 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접종 대상) '인플루엔자(처음접종)'칸에 1차와 2차 순차적 등록 * 9세 미만 누적 접종 횟수 1회인 대상이 당해 절기 2회 접종하는 경우 1차와 2차에 같은 방법으로 등록 • (1회 접종 대상) 조희 접종 이후 처음 1회 접종은 '인플루엔자(매년접종)'칸 '매년'에 등록하고 이후 매 절기 접종은 '접종추가' 칸에 접종력 등록
코로나19 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접종 대상) 주민번호 조회 → 1차 ~3차 순차적 등록 • (1회 접종 대상) 주민번호 조회 → 접종력 등록 * 기초 접종완료 후에는 매 절기 접종으로 접종력 등록

- (과거 또는 해외 접종력 등록) 보건소는 민원인 또는 접종 기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민원인의 민원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한다.

[참고] 과거 또는 해외 접종력 등록 관련 내용

- (국내 과거 접종력) 피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접종명, 접종차수, 접종 기관, 접종 기관 서명(또는 날인)을 포함하고 있는 예방접종 확인 서류(아기수첩 등은 동 정보를 모두 포함한 것만 인정)에 한해 등록
※ 단, 등록일 기준 5년 내의 기록은 백신제조번호(라벨지도 인정)까지 확인되어야 함
- (해외 접종력) 해당 국가의 접종 기관 또는 보건/공공기관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등록(직인, 서명 등 필히 포함)
※ 증명서 관련 서류 등의 진위 여부 등이 모호하거나 번역이 필요할 때는 담당자 재량으로 공증 또는 번역공증을 요구할 수 있음

2). 관리

(1). 미접종자 관리

- 보건소는 관내 사업 대상자의 예방접종 미접종자를 확인하여 접종 안내 및 접종을 독려해야 한다.
 - 미접종자 사유를 파악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접종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2). 오류 정보 관리

- (접종대상자 오류 인적정보 관리) 보건소는 사업별 ‘행안부 오류내역’ 메뉴에서 ‘존재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등록된 의료기관에 정정 요청한다.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참여 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안부오류내역

(3). 임시신생아번호

- (정의) 보건소가 출생신고 전 접종(B형간염 1차, BCG) 기록 등록을 위해 사용하는 임시번호, 생년 월일-성별의 7자리로 등록하는 번호
- (관리) 신생아번호를 처음 등록한 접종 기록의 인적 관할 보건소는 출생신고 기한이 지난 임시신생아번호에 대해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전환 대상을 확인해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행정업무 → 품질관리 → 신생아번호관리
 - 3개월이 지나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는 건은 보호자 연락 등을 통해 바른 정보 확인 및 전환/통합*한다.
 - * 보호자와 연락 등으로 미전환 사유 확인하여 관리이력에 등록
 - 생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임시신생아번호로 접종력 등록이 불가하다.

[참고] 임시신생아번호 세부 관리 방법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품질관리 → 신생아번호관리 → 신생아 (주민번호 없음) 체크박스를 해제()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여 저장
- 등록된 정보(보호자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를 기반으로 출생연도 및 월 단위로 조회하여 동일한 대상자를 선택 후 전환 가능
- 전환되지 않은 대상자 중 내국인의 경우 생후 2개월까지는 행안부 연계되어 인적 자동 보완 (단, 임시신생아번호 인적정보와 출생신고 후 인적정보(생년월일, 보호자 정보 등)가 불일치하는 경우 자동보완 불가능)

(4). 임시관리번호

- (정의) 보건소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대상의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해 임시로 발급하는 인적 번호
- (관리) 피접종자(보호자)가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한 후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한다.
 - (내국인) 시설아동번호가 없는 시설아동, 북한이탈주민, 출생 미신고자 등
 - (외국인) ①「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주한 외국공관 직원 자녀 등 외국인등록번호 면제자, ②미등록 외국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
 - ※ 외국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체류종인자, 체류할 것이 확인되는 자)는 여권, 비자,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 · VISA(출력물(비자발급확인서)로 확인) : A-1(외교), D-2(유학), D-4(연수), E계열(취업), F계열(거주·결혼·동포), H-2(방문취업) 등
 - (유선발급 불가) → 보건소는 보호자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확인 후 먼저 발급된 임시관리번호가 없다면 임시관리번호를 발급 및 안내한다.
 - 보건소는 발급자가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전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 임시관리번호는 1인 1개 발급이 원칙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관리번호발급관리를 통해 생년월일·발급기관을 입력하여 타기관 발급 임시관리번호 조회 가능
 - ※ 보호자는 모(母)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원 확인이 가능한 다른 보호자 등록 가능,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연락 가능한 휴대번호, 국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 이름·주소가 표시된 우편물 주소 등으로 정확한 정보 인증

(5). 과거 / 해외 접종력 등록

- (국내 과거 접종력) 피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접종명, 접종차수, 접종 기관, 접종 기관 서명(또는 날인)을 포함하고 있는 예방접종 확인 서류(아기수첩 등은 동 정보를 모두 포함한 것만 인정)에 한해 등록
 - ※ 단, 등록일 기준 5년 내의 기록은 백신제조번호(라벨지도 인정)까지 확인되어야 함
- (해외 접종력) 민원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수하며, 해당 국가의 접종 기관 또는 보건/공공 기관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등록(직인, 서명 등 필히 포함)
 - ※ 증명서·관련 서류 등의 진위 여부 등이 모호하거나 번역이 필요할 때는 담당자 재량으로 공증 또는 번역공증을 요구할 수 있음
 - ※ 우리나라는 어린이집 입소 또는 초·중학교 입학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외 예방접종기록의 등록 필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 「모자보건법」 제9조에 의한 모자보건수첩 또는 민간에서 발급한 아기수첩은 보호자 자녀의 접종 내역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증명서 대체 불가*
 - *아기수첩에 피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접종명, 접종차수, 접종기관(서명날인 포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만 인정
 - ※ 단, 등록일 기준 5년 내의 기록은 백신제조번호(라벨지도 인정)까지 확인되어야 함

(6). 기록 관리 (등록 후)

- 보건소는 예방접종 등록 정보 분기별 확인 후, 오등록·오접종으로 추정되는 자료는 의료기관으로 필요한 조치 후 회신한다.
- 보건소는 비용지급적합성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지급된 국가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적합성을 평가하고 부당청구·환수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불필요한 추가접종과 중복 접종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
-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확인이 필요한 비용상환 내역을 확인한다.
- 보건소는 예방접종 기록 등록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다.
 - ※ 예방접종 차수 등 순차적 등록여부
- 인적정보 변경/통합 요청 시 민원인은 현장방문, 보건소 담당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가능하다.(전화 요청 시 접수처리 불가)

3). 안내

(1). 사전 안내

-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자녀의 다음 국가예방접종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공고)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누리집 공고를 통해 사전 안내를 공고. 매년 1월 첫째 주 월요일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방법)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으로 실시하며, 문자 전송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접종 기관에서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시 사전안내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고 접종 기관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접종 알림 예약: 접종 기관에서 다음 접종일을 사전 예약한 경우, 예약일 2일 전에 접종 기관명으로 문자 발송
 - ※ 접종 알림 미예약: 접종 기관에서 다음 접종일을 사전 예약하지 않은 경우, 표준일정에 따른 접종시기 시작일에 지자체장 명의로 문자 발송
 - ※ (다국어 서비스) 다문화 가정의 경우 접종 기관에 희망언어(택1)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요청(2016. 시행)
 - (12개 언어 제공) 네पाल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2). 지연 접종 안내

-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되면 피접종자(또는 피접종자 보호자)에게 접종일정이 지연됨을 안내한다.
-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기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다음 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련된 알림을 문자전송 및 모바일앱으로 안내할 수 있다.

(4). 임시예방접종 시행 안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접종 안전

1). 안전 관리

(1). 개요

- (정의) 예방접종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접종 시행 시 주의 사항 준수와 오접종 관리를 의미한다.

(2).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 백신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 접종
 - 최소접종 연령, 최소접종 간격, 백신간 접종 간격, 교차접종, 권장 연령, 추가접종 등
- 접종 전 예진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과거 병력 확인
-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충분히 설명
- 백신의 상태 및 유효기간 확인 등을 확인하고 백신별 허가된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접종
- 의료관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독 및 위생 등을 철저히 관리

(3). 오접종 관리

- (정의) 오접종은 백신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미준수한 예방접종을 의미한다.
 - ※ 절기 예방접종의 경우, 예방접종 사업기간 미준수, 지원 대상 외 연령 일반 접종은 오접종에 해당하지 않음
- (예방) 오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 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름·생년월일 등 2가지 이상의 정보로 접종 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
 - 접종 전에 예방접종 시스템을 통해 접종 대상자의 과거 예방접종 내역 사전 확인
 - 매일 출근 직후 백신 냉장고 점검을 통해 유효기간, 온도 이탈 여부 등을 확인
 - 접종하려는 백신의 허가된 용법·용량과 실시 기준을 준수
- (발생 조치) 오접종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은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에서 등록한 오접종 발생 보고서 조회 및 관리
보건소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기관 행정지도 및 '의료기관 관할보건소'가 시스템에 오접종을 등록하여 시·도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기관에서 피접종자에게 오접종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건소가 그 사실을 피접종자에게 안내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오접종 신고: 보건소는 절기 예방접종 오접종 발생을 신고받은 즉시 시스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등록업무 → 예방접종조회/접종관리 → 오접종 등 관리 ② (코로나19)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 → 접종관리 → 오접종 등 관리 </div>
위탁의료기관 (접종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접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발생 즉시 보건소에 유선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 재접종, 이상반응 발생 모니터링 등의 조치 후 보건소로 추가 보고* * 보건소가 오접종 건에 대해 후속 조치 등을 시스템에 입력할 때까지 예방접종 시스템 팝업을 통해 조치사항 안내 ※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뒤늦게 보건소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탁계약 해지 가능

- (관리 및 후속 조치)
 - (보건소) 접종 7일 후 대상자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며, 오접종 발생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재교육, 주의 등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 ※ 단, 이상반응 발생 시 이상반응 신고 절차는 별도로 진행
 - (비용상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오접종 발생 건은 비용을 미지급하고 현물 공급 백신은 기관 자체 보유 백신으로 반납 또는 백신비용으로 상환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접종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접종비용을 미지급하며, 이미 비용상환이 완료된 경우 환수(또는 차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접종 후 재접종을 한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는 비용지급 적합성 검토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질문과 답변 > 예방접종사업 관련 문의' 게시판을 통해 비용상환 신청
------------------------	---

[참고] 인플루엔자 오접종 유형별 조치사항

유형	조치사항
(첫접종: 2회 접종자) 최소접종간격 보다 빠르게 접종	재접종 필요
허가사항에 맞는 않는 대상자 접종	재접종 필요 없음
중복접종	재접종 필요 없음
접종금지대상자에 접종 (아나필락시스 발생이력이 있는 사람 등)	재접종 필요 없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입	인지 즉시 재접종 필요
온도 이탈 등 보관방법이 잘못된 백신 주입	제조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름
한 번에 주입된 용량이 허가된 정량보다 많이 주입	재접종 필요 없음
한 번에 주입된 용량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	잔여량 즉시 재접종 * 즉시 잔여량 재접종이 불가한 경우, 가능한 빠른 시기 내에 전량 재접종 필요
적합하지 않은 부위에 접종	재접종 필요 없음
잘못된 방법으로 접종(피하 또는 정맥주사)	재접종 필요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물질이 보이거나 손상된 백신 주입(백신이 물에 젖었거나 상표가 훼손된 경우, 백신병에 금이 간 경우)	제조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름

[참고] 코로나19 오접종 유형별 조치사항

유형	조치사항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	최소접종간격을 두고 재접종
허가 연령에 맞지 않는 대상자 접종	재접종 필요 없음
중복접종	재접종 필요 없음
접종금지대상자에 접종 (아나필락시스 발생이력이 있는 사람 등)	재접종 필요 없음
생후 6개월 이하 영아 접종	생후 6개월이 되는 날 이후 다시 접종* * 유효하지 않은 접종으로부터 4~8주 접종 두고 접종
허용되지 않는 백신으로 교차접종	재접종 필요 없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입	최소접종간격을 두고 재접종

유형	조치사항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입 의심 사례 (동일한 로트번호 등 정상 백신과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의 구분이 불가한 경우)	재접종 필요 없음
보관 방법이 잘못된 백신 주입 (온도이탈 등)	제조사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름, 관련 데이터가 없는 경우 즉시 재접종* *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최소접종간격을 두고 재접종 가능
허가된 정량보다 많이 주입	재접종 필요 없음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	- 절반 이상 접종: 재접종하지 않음 - 그 외의 경우: 인지 즉시 허가된 용량으로 반대쪽 팔에 재접종* *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최소접종간격을 두고 재접종 가능
적합하지 않은 부위에 접종 (삼각근 또는 대퇴부전외측 근육주사 원칙)	재접종 필요 없음

(4) 기타 (의료 관련 감염 예방)

-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은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모든 과정에서
손위생 및 무균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장갑을 착용한 경우 장갑은 환자마다 바꿔 착용하며, 장갑 교체 시마다 손위생 실시
 - 사용한 주사기(Syringe) 및 주삿바늘(Needle)의 재사용을 금지하며, 주사기의 피스톤과
주삿바늘의 연결부위 및 삽입 부위가 손이나 기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폐기
- 접종 전 적절한 소독제(알코올 솜 등)를 사용하여 예방접종 대상자의 주사 부위를 소독하고
자연건조를 통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후 접종한다.
- 대기 → 접종 → 접종 후 공간으로 구분·운영하며(대기 공간과 접종 후 공간은 가급적 대상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별도의 공간이 없을 경우 겸용 가능하나 대기자와 접종완료자를
구분되도록 관리한다.

2). 이상반응 관리

(1). 개요

- (정의)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내용)

[참고] 이상반응 세부 내용

구분		정의
발생 부위	국소 이상반응 (Local reactions)	예방접종 받은 부위와 그 주변에 국한된 이상반응 ※ 예) 접종부위의 통증, 발적, 발진, 종창, 가려움증 등
	전신 이상반응 (Systemic reactions)	예방접종 받은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에 나타나는 이상반응 ※ 예) 발열, 권태감, 근육통, 메스꺼움 등
중대한 이상반응 (Serious Adverse Event Following Immunization, AEFI)		①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②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③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④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⑤ 영구적 장애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한 경우
중증도(Severity)		특정 증상/징후의 강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경증, 중등도, 중증) ※ 예) 발열은 흔하고 그 정도에 따라 경도 열 또는 중증도 열로 분류될 수 있음

(2). 이상반응 신고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표3,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13호) 별표,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11호)
-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행정지원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 → 이상반응관리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백신 종류	범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DTaP, Tdap Td DTaP-IPV DTaP-IPV/Hib DTaP-IPV-Hib-Hep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위 1~5.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I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위 1~3.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MM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21일 이내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7~30일
	4. 만성 관절염	42일 이내
	5.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7. 위 1~6.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CG	1. 림프절 부기(지름 1.5cm 이상)	1년 이내
	2. 골염, 골수염	6개월 이내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6개월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6개월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위 1~5.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Hep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위 1~3.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백신 종류	범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 까지의 시간
VA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위 1~4.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IJEV, LJE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위 1~4.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Hi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위 1~3.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PCV, PPS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위 1~3.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II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위 1~4.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HepA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위 1~3.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백신 종류	범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H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위 1~3.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R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장중첩증	21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위 1~3.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VcPS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위 1~3.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HFRS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위 1~3.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COVID-19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42일 이내
	4. 심근염	42일 이내
	5. 심낭염	42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7. 위 1~6.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Mpox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위 1~3.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백신 종류	범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 까지의 시간
법 제24조제1항 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하는 감염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간

(3). 중증이상반응 신속조사

- (조사대상)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에 준하는 정도*의 증상이 인지된 경우 또는 시·공간적으로 집단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 * ① 중환자실 입원치료, ② 생명위중, ③ 심각한 장애 초래 등
-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신속조사 사례 발생 시 기관별 조치 사항)

조치 사항	담당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사례 발생 인지	
↓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개요 파악	보건소 담당자
↓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유선 및 시스템 보고 (이상반응 신고, 중증이상반응 신고(기초조사 포함))	보건소 담당자
↓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시스템 보고 - 예방접종 시행한 의료기관 방문 조사 - 내원한 의료기관 방문 조사 -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 면담 - 발생 경과 및 동일 백신 접종자 이상반응 발생 확인 사항 등	시·도 담당자 및 역학조사관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개최(필요시)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통보	질병관리청

※ 사망사례에 대해서는 사인 및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에 상관없이 사망에 대한 연락 및 보고를 받으면 접종받은 자의 사망에 대한 전화 연락 및 보고를 받으면 반드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043-913-2322, 2288, 719-8367)에 보고

- (보건소(이상반응 담당자)) 중증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시스템 신고(이상반응 신고 후 실시)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행정지원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중증이상반응 신고 관리
- (시·도 역학조사반)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역학조사 실시 및 분석
 - ※ 해당 백신과 피해 발생 경과 등 피해사실에 관한 확인 / 질병 과거력, 가족력 등 인적 특성 조사 / 이상 반응 발생 후 임상 양상 및 검사 자료 및 관련 의무기록 수집 / 백신 보관상태, 접종 과정, 기록 관리 상태 등 조사 /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 이상 반응 여부 확인 / 주치의, 예방접종 관련자 등 면담 / 과거유사사례 여부에 대한 문헌 고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이상반응과 예방접종 간 인과성 검토

(4).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6-1호)에 따라 백신을 접종받은 대상자
 - ※ 임신 중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에서 발생한 질병, 장애에 대해서 피해보상 신청 가능
- (보상신청 기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 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한 내에 신청 가능함
- (보상신청 방법)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 제출

[보상신청시 구비해야하는 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시]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보상대상자가 성년 후견·한정 후견 등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이 보상신청 대행하여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이외 특별한 사유가 있는 보상대상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 의무기록 사본은 초진 기록(문진(history taking)과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 입원 경과, 시행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방문한 진료 기관별로 의무기록 사본과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백신 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 사본(있을 경우)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 (30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장애인일시보상금 신청 시]

-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보상대상자가 성년 후견·한정 후견 등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이 보상신청 대행하여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이외 특별한 사유가 있는 보상대상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
- 진단서(「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리는 객관적인 근거 포함)
- 의무기록 사본
- 백신 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 사본(있을 경우)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시]

-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 우선순위 유족(보상금 우선수령 대상자)으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보상대상자가 성년 후견·한정 후견 등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이 보상신청 대행하여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이외 특별한 사유가 있는 보상대상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
- 사망진단서
- 부검조건서(단, 시신 화장 등으로 부검을 실시할 수 없거나,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 의무기록 사본(있을 경우)
- 백신 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 사본(있을 경우)

3). 아나필락시스 대응

(1). 개요

- (정의) 급격하게 진행되는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며, 단시간 내에 여러 가지 장기의 급격한 증상을 유발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극히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고, 발병은 일반적으로 몇 분 이내에 빠르게 진행되며 다양한 중증도와 임상특징으로 경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 The Green Book. Vaccine safety and 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sation chapter 8. Public Health England. 2013
 -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관찰해야 하는 특정 기간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예방접종 후 최소 2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무르며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물,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함*
 - * 미국 CDC.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clinical-considerations/managing-anaphylaxis.html>

(2). 증상 및 징후

- 피부/점막, 호흡기, 심혈관, 위장관 등 2가지 계통 이상의 전신적인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
 - 피부-점막 증상(80~90%) : 가려움증, 두드러기, 홍조, 입술, 혀, 입 안 등의 부종
 - 호흡기계 증상(70%) : 코막힘, 콧물, 재채기, 기침, 호흡곤란, 가슴답답함, 천명 등
 - 소화기계 증상(30~45%) :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 심혈관계 증상(10~45%) : 가슴통증, 빈맥, 저혈압, 쇼크, 심장마비 등
 - 신경계 증상(10~15%) : 실신, 의식저하 등
- 다음의 세 가지 증상이 모두 있을 경우 아나필락시스 의심
 - 증상의 갑작스런 발병 및 급속한 진행
 - 기도와/또는 호흡과/또는 순환기 문제
 - 피부 또는 점막 변화(가려움증, 홍조, 두드러기, 혈관부종)

기도(Airway) 문제	호흡(Breathing) 문제	순환기(Circulation)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도 부종(목과 혀가 부어 호흡 및 삼키기 어려움, 기도가 막히는 느낌) • 신 목소리 • 협착음(기도 폐쇄로 인한 고음의 흡기 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숨가쁨(호흡수 증가) • 쌉쌉거림(기관지 경련)과/또는 지속적인 기침 • 인후부종이나 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크징후 : 창백하고 끈적함 • 두드러진 빈맥 • 부정맥 • 저혈압 : 실신(현기증), 허탈 • 의식수준 감소, 의식소실 • 심장마비

• (고려사항)

- 피부 또는 점막 변화만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징후가 아니며, 피부나 점막 변화 없이 기관지 경련 또는 저혈압만 나타날 수 있음
- 국소적인 이상반응이더라도 증상이 나빠질 수 있어 면밀히 관찰 필요
- 특히,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은 인지장애가 있는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신경질환자 등 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인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상과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

[참고]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위한 기준

[World Allergy Organization Anaphylaxis Guidance 2020]

-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가 충족되면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피부, 점막 조직 또는 둘 다의 동시 침범(전신 두드러기, 가려움증 또는 홍조, 부어오른 입술 - 혀 - 목젢)과 함께 급성 발병(몇 분에서 몇 시간) 그리고 다음 중 적어도 하나 :
 - a. 호흡기 손상(호흡곤란, 천명, 기관지경련, 협착음, 최대호기유속(PEF) 감소, 저산소혈증 등)
 - b. 혈압 감소 또는 말단 기관 기능 장애 관련 증상(긴장 저하[허탈], 실신, 요실금 등)
 - c. 특히 비식품 알레르겐에 노출된 후 심한 위장 증상(심한 경련성 복통, 반복적인 구토)

- 전형적인 피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환자에 대해 알려지거나 가능성이 높은 알레르겐¹⁾에 노출된 후(몇 분에서 몇 시간) 저혈압²⁾ 또는 기관지 경련³⁾ 또는 후두 침범⁴⁾의 급성 발병

1) 알레르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일반적으로 단백질)임. 대부분의 알레르겐은 IgE 매개 경로를 통해 작용하지만 일부 비 알레르겐 트리거는 IgE와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예 : 비만 세포의 직접 활성화를 통해)

2) 그 사람의 기준선에서 30% 이상으로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저혈압 또는

① 10세 미만의 영유아 : 수축기 혈압 (70mmHg + [2x연령]) 미만,

② 10세 이상의 성인 및 소아 :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

3) 일반적인 섭취가 없을 때 “흡입”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흡입 알레르겐 또는 음식 알레르겐에 의해 유발되는 하기도 증상은 제외됨

4) 후두 증상은 다음과 같음 : 협착음, 음성 변화, 연하통

(3). 감별 진단

- 접종자의 불안감과 과호흡으로 인한 기절이나 실신과 아나필락시스는 구분 필요

구분		미주신경 반응-실신	아나필락시스
발병		갑작스럽고, 예방접종 전, 도중 또는 직후(대부분 수초~5분 미만)에 발생	대부분 예방접종 후 수분 이내 발생 (일반적으로 5분 후에 발생하지만 지연 발생 가능)
양상	피부	식은땀, 일반적으로 창백하며 차고 축축한 피부	전신 두드러기 또는 전신 홍반, 혈관 부종, 국소 주사 부위 두드러기, 충혈 및 가려운 눈, 가려움증(피부 발진 유무에 관계없음), 전신의 따끔거리는 느낌(prickle)
	호흡	정상 호흡부터 심호흡까지 다양 (불안을 동반하면 호흡수 증가 가능)	짧은 호흡, 거친 호흡, 쌕쌕거림 또는 천명음(wheezing), 협착음(stridor), 지속적인 기침, 산소포화도 저하
	심혈관	서맥(느린 맥박), 간헐성 저혈압 가능	빈맥(빠른 맥박), 저혈압, 심장마비
양상	위장관	구역, 구토	구역, 구토, 복부 경련(쥐어짜는 듯한), 복통, 설사
	신경계	어지러움, 현기증, 일시적인 기절(실신), 무력증, 시력(섬광, 터널시야 등)/청력 변화	어지러움, 현기증, 불안, 안절부절 못함, 동요, 심한 경우 의식소실로 진행
회복		머리를 아래로 하거나 누운 자세에서 좋아짐 * 눕히는 자세만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빠른 회복	머리를 아래로 하거나 누워도 좋아지지 않음 * 눕히는 자세만으로는 호전 없고, 에피네프린 투여 후 몇 분에서 몇 시간 후 회복
검사 (트립타제)		정상	증가(증상 발생 2~3시간까지 최고 수치, 그 이후 감소)

※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검토(2021.7.14.)

- 기절이나 실신 경험이 있는 경우 미주신경반응-실신 예방을 위해 누운 자세의 접종을 고려

(4). 환자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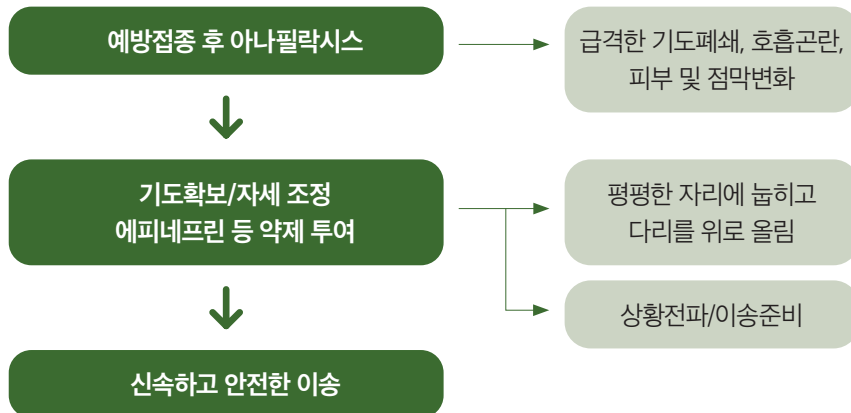
환자가 급작스럽게 일어나거나 걷거나 혹은 앉을 시 수 분 이내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환자는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걷거나 일어서서는 안 됨

- 환자를 평평한 장소에 눕힐 것
 - 심장으로 혈액 환류량이 개선되며, 환자를 똑바로 일으킬 시 심장을 통해 순환하는 혈류량의 감소 및 저혈압을 유발함
- 구토 시, 환자를 옆으로 눕힘
- 호흡 개선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은 주로 앉기를 원함
 - 이때 환자는 의자에 앉지 말고 바닥에 양쪽 다리를 앞으로 쪽 편 상태로 앉아야 하며, 앉을 시 저혈압이 유발될 수 있을 것임을 인지하고 지속 관찰 필요
 - 의식 상태나 혈압 하락 시 즉시 환자를 평평한 장소에 눕혀야 함
 - 안정화되기 전까지 환자를 일어서거나 걷게 하면 안 되며, 안정화되기까지 보통 최소 1시간 (에피네프린 1회 투여)에서 4시간(에피네프린 2회 이상 투여) 소요
- 들것 혹은 스트레처 카(Stretcher car)를 이용해 환자를 이동시켜야 함

(5). 아나필락시스 관리

-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각 장소에서 즉시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함
- 응급처치를 위한 의약품 및 장비의 사용 만료일 및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필요

- (아나필락시스 대응 흐름도)



- (상황평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 예방접종 담당의료인은 접종 후 20~30분간 백신 접종부위에 부종, 발적 등이 발생하면 전신 과민반응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관찰
- (도움요청) 전신 과민반응 발생 시 상황을 접종 기관 내 신속 전파, 도움 요청 및 담당의 호출
- (응급처치) 담당의사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한 뒤 간호사의 보조를 받으면서 기도확보, 산소공급, 에피네프린 투여, 수액요법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
 - 에피네프린은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에 필요한 1차 약제이고 호흡곤란을 완화시키며 적절한 심박출량을 유지시킴(에피네프린 보관방법은 반드시 사용설명서 참고)
 - 에피네프린 투여 후에도 증상 및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구급차가 올 때까지 매 5~15분 간격으로 투여 가능
 -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는 아나필락시스의 1차 약제가 아님
- (의료기관 이송) 응급처치는 담당의사 주도하에 진행하고 구급차로 지정된 응급의료센터로 이송

(6). 사전 준비 사항

- (이송체계 마련) 응급환자 발생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전화번호, 위치, 이송거리 등을 확인
- (사전준비약품 및 장비)

반드시 구비	가능하면 구비
에피네프린	맥박산소측정기(Pulse oximeter)
혈압계(수동 혈압계의 경우 청진기 필요)	산소(Oxygen)
연속맥박측정기 (timing device to assess pulse)	기관지 확장제(예 : albuterol)
	H1 항히스타민(예 : diphenhydramine, cetirizine)
	H2 항히스타민(예 : famotidine, cimetidine)
	정맥수액(IV fluid)
	기도삽관 키트
	심폐소생술 마스크

※ 미국 CDC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clinical-considerations/managing-anaphylaxis.html>

- (담당자별 역할 마련) 접종 후 관찰 구역에서 접종 후 대상자를 모니터링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행정요원은 도움을 요청하고, 의사는 환자 상태 평가 및 응급처치 지휘, 간호사는 응급처치 보조, 응급구조사는 즉시 이송

구분	역할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상태 평가 기도, 호흡 확보·유지, 순환기 및 의식상태 파악 약제 투여 필요성 판단 및 지시 심폐소생술 시행 필요성 판단 및 시행 이송 시 동행(필요시)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제 준비 및 투여 응급간호관리 이송 시 동행(필요시)
행정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 전파 및 도움 요청 (대기중) 구급차 준비 요청 기관내 상황전파
응급구조사(구급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이송

(7). 아나필락시스 치료

- 환자가 위를 바라보도록 평평한 곳에 눕히고 발을 높게 해줌
- 에피네프린 1:1000, 0.01ml/kg(maximum 0.5ml) 또는 필요시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성인용(0.3mg)을 즉각 근육주사
 - (성인) 호전이 없는 경우 5~15분 간격으로 반복 근육주사하며, 2~3회 투여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맥주사(0.05~0.1mg) 고려(정맥주사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의사만 사용)
 - (6~12세) 에피네프린 0.3mg을 근육 주사 후 호전이 없는 경우 5~15분 간격으로 반복 근육주사
 - (1~5세) 에피네프린 0.15mg을 근육 주사 후 호전이 없는 경우 5~15분 간격으로 반복 근육주사
 - (10kg 미만 영유아) 에피네프린 0.01mg/kg을 근육 주사 후 호전이 없는 경우 5~15분 간격으로 반복 근육주사
- * 연령별 예시 : WAO 아나필락시스 가이드라인 2020
-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은 1회용이며, 유효기간과 약물 용액이 투명한 상태인지를 주기적으로 확인
- 기도를 유지하고 산소 공급
 - 쉰 목소리, 혀 부종, 협착음, 인두부종 등이 있을 때에는 기도 폐쇄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관 내 삽관 고려
- 활력 징후(혈압, 심박동, 호흡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에피네프린 주사 이후에도 수축기 혈압이 80mmHg 이하이면 수액제제를 정맥 주입

- 에피네프린 주사 이후에도 수축기 혈압이 80mmHg 이하이거나 쇼크가 지속되면 혈관 수축제(노르에피네프린, 바소프레신, 페닐에프린) 등을 추가로 투여
- 초기 소생술 후 혈액학적으로 안정되면 항히스타민제(두드러기가려움증 완화), 스테로이드제 투여
-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증상 종류에 상관없이 의료기관으로 이송

구분	증상 및 처치
진단	가장 흔한 징후와 증상은 피부증상(두드러기, 혈관 부종, 홍조, 가려움증)
	위험징후 : 증상의 급속한 진행, 호흡곤란(협착음, 천명, 호흡곤란, 지속적인 기침, 청색증), 구토, 복통, 저혈압, 부정맥, 가슴 통증, 실신
응급관리	아나필락시스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에서 에피네프린 투여의 절대 금기는 없음
	기도 유지 : 혈관 부종에서 임박한 기도방해의 증거가 있는 경우 즉각적인 기도 삽관
	에피네프린 근육주사 : 필요에 따라 5~15분 간격을 반복할 수 있음
	자세 조정 : 환자를 눕히고 하지를 올림
	산소 : 필요에 따라 안면 마스크를 통해 8~10L/min을 제공 또는 최대 100% 산소제공
	생리식염수 : 1~2L를 급속히 정맥주사하고 저혈압을 치료
보조치료	H1 항히스타민제(두드러기와 가려움증 완화)

-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경험하는 환자는 다음 접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처치 및 추가 상담 필요

(8). 심폐소생술 (필요시)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반응을 확인. 환자가 반응이 없으면 주변에 심장정지가 발생했다고 알리고(구급차가 없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 즉시 가슴압박 등 심폐소생술 시작
 - 의료인의 경우 맥박과 호흡을 10초 이내로 동시에 확인해야 하며, 심장정지가 의심되면 맥박을 명확히 확인 못한 경우에도 가슴압박을 실시하도록 권고
 - 맥박 확인 위치는 성인의 목동맥을 만져서 확인
- (순환) 가슴압박은 가슴 정중앙(흉골의 아래쪽 1/2지점)을 압박, 성인 5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압박
 - * 영아(1세 미만)는 젖꼭지 연결선 바로 아래의 흉골을 약 4cm 깊이로 압박
 - * 소아(1세부터 8세 미만)는 흉골 아래쪽 1/2 지점을 약 4~5cm 깊이로 압박

- (기도유지) 머리기울임-턱 들어올리기 방법으로 기도유지
- (인공호흡) 인공호흡량은 1초에 걸쳐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를 정도(500~600ml, 6~7ml/kg)로 시행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가슴압박을 30회 한 후 인공호흡을 2회 실시(30:2)
- 전문기도가 삽입된 경우에는 가슴압박 중단 없이 10초/1회 간격으로 인공호흡 시행

< 8세부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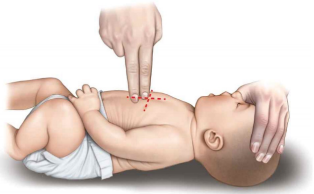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30:2로 유지한다.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 방법

< 1세 미만 >



영아의 가슴압박
(두손가락 가슴압박법)



영아의 가슴압박을 위한 손 모양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

< 1세부터 8세 미만 >



소아의 가슴압박

- (약물)
 - 에피네프린은 모든 심장정지 환자에게 투여
 - 심폐소생술 중에는 1.0mg의 에피네프린을 IV로 투여
 - 1~2L의 균형 정질용액(balanced crystalloid)이나 생리식염수 투여를 고려
- (산소투여) 심폐소생술 중에는 가능한 100% 산소 투여
- (자동제세동기)
 - 심폐소생술 중 자동제세동기가 사용 가능하면 즉시 사용
 - 자동제세동기는 전원을 켜 후 자동제세동기로부터의 음성 신호에 따라 사용
(전극 부착-심전도 분석-제세동 순서로 진행)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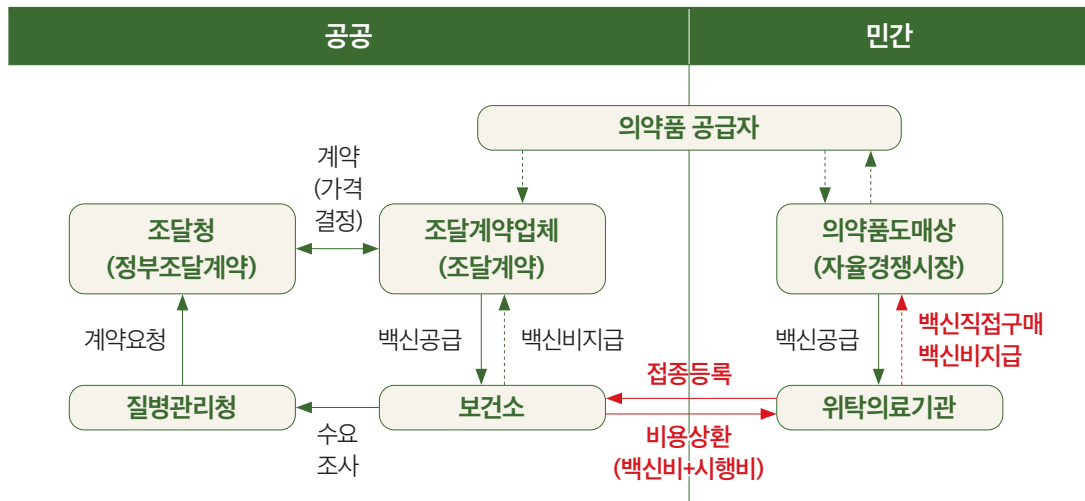
백신 공급 및 보관 등

1). 공급 방식별 구매 방법

(1). 민간개별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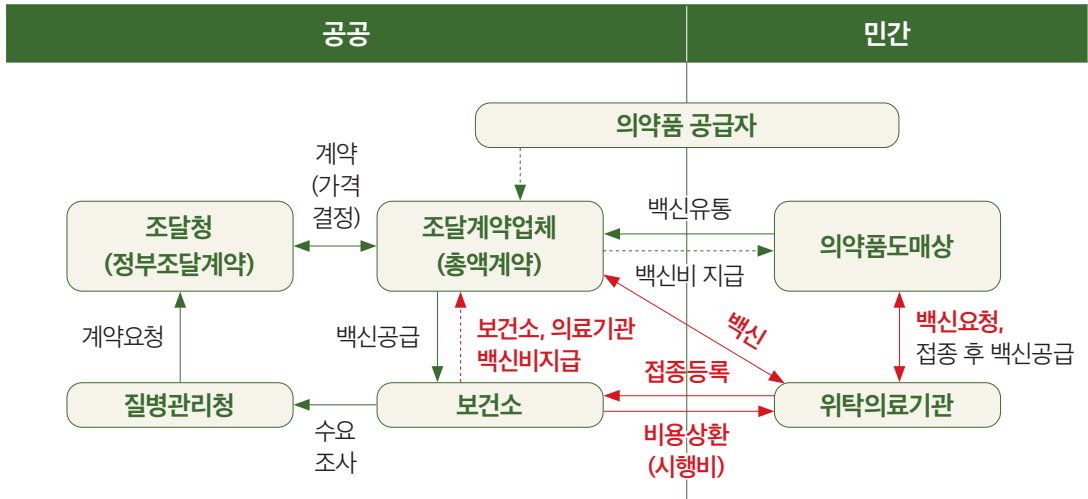
- 위탁의료기관이 백신 물량을 개별 확보하고, 정부 사업에 사용된 물량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위탁의료기관에 백신비용을 상환하는 방식
 - 해당 백신 : HepB, DTaP, IPV, Hib, DTaP-IPV, DTaP-IPV/Hib, DTaP-IPV-Hib-HepB, Td, Tdap, MMR, IJEV, LJEV, VAR, RV1·5가, HepA(소아용), PCV13가*, IIV(어린이·임신부 대상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소요 물량)

* PCV20가 도입('25.10)에 따라 PCV13 재고 처리 등을 위해 “사후현물” → “민간개별구매” 변경('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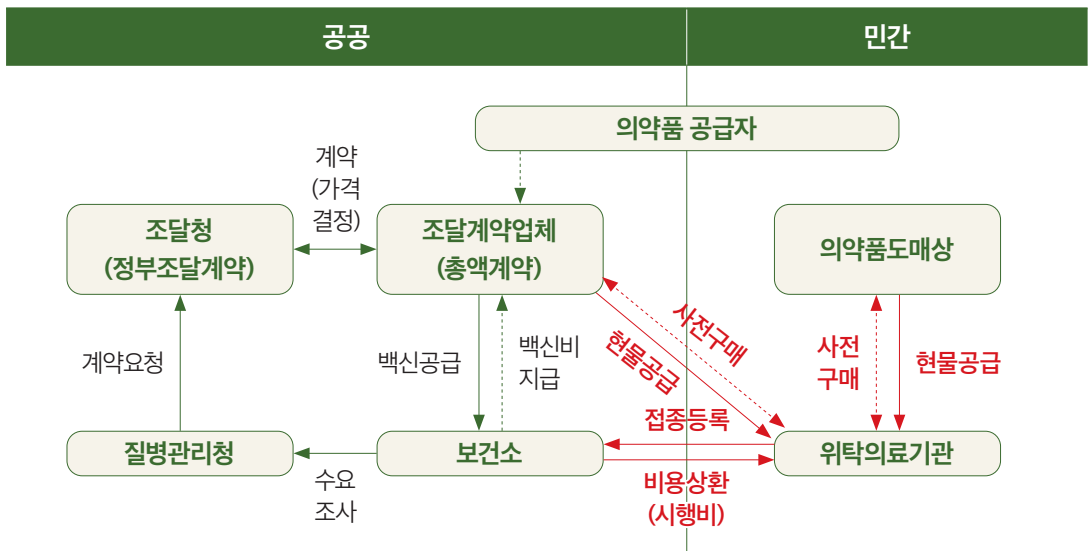


(2). 정부총량구매

- (사후비용차감) 정부에서 특정기간 동안 사용할 물량을 일괄 구매해 확보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정부사업에 사용한 물량의 백신비용에 대해 국가가 업체로 지원, 업체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구매비용을 환급하는 방식
 - 해당 백신 : HPV 4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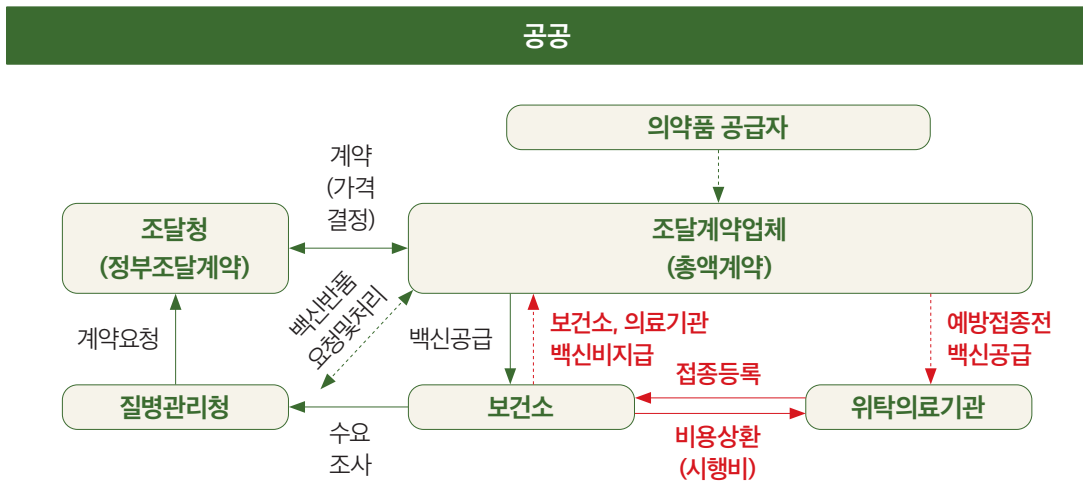
- (사후현물공급) 정부에서 특정기간 동안 사용할 물량을 일괄 구매해 확보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정부사업에 사용한 물량을 사후 현물로 공급하는 방식
- (사후현물공급 방식을 통해 백신을 공급받아 보건소에서 조달업체로 백신비용을 지급 하였으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내역 삭제(오접종, 중복접종, 등록오류 등) 시 보건소는 해당 백신비용에 대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 처리
- 해당 백신 : PCV 15:20가



(3). 사전현물공급

- 정부가 사업 물량을 일괄 구매 확보해, 사업 전·후로 정해진 규칙과 방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 현물 백신을 배분하고 재분배하는 방식
- 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공급한 백신을 위탁의료기관의 부주의로 인한 폐기(파손, 유효기간 미관리로 인한 폐기 포함), 오접종, 중복접종 발생 시 보건소-위탁의료기관 간 협의하여 위탁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으로 접종 또는 반납 또는 백신비용 환수
 - 해당 백신 : BCG(피내용), PPSV, ViCPS, HFRS, IIV(어린이·임신부 대상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소요 물량 제외), COVID-19, Mpox

* ViCPS, HFRS는 보건소만 공급



[참고] 수급불안 대비 현물비축 사용체계 구축 및 운영

- (대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으로 집단유행 발생 가능성 및 국외상황(국외 수요 증가 및 생산 여건) 등에 따라 수급 불안의 가능성이 있는 백신
- (구축방식)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조달계약에 수요기관으로 공급하는 현물공급물량의 납품과 비축 백신 보관 및 순환교체 관리 구분
- (운영방식) 조달업체는 비축 백신을 보관·관리, 수급불안 발생 시 보건소 등에 백신을 공급

※ 비축 백신 중 유효기간 도래 백신(6개월 이하)에 대해 현물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 전환된 수량만큼 '현물공급 물량'에서 '비축물량'으로 전환하여 비축물량 유지

2). 사업용 백신 관리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백신 재고 관리

- PHIS 백신재고관리 메뉴에 입고량·폐기량 등의 수급내역 등록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및 조회 가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백신수급관리'의 재고량·사용량 등의 자료는 등록된 입·출고 및 접종내역으로 자동 계산되며, 시스템 연계 시점인 2017. 1. 2. 이후의 자료부터 조회 가능
※ 2016년 이전 자료는 별도 메뉴를 통해 조회 가능

(2). 총량구매-사전현물 백신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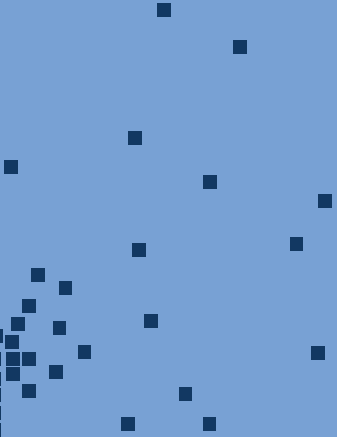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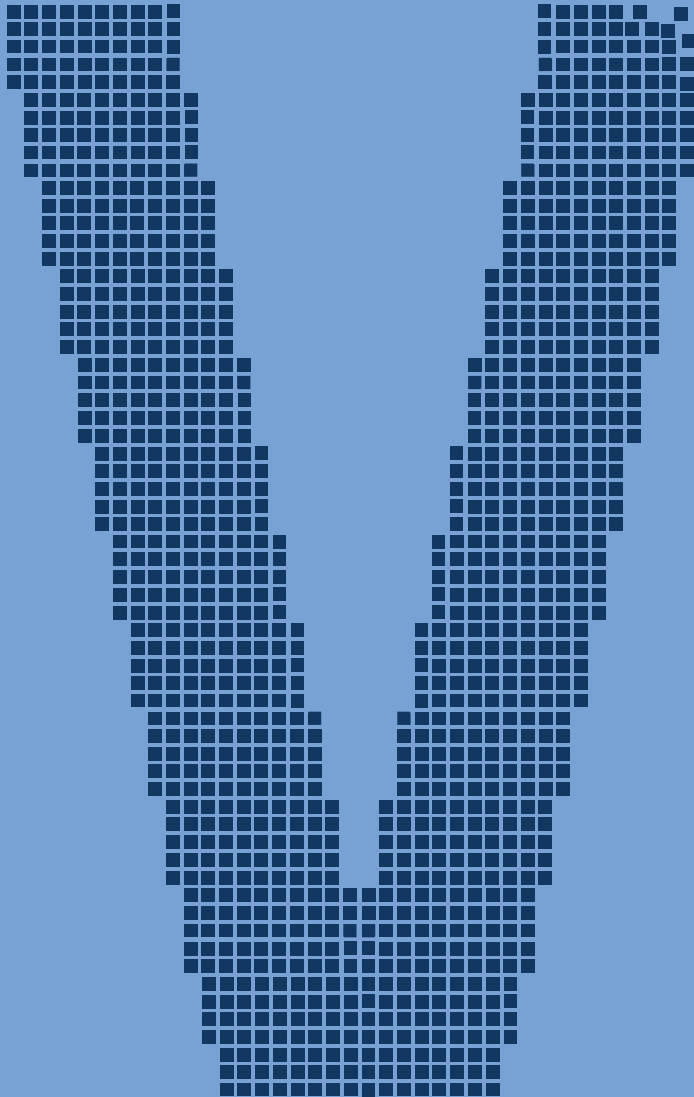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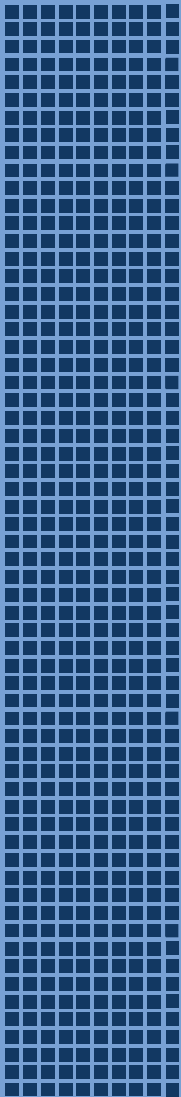
- 총량구매-사전현물로 공급받은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은 민간개별(자체) 구매한 백신과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 대상 외 사용 불가
-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 부족 시 보건소는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추가 물량 공급 요청 가능
- 지자체 사업용 백신을 국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 후 시스템 내 전환등록 후 사용
- 사전현물 공급 백신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업 시행 이전 접종이 시행된 경우 사용한 백신 및 위탁의료기관 부주의로 인한 폐기(파손) 백신 등에 대해 보건소-위탁의료기관 간 협의하여 위탁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으로 접종 또는 반납 또는 백신비용 환수
- 보건소는 관할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의 사전현물 공급 백신 입고 사용량, 백신 부족 등 수급 현황 관리 및 폐기 백신 최소화를 위한 백신 재분배 등 실시
- 재분배 등의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미협조 시 백신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백신을 부적절하게 보관할 경우 보건소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3). 인플루엔자·코로나19 사업 전·후 백신 관리

- 백신 공급 이후 예방접종 전까지 백신 보관, 취급 중 콜드체인 미준수 등으로 인해 백신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위탁의료기관) 사전현물로 공급받은 백신은 예방접종사업 종료 시 잔여 백신은 보건소로 반납, 반납 수량은 반드시 시스템 재고량과 동일하여야 함
※ 보건소로 반납한 수량이 시스템 재고량보다 적은 경우 보건소-위탁의료기관 간 협의하여 위탁의료기관 자체보유 백신으로 반납 또는 백신비용 환수
- (보건소) 잔여 백신은 「물품구매 특수조건」에 따라 조달계약업체로 반품이 가능하므로 임의 폐기 처리하지 않고 조달계약업체로 반품
※ 조달계약업체 미 반품 수량(반품 초과량)은 보건소에서 자체 폐기 실시

3). 백신 인수, 보관 및 관리

-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2025) 참고



계약 및 기준

1. 위탁 계약

- 1) 개요
- 2) 위탁의료기관 교육
- 3) 체결
- 4) 관리
- 5) 해지 등

2. 비용 상환

- 1) 개요
- 2) 절차
- 3) 금액

3. 실시 기준

- 1) 대상자
- 2) 백신
- 3) 접종 용량 및 범위
- 4) 접종 시기 및 간격
- 5) 접종 금기 및 주의사항
- 6) 일반적 실시기준
- 7) 예외적 실시기준

1

위탁계약

지자체-의료기관 간 위탁계약 절차

위탁의료기관 교육

-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업 참여 전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을 통해 기본교육·심화교육 과정 모두 이수



계약 체결

- (계약 전) 사업취지, 위탁계약 조건, 사업 지침 준수,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관련 시스템 사용법,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 사업내용 등 의료기관 안내
- (계약 후) 보건소는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날인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게재, 가능한 방법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지



관리(해지)

- 계약된 참여백신 구비 여부, 백신 보관 관리, 유효기간 경과 백신 처리 등 관리 철저
- 보건소는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면, 의료기관 사전통지 없이 계약 해지 가능

1). 개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따라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지자체에서 판단 및 고려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다.

2). 위탁의료기관 교육

- 위탁의료기관은 신규 위탁 또는 위탁 계약 중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31p 참조)

3). 체결

(1). 신규 계약

- (사전 공고)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게재(연 1회, 매년 1월 첫째 주를 원칙으로 하며, 변동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위탁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공지)
 - ※ (공고내용) 위탁의료기관명, 위탁기간, 참여 백신명 등
- 신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신청 전 반드시 위탁의료기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 취지, 위탁계약 조건 및 의료기관 준수사항, 국가예방접종 지침 및 예방접종 실시 기준, 관련 시스템 사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참고]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준수
2.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요구시 업무협조
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
4.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예방접종력 조회 및 접종기록 등록, 비용상환 신청
5. 접종기록 등록, 비용상환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준수
6. 개인의 과거접종력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7. 사업 참여 확인증' 제출을 통한 위탁계약범위 확인 및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현행화

※ 위탁계약조건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은 본 지침을 의미한다.

- (신청) 신규 계약은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 (주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근거, 별도의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내용)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중 희망 사업별 신청
 - (방법)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계약 신청
 - * 위탁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의료기관 기관(기관장)인증서로 계약 신청(전자서명)

[참고] 위탁계약 신규 신청 시 필요 서류

1. 교육수료증 : 기본교육 및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의 심화교육 수료증
 - 전산으로 계약신청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계약신청관리)의 참여희망 사업정보에서 교육 수료번호(교육수료증 좌측 상단의 번호) 및 수료자명 입력 후 수료 여부 검증 절차 필요
2. 통장사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통장 사본으로 예방접종 비용상환용 별도 계정의 통장 개설 권고
3. 예방접종 사업별 참여 확인증 또는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B형간염 접종 시행 필수
 - ※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시 'HPV 도매상 협약서' 함께 제출
 - 시행확인증에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접종 중인 모든 백신을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한 백신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일반인에게 안내되므로 변동 발생 시 즉시 현행화* 필요
 - * 현행화 누락시 비용상환 신청 불가

- (승인) 신규 계약은 보건소가 승인한다.
 - 보건소가 승인한 날로부터 계약은 체결되어 유효한 것으로 보며, 이후부터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 (주체) 신규 계약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
 - (방법) 의료기관의 계약 신청에 따라 관할 보건소는 신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점검*하여 시설 및 업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시스템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 * 일반사항 및 접종관련 점검사항, 백신관련 점검사항, 예방접종 사업별 점검사항 철저히 확인
 - (지정서 발급 및 공고) 보건소는 계약 체결 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 의료기관 내 지정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위탁의료기관명, 위탁기간, 참여백신명 등의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공고해야 한다.
 - ※ 해당 시·군·구로 발급된 인증서로 계약승인(전자서명)
 -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업무(계약포함)'가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면 보건소 기관(기관장) 인증서 사용 가능
 - ※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계약 체결 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조회 및 현장방문으로 예방접종 가능한 의사의 고용, 업무 여부를 확인

(2). 재계약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위탁의료기관은 5년마다 위탁계약 재계약이 필요하다.
- (신청) 재계약은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 (주체) 위탁의료기관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참여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시기) 계약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만료까지
 - (방법) 기본교육, 사업별 심화교육 등 필요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완료한 후, 시스템을 통해 갱신 신청(신규계약 신청 방법과 동일)
 - ※ (의료기관대표자명 변경) 별도의 해지·신규계약·갱신 등의 절차 없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나의정보에서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은 계약갱신(5년 후) 의료기관지정서 및 위탁계약서에 반영됨
 - ※ (의료기관 정보(요양기관번호, 관할 보건소) 변경)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신규계약 체결
- (승인) 재계약은 보건소가 승인한다.
 - 보건소의 갱신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스템 내 자동으로 갱신일이 반영된다.
 - (주체) 재계약을 신청한 위탁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
 - (방법) 교육 이수 등의 갱신 요건 확인 후 시스템을 통해 재계약 신청을 승인한다. (신규 계약 승인방법과 동일)

4. 관리

(1).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실적 등과 관계없이 참여 중인 사업별 자율점검표를 통합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상·하반기 각 1회).
- (점검 항목)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에 있는 항목을 기반으로 점검한다.
-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방법)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 → 행정업무/기관관리 → 점검관리 → 자율점검등록관리 메뉴에서 [점검표 등록] 클릭 및 작성 → [확인 및 서명] 클릭 → 서명 → 저장(제출 완료)
 - (자율점검표 수정을 원하는 경우)
 - ① (보건소 승인 전) 위탁의료기관에서 점검표를 삭제 후 재작성하여 제출
 - ② (보건소 승인 후) 관할 보건소에 점검표 삭제 요청 후 삭제 완료 시 재작성 및 제출

(2). 보건소 방문점검

-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년에 1회 이상(수시))
 - ※ 보건소는 사전예고 없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가능하며, 사전자율점검 내용이 허위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 ※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확인 등 방문점검을 여러 번 실시했다면 결과 중복등록 가능
- (점검항목)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에 있는 항목을 기반으로 점검하며 다음 사항은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 준수 여부
 -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는지 등 확인
 - 사업 지침 등 변경 사항 준수 여부(필요 시 자체 교육 실시)
 - 백신 보관 냉장고의 청결 상태 및 콜드체인 유지 등 점검
 - 비용상환 및 기록보존 현황(예진표, 생물학적 출하증명서, 온도 기록지,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B형간염사업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년 보관) 등
 - ※ 단, 코로나19 백신 보관냉장고 체크리스트 보관(5년) 권고 사항
 -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 현황 파악 및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모든 의사의 예방접종 교육과정(기본·심화교육) 이수 여부 확인
- (방문점검표 시스템 등록 방법)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 → 행정업무/기관관리 → 점검관리 → 방문점검관리 메뉴 [점검표 등록] 클릭 → 점검내용 등록
 - ※ 위탁기관의 방문 시 참여하는 사업별 점검 후 등록

5). 해지 등

- 보건소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사전통지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위탁의료기관은 해지일로부터 1년간 모든 국가예방접종사업 또는 임시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없다.
 - ※ 예시: 위탁계약 해지일(2026. 1. 10.) → 2027. 1. 10.부터 계약 진행 가능
 - 추후 재계약 진행 시 이전에 발생한 사항을 안내하고 재발 방지를 확인한 후 계약 진행을 해야 한다.
 -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이후 접종건에 대해서는 비용상환이 불가하며, 사용한 백신은 기관 자체 백신으로 반납 또는 백신비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참고] 위탁계약 해지 관련 조문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참고] 주요 위반 사례 예시

1. 사업 시행 전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접종일을 사업 기간 중으로 등록
→ 확인된 즉시 계약 해지 및 백신 회수, 계약 해지 이후 접종 건에 대해 비용상환이 불가능하며, 사용한 백신은 기관 자체 백신으로 반납,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불가
2.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접종 내역 허위 등록
3. 총액계약-사전현물공급 백신과 민간 개별구매 백신의 혼용
4. 절기 예방접종 1일 예정 의사 1인당 100명 초과 접종을 고의로 반복하는 경우
5. 무료접종 시행 후, 피접종자에게 예방접종 비용 청구한 경우
6. 백신 냉장고 적정온도(2~8℃) 유지 이탈
7.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인하여 오접종이 발생한 경우(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발생 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뒤늦게 보건소에서 알게 된 경우 위탁계약 해지 가능)
8. 예진표(5년), 생물학적 출하증명서(5년), 온도 기록지(5년), B형간염 사업 참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5년), 표준여성청소년상담체크리스트(5년)를 미보관한 경우
9.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및 백신 보관 냉장고에 백신 외 음식물, 검체 등을 보관한 경우

- 위탁의료기관은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사업 참여를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 전산상 누락된 접종 기록이 없는지 확인 후, 누락이 없는 경우 '전체 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 경우 보건소 승인 없이 참여 중인 모든 사업이 자동으로 해지됨

- (폐업) 계약 해지의 절차 없이 위탁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를 한 것으로 갈음*하며, 폐업 및 의료기관 이전 등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추후 신규 계약 가능하다.

* 자동 계약 해지 처리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폐업 전 예방접종 내역의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완료할 것

- (휴업) 6개월 이상 휴업 시에는 계약 해지 후 추후 신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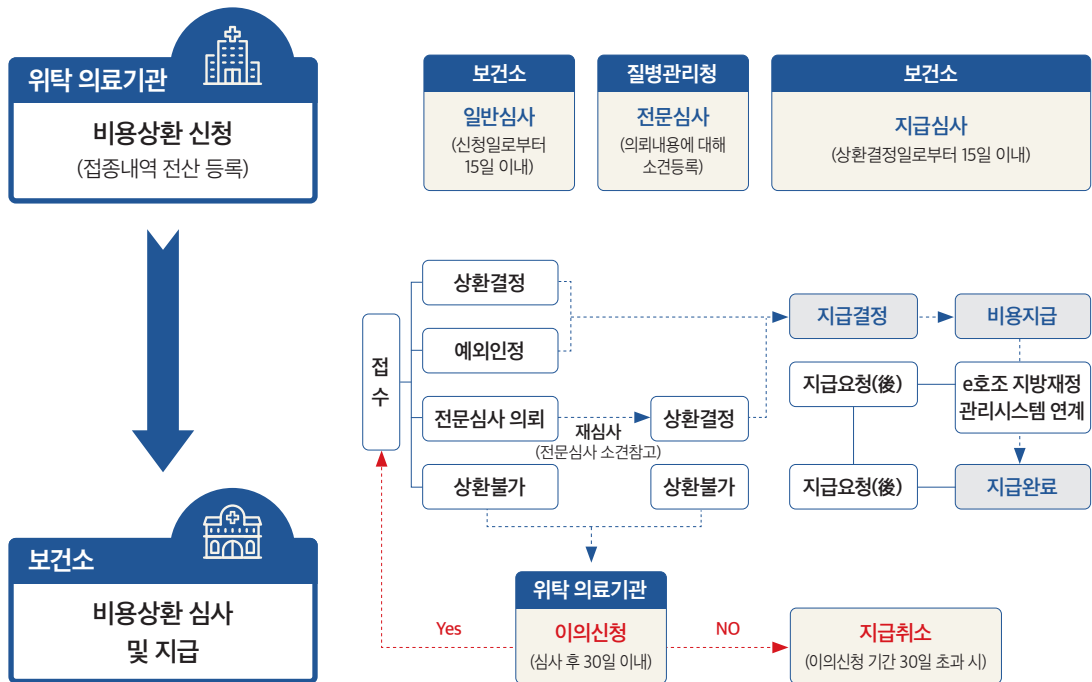
- 보건소는 추후 재계약 의사가 없는 위탁의료기관과 계약을 해지할 때, 관련 서류(예방접종 실시기록, 기록지 보관 등)를 이관 받아 보관해야 한다.

2

비용상환

1). 개요

- 위탁의료기관이 국가 또는 임시예방접종에 대해 본 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한 경우, 보건소는 심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 비용(백신비용+시행비용)을 지급한다.



2. 절차

-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기한, (7). 유의사항, (8). 비용상환 불가 사항을 고려해, 비용상환을 해야 한다.

[표] 비용상환 절차별 주요 내용

구분		처리기한	주체	법적근거	
비용 상환	신청	중복접종 방지를 위해 가급적 당일 등록한다. ※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 등록된 기관에 비용지급	의료기관	제6조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일반 심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한다. (단, 신생아는 제외)	보건소	제7조 (예방접종 비용상환 심사) 제8조 (심사관련 보완자료 요청)
		지급 심사	상환결정일에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 위탁의료기관에서 보완 자료 제출에 소요된 기간 (10일)은 제외됨	보건소	제9조 (예방접종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지급	지급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 단,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제외	보건소	제10조 (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이의 신청	신청	비용상환 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의료기관	제11조 (비용상환 이의신청)	
	심사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보건소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1). 신청 (위탁의료기관)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실시기준을 준수한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비용상환 신청비용'은 자동으로 생성되며, 위탁의료기관은 신청 금액을 확인 후 신청한다.
- (HPV 건강상담) 건강상담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한다.
 - (금액) 1회당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가-1-가. 초진 진찰료 수가 적용
 - (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 완료 자료를 받아 검토 →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본인부담금 반영 후 지급요청 →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전액 국가지원하므로, 대상자로부터 동 상당비용(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을 금지하며, HPV 접종 시 상담을 시행한 경우에만 진료비 청구 가능
- (방법) 상병분류기호 R688(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로 기재하고, 청구 명세서의 특정 내역구분(MT002)에 F012를 기재하여 청구

(2). 접수 (보건소)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 및 비용상환 접수한다.
 - 위탁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비용상환 내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1일 소요) 후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 심사한다.
 - 관내 주민이 관할 보건소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시·군·구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관내 주민의 관할 보건소는 비용상환을 접수해야 한다.
- (유의사항) 보건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접수해야 한다.
 - (번호 미존재) 존재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로는 접수가 불가능 → 행안부 오류내역 확인하여 인적정보 오류사항 정정 후 접수 가능하다.
 - (번호 오류) 주민등록번호 오류(인증오류) 내역은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조회 가능 → 의료기관에서 오등록한 인적정보 내용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수정 가능(의료기관에 수정 요청)
 - ※ 예시 : 피접종자의 주민번호 또는 신생아번호인 경우, 보호자의 주민번호가 인증오류인 경우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안부오류내역
 - (B형간염 1차 접종) 접수 시 신생아번호와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한 후 비용상환을 신청하며, 주민등록번호로 전환 후 접수한다.
 - ※ (주민등록번호 자동보완) 신생아번호 인적은 출생신고 후의 인적정보(행안부 연계)로 생후 2개월까지 시스템 자동보완
 - ※ (주민등록번호 보완불가) 접종등록시와 출생신고 후 인적정보(생년월일, 보호자 정보 등)가 불일치하면 자동보완이 불가능하므로 미전환된 신생아번호 대상은 개별 확인 후 정기적 인적 전환관리 필요
 - (결핵 접종) 피내용 BCG 백신(다인용)은 실제 사용한 백신량을 공급하므로 백신 개봉 후 첫 접종에 대해서만 백신비용을 접수한다.
 - (HPV 접종) HPV 예방접종 저소득층 비용상환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록창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저소득층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 ※ 자격확인서류 : 당일 발급된 자격확인서류로 자격여부를 확인했는지를 확인 (자격확인서류로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한 경우 시스템에서 조회 불가능)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비용상환심사 → 일반내역, 이의내역 심사 → 의료기관 행복e음 확인내역 클릭 → 접종일자가 의료기관 확인일시와 같은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값이 Y인지를 확인

(3) 비용상환 심사 (보건소)

- 비용상환 심사는 보건소가 실시하는 일반심사 및 이의심사와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문심사로 구분한다.

[표] 비용상환 심사 세부내용

구분	세부 내용
일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내역의 비용상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결정, 상환불가, 예외인정으로 판정
이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이의신청하면 재심사 후 상환여부 결정
전문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는 피접종자의 기저질환 등으로 보건소에서 심사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질병관리청에 전문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참고하여 예방접종비용 적합성 판단이 가능한 단순 이른 접종, 지연접종 등은 제외 - 보건소는 질병관리청의 전문심사 소견을 참고하여 심사 결과를 결정한다.
전문심사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군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렴구균) 만성 심장 질환이 있는 생후 60개월 소아가 건강상의 이유로 생후 9개월에 접종을 시작하여 생후 11개월, 생후 14개월에 총 3회의 기본접종을 완료한 경우 기존 실시기준에서는 접종이 완료된 사례지만,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1회의 기본접종(PCV15 또는 PCV20)으로 1회의 추가접종이 필요하며, PCV20으로 1회 이상 접종한 경우 보강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 - (폐렴구균)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의 경우 기본접종 내에 PCV20 접종력이 없는 경우 보강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질환에 따라 PCV20 1회 또는 PPSV23 2회) - (Hib) 일반적으로 5세(60개월) 이상 소아에게는 Hib 예방접종이 필요없으나, 침습성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질환들 중 무비증, HIV 감염 환자는 5세 이상이라도 1회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 • 특수상황에서의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R, 수두) 고형장기이식 전 연령이 생후 6-11개월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4주 이내에 이식 예정이 아닌 경우 MMR 및 수두 백신을 12개월 이하에서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 - (B형간염) B형간염 고위험군(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 받아야 하는 환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등)은 검사가 필요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재접종 필요한 의학적사유 기재 시 비용상환 가능 - (BCG)는 출생 후 입원이 필요한 심한 질환이 있거나 미숙아인 경우에는 퇴원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사유로 TST를 미실시한 경우 입원기간동안 외부와의 차단, 격리 보호되었을 것을 고려하여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3개월 하루 전까지) 접종 시행 시 비용상환 가능 - 일반적으로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 이전에 접종받았던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은 불필요하나, 항암치료 시작 전 2주 이내, 또는 항암치료 중 접종한 불활성화 백신은 면역기능이 회복된 이후에 재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항에 대해 예진의사의 상세한 의학적사유 등록 시 비용상환 가능

구분	세부 내용
전문심사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예방접종 일정표'를 준수한 접종은 비용상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비용지원 기간 예외 적용' 고려, 조혈모세포이식일로부터 3년(36개월 하루 전)까지 비용지원 기간 연장* * 폐렴구균은 고위험군 지원 대상이 기존 12세 → 변경 18세(2026년 기준 2007.1.1. 이후 출생자)로 확대됨 ※ 조혈모세포이식 후 HPV 재접종 시 상담비는 추가로 지원하지 않음

- 비용상환 심사 결과는 상환결정, 상환불가, 예외인정, 전문심사의뢰, 인증오류로 구분한다.
 - (인증 오류)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된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건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한다.
 -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심사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표] 비용상환 심사 결과 세부내용

구분	세부 내용
상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대상에 적합하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완료 시 심사결과에 지급완료 표시
상환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접종, 이른접종(최소접종연령 또는 최소접종간격 미준수) 불필요한 추가접종(지연접종으로 생략되는 접종을 시행한 경우) 일본뇌염 교차접종 등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
예외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학적 소견이 타당한 중복접종 및 이른접종 등(의학적 소견 입력 필수)
전문심사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전문심사를 의뢰한 접종

(4). 지급 심사 (보건소)

- 지급 심사 결과는 지급결정, 지급보류, 지급불가로 구분한다.

(5). 심사 결과 통보 및 지급 (보건소)

- (심사 결과 통보) 일반 심사는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 예산부족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도 심사 결과 통보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 단, 신생아는 신생아번호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전환 후 접수 및 심사가 가능하다.

- (지급) 비용상환 결정, 예외인정에 따라 지급심사에서 상환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결정된 내역에 대하여 위탁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기한 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때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해당 사유를 위탁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보건소는 지급일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으로 비용 자동 지급된다.

(6. 환수 (보건소))

- (비용환수) 보건소는 예방접종 비용 지급 완료 후에도 부당 지급이 확인되면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 부당 지급은 동일 대상의 중복인적 또는 이중지급, 예방접종 실시기준 미준수 접종 등을 의미한다.
 - 당해연도 지급액에서 비용환수금액이 발생하였으면 해당 위탁의료기관에 지급될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가능하다.

[참고] 비용상환 미접수·미지급 내역 관리

구분	관리 내용
시스템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미접수/미지급내역 •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 접종관리 → 비용상환관리 → 미접수/미지급내역 • (현물공급백신인플루엔자등록시스템) 비용상환관리 → 미접수/미지급내역
시·도 및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이내 미통지 및 미지급률 현황 모니터링 → 비용처리 누락이 없도록 정기 관리 • 미접수건수 = 총 신청건수 - 접수건수 • 미지급 건수 = 총 접수건수 - 지급건수 ※ 월별 미접수·미지급 건수 및 상세내역을 엑셀 양식으로 내려받아 확인 가능
중복지급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대상으로 이중인적이 생성되어 접종내역 등록 시 이중지급 될 수 있으므로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번호,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시설번호 등 여러 인적으로 이중등록 주의 당부 - 예방접종등록창에서 검색 조건을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변경하여 확인 필요 - 인적등록 의료기관 및 신생아의 보호자와 유선 통화로 확인 후 인적통합 처리 당부 - 이중인적 및 중복지급 확인 시 필요한 조치 시행(인적통합 및 비용환수 등)
행안부 오류내역 점검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재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피접종자 및 보호자) 대상은 비용처리 진행 불가 → 오류사항 정정 후 접수 • 행안부오류내역 메뉴에서 존재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행안부) 대상 확인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안부 오류내역

(7). 유의사항

- BCG(피내용), HepB, Hib, PCV, VAR, COVID-19, ViCPS, HFRS의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백신명	유의사항
BCG (피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59개월까지 지원 -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일 때 비용지원(의학적소견 입력 필수) - 다인용 BCG 피내 백신은 실제 사용한 백신 수량을 공급하므로 백신 개봉 후 첫 접종에 대해서만 백신 청구 ※ 예시: 1vial 개봉 후 5명 접종 시 백신은 최초 접종건만 비용상환 인정(시행비는 건당 지급)
Hep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세 이하: 0.5ml 백신 사용 • 11세 이상: 1.0ml 백신 사용
Hib, PC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59개월까지 지원 - 백신별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서도 비용지원 ※ '접종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Hib, PCV 백신 접종 고위험군
V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두 예방접종 지연 시 - 12세부터는 보란파마 바리-엘백신 0.5ml 사용 ※ 녹십자-베리셀라주, SK바이오사이언스-스카이바리셀라주 허가연령은 12개월 이상 ~ 12세 이하
COVID-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rna 백신 1바이알은 1인용 바이알으로, 12세 미만 고위험군 대상에게 접종하는 경우 1바이알의 절반 용량(0.25ml)만 추출하여 접종 ※ 절반 용량 사용 후 남은 백신 잔량은 재사용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폐기
ViCPS, HF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p 참고

- (출생신고 전 신생아)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접종등록 및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의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해 정확한 보호자의 인적정보가 필요함 - 보호자는 '모(母)'의 인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반드시 함께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 부득이하게 '모(母)'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기타 보호자의 인적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로 확인 필요 • 신생아번호는 생후 1개월 이내 전산 등록 및 비용신청 가능(B형간염 1차 및 BCG)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임시관리번호) 등으로 전환 후 비용지급 가능
신생아번호관리 시스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번호 대상을 조회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메뉴 • 검색조건: 출생연도 및 월 단위로 선택하여 관할 내 미전환 대상 조회 가능 • 관할 보건소: 신생아번호로 처음 등록한 접종내역 인적 관할 보건소 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출생 미신고 → 신생아번호 관리시스템에 사유등록 및 비용지급 가능

관리번호발급 (보건소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1개월 이후 출생 미신고 신생아는 임시관리번호를 발급하여 예방접종 시행 후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가능 → 관리번호대상 보호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후 반드시 보건소에 알리도록 안내가 필요함에 주의 → 접종기록 관리 및 이증지급 방지
시설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아동번호(의료급여 관리번호)로 등록하고 비용상환 신청

- (외국인)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비용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는 내국인에 준하여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 가능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대상은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기준에 부합 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 가능 ※ 여권 등으로 대상자 반드시 확인 필요(여권이 없는 아동은 보호자 여권 등으로 확인)
-------------	--

(8). 비용상환 불가 사항

- 다음 사항은 비용상환 진행이 불가한 사항이다.

구분	비용상환 진행 불가 사유	필요 조치 사항
주민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인증오류(주민등록번호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정정 후 비용상환 가능 ※ 주민번호 오등록 의료기관에 수정요청 후 진행
임시신생아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1개월 접종까지 등록 가능 (HepB 1차, BCG) ※ 생후 1개월 이후 접종부터는 등록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번호관리시스템 관리이력 등록 - 관리이력 등록 → 생후 3개월 경과 → 비용상환 진행 가능 ※ 단, 등록된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행안부 인증오류'(내국인 해당)이면 비용상환 진행 불가
온라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미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이수(수료) 정보를 시스템 입력 후 가능
참여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확인증 미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확인증 현행화 → 보건소 승인 → 비용상환 가능
폐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 이후, 전산등록 누락접종 추가청구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 전 예방접종 전산등록 반드시 완료

- 다음 사항은 비용상환이 불가한 사항이다.

구분	기준
동일백신, 동일차수 중복접종 (200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중복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차수가 중복되어 등록되었다면 이전 접종력 확인(차수 오류, 유효여부) 필수 - 중복접종은 등록칸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식별 가능
LJEV와 IJEV의 교차접종 (201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과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사이의 교차접종
서로 다른 IJEV의 교차접종 (2015. 5. 1.~ 2017. 1.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뇌염 불활성화-베로세포 유래 백신과 쥐뇌조직 백신 사이의 교차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2. 1. 이후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사이의 교차접종 건 비용상환 가능
4세 이후 IPV 3차 접종 (2019. 4.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세 이후 IPV 3차 접종 시 이전 접종과 최소접종간격 미준수한 경우
단축인정기간보다 이른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접종 연령 보다 5일 이상 이른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른접종 여부는 '2017년부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적용 ※ 보호자가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을 희망하면 출생증명서류 확인 후 보건소에서 변경
- 최소접종 연령에서 5일 이상 앞당긴 접종 (201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접종 간격 보다 5일 이상 이른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른접종은 무효접종으로 재접종이 필요하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재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 ※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 4일 이하의 오차) 적용제외접종 주의
- 최소접종 간격에서 5일 이상 앞당긴 접종 (201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독화 생백신 간 최소접종 간격 4주 반드시 준수 • VAR, MMR 1차 접종 시 최소접종 연령의 단축인정기간 적용 제외 주의 ※ 최소접종 간격 또는 최소접종 연령에 해당되는 날짜가 10월 9일이라면 10월 5일에 접종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용상환 가능하고, 이보다 이르게 접종한 경우는 비용상환 불가
서로 다른 LJEV의 교차접종 (2014. 8. 1.~ 2023. 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뇌염 생백신 사이의 교차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8. 7. 이후 일본뇌염 생백신 사이의 교차접종 건 비용상환 가능 (국가지원 백신에 한함)
불필요한 추가접종 (201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접종 등으로 다음 차수의 생략되는 접종을 시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TaP 4차를 4세 이후에 접종(5차 생략) - DTaP 3차와 4차 사이의 접종간격이 4개월 이상이라면 재접종 불필요 - IPV 3차를 2차와 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4세 이후 접종(4차 생략) - IJEV 3차를 4~9세에 접종 시 4차를 12세에 실시하여 완료(5차 생략) - Hib 및 PCV 백신은 접종 시작 나이 및 중간에 접종이 지연되면 해당 나이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가 다름에 주의 → 지침서 내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및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 일정표'를 참고

구분	기준																		
불필요한 추가접종 (201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접종 나이에 따라 총접종 횟수가 다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V 1차를 9~14세에 접종 시 2차로 완료(3차 불필요) - 65세 이상 연령에 PPSV23 1회 접종하였으면 추가접종 불필요 																		
불필요한 추가접종 (2025. 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 접종시 완료된 접종을 추가 시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시 B형간염 1차 접종한 신생아가 이후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으로 접종시 표준일정보다 지연되어 6가 혼합백신 2차 접종이 B형간염 3차 접종기준*을 충족했다면 B형간염 접종은 완료로 간주됨으로 6가 혼합백신으로 3차 접종할 경우 비용상환 불가 *최소 접종 연령(생후 24주) 및 최소 접종 간격(1차와 3차간 간격 16주, 2차와 3차간 간격 8주) 																		
DTaP 1~5차 접종 완료자의 Td 백신 접종 (202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TaP 1~5차 접종 완료한 7~10세 대상에게 Td 백신을 접종한 경우 																		
허가기준 이외 사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R 수두 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된 연령외 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3d3d3;"> <th>제품명</th> <th>용법·용량</th> <th>허가범위</th> <th colspan="2">비용상환</th> </tr> </thead> <tbody> <tr> <td>배리셀라주 (주)녹십자</td> <td row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용량 0.5ml • 피하주사 </td> <td>12개월 이상 ~</td> <td>12세 이하</td> <td>○</td> </tr> <tr> <td>스카이바리셀라주 (SK바이오사이언스(주))</td> <td>12세 이하</td> <td>13세 이상</td> <td>X</td> </tr> <tr> <td>바리-엘백신 (보란파마)</td> <td>12개월 이상 ~ 전연령</td> <td>전연령*</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에 한함(2026년도 기준,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자 및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 지침 발간 후 백신의 투여 방법 등 식약처 허가사항 변동될 경우 공문 및 공지 등으로 안내 예정</p>	제품명	용법·용량	허가범위	비용상환		배리셀라주 (주)녹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용량 0.5ml • 피하주사 	12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스카이바리셀라주 (SK바이오사이언스(주))	12세 이하	13세 이상	X	바리-엘백신 (보란파마)	12개월 이상 ~ 전연령	전연령*	○
제품명	용법·용량	허가범위	비용상환																
배리셀라주 (주)녹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용량 0.5ml • 피하주사 	12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스카이바리셀라주 (SK바이오사이언스(주))		12세 이하	13세 이상	X															
바리-엘백신 (보란파마)		12개월 이상 ~ 전연령	전연령*	○															
RV1과 RV5 백신 교차접종 (2023.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V1 백신과 RV5 백신을 교차하여 접종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접종 시행으로 접종을 완료(총 3회)하기 위해 이전 발생한 백신으로 접종했다면 비용상환 신청 가능 																		
RV 백신 최대접종연령 초과 (2023.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14주 6일 초과하여 1차 접종한 경우 • 생후 8개월 0일 초과하여 접종한 경우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구분	기준
IIV, COVID-19 백신 사업기간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기 예방접종 사업 시작일* 전, 사업 종료 이후 시행한 접종 * 65세 이상 어르신 사업은 75세 이상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현물공급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사업 종료 이후 별도 공지한 기간까지만 접종력 등록 및 비용 신청 가능(공문안내) - '어르신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별 첫 접종 시작일(75세 이상) 이후 접종 건은 어르신 연령 구분 없이 비용상환 가능
IIV, COVID-19 백신 오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기 예방접종 백신으로 오접종한 경우
IIV 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IIV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 3가 백신이 아닌 4가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 0.5ml가 아닌 다른 용량으로 백신을 접종한 경우 ※ 백신 허가사항에 따라 6개월~35개월 대상으로 0.5ml 접종이 불가한 경우, 다른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접종

- 백신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을 미준수한 접종은 비용지원이 불가하므로 심사에 유의
 - 예시(HepB 재접종) : '항체 미형성' 사유로 재접종은 비용지원 불가(필요시 고위험군에 한하며 적합한 의학적 소견 입력 필수)
 - 예시(6가 혼합백신 지연접종): 6가 혼합백신 2차 접종 지연으로 2차 접종이 B형간염 3차의 최소접종간격 및 연령 기준을 충족하여 접종일정이 완료된 경우, 6가 혼합백신으로 3차 접종 시 비용지원 불가
※ 다음 접종은 각 백신별 접종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B형간염을 제외하여 실시
 - 예시(Tdap/Td 따라잡기 일정) :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7세 이상 소아에게 'Tdap/Td 따라잡기 일정'에 따라 반드시 Tdap 백신 접종력이 필요한 대상에게 Td 백신 접종 시 접종력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지원 불가

(8). 장티푸스·신증후군출혈열 국고보조업무처리 기준

<장티푸스>

- (공통원칙) 수요자가 유·무료 접종 포함 기접종 3년이 도래한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각 보건소는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 접종
 ※ 각 시군구는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대하여, ["자체사업(직접 또는 위탁) 및 국가예방접종(위탁없이 보건소만) 모두 시행" 또는 "국가예방접종만 시행"] 중 한가지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대상별 업무처리 기준) - 보건소 접종건(국고 보조 건)에 한함

구분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공무원여행(체류)자 및 접촉자
확인방법	해외	① 출국일 기준, 기 접종 3년이 도래하였는지? [국고 지원은 3년마다 1회에 한함]
		② 기관 해당여부 확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무원(기간제 포함)에 한정 / 「지자체출자출연법」에 따른 재단 등은 불가]
		③ 공무원여행 관련 문서 확인(보관 불필요)(기관장 직인, 여행내용, 국가, 수요자 이름·주민등록번호(앞7자리) 포함, 퇴직교육·문화탐방 등 복리증진/친목도모여행 불가) [해당 국가가 동남아·인도·중동·중남미·아프리카 대륙에 속하는지 우선 확인하며, 미해당 시에도 지원 가능하나 충분한 설명 후 미접종 권고]
		④ 출국 14일 이전에 접종 완료 가능한지? [단, 출국 전 14일 이내의 경우에도 국고 보조 가능]
국내	① 관내 장티푸스 발생 또는 유행이 확인되는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및 정상처리 완료건에 한함]	
	② 규정의 절차에 따른 접촉자 등으로서, 접종 필요성이 확인되는지? [문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으로 확인되는 역학조사결과 등]	
시스템입력 (의학적조건)		[해외] "공무원여행 / 00시 도시개발공사 / 동남아(베트남) / 2026.1.1. 출국"이라고 입력하고, ③의 문서번호 입력 및 "확인" 클릭 [국내] "접촉자 등"이라고 입력하고, 문서(역학조사서 등)번호 입력 및 "확인" 클릭
수요파악		[해외] 시군구 내 유관기관 대상 공무원여행 관련 예방접종 수요 조사(매년)
구분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확인방법		지자체가 추적·관리중인 만성 보균자의 가족 등인지 여부
시스템입력 (의학적조건)		"만성 보균자(이름, 주민등록번호)의 가족 등"이라고 입력
수요파악		시군구 보유 자료에 따름
구분		장티푸스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확인방법		해당 실험실 기관장의 접종 요청 문서 [기관장 직인, 수요자 이름·주민등록번호(앞7자리) 포함]
시스템입력 (의학적조건)		"실험실 요원(기관명)"이라고 입력
수요파악		시군구 내 실험실운영기관(공공·민간·대학)대상 예방접종 수요 조사(매년)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신증후군출혈열>

- (공동원칙) 신증후군출혈열의 질병 특성과 관련한 지역 내 산업·노동 여건 등을 감안, 각 시군구의 재량범위를 인정하여 국고 보조
 - ‘농부’와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은 해당 활동을 직업적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데이터처 산업분류 해당 여부를 확인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예외 인정(소규모로 자격·소득 증빙이 곤란한 자 등)
 - ※ 각 시군구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에 대하여, [“자체사업(직접 또는 위탁) 및 국가예방접종(위탁없이 보건소만) 모두 시행” 또는 “국가예방접종만 시행”] 중 한가지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업무처리 기준) - 보건소 접종건(국고 보조 건)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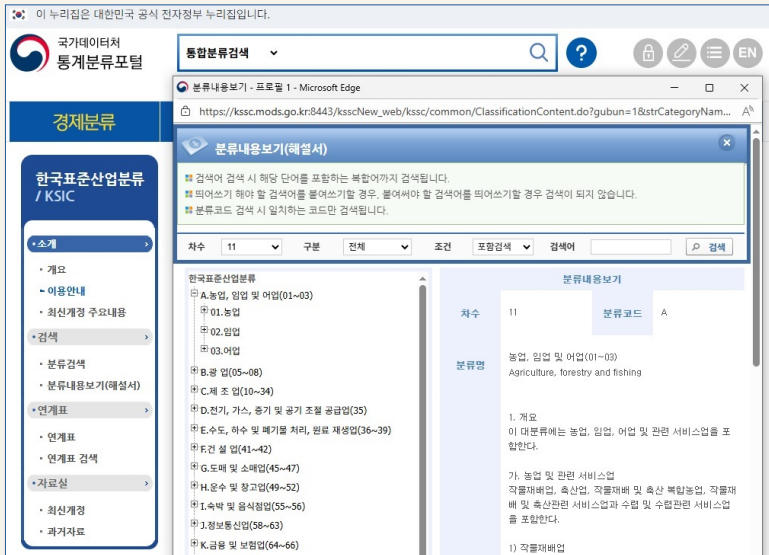
신증후군출혈열 실시기준	
1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 군인 및 군부대 종사자는 국방부정책에 따라 접종하므로 국가예방접종으로 접종하지 않음
2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3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확인 방법

농부 또는 야외활동이 빈번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 국가데이터처 산업분류표 확인 경로: 국가데이터처 →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 A, E, F, H 등 클릭



시스템입력(의학적조건)

“산업분류표에서 확인되는 명칭(기관명)” 또는 “실험실 요원(기관명)”이라고 입력

3). 금액

-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시행비용으로 구분한다.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1). 백신비용 (26.1.1 기준)

백신	제품명	백신비(원)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주AJV	28,070	
HepB	0.5ml	हे파문주	4,790
		유박스비주	
	1.0ml	हे파문프리필드시린지	8,00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2,470	
Td	디티부스터주	13,850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4,310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IPV	아이피박스주	17,210	
DTaP-IPV	테트락심	25,750	
	인판릭스IPV주		
DTaP-IPV/Hib	펜탁심주	37,780	
	인판릭스아이피비이합주		
DTaP-IPV-Hib-HepB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	40,680	
Hib	유히브주	11,990	
PCV13	프리베나13주	65,220	
PCV15	박스뉴반스		
PCV20	프리베나20 프리필드시린지		
PPSV23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5,650	
MMR	엠엠알II주	16,430	
VAR	배리셀라주	15,920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백신		제품명	백신비(원)
JE (불활성화 백신)	베로세포유래 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4,44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유래 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22,44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6,100
HepA	0.5ml (어린이)	하브릭스주	14,700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HPV 4가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71,760
RV1		로타릭스	82,290
RV5		로타텍	55,310
IIV 3가	0.5ml (민간개별구매)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9,440
		보령플루백신VIII-TF주	9,430
		보령플루백신V주	
		코박스인플루PF주	9,490
		코박스플루PF주	
		박씨그리프주	9,340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9,660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9,470
	플루아릭스프리필드시린지	9,340	
	0.5ml (사전현물공급)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9,436
		보령플루백신VIII-TF주	9,430
		보령플루백신V주	
		코박스인플루PF주	9,485
		코박스플루PF주	
		박씨그리프주	9,339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9,660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9,470	
COVID-19		스파이크박스엘피주	56,298
		코미나티엘피에이트윈프리필드시린지	65,198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가 도매상으로 지급

※ [보건소가 조달계약업체에 위탁의료기관 백신비용 지급 시 참고] ①예방접종비용 미공고 백신((주)보령, 비알플루텍 등)으로 "민간개별구매" 적용 의료기관(의원급 소아청소년과)이 어린이(생후 6개월~13세 이하)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접종 시 백신비는 최저 공고 가격(10,340원)으로 비용 상환 ②"사전현물공급"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은 총액 계약

(2) 시행비용 (2026. 1. 1. 기준)

- 일반백신(단독백신 및 3가 이하 혼합백신)

연령	시행비용(1회 당)
1세 미만	22,380원
1-5세	20,750원
6세 이상	19,610원

- 혼합백신(4가 이상 혼합백신)

구분	연령	시행비용(1회 당)
DTaP-IPV 혼합백신(4가)	1세 미만	33,570원
	1-5세	31,130원
	6세 이상	29,410원
DTaP-IPV/Hib 혼합백신(5가)	1세 미만	44,760원
	1-5세	41,510원
	6세 이상	39,220원
DTaP-IPV/Hib/HepB 혼합백신(6가)	1세 미만	59,670원
	1-5세	55,340원
	6세 이상	52,290원

- 기타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6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이다.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대상자에게만 상담료 지급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9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96호)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은 다음과 같다.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약제비 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포함

구분	지원 금액(1회 당)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IM)	39,620원
B형간염 예방접종	32,040원
항원·항체 정량검사	65,010원

3

실시기준

1). 대상자 ~ 7). 예외적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 (표준접종)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3조, [별표1]의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 시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실시기준에 따라 접종한 경우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표준 외 접종) 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본 지침에 따른 표준 접종시기 외 접종(이하 “표준 외 접종”이라 한다.)을 한 경우도 접종력이 유효한 경우라면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한다.

[참고] 실시기준 관련 조문

• 「예방접종업무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실시)

-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장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과 표준접종시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대상에게 제3조에 따른 표준접종시기 외 접종을 한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19종 감염병, 제25조에 따른 2종 감염병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표] 국가 및 임시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구분		감염병
국가예방접종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A형간염
	14	로타바이러스
	15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6	폐렴구균
	17	인플루엔자
	18	장티푸스
	19	신증후군출혈열
임시예방접종	1	코로나19
	2	엠펙스

1). 대상자

[표] 2026년 국가 및 임시에방접종 대상자

감염병	대상
디프테리아, 풍진, 폴리오, 수두, 백일해, 일본뇌염, 홍역,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파상풍, A형간염, 결핵, 로타바이러스, B형간염, 폐렴구균, 유행성이하선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2세 이하 어린이) 단,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출생한 남성(26. 5. 6. 시행) • 2008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출생한 여성 (12~17세) • 1999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한 저소득층 여성 (18~26세)
인플루엔자('25-'26절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 • 2012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출생자 (생후 6개월~13세) • 임신부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군
코로나19('25-'26절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65세 이상) •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엡폭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군

(1). 연령

- (생년월일) 주민등록(외국인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단, 12세 이하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한다.
 - 보건소는 보호자가 실제 생년월일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증빙서류로 실제 생년월일을 확인한 후 시스템에 변경 가능하다.

(2). 저소득층

- (방법)
 - (시스템 확인)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 HPV 접종란 클릭 → 의학적 소견/기타 사유 사유입력 선택 → '18~26세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택 → 행복e음 확인 클릭 → 체크박스 표시여부 확인(☑표시되면 접종 대상자)
 - (서류 확인) 전산상 행복e음으로 대상자 확인 불가 시 접종 당일 발급된 자격 확인 서류로 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표] 저소득층 유형 구분

구분		소득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그 외

- 그 외 대상자 기준은 ㄱ. 예외적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백신 * 국가 및 임시예방접종 백신(26.1.1. 기준)

감염병	백신	분류	제조 및 수입사	제품명	유효 기간
디프테리아	DTaP	사백신	보령바이오파마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24개월
	DTaP-IPV	사백신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테트락심 인판릭스아이피브이주	36개월 36개월
파상풍	<혼합백신> D(d) : 디프테리아 T : 파상풍 aP : 백일해 IPV : 폴리오 HepB : B형간염	DTaP-IPV/Hib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펜탁심 인판릭스아이피브이합주	36개월 36개월
		DTaP-IPV-Hib-HepB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	48개월
		Tdap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아다셀주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36개월 36개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48개월		
백일해	Td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디티부스터주	36개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36개월	
폴리오	IPV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아이피박스주	36개월	
		보령바이오파마	아이피박스주	36개월	
B형간염	HepB	사백신	SK바이오사이언스	헤파몌프리필드시린지	36개월
			LG화학	유박스비주	36개월
				유박스비프리필드주	36개월
결핵	BCG(피내)	생백신	엑세스파마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AJV주	24개월

감염병	백신	분류	제조 및 수입사	제품명	유효 기한
홍역	MMR	생백신	한국엠에스디	엠엠알II주	24개월
유행성이하선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프리오릭스주	24개월
풍진					
수두	VAR	생백신	녹십자	베리셀라주	24개월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바리셀라주	24개월
			보란파마	바리-엘백신	18개월
일본뇌염	IJEV	사백신	녹십자	녹십자-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주	36개월
			보령바이오파마	보령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주	36개월
	LJEV	생백신	글로박스	씨디.제박스	24개월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사백신	LG화학	유히브주	36개월
A형간염	HepA	사백신	한국엠에스디	하브릭스주	36개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박타프리필드시린지	36개월
			보령바이오파마	보령A형간염 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36개월
로타바이러스	RV1	생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로타릭스프리필드	36개월
	RV5		한국엠에스디	로타텍액	24개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HPV 4가	사백신	한국엠에스디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36개월
폐렴구균	PCV15	사백신	한국엠에스디	박스뉴반스프리필드시린지	24개월
	PCV20		한국화이자제약	프리베나20주	36개월
	PPSV23		한국엠에스디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8개월
인플루엔자	IIV 3가 (‘25-’26절기 기준)	사백신 유정란	녹십자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12개월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백신VIII-TF주	12개월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백신V주	12개월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PF주	12개월
			한국백신	코박스플루PF주	12개월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	박씨그리프주	12개월
			일양약품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12개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플루아릭스프리필드시린지	12개월
		사백신 세포배양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12개월
장티푸스	ViCPS	사백신	보령바이오파마	지로티프주	20개월
신증후군출혈열	HFRS	사백신	녹십자	한타박스	24개월
코로나19	COVID-19 (‘25-’26절기 기준)	mRNA	모더나코리아	스파이크박스엘피주	해동후 80일
			한국화이자제약	코미나티엘피에이트윈 프리필드시린지	12개월
엡폭스	Mpox	생백신	HK이노엔	진네오스	해동후 24주

3. 접종 용량 및 방법

감염병	백신		접종용량	접종경로	접종부위
디프테리아	<혼합백신> D(d) : 디프테리아 T : 파상풍 aP : 백일해 IPV : 폴리오 HepB : B형간염	DTaP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파상풍		DTaP-IPV			
		DTaP-IPV/Hib			
백일해		DTaP-IPV-Hib-HepB			
		Tdap			
	Td				
폴리오	IPV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B형간염	HepB		11세 미만: 0.5ml 11세 이상: 1.0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결핵	BCG(피내)		1세 미만: 0.05ml 1세 이상: 0.1ml	피내주사	삼각근부위
홍역	MMR		0.5ml	피하주사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VAR		0.5ml	피하주사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일본뇌염	IJEV		3세 미만: 0.25ml 3세 이상: 0.5ml	피하주사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LJEV		0.5ml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A형간염	HepA	하브릭스주	1세~18세 미만: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19세 미만: 0.5ml		
		보령A형간염	1세~15세 이하: 0.5ml		
로타바이러스	RV1		1.5ml	경구투여	경구
	RV5		2.0ml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HPV 4가		0.5ml	근육주사	삼각근
폐렴구균	PCV15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PCV20				
	PPSV23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인플루엔자	IIV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장티푸스	VicPS	지로티프주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Ty21a	비보티프캡슐	1 capsule	경구투여	경구
신증후군출혈열	HFRS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코로나19	COVID-19	코미나티엘피에이트윈 프리필드시린지	0.3ml	근육주사	위쪽 삼각근
		스파이크박스엘피주	12세 미만: 0.25ml 12세 이상: 0.5ml		
엡폭스	Mpox		0.1ml	피내주사	삼각근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4. 접종 시기 및 간격

[참고] 국가예방접종 지침 접종 시기 기준

[접종 시기]

- ‘주’ 단위인 경우, ‘[1주]는 7일로 환산하여’ [접종 권장 주] 적합 여부를 판단
 - (예) 2026년 4월 25일 출생아의 결핵 접종(생후 4주 이내) 시기는 출생일 포함 28일째인 2026년 5월 22일까지
- ‘개월’ 단위인 경우, ‘[O개월]은 출생월에 O개월~(O+1)개월을 더하여’ [접종 권장 개월] 적합 여부를 판단
 - (예) 2026년 4월 25일 출생아의 B형간염 3차 접종(6개월) 시기는 2026년 10월 25일부터 2026년 11월 24일까지
- ‘세’ 단위인 경우, ‘[O세]는 출생연도에 O세를 더하여’ [접종 권장 세(나이)] 적합 여부를 판단
 - (예) 2026년 4월 25일 출생아의 홍역 2차 접종(4~6세) 시기는 2030년 4월 25일부터 2032년 4월 24일까지

[최소 접종 간격]

- ‘주’ 단위인 경우, ‘1주를 7일로 환산한 후 <앞 접종일+환산일수>로 <최소 접종 간격 O주> 준수 여부를 판단
 - (예) 2026년 4월 25일에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 간격이 12주라면 +84일째인 2026년 7월 18일부터 접종
- ‘개월’ 단위인 경우, ‘<앞 접종월+다음접종간격개월>로 <최소 접종 간격 O개월> 준수 여부를 판단
 - (예) 2026년 4월 25일에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 간격이 1개월이라면 2026년 5월 25일(앞 접종과 같은일)부터 접종

(1). 일반적 기준

- 접종 시기와 접종 간격에 대해 다음 내용을 준수하고 고려해야 한다.
 - 최소 접종 간격 보다 짧은 간격으로, 또는 최소 접종 연령 전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된다.
 - 불활성화 백신은 항체 함유제제 투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 항체 함유제제 투여 시기와 상관없이 접종할 수 있다.
 - 약독화 생백신은 항체 함유제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체에 의해서 백신 바이러스의 증식이 방해받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한다.
 - 여러 번의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접종 간격이 미루어진다면 예방 효과가 감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소 접종 간격 이내에 접종하게 되면 충분한 면역 반응이 유도되지 않아 백신의 예방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2). 동시 접종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불활성화 백신 + 불활성화 백신) 예외적인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 동시접종이 가능하다. 동시 접종 하지 않을 경우에도 특별한 간격은 필요 없다.

[표] 불활성화 백신 동시 접종 시 고려가 필요한 예외적 사항

- PCV15와 PPSV23 모두 적응이 되는 경우에는 PCV15를 먼저 접종하고 최소 8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PPSV23을 접종하여야 한다.
- MenACWY-D 수막구균 단백질결합 백신(메낙트라)을 DTaP 접종 30일 후에 접종할 경우 면역 간섭에 의해 수막구균 혈청형 네 가지 모두에 대한 면역반응이 저하되므로 이들 두 백신은 동시 접종하거나 MenACWY-D 수막구균 단백질결합 백신(메낙트라)을 DTaP보다 먼저 접종해야 한다.
- MenACWY-D 수막구균 단백질결합 백신(메낙트라)과 동시접종하거나 4주 간격을 두고 접종한다.
 - (불활성화 백신 + 약독화 생백신) 동시접종이 가능하다. 동시접종 하지 않을 경우에도 특별한 간격은 필요 없다.
 - (약독화 생백신 + 약독화 생백신) 동시접종이 가능하다. 동시접종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접종한다.

(3). 이른 접종

- 최소 접종 간격 또는 최소 접종 연령에서 4일 이하의 오차는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으로 접종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MMR, 수두 백신과 같이 첫 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접종한 것은 단축인정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접종을 권고한다.
- 최소 접종 간격 또는 최소 접종 연령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접종되었다면 무효로 간주하고 재접종 해야 한다.

5). 접종 금기 및 주의사항

- 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백신을 접종하면 안된다.
- 접종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백신 접종을 연기한다.

[참고] 백신별 금기 및 주의사항

감염병(백신)	금기사항	주의사항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백신 접종 시 심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을 보인 경우 • 백신 성분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도 또는 중증의(moderate or severe) 급성 질환(발열 여부에 무관)
Hep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kg 미만의 유아(출산시 임신부가 HBsAg(-)임이 확인된 경우, 백신 접종을 연기하고 생후 1개월째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부가 HBsAg(+))인 경우 신생아의 체중에 무관하게 HBIg와 B형간염 백신을 즉시 투여한다.)
BC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부위에 심한 피부질환, 화상 등이 있거나 면역결핍·면역억제 상태에 있는 경우 접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중 생물학적 반응조절 물질 (infliximab 등)을 투여받은 모체에게서 출생한 신생아는 생후 12개월까지 생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됨
DTaP Tdap Td	<p>백일해 성분 포함 백신: 과거 DTP 또는 DTaP 접종 후(DTaP 접종에 대하여), 또는 과거 DTP, DTaP 또는 Tdap 접종 후(Tdap 접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7일 이내에 다른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뇌증(혼수(coma), 의식저하, 장시간의 경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파상풍 독소이드 포함 백신 접종 이후 6주 미만에서 길랭-바레 증후군 (GBS) 발생한 경우 • 이전 파상풍 또는 디프테리아 독소이드 포함 백신 접종 이후 arthus 형태의 과민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마지막 파상풍 독소이드 포함 접종 이후 최소 10년 이후로 접종을 미룰 것 • 백일해 성분 포함 백신: 진행되는 또는 안정되지 않은 신경계 질환(DTaP에 대해서는 영아연축 포함), 조절되지 않는 경련, 진행성 뇌증)의 경우, 치료 방법이 확정되고 신경학적인 상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접종 연기 • DTaP 백신은 접종횟수가 증가할수록 국소 이상반응 발생률이 증가하므로, 7세 미만에 총 6회를 초과하여 접종하지 않도록 주의
IP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H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6주 이전 	-

감염병(백신)		금기사항	주의사항
PCV, PPSV		-	-
RV1, RV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복합면역결핍(SCID) 장겹침증의 병력 임신중 생물학적 반응조절 물질 (infiximab 등)을 투여받은 모체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SCID 외의 면역저하 상태 만성 위장관 질환 spina bifida 또는 bladder exstrophy
MMR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한 면역결핍(예, 혈액암 또는 고형 장기 종양, 화학요법, 선천성 면역결핍, 또는 장기적인 면역억제 요법³⁾ 또는 면역기능저하가 심한 HIV 감염 환자)³⁾ 임신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biologic response modifiers, BRM) 치료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에(11개월 이내) 면역글로불린 등 항체를 함유한 혈액제제를 투여한 경우 (제제에 따라 기간이 따름)³⁾ 혈소판감소증 또는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의 과거력 결핵 피부반응 검사가 필요한 경우³⁾
VAR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한 면역결핍(예, 혈액암 또는 고형 장기 종양, 화학요법, 선천성 면역결핍, 또는 장기적인 면역억제 요법³⁾ 또는 면역기능저하가 심한 HIV 감염 환자)³⁾ 임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에(11개월 이내) 면역글로불린 등 항체를 함유한 혈액제제를 투여한 경우 (제제에 따라 기간이 따름)³⁾ 접종 24시간 이내에 특정한 항바이러스제 치료(즉, acyclovir, famciclovir, or valacyclovir); 접종 후 14일간 이러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금지함
HepA		-	-
일본 뇌염	불활성화 백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약독화 생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한 면역결핍(예, 혈액암 또는 고형 장기 종양, 화학요법, 선천성 면역결핍, 또는 장기적인 면역억제 요법³⁾ 또는 면역기능저하가 심한 HIV 감염 환자)³⁾ 임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에(11개월 이내) 면역글로불린 등 항체를 함유한 혈액제제를 투여한 경우(제제에 따라 기간이 따름)³⁾; 접종 후 2주간 면역글로불린제제를 투여하지 않음
HP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저혈소판증이나 기타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환자는 근육주사 시 출혈 주의
인플루엔자	IV (유정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 성분(계란 단백질 포함)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의 병력 계란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은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받거나 안전에 특별히 조심하면서 발육란 제조 불활성화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음
	IV (세포배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의 병력

감염병(백신)	금기사항	주의사항
장티푸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단
신증후군출혈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 접종 전 1년 이내에 경련증상을 나타낸 적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이 있거나 현저한 영양장애자 • 심혈관계질환, 신장질환 또는 간 질환자로서 급성기 혹은 증상악화나 활동기에 있는 경우

- 1) 주의사항:주의해서 접종해야 하는 경우(precautions) - 각 사안별로 득실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만약 백신 투여 시의 실이 득보다 더 크면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백신투여 시의 득이 실보다 더 크면 투여가 가능하다. 확인된 신경계 이상이 있거나, 신경계 이상이 의심되는 소아에 대한 DTP/DTaP 투여 여부와 시기는 사안별로(case-by-case basis) 결정해야 한다.
- 2) DTaP 백신 투여 후 경련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acetaminophen이나 다른 적절한 해열제를 투여한 후 24시간 동안 4~6시간 간격으로 투여할 수 있다. 이는 백신 투여 후의 발열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3) 중대한 면역억제를 유도하는 스테로이드 용량은 매일 prednisone 20 mg 또는 체중 kg당 2 mg(혹은 그에 상당하는 스테로이드)을 2주 또는 그 이상 투여하는 것으로 한다.
- 4) 홍역 백신은 일시적으로 결핵 피부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 홍역 백신은 결핵 피부반응 검사와 같은 날에 접종할 수 있다. 만약 결핵 피부반응 검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하다면, 홍역 백신에 의해 반응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시행해야 한다.
- 5) MMR 백신과 수두 백신은 같은 날 투여할 수 있다. 만일 같은 날에 투여하지 않으면 4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6. 일반적 실시기준

(1). B형간염

표준접종

1. 생후 0개월, 1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출생시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4세	6세
0	0			0							

- HepB(10세 이하: 0.5mL, 11세 이상: 1.0mL), HepB 포함 혼합백신(DTaP-IPV-Hib-HepB)*

* B형간염 산모에게서 출생한 대상자는 2차 접종 권장시기를 준수하여 생후 1개월에 단독백신으로 접종

2.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

-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0.5mL) 및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2차, 3차 접종은 생후 1개월, 6개월에 실시

-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모체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능한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0.5mL)을 백신을 접종한 위치와 다른 부위에 접종한다. 이후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은 생후 1개월, 6개월에 실시한다.

표준 외 접종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 최소 접종 연령 및 최소 접종 간격

기초	최소 접종 연령		다음 접종 간격(최소 접종 간격)
	1차	출생 시	1개월(4주)
2차	생후 4주	5개월(8주)(1차 접종 16주 후)	
3차	생후 24주	-	

2. 지연 접종

- 최소 접종 연령·간격을 유지하여 남은 접종 횟수만큼 접종
- 권장되는 간격보다 접종 간격이 길어졌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으며 지연 차수부터 접종

1차	1-2차 최소 접종 간격	2-3차 최소 접종 간격
출생 시	4주	8주(1차 접종 16주 후)

[특수 상황]

- (출생 체중 2Kg 미만 미숙아) 생후 1개월 경과 또는 퇴원 시까지 1차 접종을 연기하고, 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6개월 3차 접종한다. 다만,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자이거나, B형간염 표면항원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접종한다.

최소 접종 연령	다음 접종 간격(최소 접종 간격)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0.5mL) 및 B형간염 백신을 접종하며 이는 기본접종 3회에 포함하지 않음. 이후 1개월에 초회 접종 시작, 2개월에 2차, 6~7개월에 3차 접종(총 4회)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B형간염 백신을 접종하며 이는 기본접종 3회에 포함하지 않음. 이후 모체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거나 분만 후 12시간까지 결과를 모를 경우, 12시간이 지나기 전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0.5mL)을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 부위와 다른 부위에 접종. 이후 1개월에 초회 접종 시작, 2개월에 2차, 6~7개월에 3차 접종(총 4회)

(2). 결핵**표준접종**

1. 생후 4주 이내 1회 기초접종

출생시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4세	6세
	○										

- BCG(피내용)(1세 미만: 0.05mL, 1세 이상: 0.1mL), 삼각근 주위에 5~7mm의 팽진이 생기도록 함

표준 외 접종**[5세(생후 60개월) 미만 대상자]**

1. 최소 접종 연령 및 최소 접종 간격

- 생백신간 면역반응 간섭 증거가 없으므로, 접종 간격의 고려 없이 접종 가능

2. 지연 접종

- 생후 2개월까지는 결핵환자 노출력이 없다면 투베르쿨린 피부검사(TST) 없이 접종, 생후 3개월 이상 연령은 TST 음성 결과 확인 후 접종
- 파종 결핵의 고위험 연령대로 알려져 있는 5세 미만 연령까지 접종 가능

[특수 상황]

- 미숙아 또는 입원이 필요한 심한 질환이 있는 경우(출생 직후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건강하고 임상적으로 안정 시 또는 퇴원할 때까지 접종 연기,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종한 경우에 TST 결과 없이 비용 지원
- 임신중 생물학적 반응조절 물질(infliximab 등)을 투여받은 모체에게서 출생한 신생아는 생후 12개월 이후로 접종 연기

(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표준접종

1.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 4~6세, 11~12세에 3회 추가 접종

출생시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4세	6세
		○	○	○		○				○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							

- DTaP*(기초접종, 15~18개월 및 4~6세), Tdap(11~12세)

* B단독백신 외 DTaP 포함 혼합백신(DTaP-IPV, DTaP-IPV/Hib, DTaP-IPV-Hib-HepB)

- 기초접종 3회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 원칙

- 단,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Tdap 백신을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 백신으로 대체 가능

표준 외 접종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 최소 접종 연령 및 최소 접종 간격

최소 접종 연령			다음 접종 간격(최소 접종 간격)
기초	1차	생후 6주	2개월(4주)
	2차	생후 10주	2개월(4주)
	3차	생후 14주	6~12개월(6개월)
추가	4차	생후 12개월	3년(6개월) 단, 4차 접종이 생후 12개월 이상에서 3차 접종과 4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되었다면 4차 접종은 유효함
	5차	4세	-
	6차	11세	-

2. 지연 접종

- 최소 접종 연령·간격을 유지하여 다음과 같이 접종

- 권장되는 간격보다 접종 간격이 길어졌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으며 지연된 차수부터 접종

① 6세 이하의 경우

구분	접종 기준
1~3차 접종	• 최소 접종 연령·간격을 유지하여 접종하며, 지연된 차수부터 접종
4~5차 접종	• 최소 접종 연령·간격을 유지하여 접종하며, 지연된 차수부터 접종 • 단, 4세 이후 4차 접종을 한 경우 5차 접종 생략

② 7세 이상의 경우

구분	접종 기준
6세 이하에서 DTaP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경우	Tdap 또는 Td를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2차 접종 6~12개월 후 3차 접종. 단, 적어도 한 번은 Tdap으로 접종하며 가급적 첫 접종을 Tdap으로 권장
6세 이하에서 DTaP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경우	Tdap 1회를 포함하여 따라잡기 일정에 따름

③ 연령에 따른 백신을 잘못 접종한 경우

구분	접종 기준
6세 이하에게 Tdap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접종(1~3차)을 완료한 경우) 유효접종으로 간주하고 11~12세에 Tdap 접종 •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경우) 무효접종으로 간주하고 최소 4주의 간격을 두고 일정에 맞춰 DTaP을 재접종, 이후 11~12세에 Tdap 접종
7세 이상에게 DTaP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TaP 접종을 완료*한 7~9세) 무효접종으로 간주하고 11~12세 Tdap 접종 • *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4세 이후 DTaP 4차 접종을 실시하여 5차 접종 생략자 • (DTaP 접종을 미완료한 7~9세) 따라잡기 접종으로 간주하고 11~12세 Tdap 접종 • (10세 이상) 11~12세 Tdap 접종 완료로 간주, 11~12세 접종 불필요
7~10세에게 Tdap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세) 무효접종으로 간주하여 11~12세에 Tdap 접종 • (10세) 유효접종으로 간주하여 11~12세 Tdap 접종 생략 가능

3. 교차 접종

- 기초접종 3회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 원칙.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교차 접종의 예외적 허용

- 이전 접종에 사용한 백신 종류를 알 수 없는 경우
- 해당 백신이 국내 유통되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연 접종] 7~9세 Tdap/Td 따라잡기 일정

이전 접종횟수	1차 접종 시기	직전 접종과 간격	Tdap 접종력	접종 일정	다음 접종 일정
0	-	-	-	Tdap 1차	최소 4주 후 Td 또는 Tdap 2차
1	생후 12개월 이전	-	-	Tdap 2차	최소 4주 후 Td 또는 Tdap 3차
			최소 4주 경과	O	Td 또는 Tdap 2차
	생후 12개월 이후	4주 이내	O	접종 X	1차 접종 4주 후 Td 또는 Tdap 2차
			X		1차 접종 4주 후 Tdap 2차
2	생후 12개월 이전	최소 4주 경과	O	Td 또는 Tdap 3차	최소 6개월 후 Td 또는 Tdap 4차
			X	Tdap 3차	
		4주 이내	O	접종 X	2차 접종 4주 후 Td 또는 Tdap 3차
			X		2차 접종 4주 후 Tdap 3차
	생후 12개월 이후	최소 6개월 경과	O	Td 또는 Tdap 3차	11~12세 Tdap 또는 Td ¹⁾
			X	Tdap 3차	
		6개월 이내	O	접종 X	2차 접종 6개월 후 Td 또는 Tdap 3차 ¹⁾
			X		2차 접종 6개월 후 Tdap 3차
3	생후 12개월 이전	최소 6개월 경과	O	Td 또는 Tdap 4차	11~12세 Tdap 또는 Td ¹⁾
			X	Tdap 4차	
		6개월 이내	O	접종 X	3차 접종 6개월 후 Td 또는 Tdap 4차
			X		3차 접종 6개월 후 Tdap 4차
	생후 12개월 이후		O	접종 X	11~12세 Tdap 또는 Td ¹⁾
			X	Tdap 4차	
4	4세 이후 DTaP 또는 Tdap 접종력 O			접종 X	11~12세 Tdap 또는 Td ¹⁾
	4세 이후 DTaP 또는 Tdap 접종력 X			Tdap 5차	11~12세 Tdap 또는 Td ¹⁾

1) 이전 접종 시기와 상관없이 접종한다.

[자연 접종] 10~12세 Tdap/Td 따라잡기 일정

이전 접종횟수	1차 접종 시기	직전 접종과 간격	Tdap 접종력	접종 일정	다음 접종 일정
0	-	-	-	Tdap 1차	최소 4주 후 Td 또는 Tdap 2차
1	생후 12개월 이전	-	-	Tdap 2차	최소 4주 후 Td 또는 Tdap 3차
1	생후 12개월 이후	최소 4주 경과	O	Td 또는 Tdap 2차	최소 6개월 후 Td 또는 Tdap 3차
			X	Tdap 2차	
		4주 이내	O	접종 X	1차 접종 4주 후 Td 또는 Tdap 2차
			X		1차 접종 4주 후 Tdap 2차
2	생후 12개월 이전	최소 4주 경과	O	Td 또는 Tdap 3차	최소 6개월 후 Td 또는 Tdap 4차
			X	Tdap 3차	
	생후 12개월 이후	4주 이내	O	접종 X	2차 접종 4주 후 Td 또는 Tdap 3차
			X		2차 접종 4주 후 Tdap 3차
2	생후 12개월 이후	최소 6개월 경과	O	Td 또는 Tdap 3차	-
			X	Tdap 3차	
		6개월 이내	O	접종 X	2차 접종 6개월 후 Td 또는 Tdap 3차 ¹⁾
			X		2차 접종 6개월 후 Tdap 3차
3	생후 12개월 이전	최소 6개월 경과	O	Td 또는 Tdap 4차	-
			X	Tdap 4차	
		6개월 이내	O	접종 X	3차 접종 6개월 후 Td 또는 Tdap 4차
			X		3차 접종 6개월 후 Tdap 4차
	생후 12개월 이후	O	접종 X	-	
		X	Tdap 4차	-	
4	10세 이후 DTaP 또는 Tdap 접종력 O			접종 X	-
	10세 이후 DTaP 또는 Tdap 접종력 X			Tdap ²⁾	-

1) 10세 이후 Tdap 접종력이 없다면 Tdap이 추천된다.

2) 11~12세 접종

※ 단, 다음 접종 일정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용 상환 대상에서 제외

(4). 폴리오

표준접종

1.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4~6세에 1회 추가 접종

출생시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4세	6세
		○	○	○						○	

- IPV, IPV 포함 혼합백신(DTaP-IPV, DTaP-IPV/Hib, DTaP-IPV-Hib-HepB)

표준 외 접종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 최소 접종 연령 및 최소 접종 간격

	최소 접종 연령		다음 접종 간격(최소 접종 간격)
	기초	1차	출생 시
2차		생후 10주	2~14개월(4주)
3차		생후 14주	3~5년(6개월)
추가	4차	4세	-

2. 지연 접종

- 최소 접종 연령·간격을 유지하여 접종
- 권장되는 간격보다 접종 간격이 길어졌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으며 지연된 차수부터 접종
- 4세 이전 4회 이상 접종한 경우, 4~6세에 직전 접종과 6개월 간격으로 1회 더 추가 접종
- 4세 이후 3차 접종을 하는 경우, 직전 접종과 6개월 이상 간격으로 접종되었다면 4차 접종은 생략되며, 직전 접종과 6개월 이상 간격을 두지 않았다면 4차 접종 실시

3. 교차 접종

- 주사용 불활성화 백신(IPV)의 경우 제조사가 다른 경우에도 교차접종 가능
- 다른 나라에서 경구용 생백신(OPV)으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 주사용 불활성화 백신으로 나머지 접종을 완료하며,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을 합쳐 총 4회 접종

(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표준접종**

1.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

~4주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4세	6세
		0	0	0	0						

- Hib

표준 외 접종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 최소 접종 연령 및 최소 접종 간격

최소 접종 연령			다음 접종 간격(최소 접종 간격)
기초	1차	생후 6주	2개월(4주)
	2차	생후 10주	2개월(4주)
	3차	생후 14주	6~9개월(8주)
추가	4차	생후 12개월	-

2. 지연 접종

- 첫 접종 시기에 따라 필요한 접종횟수가 다르며, 최소 접종 연령·간격을 유지하여 다음과 같이 접종
- 생후 60개월 이상은 Hib 감염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접종

첫 접종 시기 월령	총 접종횟수	기초접종(최소 접종 간격)	추가접종(접종 시기/최소 접종 간격)
2~6개월	4회	3회(4주)	1회(생후 12~15개월/8주)
7~11개월	3회	2회(4주)	1회(생후 12~15개월/8주)
12~14개월	2회	1회	1회(8주)
15~59개월	1회	1회	-
60개월 이상 (고위험군 ¹⁾ 에 한함)	1~2회	1회	-

[특수 상황]

- (미숙아) 의학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생후 2개월부터 만삭아와 동일한 일정으로 접종

[고위험군]

-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겸상적혈구증, 비장 절제술 후), HIV감염, IgG2 결핍을 포함하여 면역글로불린 결핍증, 초기 요소 보체결핍증, 조혈모세포이식, 악성종양으로 인해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

고위험군	접종 기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 정기접종에 준함
생후 12~59개월 소아	• 12개월 미만에 1회 이하 접종받은 경우: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12개월 미만에 2회 이상 접종받은 경우: 마지막 접종 8주 이후 1회 • 기초접종과 12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은 경우: 더 이상의 접종은 필요 없음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60개월 미만 소아	• 치료 시작 14일 이전에 정기접종을 받은 경우: 재접종은 필요 없음 • 치료 시작 14일 이내 또는 치료 중 접종을 받은 경우: 치료 종료 최소 3개월 후에 재접종
비장적출술이 계획된 15개월 이상의 소아	• 접종력이 없는 경우 ¹⁾ : 수술 전 1회 ²⁾
무비증을 가진 60개월 이상의 소아	• 접종력이 없는 경우 ¹⁾ : 1회 접종
HIV 감염 60개월 이상 소아	• 접종력이 없는 경우 ¹⁾ : 1회 접종
조혈모세포이식, 전 연령	• 이전 접종력과 상관없이, 이식 6-12개월 이후부터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 접종

1) 기초접종과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생후 15개월 이후에 최소 1회 이상의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접종력이 없다고 함

2) 일부 전문가들은 수술 전 최소 14일 이전에 접종을 권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전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을 권함

(6) 폐렴구균

표준접종

1.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

~4주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4세	6세
		0	0	0	0						

- PCV15, PCV20

2. 65세 이상 1회 접종

- PPSV23

구분	접종 기준
이전 접종력 X	다당질 백신 1회 접종
이전 접종력 O	이전 단백결합 백신 접종일로부터 1년 이상(이전 다당질 백신 접종일로부터 5년 이상) 간격을 두고 다당질 백신 1회 접종

표준 외 접종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단, 고위험군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 최소 접종 연령 및 최소 접종 간격

	최소 접종 연령		다음 접종 간격(최소 접종 간격)
	기초	1차	생후 6주
2차		생후 10주	8주(4주)
3차		생후 14주	6개월(8주)
추가	4차	생후 12개월	-

2. 지연 접종

- 첫 접종 시기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가 다르며, 최소 접종 연령·간격을 유지하여 다음과 같이 접종

- 일반적으로 건강한 생후 60개월 이상은 접종 불필요

첫 접종 시기 월령	총 접종횟수	기초접종(최소 접종 간격)	추가접종(접종 시기/최소 접종 간격)
7~11개월	3회	2회(4주)	1회(생후 12~15개월/8주)
12~23개월	2회	2회(8주)	-
24~59개월(건강한 소아)	1회	1회	-
24~71개월 (침습 폐렴구균 질환 고위험군)	2회	2회(8주)	-

[고위험군]

- (대상)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폐렴구균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기저질환

구분	접종 기준
정상면역 소아청소년	만성 심장 질환 ¹⁾ , 만성 폐 질환 ²⁾ ,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 만성 간 질환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중 소아 청소년	겸상구 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무비중 또는 비장 기능장애
면역저하 소아청소년	HIV 감염증, 만성 신부전과 신중후군, 면역억제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질환 (악성 종양, 백혈병, 림프종, 호지킨병) 또는 고형 장기 이식 선천면역결핍질환 ³⁾

1) 특히 선천성 청색 심질환과 심부전

2)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경구로 복용하는 천식환자도 포함함

3) B세포(체액면역) 또는 T세포 결핍증, 보체결핍증(특히, C1, C2, C3 및 C4 결핍증), 탐식구 질환(만성 육아종 질환은 제외)

- (24~71개월 기본접종) 과거 단백결합백신 접종력에 따라서 단백결합백신(PCV15-20)을 1~2회 접종

* 생후 24개월까지 단백결합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불안정한 경우(0~2회), 마지막 종으로부터 최소 8주 간격으로 단백결합백신(PCV15-20) 2회 접종

* 생후 24개월 이내 3회의 단백결합백신 접종력이 있는 경우, 마지막 접종으로부터 최소 8주 간격으로 단백결합백신(PCV15-20) 1회 접종

- (24~71개월 보강접종) 접종 연령별 실시기준에 따른 단백결합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후 보강접종

* 기본접종 내 PCV20 접종력이 있는 경우 보강접종 불필요

* 기본접종 내 PCV20 접종력이 없는 경우, 마지막 단백결합백신 접종 후 최소 8주 간격으로 PCV20(1회) 또는 PPSV23(1~2회)으로 보강접종

- (6~18세 기본접종) 단백결합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단백결합백신(PCV15-20) 1회 접종

* 단, PCV7 접종력이 있는 경우에도 PCV15 또는 PCV20 1회 접종

- (6~18세 보강접종) 접종 연령별 실시기준에 따른 단백결합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보강접종 실시

* 기본접종 내 PCV20 접종력이 있는 경우 보강접종 불필요

* 기본접종 내 PCV20 접종력이 없는 경우, 마지막 단백결합백신 접종 후 최소 8주 간격으로 PCV20(1회) 또는 PPSV23(1~2회) 접종

- (시기) PCV13/PCV15*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받은 기저질환 보유 2~18세 대상자의 PPSV23 보강접종

* PCV20 접종자에서 PPSV23 추가 접종을 권고하지 않음

구분	PPSV23 접종	접종횟수	PPSV23 재접종
만성질환 등을 갖는 정상면역 소아	마지막 단백결합백신 (PCV13/PCV15) 접종일로부터 최소 8주 후	1회	-
면역저하, 겸상구 빈혈 및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중		2회	첫 번째 PPSV23 백신 접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¹⁾

1) 첫 번째 23가 백신 접종 후 5년 경과 후 PCV20로 대체 접종 가능

(7).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표준접종

1. 생후 12~15개월, 4~6세에 2회 기초접종

~4주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4세	6세
					○						○

- MMR

표준 외 접종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 최소 접종 연령 및 최소 접종 간격

최소 접종 연령			다음 접종 간격(최소 접종 간격)
기초	1차	생후 12개월	3~5년(4주)
	3차	생후 13개월	-

2. 가속 접종

- 홍역 유행지역 여행 예정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접종

대상	주요 내용
생후 6~1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 접종 가능한 여행 최소 2주 전 접종 필요 가속 접종 후, 생후 12개월 이후 표준접종에 따른 2회 접종 실시

3. 지연 접종

- 최소 접종 연령·간격을 유지하여 접종

최소 접종 연령	1-2차 최소 접종 간격
생후 12개월 ※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 적용 제외	4주

[특수 상황]

-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매일 14일 이상 투여받는 경우, 치료 1개월 전 또는 스테로이드 중단 후 최소 1개월 후 접종

* (예) 프레드니손 매일 20mg 이상 또는 2mg/kg/일 이상의 용량으로 14일 이상 사용

(8).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표준접종

1. RV1(사람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2개월, 4개월에 2회 접종, RV5(사람-소 재배열백신)은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접종

~4주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4세	6세
		○ (RV1)	○ (RV1)								
		○ (RV5)	○ (RV5)	○ (RV5)							

- RV1 또는 RV5

표준 외 접종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 최소 접종 연령 및 최소 접종 간격

- 1차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접종·최대 접종 연령

1차 접종 연령	
최소 접종 연령	최대 접종 연령
생후 6주	생후 14주 6일

최소 접종 연령		다음 접종 간격(최소 접종 간격)	
기초	1차	생후 6주	8주(4주)
	2차	생후 10주	8주(4주)
	3차	생후 14주	-

2. 지연 접종

- 최소 접종 연령·간격을 유지하여 접종
- 권장되는 간격보다 접종 간격이 길어졌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으며 지연된 차수부터 접종
-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접종 가능 최대연령(생후 8개월 0일) 이후에는 접종하지 않음

3. 교차 접종

- RV1, RV5의 교차 접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교차 접종의 예외적 허용

- 이전 접종에 사용한 백신 종류를 알 수 없는 경우
- 백신 공급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RV5가 한 번이라도 사용되었거나 사용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 총 접종 횟수가 3회가 되도록 함

[특수 상황]

- 접종 전 로타바이러스 장염에 걸렸더라도 일정대로 접종
- 항체 포함 혈액제제의 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대로 접종
- 임신 중 생물학적 반응조절 물질(Infliximab 등)을 투여받은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음

(9). 수두

표준접종

1. 생후 12~15개월, 1회 기초접종

~4주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4세	6세
					0						

- VAR

표준 외 접종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 최소 접종 연령 및 최소 접종 간격

최소 접종 연령			다음 접종 간격(최소 접종 간격)
기초	1차	생후 12개월 ※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 적용 제외	-

2. 지연 접종 - 접종일정이 지연 됐더라도 접종

(10). A형간염

표준접종

1. 생후 12~23개월,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에 2회 기초접종

~4주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4세	6세
							○		○		

- HepA (백신 제조사에 따른 2차 접종 일정은 다음과 같음)

최소 접종 연령	2차 접종 일정
하브릭스	1차 접종 후 6~12개월
보령 A형간염백신	1차 접종 후 6~12개월
박타	1차 접종 후 6~18개월

표준 외 접종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 최소 접종 연령 및 최소 접종 간격

기초	최소 접종 연령		다음 접종 간격(최소 접종 간격)
	1차	생후 12개월	6~12개월 또는 6~18개월(6개월)
2차	생후 18개월	-	

2. 지연 접종

- 최소 접종 연령·간격을 유지하여 접종
- 권장되는 간격보다 접종 간격이 길어졌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으며 지연된 차수부터 접종

3. 교차 접종

- 제조사가 다른 백신으로 교차접종 가능

(11). 일본뇌염

표준접종

1. IJEV(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23개월 중 1개월 간격으로 2회 기초접종, 생후 24~35개월(1차 접종 1년 후), 6세, 12세에 3회 추가접종

출생시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4세	6세
					O (1~2차)				O		O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O						

- 3세 미만 0.25mL, 3세 이상 0.5mL

2. LJEV(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12~23개월, 24~35개월(1차 접종 1년 후)에 2회 기초접종

출생시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4세	6세
					O				O		

표준 외 접종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 최소 접종 연령 및 최소 접종 간격

		최소 접종 연령		다음 접종 간격(최소 접종 간격)
IJEV	기초	1차	생후 12개월	1개월(4주 ¹⁾)
		2차	생후 12개월	11개월(6개월)
	추가	3차	생후 18개월	3~4년(2년)
		4차	5세	6년(5년)
		5차	11세	-
LJEV	기초	1차	생후 12개월	12개월(4주)
		2차	생후 13개월	-

1)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에 최소 접종 간격 7일 인정

2. 지연 접종

- 최소 접종 연령·간격을 유지하여 접종
- 권장되는 간격보다 접종 간격이 길어졌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으며 지연된 차수부터 남은 횟수만 접종

불활성화 백신

- (1차 접종 지연) 연령에 관계없이 1, 2차 기초접종을 1개월 간격으로 하고 2차 접종 11개월 후 3차 추가접종
- (2차 접종 지연) 2차 기초접종을 즉시 접종하고 11개월 후에 3차 추가접종
- 생후 48개월 이후에 3차 접종을 하는 경우, 6세의 추가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12세에 1회만 추가접종
- 10세 이후에 3차 또는 4차 추가접종 시, 더 이상 접종을 하지 않음
- 11세 이후에 처음 접종하는 경우, 1개월 간격으로 1, 2차 기초접종 후 11개월 후 3차 추가접종으로 완료

생백신

- 생백신 접종이 지연된 경우, 1차 접종 후 12개월 후에 2차 접종

3. 교차 접종

-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 간 교차접종은 권장되지 않음
- 쥐 뇌조직 배양 불활성화 백신과 베로세포 배양 불활성화 백신간 교차접종 가능
- 약독화 생백신과 키메라 생백신*간 교차접종 가능

* 국가예방접종 사업 미지원 백신

(12). 사람유두종바이러스**표준접종**

1. 12세 남성, 12~26세 여성, 2~3회 기초접종

첫 접종 연령	접종 횟수	접종 일정
12~14세	2회	0, 6~12개월
15~26세	3회	0, 2, 6개월

- HPV4

표준 외 접종**[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 최소 접종 연령 및 최소 접종 간격

첫 접종 연령 ¹⁾	접종 횟수	1차 접종	1-2차 최소 접종 간격	2-3차 최소 접종 간격
14세 이하	2회	12~14세	5개월 ²⁾	-
15세 이상	3회	15~26세	2개월(4주)	4개월(12주)(1차 접종 5개월 후)

1) 9세부터 접종 가능

2) 첫 접종 후 5개월 이내 2차 접종을 한 경우 3회 접종 필요

2. 지연 접종

- 권장되는 간격보다 접종 간격이 길어졌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으며 지연된 차수부터 남은 횟수만 접종

3. 교차 접종

- HPV 백신 간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특수 상황]

- (임신부) 임신중 사용이 권장되지 않음. 접종 시작 후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분만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하며, 임신중 접종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 불필요
- (수유부) 수유부에게 접종 가능
- (면역저하자) 질환 또는 약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접종 가능. 단 백신 면역반응은 약화될 수 있음

(13). 인플루엔자

표준접종

1. 생후 6개월~13세 매년 1회 접종

~4주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4세	6세
매년 접종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매년 접종											

- 3가 백신
- 9세 미만은 접종 첫 해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

2. 임신부 1회 접종

- 3가 백신

3. 65세 이상 매년 1회 접종

- 3가 백신

25-26절기

1. 접종 대상 -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2. 접종 횟수 - 생후 6개월~9세 미만의 경우 과거 접종 여부에 따라 1~2회 접종

과거 접종 여부	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받는 경우 (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기초접종 이후 매년 1회 접종
첫해에 1회만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거 접종력이 누적 1회인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기초접종 이후 매년 1회 접종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횟수가 누적 2회 이상인 경우	매년 1회 접종

- 9~13세, 임신부, 65세 이상 매년 1회 접종

<참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령 기준

- 절기 예방접종사업의 연령은 사업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함
(예시) 2025-2026절기: 2025년 기준 65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
2025년 기준 생후 6개월~13세(2012.1.1.~2025.8.31.)
※ 생후 6개월 연령 기준은 2회 접종을 고려 8월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

3. 접종 백신 용량 및 투여 방법

- (생후 6~35개월) 3가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0.5ml를 대퇴부 전외측에 근육주사
※ 13~35개월의 경우 근육량이 적당하다면 삼각근 접종을 고려 가능

- (생후 36개월 이상) 3가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0.5ml를 삼각근에 근육주사

※ 백신별로 허가연령 및 접종방법이 다르므로 허가기준을 준수하여 접종

※ 의학적 사유로 부득이하게 피하접종이 필요한 경우 백신별 허가기준을 준수하여 접종

4. 사업 기간

- 사업 첫날 접종자 쏠림 방지를 위해 연령별 사업 시작일을 구분하여 시행

※ 접종 시작일에 따라 어린이(2회접종대상), 어린이(1회접종대상) 및 임신부, 어르신(75세 이상), 어르신(70~74세), 어르신(65~69세) 순으로 시행

5. 어르신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

-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접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외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시작(75세 이상 접종 시작일) 이후부터 연령 구분없이 접종 가능

- 예외인정기준 접종은 어르신(65~69세) 접종이 시작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65세 이상 어르신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

- (지역특성) 섬·벽지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는 경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의료취약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 보험료 경감 대상 지역
- (당일진료)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 등으로 당일진료가 발생한 경우
- (방문 예방접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소의 관리하에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15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해당

6. 예진의사 1인당 100명 제한

- 예진의사 1인당 1일 최대 접종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

※ 접종 인원 제한은 인플루엔자/코로나19 접종 건수를 구분하여 각각 100명 접종 계산

※ 유료 접종, 지자체 자체 사업,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 접종, 다른 NIP 등의 경우 접종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방문접종의 경우 시스템 '방문접종 관리' 메뉴에 업로드한 방문접종 일정에는 접종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금기 및 주의

1. 금기사항

- 생후 6개월 이하 영아 접종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의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2. 주의사항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é syndrome)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 ※ 1976년 사용되었던 swine influenza vaccine과 달리 1977년 이후의 인플루엔자 백신에서는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음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3. 계란알레르기

- 계란에 대해 두드러기만 있는 경우 접종 가능
- 두드러기 외 혈관 부종, 호흡 압박, 어지러움 또는 반복적인 구토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였거나 epinephrine 투여 또는 기타 응급내과 처치를 받았던 사람
 - ⇒ 이 경우 백신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의 지도 하에 접종 가능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반응(아나필락시스)을 보인 경우나 계란에 심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백신 제조 시 남아 있을 수 있는 계란 단백질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접종을 금지하며,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접종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
 - ⇒ 계란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를 보인 사람은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

(14). 장티푸스**표준접종**

1.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대상 1회 접종
 - ※ 위험에 노출되는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2주 전에 접종 시행
- ViCPS

표준 외 접종**[2세 이상 고위험군]**

1. 최소 접종 연령 및 최소 접종 간격

- 장티푸스에 걸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 3년마다 추가 접종 권장

[특수 상황]

- 여행자가 장티푸스에 걸릴 위험성은 개발도상국 특히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등의 남아시아 지역에서 높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와 남미 지역도 높은 편임
- 여행지역,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여행기간이 길거나 위험군의 시골지역으로 갈 경우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증가함
- 장기간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면역유지가 필요할 경우 추가 접종 필요

[고위험군]

- 다음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접종 권장
 - ※ 2세 이상 5세 미만의 백신 접종은 역학적 배경과 함께 장티푸스 노출 위험성을 감안하여 결정

접종 권장 대상자

-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국고 보조 대상자는 공무원 여행자 및 체류자에 한함)
- 장티푸스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15). 신증후군출혈열**<표준접종>****표준접종****1. 성인**

-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대상 1개월 간격 2회 기초접종, 기초접종 완료 1년 후 1회 추가 접종(0-1-13개월 일정)
- 한타박스

표준 외 접종**[고위험군 19세 이상 성인]****1. 최소 접종 연령 및 최소 접종 간격**

구분		다음 접종 간격
기초	1차	1개월
	2차	12개월 ¹⁾
추가	3차	-

1) 1개월 정도 앞당겨서 투여하여도 항체 양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보고가 있어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음

[고위험군]

- 다음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접종 권장

접종 권장 대상자

-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군인 및 군부대 종사자는 국방부정책에 따라 접종하므로 국가예방접종으로 접종하지 않음)
-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16).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25-26절기****1. 접종 대상**

- 65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생자)
-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범위

- (생후 6개월~4세)
 - 심각한 면역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mg/일 또는 2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른 중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 이 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5세 이상)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감염취약시설 범위

-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
-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시설
 -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 노숙인 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최신판)』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최신판)』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 ※ 보호병동(폐쇄병동) 및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함
 - ※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와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2. 접종 횟수

- 생후 6개월~11세 고위험군의 경우 과거 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접종

※ 과거 접종한 백신과 무관하게 모더나 백신 절반 용량(0.25mL)으로 접종

과거 접종 여부	과거 접종 백신	접종
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	-	2회 접종으로 기초접종 완료 이후 매년 1회 접종
과거 1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	1회 접종으로 기초접종 완료 이후 매년 1회 접종
	모더나	
과거 2회 이상 접종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	최소 3개월 간격으로 매년 1회 접종
	모더나	

- 12세 이상 고위험군 최소 3개월 간격으로 매년 1회 접종

<참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연령 기준

- 정기 예방접종 사업 대상 연령은 사업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함
(예시) 2025-2026절기: 2025년 기준 65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자)
- 백신 실시기준에 따른 연령은 대상자의 생년월일에 따른 나이를 기준으로 함
(예시) 2025년 11월 30일 기준, 12세 미만(2013.12.1. 이후 출생자)

3. 접종 백신 용량 및 투여 방법

- (12세 이상) 1회 접종(최소 접종간격: 3개월(90일))

백신	용량	접종방법	접종부위 및 방법
화이자 LP.8.1 백신	0.3ml/30µg	근육주사	삼각근
모더나 LP.8.1 백신	0.5ml/50µg	근육주사	삼각근

- (6개월~11세 고위험군) 기초접종 완료자 1회 접종(최소 접종간격: 3개월(90일))

※ 기초접종(2~3회) 미완료자의 경우, 기초접종 완료 후 매년 1회 접종

백신	용량	접종방법	접종부위 및 방법
모더나 LP.8.1 백신	0.25ml/25µg	근육주사	삼각근(또는 대퇴부전외측)

※ 생후 6~35개월의 경우 근육량이 부족할 경우 대퇴부전외측 주사 가능

※ (모더나 백신) 12세 이상 백신 1바이알의 절반 용량(0.25ml)만 추출해서 접종 → 1회 접종 완료 후 남은 잔량 반드시 모두 폐기, 타인 접종 불가

4. 사업 기간

- 사업 첫날 접종자 쏠림 방지를 위해 연령별 사업 시작일을 구분하여 시행

※ 접종 시작일에 따라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어르신(75세 이상), 어르신(70~74세), 어르신(65~69세) 순으로 시행

5. 어르신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

-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접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외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시작(75세 이상 접종 시작일) 이후부터 연령 구분없이 접종 가능

- 예외인정기준 접종은 어르신(65~69세) 접종이 시작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65세 이상 어르신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

- (지역특성) 섬·벽지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는 경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의료취약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 보험료 경감 대상 지역
- (당일진료)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 등으로 당일진료가 발생한 경우
- (방문 예방접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소의 관리하에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15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해당

6. 예진 의사 1인당 100명 제한

- 예진 의사 1인당 1일 최대 접종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

※ 접종 인원 제한은 인플루엔자/코로나19 접종 건수를 구분하여 각각 100명 접종 계산

※ 유료 접종, 지자체 자체 사업,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 접종, 다른 NIP 등의 경우 접종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방문접종의 경우 시스템 '방문접종 관리' 메뉴에 업로드한 방문접종 일정에는 접종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교차접종]

- (12세 미만 고위험군) 과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 모더나 백신 절반 용량(0.25mL)으로 교차접종 가능

- (12세 이상) 제조사가 다른 백신으로 교차접종 가능

[금기 및 주의사항]

1. 예방접종 금기사항

-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확인된 경우, 이전 백신과 동일한 종류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금기

- 코로나19 백신의 구성 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

백신	내용
화이자·모더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로메타민*,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백신 접종금기대상에 포함*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과 '트로메타민'은 동일성분임

2. 예방접종 주의사항

- 중증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상태가 호전된 후 접종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 연기

- 코로나19 백신(mRNA 백신, 노바백스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 이전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이상반응 신고하였으나 검사 미실시 등으로 판정 불가 대상이 된 경우와 접종 연기 대상인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

-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은 동시접종으로 인한 면역 간섭과 안전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동시접종 가능
- 인플루엔자 백신 외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과의 권장되는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둘 근거는 없음
- 엠폭스 백신인 진네오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과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음
 - ※ 다만, 청소년 및 젊은 성인 남성은 두 백신 간 접종 간격을 4주 정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또는 엠폭스로 인한 중증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접종을 미루어서는 안됨
 - ※ 진네오스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위험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ACAM2000 백신,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관찰됨(6개월~4세)

[특수 상황에서의 접종]

1. 면역저하자

- 면역억제치료 시작 2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것이 좋으나 만약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은 대상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를 위해 면역억제치료의 연기 여부는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결정
 - ※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출혈성 질환

- 출혈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환자가 응고장애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예: 혈우병) 약물 투여 또는 치료 직후 접종함

3. 항응고제 복용

- 항응고제 복용자의 치료상태가 안정적일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와파린 복용자의 경우 최근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이 치료범위의 상한선 미만일 경우 접종함
 - ※ 혈액 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대상자의 경우 접종 시 작은 주사바늘(23G 이상)을 사용하고, 접종부위를 문지르지 말며 최소 2분간 압박 필요

4. 수유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5. 임신부

-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

6. 과거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접종 가능
- 다만, 최근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 자연면역을 고려하여 감염 확진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접종을 연기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필요하지 않음

(17).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접종 기준

1. 접종대상 고위험군

- (노출 전 접종) 18세 이상 감염 위험이 높은 성인 과거 접종 여부에 따라 4주 간격 1~2회 접종

- (성 접촉 관련 노출 위험이 높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성병(에이즈,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등)을 새롭게 진단받은 사람, 다수의 사람과 성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 남성과 성접촉 하는 남성
- (해외 엠폭스 노출 위험 국가·지역*에 방문·거주하며 활동**하는 과정에서 현지인과 밀접한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자)

*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의 국가별 주요 감염병, WHO Global MPOX Trend

** 보건의료 활동, 구호 활동, 대규모 행사 참여, 상업 활동

- (의료진 등) 엠폭스 환자를 치료하거나 치료할 예정인 의료진, 엠폭스 예방접종 시행기관 의료진, 엠폭스 진단검사 실험실 요원, 역학조사관

- (노출 후 접종) 18세 이상 감염 위험이 높은 성인 과거 접종 여부에 따라 4주 간격 1~2회 접종

- 역학조사 결과 엠폭스 바이러스 관리 대상 접촉자 중 노출 후 14일 이내인 접촉자

구분	노출 후 기간	접종 권고 수준
미완료자	노출 4일 이내	권고*
	노출 후 5~14일 경과	허용**

* 권고: 접촉 강도 및 노출 후 기간을 고려 시 예방 및 증상 완화를 위해 필요

** 허용: 접종의 이득이 명확하지 않아 접종 권고 대상은 아니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

2. 접종횟수

과거 접종 여부	다음 접종 간격
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	4주 간격 2회 접종
과거 접종력이 1회 있는 경우(두창 백신 포함)	1회 접종

※ 1978년 이전 출생자는 두창 백신 접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팔에 접종 흔적 확인 필요

3. 접종 백신 용량 및 투여 방법

백신	접종 용량	접종 방법	접종 부위
진네오스 백신 (18세 이상)	0.1mL (표준접종의 1/5 용량)	피내접종	아래 3가지 부위 중 택 1 ① 상완(삼각근) ② 손바닥과 연결된 전완 ③ 견갑골 아래의 위쪽 등부위

※ 표준 접종인 피하접종도 가능하나 피내접종을 우선 권고하며, 1,2차 접종 모두 피내접종이 원칙이나 1차 접종 후 2차 접종 사이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접종 방식 변경 가능

※ 2차 접종 시 1차 접종한 피내접종 부위에서 여전히 흉반이나 경결이 있는 경우, 반대쪽 접종 부위에 피내 투여

※ 피내 접종 시 켈로이드 흉터 병력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병력이 없는 대상자에게 접종

※ 다인용 바이알(1바이알: 최대 5도즈)로 0.1mL가 되지 않는 잔여량은 폐기, 여러 바이알로부터 잔여량을 모아 사용 불가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

- 현재까지 3세대 두창 백신의 다른 백신과의 동시 투여에 대한 데이터는 없으나, 진네오스는 비복제성 orthopoxvirus 약독화 생백신이므로 다른 백신과 특별한 간격 없이 접종 가능하며, 같은 날 접종 시에는 서로 다른 부위에 접종
- 단, 진네오스 접종 후 4주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기(특히 젊은 성인 남성)
 - ※ 진네오스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발생 위험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ACAM2000 백신,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관찰됨(6개월~4세)

[특수상황에서의 접종]

1.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 3세대 백신 접종 전 의사와 상담 후 접종 결정
2. HIV에 감염되었거나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상태나 치료가 있는 경우
 - 3세대 백신 접종 전 의사와 상담 후 접종 결정
3. 임신 중이거나 모유수유 중인 경우
 - 이득이 위험을 능가하지 않는 한 접종 미권장

금기 및 주의

1. 예방접종 금기사항
 - 3세대 백신의 구성성분 또는 백신에 매우 소량으로 존재 가능한 chicken protein, benzonase, gentamicin 또는 ciprofloxacin, 이전 3세대 백신 접종에서 심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
2. 예방접종 주의사항
 - 고열이 있는 경우 상태가 호전된 후 접종
 - 최근에 복용한 약이 있거나 다른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3세대 백신 접종 전 의사와 상담 후 접종 결정

[참고] 접종(백신)별 완전접종 차수 및 접종권장시기와 최소접종간격¹⁾

감염병	백신종류	접종 차수	접종 권장시기	최소 접종연령	다음 접종간격	다음 접종 최소 접종간격
결핵	BCG(피내)	1회	생후 1개월	-	-	-
B형간염	HepB	1차	출생 시	출생 시	1개월	4주
		2차	생후 1개월	생후 4주	5개월	8주
		3차 ²⁾	생후 6개월	생후 24주	-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12개월	6개월 ¹⁾
		4차	생후 15~18개월	생후 12개월	3년	6개월
		5차	4~6세	4세	-	-
	Tdap	-	11세 이상	11세	-	-
디프테리아·파상풍	Td ³⁾	-	11~12세	7세	10년	5년
폴리오	IPV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14개월	4주
		3차	생후 6~18개월	생후 14주	3~5년	6개월
		4차	4~6세	4세	-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1차	생후 12~15개월 ⁴⁾	생후 12개월	3~5년	4주
		2차	4~6세	생후 13개월	-	-
일본뇌염	IJEV	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1개월	4주 ¹²⁾
		2차	생후 13~23개월	생후 12개월	11개월	6개월
		3차	생후 24~35개월	생후 18개월	3~4년	2년
		4차	6세	5세	6년	5년
		5차	12세	11세	-	-
	LJEV	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12개월	4주
		2차	생후 24~35개월	생후 13개월	-	-
수두 ⁵⁾	VAR	1회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4주	4주
장티푸스	ViCPS	1회	2세 이상 고위험군		3년	
신증후군출혈열	HFRS	1차			1개월	
		2차	19세 이상 고위험군		12개월	
		3차			-	

감염병	백신종류	접종 차수	접종 권장시기	최소 접종연령	다음 접종간격	다음 접종 최소 접종간격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⁶⁾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9개월	8주
		4차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	-
A형간염	HepA	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6~18개월	6개월
		2차	생후 18개월	생후 18개월	-	-
폐렴구균	PCV ⁶⁾ (단백결합)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8주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8주	4주
		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개월	8주
		4차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	-
	PPSV ⁷⁾ (23가다당질)	1차	2세 이상 고위험군	2세	5년	5년
		2차	2세 이상 고위험군	7세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⁸⁾	HPV (2회 접종)	1차	11~12세	9세	6~12개월	5개월
		2차	11~12세	9세	-	-
	HPV (3회 접종)	1차	11~12세	9세	(HPV4) 2개월	4주
		2차	11~12세	9세	(HPV4) 4개월	12주 ¹³⁾
		3차	11~12세	9세	-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⁹⁾	RV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	-
인플루엔자	IIV ¹⁰⁾	-	생후 6개월 이상	생후 6개월	1개월	4주

- 1) 혼합백신(combination vaccines) 사용이 가능하다. 허가받은 혼합백신 사용이 동일한 성분의 개별 백신 접종보다 선호된다. 혼합백신을 접종할 때는 최소접종연령은 개별 백신의 최소접종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이며, 최소접종간격은 개별 백신의 최소접종간격 중 가장 큰 간격이다.
- 2) B형간염의 3차 접종과 2차 접종의 최소접종 간격은 8주이고, 3차 접종은 1차 접종 16주 이후이면서 생후 24주 이후에 접종하여야 한다.
- 3)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Tdap 백신을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파상풍·디프테리아)백신으로 대체 가능하다.
- 4) 홍역 유행 시 또는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생후 6~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MMR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생후 12개월 이전 MMR 백신을 접종 받은 영아도 표준접종일정에 따라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MMR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한다.

- 5) 생후 12개월~13세 미만의 소아는 수두 백신 1회 접종한다. 13세 이상인 경우 4~8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받아야 한다.
- 6) Hib 백신과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은 첫 접종을 생후 7개월 이후에 시작한 경우 전체 접종 횟수가 적다.
- 7) 23가 다당 백신은 침습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태에 있는 2세 이상의 소아에게 추천되며, 마지막 단백결합 백신 접종 시점으로부터 최소 8주 간격을 두고 접종한다. 2차 접종은 중증 폐렴구균 감염증의 위험이 높은 경우와 폐렴구균 항체 역가의 급속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권장된다. 다만, 기본접종 내 PCV20 백신을 1회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경우 보강접종은 불필요하다.
- 8) HPV 4가 백신은 9~26세의 남녀에게 허가가 되어 있다. HPV 예방접종은 9~14세에 첫 접종을 시작한 경우 6~12개월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다. 단, 면역저하자이거나 15세 이후 첫 접종을 시작한 경우 3회 접종이 필요하다.
- 9)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초회 접종은 생후 6~14주 6일까지 투여되어야만 하며, 생후 15주 이상의 영아에게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8개월 0일까지 영아에게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1가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경우는 2회 접종하며 3차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 10) 생후 6개월~9세 미만의 소아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하는 해에는 최소한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며, 다음 해부터는 1회 접종한다. 유행주에 따라 접종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 절기 인플루엔자 사업 내용을 참고한다.
- 11) DTaP 3차 접종과 4차 접종 사이에 권장되는 최소 접종간격은 6개월 이상이다. 그러나 4차 접종이 생후 12개월 이상에서 DTaP 3차 접종과 4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였으면, 4차 접종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 12)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등으로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 가능하다.
- 13) HPV 3차 접종은 1차 접종 5개월 이후에 접종해야 한다.

7). 예외적 실시기준

- 예외적 실시기준은 의학적 소견이 타당하여 일반적 실시기준 외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보건소는 비용상환 심사에서 예외인정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에 비용상환 할 수 있다.

(1). 백신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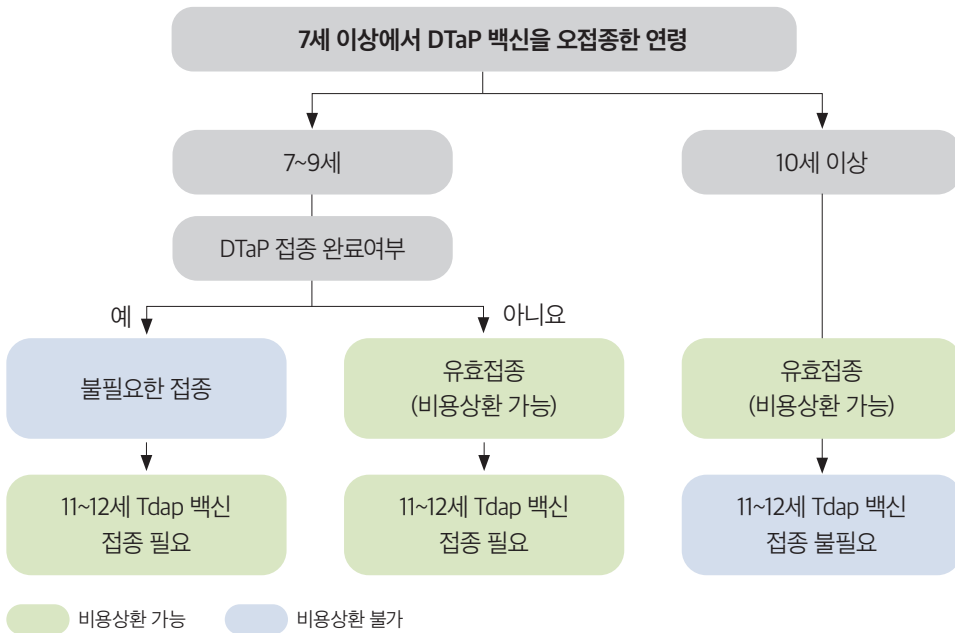
구분	대분류	소분류(의학적 소견)
공통	• 이전 접종력 불인정으로 인한 재접종	• 이전 접종 최소접종 연령 미준수 사유 • 이전 접종 최소접종 간격 미준수 사유
	• 면역저하 상태 동안 받은 접종의 재접종 (항암치료 후 등)	• 면역저하 상태일 때 접종했음을 알 수 있는 상세사유 작성
B형간염	• 고위험군 재접종	• HBsAg 양성 산모의 출생아 • B형간염 만성 감염자의 가족 • 혈액제제 수혈 환자 • 혈액투석 환자

구분	대분류	소분류(의학적 소견)
BC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숙아 출생 후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 생후 3개월 내에는 TST 없이 접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일 및 퇴원일 ※ 출생 직후 NICU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BCG 접종한 경우 TST 결과 없이 비용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G 생후 3개월 이상 TST 결과 음성 	
Tdap 6차 Td 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9세 따라잡기 일정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2세 이상 따라잡기 일정 접종 	
일본뇌염 (IJEV, LJE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교차접종 시행으로 접종을 완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된 교차접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예정으로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1~2차 최소접종 간격 7일 이상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학적 소견 입력 시 '방문국가 및 체류 기간' 입력 후 비용상환 가능
H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군 접종 (침습Hib 감염 고위험군 소아에 해당) ※ Hib 접종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도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Hib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상세사유 작성
PC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군 접종 ※ PCV 접종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도 접종 ※ 접종연령에 관계없이 3회 접종받은 고위험군은 8주 간격을 두고 4차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상세사유 작성
PPS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군 접종 ※ 2세 이상 침습 폐렴구균 질환 고위험군 소아에 해당 	
MM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후 6~11개월 가속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역 확진 환자 접촉자 (국내 유행상황 시, 확진자 명단확인) 홍역 유행지역 거주자(국내 유행상황 시) 홍역 유행 국외지역 여행 (출국일, 국가명 등 기재)
HP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역저하자 ※ HPV 백신 면역저자는 총 3회 접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HPV 면역저자에게 해당하는 상세사유 작성
R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교차접종 시행으로 접종을 완료하기 위한 불가피한 교차접종 ※ RV5로 한 번이라도 접종되면 총 접종 횟수가 3회가 되도록 접종 초회 접종을 생후 15주 이상의 영아에게 우발적으로 투여하였더라도 2~3차 접종 	-

구분	대분류	소분류(의학적 소견)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종등록 팝업창에 의학적 소견 입력 시 사유입력 버튼 클릭하여 비용신청 사유에 맞는 대분류를 선택 후 비용상환 신청되므로 주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3차 의료기관의 자체 웹서비스 시스템으로 연계 등록 시 비용신청이 누락될 수 있으니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안내 필요 ※ (예시)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등록을 의학적 소견 대분류 '기타'로 등록 시 비용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의학적 소견 하위분류 선택 항목 외 '기타'로 작성한 경우는 비용기준 적합성 검토 및 의학적 소견 누락 내용 수정하도록 한 후 심사 시행(백신별 실시기준 준수) Hib, PCV, PPSV 고위험군 및 HPV 면역저하소아 대상 확인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의 해당 백신별 고위험군 또는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표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군 접종은 해당 사업대상 연령 범위 내에서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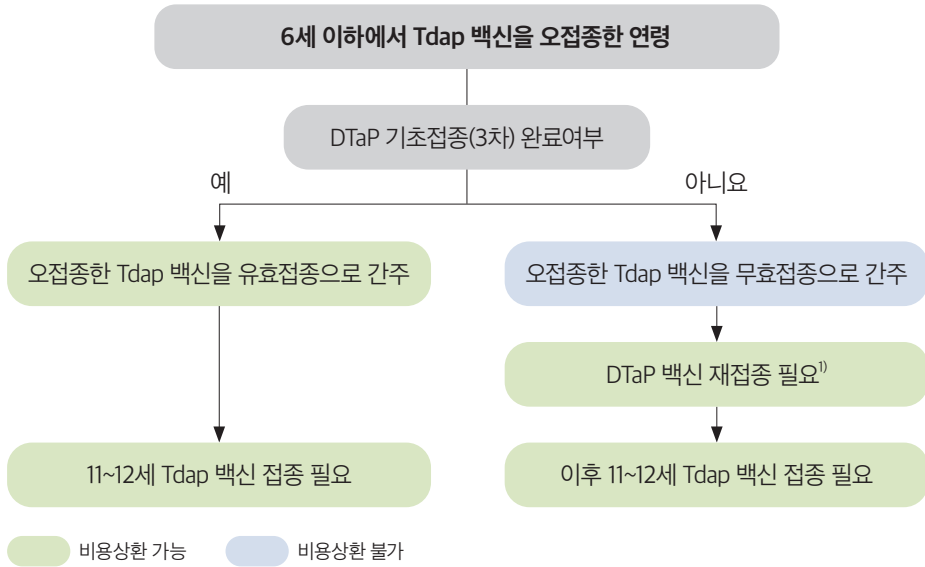
[참고] DTaP 및 Tdap 백신 지연접종 관련 비용상환 기준

7세 이상에서 DT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 DTaP 접종 완료: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4세 이후 DTaP 4차 접종자(5차 접종 생략 대상)

6세 이하에서 Td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 DTaP 백신은 7세 미만에서만 접종 가능(비용상환 가능) - DTaP 기초접종 완료: DTaP 3차 접종 완료자

7~10세에서 Td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Tdap 및 Td 백신으로 접종 완료

※ 10세에 Tdap 백신 접종 시 11~12세 Tdap 백신 접종은 생략할 수 있으나, 접종시에도 비용상환 가능
 - DTaP 접종 완료: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4세 이후 DTaP 4차 접종자(5차 접종 생략 대상)

(2).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종 감염병 : 2013년~2014년 출생자가 2026년 조혈모세포이식을 한 경우 ※ 연도별 기준 지원대상: 2023년: 2010년~2011년 출생자, 2024년: 2011년~2012년 출생자, 2025년: 2012년~2013년 출생자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 조혈모세포이식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 - 예외적용 대상인 경우, 조혈모세포이식일로부터 3년(36개월 하루 전)까지 예방접종 일정을 다시 시작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 기간이 연장되며, 이 범위에는 폐렴구균 고위험군 대상도 포함됨 ※ 예시 : 2013년 출생아 2026년 3월 3일 조혈모세포이식 → 15종 감염병 접종 시 2029년 3월 2일까지 연장 2007년 출생아 2026년 3월 3일 조혈모세포이식 → 폐렴구균 접종 시 2029년 3월 2일까지 연장
HPV 상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시 상담비는 지원하지 않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종등록 시 의학적 소견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대분류 선택하여 이식일을 등록 후 비용신청 폐렴구균은 고위험군 지원 대상이 기존 12세 → 변경 18세(2026년 기준 2007.1.1. 이후 출생자)로 확대

※ 사업대상이 지원기간 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예방접종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백신	이식 후 첫 접종시기	기초접종		추가접종
		횟수	최소접종 간격	
불활성화 백신				
B형간염 ¹⁾	6개월	3	1차-2차 4주, 2차-3차 8주 (1차-3차 16주)	-
DTaP/Tdap/Td ²⁾	6개월	3	1차-2차 4주, 2차-3차 6개월 ²⁾	- ²⁾
폴리오 ³⁾	6~12개월	3	4주	- ³⁾
폐렴구균 ⁴⁾	3~6개월	3	4주	이식 후 ≥12개월
Hib	6~12개월	3	4주	-
인플루엔자 ⁵⁾	4~6개월	1	-	매년 ⁵⁾
A형간염	6~12개월	2	6개월	-
일본뇌염 ⁶⁾	6~12개월	2	1차-2차 4주	2차 접종 후 ≥11개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⁷⁾	6~12개월	3	1차-2차 4주, 2차-3차 12주 (1차-3차 5개월)	-

백신	이식 후 첫 접종시기	기초접종		추가접종
		횟수	최소접종 간격	
약독화 생백신				
MMR ⁸⁾	24개월	2	4주	-
수두 ⁹⁾	24개월	2	13세 미만 : 3개월 13세 이상 : 4주	-

- 1) B형간염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부터 0, 1, 6개월 일정으로 접종한다.
- 2) 나이에 관계없이 DTaP 백신으로 3회 접종할 수 있으며 7세 이상에서는 Tdap 백신 1회 접종 후 Td 백신 2회 접종으로도 가능하다. 1차와 2차 접종 사이의 최소간격은 4주이며, 2차와 3차 접종 사이의 최소 간격은 최소 6개월 간격을 둔다. 단, 7세 미만의 소아는 2차와 3차 접종은 최소 4주 간격을 두며, 4차 접종을 3차 접종과 최소 6개월 간격을 두어 접종한다. 이후 연령에 따라 권장 접종 횟수로 접종한다.
- 3) 폴리오는 4세 이전 접종하는 경우 연령에 따른 접종 스케줄을 따르며, 4세 이후 3차 접종 시 2차와 6개월 이상의 간격을 준수하여 4차를 생략한다.
- 4) 폐렴구균에 대한 기초접종은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접종하며 필요한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3개월 후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추가접종은 폐렴구균 다당백신으로 접종하되 이식편대숙주병이 있으면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접종한다.
- 5)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식 4개월 후부터 접종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4주 간격으로 1회 더 접종하여야 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받는 생후 6개월~9세 미만의 소아는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받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으로 매년 접종하여야 한다.
- 6)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후 6~12개월부터 0, 1, 12개월 일정으로 3회 접종한다. 1차와 2차 접종 사이의 최소 간격은 4주이며, 2차와 3차 접종 사이 최소 6개월 간격을 두어 접종한다. 이후의 추가접종은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의 일반적인 접종 일정을 따른다. 3차 접종이 4세 이후에 시행되었다면 12세에 1회 추가 접종하여 완료한다. 10세 이후에 3번째 또는 4번째 접종을 하였다면 더 이상 추가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완료한다. 11세 이후 처음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0, 1, 12개월의 3회 접종으로 완료한다.
- 7)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6~12개월 이상 경과한 후의 11세~26세의 여성에게 0, 2, 6개월 (HPV 4가 또는 9가)의 일정으로 접종한다.
- 8) MMR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24개월 이후에 환자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하여야 하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의 접종을 추천한다.
- 9) 수두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전 수두에 대한 면역의 증거가 없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서 이식 2년 후, 이식 편대 숙주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면역억제제 중단 1년 후, 마지막 IVIG 투여 후 최소 8개월이 지나서,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한다(2-1-8 원칙).



부록

1. 법령

2. 서식

3. 주요 민원

- 1) 사업 운영
- 2) 교육
- 3) 감염병별 주요 민원
- 4) 부대사업 관리 문의
- 5) 비용상환
- 6) 백신 수급·관리
- 7) 이상반응
- 8)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1 법령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 실시	149p
접종내역 사전 확인	150p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150p
예방접종 업무 위탁	150p
다음 접종 사전 안내	151p
예방접종 기록 및 시스템 구축·운영	151p
비용 부담	152p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152p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158p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160p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	162p

1

법령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 실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3호)」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접종내역 사전 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 ①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장과 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한다는 사실
2. 예방접종 내역에 대한 확인 방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예방접종 업무 위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를 위탁)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외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음 접종 사전 안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예방접종 기록 및 시스템 구축·운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보건소장등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2. 예방접종의 내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예방접종 명칭

나. 예방접종 차수

다. 예방접종 연월일

라. 예방접종에 사용된 백신의 이름

마. 예진의사 및 접종의사의 성명

제21조의6(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열람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

비용 부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특별자치도·사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사·군·구가 부담한다.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65조(사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사도가 부담한다.

5.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제66조(사도가 보조할 경비)

사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사·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사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역학조사)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인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 ①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②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자 또는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7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76조(위임 및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가.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 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다.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다.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다. 시·도역학조사반 및 시·군·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훈련

- 라.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 마.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 바. 시·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2. 시·도 역학조사반

-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 나.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다.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 라.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 마. 시·군·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3. 시·군·구 역학조사반

-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시·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 다.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 ②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단체)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피해조사반”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피해조사반은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③ 피해조사반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④ 피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2. 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 ⑤ 피해조사반원은 제4항에 따라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⑥ 질병관리청장은 피해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피해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1.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가. 지급 기준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제3항 및 이 영 제31조제3항·제4항에 따른 보상(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9조제1호가목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보상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신고서 또는 발생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제1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
2.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및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3. 제4급감염병의 발생 및 사망의 보고: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7일 이내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말한다.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가. 사망진단서
 - 나. 부검소견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 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가. 의뢰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나.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1.]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2023. 11. 1., 제정.]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8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의료안전예방국장으로 한다.
 1. 의료안전예방국장
 2.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3.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
 5.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비용)

-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 시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 의료기관이 책임진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와 통보)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 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 ① 위탁 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10호, 2020.9.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6호, 2023.11.0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시행 2026. 5. 6.] [질병관리청고시 제2026-8호, 2026. 5. 6., 일부개정]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8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질병 및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한 질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예방접종(이하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2. 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

제3조(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진표)

-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이하 "본인"이라 한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는 예방접종 실시 전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예방접종 예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실시)

-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장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과 표준접종시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보건소등 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대상에게 제3조에 따른 표준접종시기 외 접종을 한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의사항)

- ① 보건소장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본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본인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
 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 내역
 3.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예진표 및 접종 금기사항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가능 여부
- ② 보건소장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본인등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1.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2.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제7조(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받거나 진단한 경우 법 제11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8조(효과평가)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문서의 작성과 보관)

- ① 보건소등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에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관하거나,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과 보관을 한 것으로 본다.
- ② 보건소등은 법 제28조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관한 경우 기록한 것으로 보며,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기록 및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타 예방접종 권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예방접종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권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제2025-3호, 2025.03.07.)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6-1호, 2026.01.02.)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6-8호, 2026.05.06.)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B형간염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0개월, 1개월, 6개월에 3회 접종을 실시한다.
 - 다만,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을 실시
 - ①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2차, 3차 접종은 생후 1개월, 6개월에 실시한다.
 - ②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모체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능한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을 백신을 접종한 위치와 다른 부위에 접종한다. 이후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은 생후 1개월, 6개월에 실시한다.

② 결핵(피내용)

- 대상
 -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에 1회 접종을 실시한다.

③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DTaP), 4개월(DTaP), 6개월(DTaP)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한다.
 - 생후 15~18개월(DTaP), 4~6세(DTaP), 11~12세(Tdap)에 3회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단,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Tdap 백신을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 백신으로 대체 가능)

④ 폴리오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한다.
(단,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18개월까지 접종 가능)
 - 4~6세에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대상
 -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 및 12세 이하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고위험군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한다.
 -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⑥ 폐렴구균

- 대상
 - 생후 59개월 이하 영유아 및 18세 이하 폐렴구균 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표준접종시기
 - 영유아는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으로 1회 접종을 실시한다.

⑦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대상
 - 생후 8개월 0일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사람-소 재배열 백신은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사람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2개월, 4개월에 접종을 실시한다.

⑧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2회 접종을 실시한다.

⑨ 수두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을 실시한다.

⑩ A형간염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을 실시한다.

⑪ 일본뇌염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개월~23개월 중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생후 24~35개월(기초 1차 접종 1년 후), 6세, 12세에 3회 추가 접종을 권장한다.
 - 햄스터 신장세포 유래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을 실시한다.

⑫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대상
 - 12세~26세 여성 및 12세 남성
 - * 단, 18~26세 여성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함
- 표준접종시기
 - 12~14세 여성은 0개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한다.
 - 15~26세 여성은 0개월, 2개월, 6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을 실시한다.

⑬ 인플루엔자

- 대상
 - 65세 이상
 - 생후 6개월~14세
 - 임신부
- 표준접종시기
 - 매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시기 내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한다.

⑭ 장티푸스

- 대상
 - 다음의 대상자 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 ①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 ②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 ③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표준접종시기
 - Vi polysaccharide 백신은 2세 이상에서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경구용 생백신은 5세 이상에서 격일로 3회 투여를 실시한다.
 - 장티푸스에 걸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⑮ 신증후군출혈열

- 대상
 - 다음 대상자 중 위험 요인 및 접종환경들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 ①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 ②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 ③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 표준접종시기
 -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뒤에 3차 접종을 실시한다.



2 서식

[서식 I-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167p
[서식 I-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169p
[서식 I-3]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170p
[서식 I-4]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확인증	171p
[서식 I-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172p
[서식 I-6]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173p
[서식 I-7]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74p
[서식 I-8]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확인증	175p
[서식 I-9]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176p
[서식 I-10]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177p
[서식 I-11]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178p
[서식 I-12]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통지서	178p
[서식 I-13]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179p
[서식 I-14]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	184p
[서식 I-15]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 -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현황 조사표	189p
[서식 I-16]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191p
[서식 I-17]	코로나19 예방접종 방문점검표	194p
[서식 I-18]	코로나19 백신보관용 냉장고 체크리스트	196p
[서식 I-19]	예방접종 교정시설 부속의원 자율점검표(교정기관용)	197p
[서식 I-20]	백신 입고 기록 양식(교정기관용)	199p
[서식 I-21]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 기록 일지	200p
[서식 I-22]	코로나19 백신 수령 및 확인 양식[위탁의료기관]	201p
[서식 I-23]	코로나19 백신 입고기록 양식	202p
[서식 I-24]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양식	203p
[서식 I-25]	방문접종 등을 위한 백신 관리대장 양식	204p
[서식 I-26]	백신별 인식표	205p
[서식 I-27]	오늘의 백신(접종기관용) - 유효기한백신종류 안내	206p
[서식 I-28]	다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체크리스트	207p
[서식 I-29]	예방접종 예진표	208p
[서식 I-3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210p
[서식 I-3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212p

2

서식

[서식 1-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위탁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수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제2조	“수탁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사용 [] 미사용	※ 사용사업체명: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 계약의 해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탁기관〉 의료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상환용 통장사본 1부, 사업 참여 확인증	수수료 없음
------	----------------------------	--------

210mmx27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⑦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범위는 사업별 '사업 참여 확인증' 제출로 확인하며, 참여 내용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현행화하여야 한다.

[서식 1-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전자(또는 서면)-○○-○○○호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 1. 의료기관명 :
- 2. 대 표 자 :
- 3. 소 재 지 :
- 4.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 :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서식 I-3]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		전화	
주소 (소재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시행 백신정보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시행여부	
B형간염	HepB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결핵	BCG(피내용)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Tdap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Td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폴리오	IPV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B형간염	DTaP-IPV-Hib-HepB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폐렴구균	PCV15(단백결합백신 15가)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PCV20(단백결합백신 20가)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PPSV23(다당백신 23가)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로타바이러스	RV1(로타릭스)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RV5(로타텍)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수두	VAR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A형간염	HepA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일본뇌염	IJEV(불활성화 백신-베로세포 유래)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IJEV(약독화 생백신-씨디제박스)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인플루엔자	IIV(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 3가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	
		대표자	(서명)

[서식 1-4]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확인증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		전화	
주소 (소재지)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백신 정보			
대상 감염병	사업 대상	백신 종류	시행 여부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IIV(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 3가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임신부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폐렴구균	65세 이상	PPSV23(0.5ml)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p>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p>			
<p>20</p>			
대표자		(서명)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서식 I-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소재지)			
<p>1.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참여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사업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2.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시행</p>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시행 백신 정보			
대상 감염병	백신 종류	시행 여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백신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p>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p>			
<p>20</p> <p>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서식 I-6]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소재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정보			
항 목	시 행 여 부		
면역글로불린(HBIG) 투여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B형간염 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항원-항체검사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p>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p>			
<p>20</p> <p>대표자 (서명)</p>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서식 I-8]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확인증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		전화	
주소 (소재지)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정보			
항 목	시 행 여 부		
HPV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 시행 * 건강상담은 12세 여성 대상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p>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p>			
<p>20 . . .</p> <p>대표자 (서명)</p>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서식 1-9]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중 [□가다실, 또는 □서바릭스] 공급에 대한 협약이다.

제2조(공급방법)

“갑”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수행을 위해 “을”에게 위의 백신공급을 요청하고, “을”은 “갑”이 요청한 백신을 지정한 장소에 직접 운반·납품한다.

제3조(보관 및 수송)

“을”은 백신의 보관 및 수송시에는 「생물학적제제의 제조·판매관리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제4조(백신비 지급)

“갑”이 예방접종 실시 후 보건소에 비용상환을 요청하고,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결정된 건은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정부 조달계약에 의해 결정)로 지급을 하며, “을”은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상환 받는다.

※ 보건소의 지급심사 결과는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갑”은 “을”에게 백신비를 직접 지급한다.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로 결정된 건(중복접종, 이른접종 등)

접종자의 과실로 인해 백신 오염이 발생하여 예방접종에 사용하지 못하게된 경우

“갑”이 공급 요청하고 “을”이 납품을 완료한 백신 중 유효기간이 도래시까지 접종하지 못한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백신은 국가에서 비용상환이 불가하므로, “갑”은 최근 접종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소진 가능한 범위내에서 “을”에게 백신 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백신공급기관 변경)

“갑”이 백신공급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을”에게 변경의사를 통보해야하며, 백신공급기관이 변경 승인된 시점에 “을”이 공급한 백신이 남아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잔여 백신에 대한 백신비를 지급한다.

제6조(지원사업 수행)

“갑”은 이 협약을 체결한 후 이 협약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로부터 위 내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기타)

동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운영세칙)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주 소:

연 락 처: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 표 자:

(인)

“을” 백신공급기관

주 소:

연 락 처:

회 사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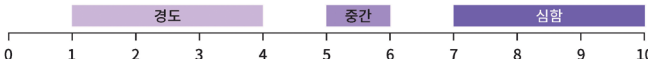
(인)

[서식 I-10]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건강상담에 동의한 경우 아래 문항에 표시하면서 사춘기의 특징적인 신체 발달에 대해 알아보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상담 대상자 이름: _____ 생년월일: _____

1 건강상담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2번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래 2~5번 문항은 표시하지 마세요.)
2 초경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_____ 년 _____ 월)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5번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3 월경력 확인	1. 최근 월경 시작일: _____ 2. 월경 주기: <input type="checkbox"/> 규칙적 <input type="checkbox"/> 불규칙적 3. 월경 기간: <input type="checkbox"/> 2-7일 <input type="checkbox"/> 2일 미만 혹은 8일 이상
4 월경 관련 증상	1. 월경통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월경통이 있다면 (_____)점 (매우 심한 경우 10점)  ·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 월경통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진통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복용 시 효과가 있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2. 월경 양 (해당사항 모두 표시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1-2시간 마다 생리대를 바꿔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밤에 생리대를 바꾸기 위해 잠에서 깬다. <input type="checkbox"/> 일주일 이상 월경이 지속된다. <input type="checkbox"/> 월경 양이 많아 학교생활이 힘들다. <input type="checkbox"/> 월경 때 피곤하고 어지럽거나, 숨이 찬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위 내용 모두 해당사항 없다. 3. 월경 주기: <input type="checkbox"/> 21~45일 <input type="checkbox"/> 21일 미만 혹은 46일 이상
5 유방 발달	아래는 유방 발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골라주세요. <input type="checkbox"/> 1단계: 유방이 발달하지 않았음 <input type="checkbox"/> 2단계: 멧덩어리가 생기고 만져짐 <input type="checkbox"/> 3단계: 유방이 점점 커지고 유륜(젖꼭지 주위의 피부보다 진하고 둥근 부분)도 넓어짐 <input type="checkbox"/> 4단계: 커진 유방 위로 유륜이 언덕처럼 튀어나옴 <input type="checkbox"/> 5단계: 튀어나왔던 유륜이 유방 전체와 같은 면으로 들어가고 젖꼭지만 튀어나옴
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감염증 예방 접종력	1. 접종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접종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이전에 접종한 적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나요? <input type="checkbox"/> 있음 (☞ 어떤 증상이었나요?) <input type="checkbox"/> 없음

아래 문항은 상담 후 의사 선생님이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확인 내용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2차 성징과 초경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였음	<input type="checkbox"/>
2	초경 여부를 확인하였음	<input type="checkbox"/>
3-1	(초경을 한 경우라면) 월경과다 여부를 확인하였음	<input type="checkbox"/>
3-2	비정상 자궁출혈(월경 양, 간격 등) 여부를 확인하였음	<input type="checkbox"/>
3-3	월경통 여부를 확인하였음	<input type="checkbox"/>
4	(초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2차 성징 발현 여부를 확인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작성일: _____ 의료기관명: _____ 의사성명: _____ (서명)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서식 I-13]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 점검표

(보건소 제출용)

※ 의료기관 대표자께서 점검하시고 점검결과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등록사항													
요양기관번호	의료기관명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소재지)													
대표자	전화												
FAX번호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25%;">총 인원: 명</td> <td style="width: 25%;"><input type="checkbox"/> 의사: 명</td> <td style="width: 25%;"><input type="checkbox"/> 간호조무사: 명</td> <td style="width: 25%;"></td> </tr> <tr> <td></td> <td><input type="checkbox"/> 간호사: 명</td> <td><input type="checkbox"/> 전산요원: 명</td> <td></td> </tr> <tr> <td></td> <td><input type="checkbox"/> 행정요원: 명</td> <td><input type="checkbox"/> 백신관리 전담자: 명</td> <td></td> </tr> </table>	총 인원: 명	<input type="checkbox"/> 의사: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조무사: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명	<input type="checkbox"/> 전산요원: 명			<input type="checkbox"/> 행정요원: 명	<input type="checkbox"/> 백신관리 전담자: 명	
총 인원: 명	<input type="checkbox"/> 의사: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조무사: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명	<input type="checkbox"/> 전산요원: 명											
	<input type="checkbox"/> 행정요원: 명	<input type="checkbox"/> 백신관리 전담자: 명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참여구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input type="checkbox"/>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input type="checkbox"/>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 예방 접종 시행 여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비용 지원												
	<input type="checkbox"/> B형간염 <input type="checkbox"/> BCG(피내) <input type="checkbox"/> DTaP <input type="checkbox"/> Tdap <input type="checkbox"/> Td <input type="checkbox"/> IPV <input type="checkbox"/> Hib <input type="checkbox"/> DTaP-IPV <input type="checkbox"/> DTaP-IPV/Hib <input type="checkbox"/> DTaP-IPV-Hib-HepB <input type="checkbox"/> 폐렴구균 (PCV15, 단백결합) <input type="checkbox"/> 폐렴구균 (PCV20, 단백결합) <input type="checkbox"/> 폐렴구균 (PPSV23, 다당) <input type="checkbox"/> 로타바이러스 (RV1, 로타릭스) <input type="checkbox"/> 로타바이러스 (RV5, 로타텍) <input type="checkbox"/>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 (베로세포 유래) <input type="checkbox"/> 일본뇌염 약독화생백신(씨디제박스) <input type="checkbox"/> A형간염 <input type="checkbox"/> 인플루엔자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기타 예방접종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일반사항 및 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요
1. 일반사항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또는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인증서」를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2)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백신을 사전에 구비해둔다.		
3)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지원내용 및 접종실시 기준 등을 숙지하고 있다.		
4)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국가예방접종사업」 내용을 자세히 안내한다.		
5)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비치하고 있다.		
6) 보건소가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하여 점검 가능 함을 알고 있다. ※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확인 등을 위해 재방문 점검 할 수 있음		
7) 예방접종 예진의사 부재* 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 예진의사 휴가 등으로 의료기관내 예방접종 예진이 불가능한 전반적인 상황		
8) 현재,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에 의과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의사가 재직하고 있다.		
9)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은 예방접종 예진이 가능한 의사가 모두 퇴사하여 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그 즉시 보건소로 통보하여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해야 함을 알고 있다.		
2. 예방접종 실시 전 준비사항		
1) 예방접종 예진표를 충분히 비치(보유)하고 있다.		
2)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 보호자 없이 방문한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동의서를 받는 것이 원칙임		
3)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으로 접종 대상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예진시, 예방접종 시행 및 예방접종 일정안내 문자서비스 수신을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한다.		
5)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예방접종 예진표를 확인하면서 접종대상자를 예진하고 진찰소견 등을 기록한다.		
6) 예방접종 실시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예방접종수첩 등으로 반드시 피접종자의 과거 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을 설명한다.		
8)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제공한다.		
3. 예방접종 실시		
1) 준비된 백신의 유효기간, 처방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 백신을 접종하기 전 손을 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한다.		
3)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와 투여방법을 설명한다.		
4) 정확한 접종부위, 접종용량,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접종한다.		
5) 주사 후 마른 솜이나 거즈로 주사부위를 뺀 부위를 가볍게 수초간 눌러준다.		
4. 예방접종 후		
1)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호자 신고제도를 설명한다.		
2)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다음 예방접종일을 안내하고, 20~30분 동안 접종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이상반응을 관찰한다.		
5. 기록보존		
1) 예방접종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한다. ※ 보관기간: 5년		
2) 접종대상자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휴대전화번호 등)은 수정한다.		
3) 예방접종기록은 접종 당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전산보고)하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접종기록을 작성하고 제출		

6. 비용상환			
1) 국가예방접종비용은 전액 무료로 피접종자에게 추가 진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2) 접종 후 전산등록을 지연하여 중복접종으로 등록했다면 먼저 전산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상환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참여 백신의 시행정보가 변경되면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현행화하여 비용상환 신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고 있다.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백신 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하고 있다.			
2) 백신구입 또는 입고 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한다. ※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보관기간: 5년			
3) 백신보관 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을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4) 「백신전용 냉장고」 표시 및 「백신의 보관관리」 내용을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5) 백신보관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성애가 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6) 냉장고 내부의 안쪽 또는 외부에 온도계를 부착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7) 백신은 동결되지 않도록 백신 보관온도를 2~8℃ 유지한다.			
8)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한다.			
9) 과거 5년 동안의 온도기록지를 보관하고 있다. ※ 최소 5년 이상 보관			
10) 주기적으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은 냉장고내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백신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11)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분리한 후,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있다.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12세 남성 청소년 및 13세 이상 여성은 HPV 예방접종만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다. ※ 건강상담 미제공			
2) 대상자의 1차 접종 시기에 따라 총 지원 횟수가 달라짐을 알고 있다.			
3)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중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4)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건강상담과 예방접종은 반드시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두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없음을 알고 이행하고 있다.			
5)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를 비치하고 있으며, 상담 전 대상자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6) 상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진료실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7)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바탕으로 상담흐름도(Flowchart)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8) 상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향후 자궁경부암 검진의 필요성 등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9)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의 의료인 항목을 작성하고 있다.			
10) 상담 시 사춘기 성장발달과정과 무월경·월경이상·월경통 등 여성 청소년에게 흔히 발생하는 월경 관련 질환 등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1) 상담 대상자가 작성한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를 보관하고 있다. ※ 보관기간: 5년			
12) 상담 대상자가 상담을 거부하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력 등록 시 '상담안함' 항목을 체크하고 있다.			
13)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이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산 시스템 또는 자격 증명서류를 확인 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14) HPV 예방접종 및 상담은 전액 무료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일반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요
1) 사업내용(대상, 기준, 예방처치 일정 등)을 잘 알고 있다.		
2) B형간염 산모가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에게 사업 내용과 중요성, 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리플렛 등 홍보물을 비치하여 안내 시 활용하고 있다.		
5) 사업대상 산모에게 사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구득하고, 보관하고 있다. ※ 보관기간: 5년(단, 예방처치 관리 일정이 5년 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관리 종료 시까지 추가보관)		
6) 보호자에게 받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산모 외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7) 보호자에게 받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산모 외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 산모검사 결과지는 시스템 업로드		
8) 기초접종, 항원·항체 정량검사, 재접종, 재검사 등 권장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함을 알고 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면역글로불린 투여 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요
1) 출생 후 12시간 내 HBIG 및 B형간염 백신 접종을 부위를 달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2) 출생 후 12시간 내 투여하는 HBIG과 B형간염 백신 접종은 분만시기(주말/심야 등)에 관계없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3) 체중 2KG 미만인 저체중아에게도 출생 12시간 내에 HBIG 투여를 실시하고 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접종 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요
1) 미숙아(출생시 체중이 2KG 미만)는 총 4회 접종이 필요함을 알고 있으며,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다.		
2) B형간염 백신 접종은 대퇴부 전외측에 실시하고 있다.		
3) 접종/검사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과거 내역 및 예방처치일정을 확인하여 다음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3차 접종 시 기초접종 완료 후 면역 획득여부 확인을 위해 생후 9~15개월에 항원·항체 검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항원항체 검사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요
1) 대상자의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는 권장되는 정량검사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2) 면역획득 확인을 위한 1차 항원·항체 검사는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기 위하여 생후 9개월 이후에 실시하고 있다. ※ 1차 항원·항체 검사 권장시기: 생후 9~15개월		
3) 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결과에 따른 다음 일정(사업 종료/재접종/재검사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4) 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결과지를 업로드하고 있다.		
5) 감염으로 인한 사업종료 대상(보호자)에게 배포할 감염관리 안내문(보호자용)을 비치하여,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 등에 활용하고 있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요
1) 사업내용(대상, 내용, 접종 실시기준 등)을 잘 알고 있다.		
2)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후 안내문'을 숙지하도록 안내한다.		
3)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PPSV23)은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시행됨을 알고 있다.		
4)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PPSV23) 폐기 최소화를 위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또는 지자체가 설정한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소진이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에 사전 재분배 등을 요청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서식 I-14]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방문 점검 표

등록사항			
요양기관번호		의료기관명	
대표자		사업참여일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소재지)			
휴대폰번호		전화	
FAX번호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 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의사 :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조무사 :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 명 <input type="checkbox"/> 전산요원 : 명 <input type="checkbox"/> 행정요원 : 명 <input type="checkbox"/> 백신관리 전담자 : 명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참여구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input type="checkbox"/>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input type="checkbox"/>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 예방 접종 시행 여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비용 지원	
		<input type="checkbox"/> B형간염 <input type="checkbox"/> BCG(피내) <input type="checkbox"/> DTaP <input type="checkbox"/> Tdap <input type="checkbox"/> Td <input type="checkbox"/> IPV <input type="checkbox"/> Hib <input type="checkbox"/> DTaP-IPV <input type="checkbox"/> DTaP-IPV/Hib <input type="checkbox"/> DTaP-IPV-Hib-HepB <input type="checkbox"/> 폐렴구균 (PCV15, 단백결합) <input type="checkbox"/> 폐렴구균 (PCV20, 단백결합) <input type="checkbox"/> 폐렴구균 (PPSV23, 다당) <input type="checkbox"/> 로타바이러스 (RV1, 로타릭스) <input type="checkbox"/> 로타바이러스 (RV5, 로타텍) <input type="checkbox"/> MMR <input type="checkbox"/> 수두 <input type="checkbox"/>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베로세포 유래) <input type="checkbox"/> 일본뇌염 약독화생 백신(씨디제박스) <input type="checkbox"/> A형간염 <input type="checkbox"/> 인플루엔자	
		<input type="checkbox"/>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input type="checkbox"/> HPV 4가	
		<input type="checkbox"/>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input type="checkbox"/> HBIG 투여 <input type="checkbox"/> B형간염 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항원-항체 검사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input type="checkbox"/> 폐렴구균 (PPSV23, 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인플루엔자(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인플루엔자(임신부)	
기타 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BCG(경피) <input type="checkbox"/> 일본뇌염(약독화 생백신-세포배양(이모젠티)) <input type="checkbox"/> HPV 9가		

공통 점검 사항					
일반사항 및 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매우 잘함	잘함	미비함	매우 미비함	
1. 일반사항					
1)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해야함을 알고 있다.					
2) 예방접종 시행하는 의사 모두 국가예방접종 위탁 계약 체결 및 갱신 전 해당 교육을 수강하였다.					
3)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또는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인증서」를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있다.					
4)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백신 정보와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표시된 백신 정보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5)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에 명시된 백신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 접종시행 백신항목 변경 시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수정 제출					
6)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비치하고 있다.					
7) 예방접종 예정의사 부재* 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 예정의사 휴가 등으로 의료기관내 예방접종 예정이 불가능한 전반적인 상황					
8) 현재, 한방치과병원 및 한의사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의과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의사가 재직하고 있다. ※ 의료기관개설(변경)허가증 및 의사면허증 등으로 확인					
9) 한방치과병원은 예방접종 예정이 가능한 의사가 모두 퇴사하여 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그 즉시 보건소로 통보하여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해야 함을 알고 있다.					
2. 예방접종 실시 전 준비사항					
1) 예방접종 예진표를 비치(보유)하고 있다.					
2)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 보호자 없이 방문하여 받은 미성년자 예방접종 시행동의서 포함					
3)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예방접종 실시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예방접종수첩 등으로 반드시 피접종자의 과거 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을 설명하고 있다.					
6)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고 있다.					
7)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의료기관에 머물게 하여 이상반응을 관찰하고 있다.					
8)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다음 예방접종일을 안내하고 있다.					
9)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호자 신고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10)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 을 제공하고 있다.					
3. 기록보존					
1)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한다. ※ 보관기간 : 5년					
2) 예방접종기록은 당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전산보고)하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접종기록을 작성하고 제출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4. 비용상환 관련 점검사항					
1) 국가예방접종비용은 전액 무료로 피접종자에게 추가 진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2) 접종 후 전산등록을 지연하여 중복접종으로 등록했다면 먼저 전산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상환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참여중인 백신의 시행여부가 변경되면, 변경된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현행화 하고 있다.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매우 잘함	잘함	미비함	매우 미비함	
1) 백신 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하고 있다.					
2) 백신 구입 또는 입고 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보관하고 있다. ※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보관기간: 5년					
3) 백신보관 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은 보관하지 않는다.					
4) 「백신전용 냉장고, 표시 및 「백신의 보관관리」 내용을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5) 백신보관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성애가 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6) 냉장고 내부의 안쪽 또는 외부에 온도계를 부착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 시 사용될 여분 온도계 구비, 즉시 교체 필요					
7) 백신은 동결되지 않도록 백신보관 온도를 2~8℃ 유지한다.					
8)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한다.					
9) 과거 5년 동안의 온도기록지를 보관하고 있다. ※ 최소 5년 이상 보관					
10) 주기적으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은 냉장고 내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백신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11)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분리한 후,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있다.					
사업별 점검사항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매우 잘함	잘함	미비함	매우 미비함	
1) 연령별로 지원하는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대상, 내용, 접종 실시기준 등					
2)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를 비치하여 제공하고 있다.					
3) 상담 전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를 대상자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4)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을 위한 의료인용 상담 참고자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5)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예방접종과 상담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6) 상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진료실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7)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바탕으로 상담흐름도(Flowchart)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8) 상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향후 자궁경부암 검진의 필요성 등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9) 상담 시 사춘기 성장발달 과정과 무월경·월경이상·월경통 등 여성 청소년에게 흔히 발생하는 월경 관련 질환 등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0)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의 의료인 항목을 작성하고 있다.					

11) 대상자가 상담을 거부하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력 등록 시 '상담안함' 항목을 체크하고 있다.					
12)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를 예진표와 함께 보관하고 있다. ※ 보관기간: 5년					
13) HPV 예방접종 및 상담은 전액 무료로 시행됨을 알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14)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이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전산 시스템 또는 자격서류를 확인 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매우 잘함	잘함	미비함	매우 미비함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리플렛 등 홍보물을 충분히 보유하고, 사업 안내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2) HBsAg 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가 사업대상임을 알고 보호자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접종/검사 중요성, 일정 등)을 하고 있다.					
3) 사업 참여 산모에게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구득하고, 보관하고 있다. ※ 보관기간: 5년(단, 예방처치관리 일정이 5년 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관리 종료시까지 추가 보관)					
4) 보호자에게 받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산모 외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5) 기초접종, 항원-항체 정량검사, 재접종, 재검사 등 권장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6) 출생 후 12시간 내 HBIG 투여와 B형간염 백신 접종을 부위를 달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7) 사업에서 정의하는 미숙아(출생시 체중 2KG 미만)는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총 4회의 접종을 접종하고 있다.					
8) 3차 접종 시 기초접종 완료 후 면역 획득여부 확인을 위해 생후 9~15개월에 항원-항체 검사를 진행하도록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9) 면역획득 확인을 위한 1차 항원-항체 검사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생후 9개월 이후에 정량검사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 1차 항원항체 검사 권장시기: 생후 9~15개월					
10) 접종/검사 후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한다(전산등록 시 검사결과지는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11) 감염으로 인한 사업종료 대상(보호자)에게 배포할 감염관리 안내문(보호자용)을 비치하여, 추가감염을 예방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 등에 활용하고 있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매우 잘함	잘함	미비함	매우 미비함	
1) 사업내용(대상, 내용, 접종 실시기준 등)을 잘 알고 있다.					
2)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후 안내문'을 숙지하도록 안내한다.					
3)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PPSV23)은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시행됨을 알고 있다.					
4)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PPSV23) 폐기 최소화를 위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또는 지자체가 설정한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소진이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에 사전 재분배 등을 요청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매우 잘함	잘함	미비함	매우 미비함	
1) 해당절기 사업 내용(대상, 기간, 접종 실시기준 등)을 잘 알고 있다.					
2) 65세 이상은 연령별 사업기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3)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는 사업기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4)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인플루엔자 사업은 백신 공급 방식 및 사업시기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점검결과	내용
종합 의견	<input type="checkbox"/> 전체적으로 양호	
	<input type="checkbox"/> 미흡사항 현장조치 완료	
	<input type="checkbox"/> 재점검 필요	
		점검일 20 . . .
		점검자 (서명)

[서식 1-15]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백신보관 전용냉장고 현황 조사표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방문 점검표

-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현황 조사표 -

등록사항			
요양기관번호		의료기관명	
대표자		사업참여일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 (소재지)			
휴대폰번호		전화	
FAX번호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 인원: 명	<input type="checkbox"/> 의사: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조무사: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명 <input type="checkbox"/> 전산요원: 명 <input type="checkbox"/> 행정요원: 명 <input type="checkbox"/> 백신관리 전담자: 명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참여구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input type="checkbox"/>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input type="checkbox"/>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 예방 접종 시행 여부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사업	예방접종비용 지원	
		<input type="checkbox"/> B형간염 <input type="checkbox"/> BCG(피내) <input type="checkbox"/> DTaP <input type="checkbox"/> Tdap <input type="checkbox"/> Td <input type="checkbox"/> IPV <input type="checkbox"/> Hib <input type="checkbox"/> DTaP-IPV <input type="checkbox"/> DTaP-IPV/Hib <input type="checkbox"/> DTaP-IPV-Hib-HepB <input type="checkbox"/> 폐렴구균 (PCV15, 단백결합) <input type="checkbox"/> 폐렴구균 (PCV20, 단백결합) <input type="checkbox"/> 폐렴구균 (PPSV23, 다당)	
		<input type="checkbox"/> 로타바이러스 (RV1, 로타릭스) <input type="checkbox"/> 로타바이러스 (RV5, 로타텍) <input type="checkbox"/> MMR <input type="checkbox"/> 수두	
		<input type="checkbox"/>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베로세포 유래) <input type="checkbox"/>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씨디제박스) <input type="checkbox"/> A형간염 <input type="checkbox"/> 인플루엔자	
	HPV 국가예방 접종사업	<input type="checkbox"/> HPV 4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input type="checkbox"/> HBIG 투여 <input type="checkbox"/> B형간염 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항원·항체 검사	
	성인 국가예방 접종사업	<input type="checkbox"/> 폐렴구균 (PPSV23, 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인플루엔자(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인플루엔자(임신부)	
	기타 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BCG(경피) <input type="checkbox"/> 일본뇌염(약독화 생백신-베로세포유래) <input type="checkbox"/> HPV 9가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현황		점검결과		비고
1) 보유대수		대		
* 위 문항의 보유대수에 따라 아래 항목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2) 구입시기	년 월		
	3) 용량	ℓ(리터)		
	4) 보유냉장고 종류	예	아니오	
	4-1) 전자온도계가 내장된 백신 보관 의료용 냉장고			
	4-2) 상업용 냉장고			
	4-3) 일반 가정용 냉장고			
	4-3-1) 문이 분리되어 있는 냉장/냉동 기능 냉장고			
	4-3-2) 냉장 기능만 있는 냉장고			
2	2) 구입시기	년 월		
	3) 용량	ℓ(리터)		
	4) 보유냉장고 종류	예	아니오	
	4-1) 전자온도계가 내장된 백신 보관 의료용 냉장고			
	4-2) 상업용 냉장고			
	4-3) 일반 가정용 냉장고			
	4-3-1) 문이 분리되어 있는 냉장/냉동 기능 냉장고			
	4-3-2) 냉장 기능만 있는 냉장고			

참고)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종류

자세한 사항은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2025) 참고



[서식 I-16]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율 점검표

(보건소 제출용)

※ 의료기관 대표자께서 점검하시고 점검결과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등록사항				
요양기관번호		기관명		
요양기관종별		전문과목 (표시과목)		
주소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 인원: 명	<input type="checkbox"/> 의사: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명 <input type="checkbox"/> 행정요원: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조무사: 명 <input type="checkbox"/> 전산요원: 명 <input type="checkbox"/> 백신관리 전담자: 명	
일반사항 및 예방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일반사항				
1)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관련 사업내용 및 예방접종실시 기준 등을 숙지하고 있다.				
2) 보건소가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하여 점검 가능 함을 알고 있다. ※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확인 등을 위해 재방문 점검 할수 있음				
3) 예방접종 예진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4) 예방접종 시행하는 의사 모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및 갱신 전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다.				
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함을 알고 있다.				
6) 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비치해야 함을 알고 있다.				
7) 백신관리 담당자(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였고, 담당자는 백신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				
2. 예방접종 실시 전 준비사항				
1) 예방접종 예진표를 비치할 공간을 준비했다.				
2) 사업 내용(사업 대상 및 사업 지원 기간 등)을 알고 있다.				
3)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함을 알고 있다.				
4)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으로 접종 대상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예진 시, 예방접종 시행 및 예방접종 일정안내 문자서비스 수신에 대해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함을 알고 있다.				
6)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예방접종 예진표를 확인하면서 접종대상자를 예진하고 진찰소견 등을 기록해야 함을 알고 있다.				
7) 예방접종 실시 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접종받은 자의 과거 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8)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해야 함을 알고 있다.		
9) 접종받으는 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제공해야 함을 알고 있다.		
3. 접종실시		
1) 접종 전 준비된 백신의 종류, 유효기간, 처방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함을 알고 있다.		
2)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		
3) 다인용 백신의 경우 접종 전 적정온도를 준수하여 분주해야 함을 알고 있다.		
4) 백신을 접종하기 전 개인 보호구 착용, 손 소독(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 등을 해야 함을 알고 있다.		
5)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와 투여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야 함을 알고 있다.		
6) 정확한 접종부위, 접종용량, 접종방법에 따라 접종해야 함을 알고 있다.		
7) 주사 후 마른 솜이나 거즈로 주사부위를 뺀 부위를 가볍게 수초 간 눌러줘야 함을 알고 있다.		
4. 접종 후		
1)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함을 알고 있다.		
2)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다음 예방접종일을 안내하고, 20~30분 정도 접종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관찰해야 함을 알고 있다.		
3) 접종 후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이상반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4) 급성 이상반응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의약품(에피네프린) 등이 구비되어 있다.		
5)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6) 필요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공해야 함을 알고 있다.		
5. 기록보존		
1)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함을 알고 있다. ※ 보관기간: 5년		
2) 필요 시 접종대상자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정해야 함을 알고 있다.		
3) 예방접종기록은 접종 당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전산보고)해야 함을 알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접종기록을 작성하고 제출		
6. 비용상환		
1)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은 전액 무료로 접종받으는 자에게 추가 진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2) 오접종이 발생한 경우 비용상환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요
1) 백신 관리 담당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하고 있다.		
2) 백신 수령 시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내용을 확인 후 보관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보관기간: 5년		
3)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은 보관하지 않고 있다.		
4)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표시, 「백신보관 현황」 내용,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처(관할 보건소 담당자, 장비수리업체)를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5) 백신보관 전용 냉장고의 내부온도는 외부에서 온도를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온도이탈 시 알람기능 등을 보유한 자동온도기록계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 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6) 온도계-자동온도기록계의 온도측정 센서는 백신을 보관하는 구역에 인접 설치하여 백신의 온도가 직접 측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7) 접종 기관 내 백신 보관 장비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장비 혹은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아이스박스, 냉매, 에어 캡, 여분의 온도계)을 구비하고 있다.		
8) 백신별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 백신별 보관 구역을 구분하여 유효기한 순으로 보관하고 있다.		

9)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한다.		
10) 주 1회 자동온도기록계의 온도이탈 알람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알람 수신자는 3명 이상 지정하고 있다.		
11) 주 1회 이상 백신보관 냉장고의 온도 변화를 검토하며, 온도 기록지를 보관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최소 5년 이상 보관		
12) 배송된 백신의 해동 후 유효기한을 인지하고 있으며, 유효기한을 경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을 알고 있다.		
<p>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점검자(대표자) (서명)</p>		

담당자 확인 (보건소 기재란)	종합의견 :
	직급 : 성명 : (서명)

※ 자율점검표 작성 내용이 거짓임이 확인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음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서식 I-17] 코로나19 예방접종 방문점검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 점검표

등록사항						
요양기관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참여일				
요양기관종별		전문과목 (표시과목)				
주소 (소재지)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 인원: 명	<input type="checkbox"/> 의사: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조무사: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명	<input type="checkbox"/> 전산요원:	명	
		<input type="checkbox"/> 행정요원:	명	<input type="checkbox"/> 백신관리 전담:	명	
일반사항 및 예방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매우 잘함	잘함	미비함	매우 미비함
1. 일반사항						
1)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관련 사업내용 및 예방접종 실시 기준 등을 숙지하고 있다.						
2) 보건소가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하여 점검 가능 함을 알고 있다. ※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확인 등 점검 여러 번 실시						
3) 예방접종 예진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충분히 보유할 예정이다.						
4) 예방접종 시행하는 의사 모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및 갱신 전 해당 교육을 수강하였다.						
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함을 알고 있다.						
6) 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비치해야 함을 알고 있다.						
7) 백신관리 담당자(부재시 대리자)가 지정되어 있고, 담당자는 백신 및 장비관리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2. 예방접종 관련사항						
1) 예방접종 예진표를 비치할 공간을 준비했다.						
2) 사업 내용(사업 대상 및 사업 지원 기간 등)을 알고 있다.						
3)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						
4) 다인용 백신의 경우 접종 전 적정온도를 준수하여 분주해야 함을 알고 있다.						
5) 백신을 접종하기 전 개인 보호구 착용, 손 소독(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 등을 해야 함을 알고 있다.						
6) 예방접종기록은 접종 당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전산보고)하여 필요시 접종내역 확인서를 출력해서 제공해야 함을 알고 있다.						
7) 접종받으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다음 예방접종일을 안내하고, 20~30분 정도 접종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관찰해야 함을 알고 있다.						

8) 예방접종 후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이상반응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9) 급성 이상반응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의약품(에피네프린) 등이 구비되어 있다.					
10)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매우 잘함	잘함	미비함	매우 미비함	
1) 백신 관리 담당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하고 있다.					
2) 백신 수령 시 생물학적제제등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내용을 확인 후 보관한다. ※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백신 인계인수증) 보관기간 : 5년					
3)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은 보관하지 않는다.					
4)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표식, 「백신보관 현황」 내용,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처(관할 보건소 담당자, 장비수리업체)를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5) 백신보관 전용 냉장고의 내부온도는 외부에서 온도를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온도이탈 시 알람기능 등을 보유한 자동온도기록계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 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 교체 필요					
6) 온도계·자동온도기록계의 온도측정 센서는 백신을 보관하는 구역에 인접 설치하여 백신의온도가 직접 측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7) 접종 기관 내 백신 보관 장비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장비 혹은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아이스박스, 냉매, 에어 캡, 여분의 온도계)을 구비하고 있다.					
8) 백신별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 백신별 보관 구역을 구분하여 유효기한 순으로 보관하고 있다.					
9)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한다.					
10) 주 1회 자동온도기록계의 온도이탈 알람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알람 수신자는 3명 이상 지정하고 있다.					
11) 주 1회 이상 백신보관 냉장고의 온도 변화를 검토하며, 온도 기록지를 보관하고 있다. ※ 최소 5년 이상 보관					
12) 배송된 백신의 해동 후 유효기한을 인지하고 있으며, 유효기한을 경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을 알고 있다.					

종합 의견	점검결과	내용
	<input type="checkbox"/> 전체적으로 양호	미흡사항 현장조치 완료 및 재점검 필요로 등록한 경우는 그 내용 및 조치사항 또는 향후 재점검 사항에 대해 작성
	<input type="checkbox"/> 미흡사항 현장조치 완료	
	<input type="checkbox"/> 재점검 필요	
점검일 20 . . .		
점검자		(서명)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서식 I-18] 코로나19 백신보관용 냉장고 체크리스트

일일 점검사항	확인결과					
	월	화	수	목	금	토
장비 운영 확인 사항						
- 백신보관용 냉장고의 전원공급은 안정적인가? * 누전, 차단 가능성, 전용 콘센트 사용 등 확인 필요						
- 백신보관용 냉장고의 문은 정확히 닫혀 있는가?						
- 백신보관용 냉장고에는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백신보관 냉장고 관리						
- 디지털 온도계·자동온도기록계 센서위치는 적정(백신 근처)한가?						
- 자동온도기록계의 온도이탈 경보는 점검하였는가?						
온도이탈 등 긴급 상황 대비						
- 백신냉장고 옆에 긴급상황 대비 물품*을 구비하고 있는가? * 아이스박스, 냉매(아이스팩 등), 에어캡, 백신고정용 상자, 온도계 등						
백신별 유효기한 확인						
- 유효기한(자체·냉장)이 경과한 백신이 있는가? * 유효기한이 지난 경우, 접종하지 말고 즉시 보건소에 보고						
- 72시간 이내에 유효기한(자체·냉장)이 도래하는 백신이 있는가? * 유효기한 내 접종완료 필요 → 불가한 경우 즉시 보건소에 보고						
☞ 점검시간						
☞ 점검자 확인						
기타사항 - 주말, 공휴일, 야간 등 장시간 접종기관을 비우는 경우 ▶ 퇴근 전 점검, ▶ 백신냉장고 등 정상 가동 확인, ▶ 긴급 상황 대비 연락처 구비 등 필요 - 백신관리자는 온도이탈 push 앱 알림 시 확인 철저						
☞ 기관명 :						

※ 체크리스트는 일일 2회 작성 후 접종기관에서 자체 보관(5년간)

※ (주의) 모든 접종기관 담당자는 퇴근 前 반드시 점검

[서식 1-19] 예방접종 교정시설 부속의원 자율점검표(교정기관용)

예방접종 교정시설 부속의원

자율 점검표

(보건소 제출용)

※ 의료기관 대표자께서 점검하시고 점검결과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등록사항			
요양기관번호		기관명	
요양기관종별		전문과목 (표시과목)	
주소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 인원: 명	<input type="checkbox"/> 의사: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조무사: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명	<input type="checkbox"/> 전산요원: 명
		<input type="checkbox"/> 행정요원: 명	<input type="checkbox"/> 백신관리 전담자: 명
일반사항 및 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요
1. 일반사항			
1) 「65세 이상 성인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사업내용(대상, 내용, 접종 실시기준 등)을 잘 알고 있다.			
2) 예방접종 업무 담당인력(예진 의사, 간호사 등)은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사업별 교육을 이수하였다.			
3) 사업별 예방접종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다.			
2. 예방접종 실시 전 준비사항			
1)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2)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으로 접종 대상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예진시, 예방접종 시행 및 예방접종 일정안내 문자서비스 수신에 대해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한다.			
4)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예방접종 예진표를 확인하면서 접종대상자를 예진하고 진찰소견 등을 기록한다.			
5) 예방접종 실시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으로 반드시 피접종자의 과거 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6)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을 설명한다.			
7)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후 안내문'을 숙지하도록 안내한다.			
3. 예방접종 실시			
1) 준비된 백신이 처방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효기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 백신을 접종하기 전 손을 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한다.			
3)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와 투여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4) 정확한 접종부위, 접종용량, 접종방법에 따라 접종한다.			
5) 주사 후 마른 솜이나 거즈로 주사부위를 뺀 부위를 가볍게 수초간 눌러준다.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4. 예방접종 후		
1)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호자신고제도를 설명한다.		
2)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이상반응을 관찰한다.		
5. 기록보존		
1)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한다. ※ 보관기간 : 5년		
2) 접종대상자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휴대전화번호 등)은 수정한다.		
3) 예방접종기록은 접종 당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전산보고)하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접종기록을 작성하고 제출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요
1) 백신 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하고 있다.		
2) 백신구입 또는 입고 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한다. ※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보관기간 : 5년		
3) 백신보관 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은 보관하지 않는다.		
4) 「백신전용 냉장고」 표시 및 「백신의 보관관리」 내용을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5) 백신보관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성애가 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6) 냉장고 내부의 안쪽에 온도계를 부착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 교체 필요		
7) 백신은 동결되지 않도록 백신 보관온도를 2~8℃ 유지한다.		
8)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한다.		
9) 과거 5년 동안의 온도기록지를 보관하고 있다. ※ 최소 5년 이상 보관		
10) 주기적으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은 냉장고내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백신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며, 유효기간 내 소진이 어려우면, 보건소와 협의하여 백신 폐기를 최소화한다.		
20		
위 점검자(대표자)		(서명)

담당자 확인 (보건소 기재란)	종합의견 :	
	직급 :	성명 : (서명)

※ 자율점검표 작성 내용이 거짓임이 확인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음

[서식 I-20] 백신 입고 기록 양식(교정기관용)

*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한 백신을 입고 기록 등에 사용

* 백신보관장비(냉장고) 문이나 근처에 두고 사용, 상황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 가능

□□□ 백신 입고 기록지(교정기관용)					
접종기관명		보관장소		① 냉장고	
입고기간		2021. 3. 1.(월) ~ 3. 31.(목)			
연번	입고일시	로트번호	수량(dose)	입고자 이름	백신관리 담당자
1	3. 15. 11:00	XYZ123	110	홍길동	나백신
2	3. 30. 15:00	XYZ124	100	고길동	나백신
<p>위와 같이 □□□ 백신을 백신보관장비(냉장고)에 입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p> <p>OO(기관명) 백신관리 담당자 OOO (서명 또는 날인)</p>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서식 I-21]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 기록 일지

※ 접종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백신 보관 장비 1대당 1장씩 작성 필요

백신 보관 장비 온도기록지										
접종기관명						보관장비명		예) 접종실 냉장고 ②		
점검기간			2021. 5. 1. ~ 5. 31.			백신관리담당자		홍길동		
일자	시간	보관장비 내부온도(°C)	실내온도 (°C)	점검자	일자	시간	보관장비 내부온도(°C)	실내온도 (°C)	점검자	
1	오전	10:00	6.2°C	22.5°C	16	오전	11:30	4.7°C	27.0°C	홍길동
	오후	17:30	5.3°C	20.0°C		오후	16:30	7.0°C	25.8°C	
2	오전				17	오전				
	오후					오후				
3	오전				18	오전				
	오후					오후				
4	오전				19	오전				
	오후					오후				
5	오전				20	오전				
	오후					오후				
6	오전				21	오전				
	오후					오후				
7	오전				22	오전				
	오후					오후				
8	오전				23	오전				
	오후					오후				
9	오전				24	오전				
	오후					오후				
10	오전				25	오전				
	오후					오후				
11	오전				26	오전				
	오후					오후				
12	오전				27	오전				
	오후					오후				
13	오전				28	오전				
	오후					오후				
14	오전				29	오전				
	오후					오후				
15	오전				30	오전				
	오후					오후				
-	-				31	오전				
-	-					오후				

[서식 I-22] 코로나19 백신 수령 및 확인 양식(위탁의료기관)

* 지자체 및 접종 위탁의료기관과 상호간 확인하고 보관

* 기관 간 백신 이송시, 유통업체에서 배송시 사용된 소분박스에 고정해서 이동할 것

* 백신 이송 전, 백신관리 담당자는 이송용 박스의 콜드체인 유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코로나19 백신 운송·수령				
제품명	화이자/모더나		수량	vial/PFS
저장방법	냉장			
보 건 소	기관명			
	포장형태			
	출고일시			
수 령 자	의료기관명 (기관번호)			
	주소			
	포장형태/온도	예) 수송용기/4℃	유효기간 (로트번호)	2025.6.30. ABC123
*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냉장 해동 후 백신유효기간 기재				
위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수령·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자체 담당자 000 (서명 또는 날인) 의료기관 백신관리 담당자 000 (서명 또는 날인)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서식 1-24]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양식

* 백신보관장비(냉동고, 냉장고) 문이나 근처에 두고 사용

* 위탁의료기관 등 상황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 가능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의료기관명		보관장소			① 냉장고	
백신관리기간		2024. 10. 10.(목) ~ 10. 30.(수)				
연번	반출일시	백신명	로트 번호	수량 (vial)	반출자 이름	비고
1	10. 14. 12:00	화이자N.1	ABC123	30	홍길동	
2	10. 21.14:00	모더나N.1	XYZ123	5	가나다	
<p>위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백신보관장치에서 반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000의료기관 백신관리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p>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서식 I-25] 방문접종 등을 위한 백신 관리대장 양식

*보건소 및 의료기관이 방문접종 등을 위해 보건소 외부로 백신을 반출 시 사용하며,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

방문접종 백신 관리 대장일 자: 년 월 일
관리기관: 000 보건소 또는 000 예방접종센터

※ 동일 일자에 반출-사용-반납된 현황을 1일 1대장으로 정리(필요시 페이지 추가)

〈백신 반출 현황〉

연번	반출시간	백신 반출 목적	제품명	로트번호	수량(vial)	반출자 이름
1	10:00	A시설 거주자 a명 접종	가	abc123	5	홍길동
2						
3						

〈백신 사용 현황〉

연번	사용시간	백신 사용 내역	제품명	로트번호	수량(vial)	사용자 이름
1	10:00~14:00	A시설 거주자 b명 접종	가	abd123	4	홍길동
2						
3						

〈백신 반납 현황〉

연번	반납일시	백신 사용 내역	제품명	로트번호	수량(vial)	반납자 이름
1	14:00	A시설 거주자 b명 접종 후 남은 잔량	가	abd123	1	홍길동
2						
3						

위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반출, 사용, 반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반출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반납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보건소 백신관리 담당자 고길동 (서명 또는 날인)

[서식 I-26] 백신별 인식표

표시해주세요!

백신별 대상별 인식표 색상 및 모양		
● 화이자(12세 이상)	★ 영유아용 화이자	
● 모더나	▲ 소아용 모더나	★ 영유아용 모더나
● 인플루엔자(독감)	● 노바백스	
백신명을 표시해주세요.	대상자에게도 표시해주세요.	
<div style="background-color: #4a4a9a;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2px;">화이자</div> <div style="background-color: #c00000;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2px;">모더나</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c000;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2px;">노바백스</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padding: 5px;">인플루엔자(독감)</div>		
동선에도 표시해주세요.	예진표에도 표시해주세요.	
 <p style="font-size: small;">인플루엔자 화이자 모더나</p>		

※ 유의사항

- ▶ 백신별 고유색은 모두가 동일하게 인지하도록 자체적으로 변경하지 않음
- ▶ 백신명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인플루엔자 또는 독감)
- ▶ 예방접종 접수 시 접종백신에 따라 ①접종대상자에게 스티커·목걸이 등을 제공하고, ②예진표는 컬러용자·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구분
- ▶ 동시접종 시 백신이 혼동되지 않도록 인식표를 접종부위 팔에 부착하는 등 구분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서식 I-27] 오늘의 백신(접종기관용) 유효기간·백신종류 안내

오늘의 백신은	
화이자	00. 0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모더나	00. 0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독감)	코로나19와 동시접종 가능합니다
<p>※ 유효기한 내에서는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효과성과 안전성이 동일합니다.</p>	
날짜 :	의료기관명 :

[서식 1-28] 다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체크리스트

안전접종을 위해 매일매일 체크해주세요!		
연번	점검사항	확인결과
《접종대상자 관리》		
1	▶ 접수 단계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예약현황, 접종 이력, 백신 종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2	▶ 대상자에게 백신별 인식표(스티커·목걸이 등)를 배부하여 접종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다. ※ 백신 상호명은 영문 및 축약형이 아닌 반드시 한글로 표시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오접종 예방》		
3	▶ 백신 접종 전에 접종 대상자에게 백신 종류 등을 구두로 안내하며, 대상자 본인 및 예진표·인식표 등과 교차 확인하고 있다. ※ 접종 직전 “OOO 백신 접종하겠습니다.” 등 구두로 백신 종류 등 안내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4	▶ 백신 접종 전에 백신별 접종방법, 적정 용량, 유효기한 등을 확인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백신 관리》		
5	▶ 백신별 냉장고 외관 등에 백신 종류를 반드시 표기하고, 동일 냉장고 사용 시 백신별 층·칸을 구분하고 있다. ※ 백신별 별도 보관 냉장고 사용 시, 냉장고별로 디지털 온도계 설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6	▶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를 1일 2회 이상 점검기록하고, 문 닫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이탈 시 알람 기능 구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7	▶ 백신의 유통기간·유효시간을 확인 및 백신 폐기(물) 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유효시간이 지난 다회용 백신·백신잔량을 별도로 보관할 폐기물함을 두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이상반응 관리》		
8	▶ 접종 전 접종 대상자에게 이상반응에 대해 안내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한 공간 및 응급물품을 확보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9	▶ 백신별 이상반응 종류,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절차를 숙지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비상연락망 구축》		
10	▶ 온도이탈·오접종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위탁의료기관은 접종실에 체크리스트를 비치하여 상시 확인할 것
 ※ 코로나19 접종, 인플루엔자 접종 모두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도 작성

[서식 I-29] 예방접종 예진표

예방접종 예진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 대상자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남, □여)
실제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	(□남, □여)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체 중	kg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본인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 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련 문자 및 모바일앱 알림 서비스 제공				
② 수집·이용 항목 : 개인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집/휴대전화)				
③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접종 대상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은 예방접종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접종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예 □아니요
예방접종의 다음 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문자 및 모바일앱으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알림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예 □아니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련된 알림을 문자 및 모바일앱으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알림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예 □아니요
접종 대상자에 대한 확인사항				본인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최근 1개월 이내에 받은 예방접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				□예 □아니요
2.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상반응과 해당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				□예 □아니요
3.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픈 증상을 적어 주십시오. ()				□예 □아니요
4. (여성) 현재 임신 중이거나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5. 약이나 음식물(예: 계란) 혹은 백신 접종으로 두드러기, 알레르기 증상(예: 발진,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6.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병명을 적어 주십시오. ()				□예 □아니요
7.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8. 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9. (코로나19) 혈액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질환명 또는 약 종류를 적어 주십시오. ()				□예 □아니요
10. 경련을 한 적이 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예: 길랭-바레 증후군 포함)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11. 그 외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혈액응고장애 외)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병명을 적어 주십시오. ()				□예 □아니요
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접종대상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의사 예진 결과 (의사 기록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온 : °C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
문진결과 :				
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별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본 문진표는 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질환인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	(□남, □여)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면역저하자질환 확인사항				
▷ 다음 중 현재 귀하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과거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표기하지 않음)				
■ 종양 또는 혈액암으 인한 항암 치료 중				<input type="checkbox"/>
■ 장기이식 수술 후 면역억제제 복용				<input type="checkbox"/>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 혹은 2년 이상 경과 후 면역억제제 치료 중				<input type="checkbox"/>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input type="checkbox"/>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 치료 중				<input type="checkbox"/>
■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질환(이 항목은 의사와 상의 후 표기)				<input type="checkbox"/>
				□ 질환명 : _____
▷ 본인은 상기 표기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_____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_____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서식 I-3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6.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사망자	성명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성별	[]남 []여			
	주소	우편번호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임신부)	[] 출산예정일: 년 월 일 (또는 [] 마지막 생리일): 년 월 일 [] 신고시 이미 출산 한 경우, 출산일: 년 월 일							
예방접종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임신부) 재태주수 주 - 재태주수를 모르는 경우: [] 임신 초기(0-13주) [] 임신 중기(14-27주) [] 임신 후기(28주 이상)							
예방접종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예방접종 종류 및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간(연월일)	예방접종 부위	예방접종 방법	과거 접종 횟수		
최근 4주 이내에 접종한 백신의 종류 및 접종일								
임신기간 동안 접종한 백신의 종류 및 접종일								
접종일	예방접종 종류 및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간 (연월일)	예방접종 부위	예방접종 방법	과거 접종 횟수	
접종 전 특이사항	[] 5세 이하인 경우 ※ 해당 시 접종 전 체온(℃) 출생 체중(kg) [] 선천성 기형 [] 그 밖의 기저질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사항	이상반응 발생 일시(년/월/일/시/분)							
	이상반응 진단 일시(년/월/일)							
	이상반응 종류	국소 이상반응	[] 접종 부위 농양 [] 림프선염(화농성림프선염 포함) [] 심한 국소 이상반응 [] 연조직염					
		신경계 이상반응	[] 급성 마비 [] 뇌증 혹은 뇌염 [] 경련 [] 길랭바레증후군					
		그 밖의 전신 이상반응	[] 알레르기 반응 []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 발열 [] 관절염 [] 골염 혹은 골수염 [] 전신파종성 비씨지감염증 [] 혈소판 감소 자반증					
[] 그 밖에 접종 후 4주 이내에 발생한 중대하거나 특이한 이상반응								
이상반응 진행상황	1. 진행 중	[] 생명위중 [] 입원치료 [] 외래치료 [] 치료 안함						
	2. 상태종료	[] 완전회복 [] 경미장애/후유증 [] 영구장애/후유증 [] 사망						
	3. 모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	요양기관 지정번호			진단(한)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서명란은 컴퓨터 통신 이용 시에는 생략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종류

1.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 농양**
 - 발열에 관계없이 접종부위에 체액이 고인 병변이 발생한 경우
 - 세균성: 화농, 염증 증후, 발열, 그람 염색 결과 양성, 세균배양 양성, 분비물 내의 중성백혈구의 증가 소견 등으로 세균성 농양이 의심됨. 다만, 위의 소견 중 일부가 없다고 하여 세균성 농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무균성: 세균성 감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
- 림프선염(화농성 림프선염 포함)**
 -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림프선이 1cm 이상 (어른 손가락 굵기 정도) 커지거나
 - 림프선에 체액이 유출되는 구멍이 형성된 경우
 - 거의 대부분 비씨지 접종에 의하여 발생하며, 접종 후 2~6개월 사이에 접종부위와 같은 쪽(대부분 겨드랑이)에 나타남
- 심한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를 중심으로 발적(發赤), 부어오름과 함께 다음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 접종부위에서 가장 가까운 관절 부위 너머까지 부종이 나타남
 - 통증·발적·부어오름·경결(硬結) 등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연조직염**
 - 피부에 발생하는 급성, 감염성, 팽창성 염증으로 접종부위 통증, 홍반, 부기, 열감이 나타나는 경우

2. 신경계 이상반응

- 급성 마비**
 - 경구용 폴리오 백신 접종 4~30일 이내, 혹은 백신 접종자와 접촉한 후 4일~75일 이내에 이완성 마비가 급성으로 발생하여, 신경학적 이상이 60일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한 경우
- 뇌 증(腦症)**
 - 예방접종 후에 급성으로 발생하면서 다음 소견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한 경우
 - ① 뇌전증발작
 - ② 1일 이상 지속되는 의식 혼탁
 - ③ 1일 이상 지속되는 특이 행동
 - ※ 백신의 종류에 따라 뇌증의 발생 가능 기간이 다음과 같이 다름(예: DT, DTaP, DTP, DTP-Hib 등은 72시간, MMR은 5~15일)
- 뇌 염**
 - 뇌증에서 언급한 증상과 함께 뇌염증의 증후를 동반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척수액 검사상 세포증다증을 보이거나 바이러스가 분리됨

- 경련**
 - 경련이 수 분~15분 이상 지속되며,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나 증후를 동반하지 않음
- 길랭 바레(Guillain-Barre) 증후군**
 - 진행성, 상행성 이완성 마비가 좌우대칭으로 급속히 발생하고, 마비 발생 당시 발열은 없고 감각 이상을 동반하며, 뇌척수액 검사상 단백세포 해리가 중요한 진단 소견임

3. 기타 전신 이상반응

- 알레르기 반응**
 -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
 - ① 피부 병변(두드러기, 습진)
 - ② 천명(쌩쌩거림)
 - ③ 안면 부어오름 또는 전신 부어오름
-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에 급성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 ① 기관지 수축으로 인한 천명(쌩쌩거림)과 호흡곤란
 - ② 후두 연축/부종
 - ③ 한 개 이상의 피부 병변(예: 두드러기, 안면 부어오름, 전신 부어오름)
-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 예방접종 직후 순환기 기능부전(예: 의식혼탁, 저혈압, 말초맥박소실, 말초혈액 순환부전으로 인한 차갑고 축축한 손발)이 나타나고, 기관지 연축, 후두 연축/부종 등으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 발열**
 - 직장 체온이 39℃ 이상인 경우
- 관절염**
 - 관절염이 주로 사지의 작은 관절에 나타남
- 골염 혹은 골수염**
 - 비씨지 접종으로 인한 골감염(접종 후 8개월~16개월 이내에 발생함) 또는 다른 세균성 감염에 의하여 발생한 골감염임
- 전신파종성 비씨지감염증**
 - 비씨지 접종 후 1개월~12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전신성 감염으로 Mycobacterium bovis 비씨지 균주를 분리하여 확진함
- 혈소판 감소 자반증**
 - 혈중 혈소판의 수가 50,000/mm³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자가면역질환 등의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라야 함
 - 주로 홍역 백신(MMR)과 관련하여 나타나며 7~30일 이내에 증상 출현

<p>주요 검사 소견 (검사 시행 날짜 병기)</p>	<p>임상 진찰 소견 : 실험실적 검사 소견 : 영상학적 검사 소견 : 기타 :</p>
<p>관련자 면담</p>	<p>예진의 : 접종자 : 보호자/환자 면담 : 담당의사 :</p>
<p>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의 이상유무</p>	<p>동일 제조번호, 동일 의료기관, 동일 일자 접종자 :()명 중 이상반응 없는 사람()명, 이상반응자()명(이상반응 종류 :)</p>
<p>백신관리사항</p>	<p>백신보관 상태 : 정전여부 : 백신 구입량 : 백신 사용량 :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 : <input type="checkbox"/>유 <input type="checkbox"/>무(특이사항 :) 백신냉장고 : <input type="checkbox"/>유 <input type="checkbox"/>무(특이사항 :) 냉장고 온도 : (예방접종약품 보관냉장고 점검표) 온도측정방법 : 외부측정장치 <input type="checkbox"/>유 <input type="checkbox"/>무 자동온도기록장치 : <input type="checkbox"/>유 <input type="checkbox"/>무 콜드체인 유지 : <input type="checkbox"/>양호 <input type="checkbox"/>불량 자가발전기 : <input type="checkbox"/>유 <input type="checkbox"/>무</p>
<p>관련 문헌 검토 사항</p>	<p>WHO GACVS : 미국 IOM : WHO AEFI Guideline : 기타 연구 문헌(연구 디자인 병행 기재, 예) 사례-대조군 연구, 사례 보고 등) :</p>
<p>인과성 평가 결과</p>	<p>백신 자체의 문제 : 예방접종 과정상 오류 : 진단기준 부합 여부(이상반응 역학조사 지침, Brighton Collaboration case definition 등) - - - 알려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인지 여부(출처 포함) - - 타 요인에 의한 질환 발생 가능성 평가(질환의 알려진 주요 원인, 선행 증상, 검사 결과 등)</p>
<p>잠정결론</p>	<p>(인과성 평가 : definite, probable, possible, unlikely, definitely not related)</p>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3

주요 민원

1). 사업 운영

• (사업대상) 2026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사업대상은 누구인가요?

- ①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자)
- ②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예방접종
 - : 12세 남성청소년(2014. 1. 1.~2014. 12. 31. 출생자)
 - 12~17세 여성청소년(2008. 1. 1.~2014. 12. 31. 출생자)
 -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9. 1. 1.~2007. 12. 31. 출생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 (12세 여성청소년 건강상담 대상) 2013. 1. 1.~2014. 12. 31. 출생 여성
- ③ 성인 폐렴구균(PPSV) 예방접종 : 65세 이상(1961. 12. 31. 이전 출생자)
 - ※ 절기접종(인플루엔자(IV), 코로나19(COVID-19)) 사업 대상자 사업 시작 전 별도 안내

• (질문과 답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어떻게 구분 하나요?

- 예방접종사업 관련 문의 : 사업운영문의(법령, 지침, 실시기준 등), 계약, 점검, 교육과정, 비용상환 여부
- 예방접종시스템 관련 문의 : 이름수정, 인적통합, 접종력 등록, 시스템 오류, 권한승인(보건소 예방접종권한, 교육권한 승인 및 소속기관 변경에 따른 교육기관), 계약(시스템), 통계, 지자체 사업 시스템
 - ※ 그외 백신관련 문의(백신수급과)나 이상반응 문의(예방접종정책과)는 해당 부서로 유선문의

• (질문과 답변) 민원 문의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 국가예방접종 업무별 전화번호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공지관리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로 예방접종도우미 회원가입, 비밀번호·아이디 확인, 아이정보등록,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관련 등 해당 사이트의 이용방법 문의는 043-719-8386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방접종사업대상, 접종일정 등 접종관련 문의는 043-913-2258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기존에 사업 참여를 하였으나 폐업하여 타 지역으로 병원을 이전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을 다시 하여야 하나요?**

- 예방접종업무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면, 이전한 지역 관할 보건소와 다시 신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의료기관이 폐업신고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폐업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연계를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신규 계약체결 시, 최근 2년 이내의 공통필수 및 기본교육 수료정보가 필요하며, 2026년 신규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2025년도 기본교육과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심화교육 수료정보가 필요합니다.

• **(계약체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치 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가요?**

-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치 장비 구비가 계약서상에 명시된 필수조건은 아니나,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계약체결) 전자계약 체결 후 의료기관에서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 예. 보건소에서 계약서를 포함한 위탁계약 관련 문서에 서명(승인) 완료 시 계약 체결이 성립되며, 의료기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계약서와 지정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조건이 있나요?**

- 계약 체결 전 의료기관 예진 의사는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온라인 교육 과정(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전자계약 시 팝업 화면은 보이는데 내용 작성 후 전자문서등록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키보드의 Alt키를 눌러 상단의 보기-기본도구 클릭 시 해당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의료기관에서 접종실적이 없는 일부 백신 접종을 중단하여 위탁계약 참여백신 정보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항목이 변경되면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확인증 수정 및 제출, 관할 보건소 승인

• **(계약체결)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추가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등 다른 예방접종 사업참여를 신청하려면 통장사본을 새로 업로드해야 하나요? 또, 이 경우 계약서를 사업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 예.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참여할 경우 관련 사업의 교육 과정을 이수 후 위탁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계좌로 비용을 지급받으자 하더라도 반드시 통장사본 재업로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경우 한 번만 작성합니다. 단,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별 교육을 추가 이수 후, 해당 사업별 탭에서 교육이수번호 및 사업 필요 서류를 등록한 뒤 참여 확인증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 **(계약체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위탁의료기관은 ①기준*에 부합하고 ②코로나19 접종관련 교육 이수 및 ③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할 보건소의 현장점검 및 계약 승인을 거쳐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위탁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교육 이수 후 매 3년마다 심화교육 이수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 백신 보관관리, 접종 시행 능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공간 확보 등 신규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절차에 따른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이수 후 기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방법과 동일하게 신청합니다.

• **(계약체결)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시 이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기관정보에도 기관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나요?**

- 예.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 로그인은 개인인증서로 하고, 이후 사업 참여 시에는 의료기관 정보에 개인인증서가 아닌 기관인증서를 등록해야만 사업 참여 서명이 가능합니다.

• **(계약해지) 의사 1인당 1일 접종자 수 100명 이상 시 비용상환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 안전한 예방접종 운영을 위해 예진 의사 1인당 1일 접종자 수를 100명으로 제한하며, 초과 접종을 고의로 반복하는 경우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 기간 내 사업 대상에게 접종 시 비용상환은 가능하나,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시에는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 **(지원대상) 출생신고가 지연된 신생아도 예방접종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법정 출생신고 기한(출생 후 1개월 이내)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는 다음 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 심사가 제한됩니다.

※ 신생아번호가 3개월 이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임시관리번호 등으로 인적정보가 보완되지 않은 대상자는 추적관리 필요(대상자 추적불가 시 신생아번호관리 메뉴에서 사유 등록 후 비용지급 처리 가능)

• **(지원대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제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번호와 다른데, 예방접종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충분한 면역획득을 위해 백신별로 권장하는 최소접종 연령과 다음접종과의 최소접종 간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른접종 및 다음접종일자 등은 실제 생년월일로 결정되므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과 다를 경우 보호자를 통해 증빙서류(출생신고서 등) 확인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외국인도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외국인등록면제자 포함)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3개월 이상의 장기체류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출생신고 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 등도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출생신고 전 신생아는 임시신생아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와 보호자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합니다. 출생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은 보건소에서 보호자 인적 확인 후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접종합니다.
※ 시설 아동은 시설아동번호(의료급여 관리번호)를 주민번호대신 사용 가능하며, 시설아동번호 미발급아동은 시설 아동번호 발급 시까지 관리번호로 접종

• **(지원방법) 모든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지자체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위탁의료기관)에서만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비용)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백신이 제품명으로 구분되어 비용이 공고되는데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그렇다면 백신별 예방접종 지원비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아니요. 제품명에 관계 없이 동일 백신의 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백신별 예방접종 지원비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전자관보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 → 공고/고시, 또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목(제품명) 공개는 수급 관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신규 백신의 도입 절차를 명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구분하여 공개 중입니다.

- **(문서보관) 현재 예방접종 예진표, HPV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및 B형간염 주산기감염 사업 참여 산모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예방접종과 관련한 문서 일체의 보관에 대하여, 종이(원본) 보관 양이 많고, 공간 부족 및 사후 처치 곤란 등의 사유로 해당 문서를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는 없나요?**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효력있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스캔만으로는 효력있는 문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제5조에서는 ①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②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③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일정)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접종이 지연된 경우 처음부터 재접종해야 하나요?**

- 처음부터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접종 차수부터 빠른 시일 내 접종합니다. 표준예방접종 간격보다 길어지면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지연된 예방접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접종받도록 합니다.

- **(접종일정)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일찍 접종한 경우 처음부터 재접종해야 하나요?**

- 최소접종 연령과 최소접종 간격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재접종해야 합니다. 약독화 생백신의 경우 동시 접종을 못 했거나 약독화 생백신 간 유지해야 할 최소접종간격(4주)보다 이르게 접종했다면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동시접종 시에는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고, 국소 반응을 구별하기 위해 주사 부위는 적어도 2.5c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합니다.

※ 최소접종 연령 또는 최소접종 간격에서 4일 이하의 오차는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으로 접종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단, 약독화 생백신 간 최소접종 간격(4주), MMR, 수두 1차 최소접종 연령인 생후 12개월은 제외

- **(접종일정) 예방접종을 했지만 접종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데 다시 접종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접종기록을 알 수 없으면 재접종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접종이 면역형성에 이상을 주거나 이상반응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재접종 시에는 백신에 따라 접종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종 전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일정) 외국에 살다 귀국했는데 이후 예방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나라마다 질병의 역학적 특성 등에 따라 예방접종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속 거주할 나라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추가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 사인된 서류를 발급 받아오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방법) 1세 아동에게 근육주사 시 삼각근에 접종 가능한가요?

- 연령별 주사 부위는 근육량, 피하지방층 두께, 백신량, 주사기술에 근거해 개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세 연령은 대퇴부 전외측이 선호되나, 근육량이 적당한 경우 삼각근 접종도 가능합니다. 12개월 미만 영아는 가장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 대퇴부 전외측이 추천되며, 3세 이상은 상완 삼각근이 선호됩니다. 다만, 삼각근에 접종할 수 없는 경우 대퇴부 전외측에 접종합니다.

• (접종오류) 접종 시 아이가 움직여서 백신의 정량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적정량의 백신이 접종되지 않은 경우 투여된 용량을 측정하기 어려워 면역효과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재접종을 권장하며, 이때 정량으로 빠른 시일 내 접종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을 비강 투여한 후 재채기를 한 경우와, 로타바이러스 백신 경구 투여 후 구토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 (특수상황에서의 접종)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이전에 접종한 백신의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항암치료 또는 방사능 치료 이전에 접종했던 백신은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 중 면역저하상태에서 접종한 불활성화 백신은 면역기능이 회복된 이후 재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이후 접종 시 MMR, 수두와 같은 약독화 생백신은 체내에서 백신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증식하여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치료 후 일정 기간 간격(최소 3개월)을 두어야 합니다.

• (특수상황에서의 접종) 질병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있으면 접종을 할 수 없나요?

-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 모두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량 스테로이드(프레드니손 2mg/kg/일에 해당하는 역가 이상, 또는 체중 10kg 이상 소아에서 20mg/일에 해당하는 역가 이상)를 매일 13일 이하로 투여한 경우, 투약을 중지한 후 즉시 약독화 생백신을 투여받을 수 있으며, 14일 이상 매일 투여받은 경우는 투약 중지 후 4주 이후 약독화 생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 피부에 도포하거나 기관지에 분무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 **(특수상황에서의 접종) 6세 아동으로 접종을 완료했지만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을 하려고 할 때 얼마의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하나요?**

- 불활성화 백신은 백신에 따라 이식 후 6~12개월에 시작하고, 약독화 생백신은 24개월 이후 환자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 시 접종합니다. 면역학적 판단 기준은 ①최근 3개월 이내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면서, ②만성 이식편대숙주병이 없고, ③앞서 접종받은 불활성화 백신에 대하여 적절한 면역반응을 보인 경우입니다.

• **(특수상황에서의 접종) 의식이 없는 입원·입소자인데 법정대리인도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접종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접종할 수 없습니다. 단, 법정대리인(「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 준용)이 있는 경우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서를 구득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동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예진표에 해당 사실 별도 기록

• **(특수상황에서의 접종) 사회복지시설 접종 대상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예진표 직접 작성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입원환자 및 입소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대상자 본인이 예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동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예진표에 해당 사실을 별도 기록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시설에 방문하여 예진표 작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자예진표, 사진, 팩스 등의 방법으로 예진표를 받아 접종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예진표는 현장에서 작성한 예진표에 부착하여 함께 보관

• **(접종등록) 접종 당일 예진 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접종 연기를 권하였으나 본인(또는 보호자)이 접종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 접종해야 하나요?**

- 아니요. 본인(또는 보호자)이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 당일 예진의사가 예진 시 접종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접종이 제외됩니다. 이 경우, 예진 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제외되었다면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의식불명, 혼탁, 혼수상태, 전신쇠약, 37.5℃ 이상의 발열 등 급성병증상태, 임종 임박 등

• **(방문 예방접종) 거동이 불편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방문 예방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접종은 지자체 장이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보건소의 관리하에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종) 방문 예방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보건소의 관리하에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방문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에 준하는 거동불편자 또는 재가와상환자 등 신체적 제약으로 거동이 불가하여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 (전산등록)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 후,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시스템 등록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해외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전산등록) 아기수첩에 기록된 접종 내역도 전산등록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수첩(아기수첩)은 보호자에게 자녀의 접종내역을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피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접종명, 접종차수, 접종 기관, 접종 기관 서명(또는 날인)을 포함하고 있는 예방접종 확인 서류(아기수첩 등은 동 정보를 모두 포함한 것만 인정)에 한해 등록

※ 단, 등록일 기준 5년 내의 기록은 백신제조번호(라벨지도 인정)까지 확인되어야 함.

2). 교육

• 계약체결 전 위탁의료기관 교육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위탁의료기관과 계약체결 전,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규 계약체결 시, 최근 2년이내의 공통필수 및 기본교육 수료정보가 필요하며, 2026년 신규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2025년 및 2026년도 교육과정의 기본교육과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심화교육 수료정보가 필요합니다.

• 계약신청 메뉴의 교육수료정보에서 교육 이수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육정보는 교육수료증을 다운로드 후 왼쪽 상단의 10자리 교육 수료번호와 수료자명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검증 버튼을 클릭해서 검증하시면 교육 수료 완료 시에 수료로 바뀌며 검증이 완료됩니다. 이후, 수료 위의 저장 버튼을 눌러 교육 이수 확인을 완료합니다.

※ 교육수료증은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의 수료증 출력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며, 반드시 의사가 이수하여야 하나요?**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에서 이수가 가능하며, 예방접종 위탁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기한이 도래되면 12개월 이내 기본교육과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심화교육을 이수해야 재계약(5년) 또는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스템에 로그인 했는데, 과정안내 항목에서 사업 관련 교육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교육과정은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회원가입 시 등록한 소속구분에 따라 교육 과정명이 다르게 보입니다.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마이 페이지”에서 해당 ‘의료기관’ 소속이 아니면 탈퇴 후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탈퇴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나의정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권한의 승인 상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로그인후 화면 좌측의 권한정보’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업 참여 전 보건소 주최 사업 설명회 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는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당해년도 교육을 재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교육 수강 후 매 2년(종료 후 12개월의 유효기간 부여)마다 기본교육과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심화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여 전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는데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당해년도 교육을 재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교육 수강 후 매 5년마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심화교육은 매3년마다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 **봉직으로 있던 의료기관에서 온라인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개업하여 의료기관 정보가 변경되었는데 교육을 재수강하여야 하나요?**

- 소속기관 여부에 상관없이 수료한 교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재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료한 교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추가 교육 수강시, 교육 수료증의 소속기관명은 수정이 안되니 현재 의료기관으로 재가입 후 교육을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 2024년도 교육수료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공통필수와 기본교육 수료번호가 필요하며, 2025년도 교육수료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수료번호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은 아닌데 [보수교육] 65세 이상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 수료증으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해당 과정은 기존 65세 이상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의료기관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신규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기본교육과 참여를 원하는 사업의 심화교육을 이수해야 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기존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으로 참여 중입니다. 새롭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교육 이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의료기관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2025년 과정의 기본교육과 참여를 원하는 사업의 심화교육 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임신부,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모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①기본교육, ②[심화교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 ③[심화교육]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의 3가지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 **의료기관 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가 다수인 경우 모든 의사가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는 사업 실시 이전(또는 예방접종 예진 및 시행 이전에)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 및 사업내용 숙지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의사 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은 모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시에는 대표자(대표원장, 1인 기본)의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공인인증서는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접종 의사가 다수인 경우 회원가입 시 개인의 은행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 출력 시 성명란에 병원 이름 또는 타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 교육수료증에는 회원가입 시 성명란에 기입한 대로 출력이 됩니다.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입을 하고 이미 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성명 수정이 불가합니다. 이때는 실제 예방접종 시행 의사 실명으로 다시 회원가입 후 재수강이 필요합니다.

• **2024년도 7월에 ‘[기본교육]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올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예. 심화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매 3년(2024년도 교육인 경우 2년의 유효기간 부여) 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사업참여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 기존 수강한 교육의 기한이 만료된 경우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심화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 계약을 할 경우 최근 2년 이내의 기본교육과정만 인정하므로, 기본교육 이수 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신설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에 로그인시 “권한이 없습니다.” 또는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가 맞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 교육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 로그인하여 왼쪽의 ‘권한정보’에서 ‘교육관리 사용자(학습자)’ 권한을 요청하여 승인받은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예방접종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교육시스템 관리자 변경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시스템 관리자 권한은 보건소의 위탁의료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1~2인에게 부여되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예방접종관리’ → ‘행정지원’ → ‘기타지원’ → ‘교육관리자변경 요청관리’ → ‘조회’ 클릭 → 공지에 안내된 절차 및 양식에 따라 관리자 변경 신청

• **(교육) 위탁의료기관의 수수료는 어디에서 출력할 수 있나요?**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에서 위탁의료기관 예진의사 교육 수수료 현황 관리가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로그인 → ‘관리자시스템’ → 통계모니터링 → ‘회원별 교육신청/수수료현황’ → 이름&기관명 검색 → 이름 클릭 → 수수료부 확인

• **(교육) 보건소 대상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수수료는 어디에서 발급 받나요?**

- 수수료부는 교육시스템 홈 화면 상단의 ① ‘수수료 출력(또는 나의 강의실)’ 메뉴의 ② ‘학습완료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위탁계약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수수료 번호는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 → 기관관리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 탭에서 ‘코로나19’란에 교육수수료정보를 입력하고 검증 버튼을 누른 후 검증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수수료 번호 입력을 완료합니다.

3). 감염병별 주요 민원

(1). B형간염

• B형간염 예방접종을 3차까지 완료했는데, 10년 정도 지난 후 다시 B형간염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나요?

- 아니요. 백신 접종 후 방어면역력이 있는 10mIU/ml 이상의 표면항체가 생긴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억면역에 의한 B형간염 예방 효과는 지속됩니다. 따라서 추가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B형간염 1차, 2차는 정확한 날짜에 접종했는데, 3차를 9주에(2달) 앞당겨 접종했습니다. 이 경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최소접종 연령과 간격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재접종이 필요하며, 3차 재접종은 오접종일로부터 5개월 뒤(최소 8주 후)에 실시합니다.

※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의 최소접종 간격은 8주이고, 3차 접종은 1차 접종 16주 이후이면서 생후 24주 이후 접종 필요

• 항원·항체 검사 결과 B형간염 항체가 양성이었다, 재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 예. B형간염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항체는 시간이 흐르며 그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후 재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면역에 의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백신을 추가로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방어항체 역가가 10mIU/ml 근처의 값을 보이는 사람에서는 같은 검체에 대해 검사 시약을 달리하거나, 수일의 짧은 간격으로 채혈하여 재검사하는 경우 결과가 양성에서 음성, 또는 음성에서 양성으로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은 몇 개월에 접종 가능한가요?

- 출생시 B형간염 1차 접종을 한 영아를 대상으로 생후 2, 4, 6개월에 권장되는 기초접종 시 접종 가능합니다.

* 6가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생후 1개월에 B형간염 단독백신 2차 접종을 시행하지 않음

* 출생시 B형간염을 접종한 영아를 대상으로 6가 혼합백신(헥사심) 접종시 B형간염은 총 4회 접종

• **생후 1개월에 B형간염 단독 백신으로 기초 2차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가 생후 2개월 접종을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으로 원하는데 접종 가능한가요?**

- 6가 혼합백신은 출생시 B형간염 단독백신을 접종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생후 2, 4, 6개월에 접종허가된 백신입니다. 이 사례처럼 B형간염 단독백신으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라면 B형간염 접종은 단독백신으로 완료하고, 나머지 감염병에 대해서는 5가 혼합백신(DTaP-IPV/Hib) 등을 사용하여 접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건강상의 문제로 출생시 B형간염 접종을 미뤄 생후 2개월에 첫 접종을 시행 예정입니다. 이 경우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으로 접종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B형간염, DTaP, IPV, Hib 처음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6가 혼합백신으로 생후 2, 4, 6개월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백신의 차수별 최소접종연령 및 최소접종간격을 모두 준수하여 접종 시행 필요

(2). 결핵

• **3월 3일생인 아기가 병원에서 B형간염 백신의 1차 접종을 하였으며, 다음 접종일인 3월 16일에 BCG 접종 안내를 받은 경우, 4월 3일에 B형간염 백신 2차 접종과 BCG 접종을 같이 해도 되나요?**

- 예. BCG 접종은 출생 후 4주 이내 접종하면 되며,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후 4주의 2차 B형간염 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 **40개월 된 여아로 생후 4주 BCG 접종을 했습니다. 며칠 전 결핵반응 검사를 했을 때 아무 반응도 없어 결핵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하였으며, BCG 재접종을 권고하였는데, 이 경우 재접종을 해야 하나요?**

- 아니요. 결핵 피부반응 검사에서 반응이 없다고 해서 결핵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고 정의할 수 없으므로 재접종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종 후 흉터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흉터가 없더라도 접종력이 확인되면 재접종은 하지 않습니다.

• **국외에서 BCG 접종을 하지 않고 거주하던 아동이 국내에 영구 귀국한 경우, BCG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생아기에 BCG를 접종받지 못해 따라잡기 접종을 하는 목적은 명확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파종결핵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파종결핵의 고위험 연령대로 알려진 5세 미만까지 접종을 권장합니다. 결핵 환자의 노출력이 없는 경우, 생후 3개월 미만은 TST 없이 접종하며, 생후 3개월 이상은 TST 후 실시하여 음성 결과 확인 후 접종합니다.

• **피내용 BCG 접종 시 바늘이 빠져 백신 용량이 적게 주입되면 어떻게 하나요?**

- 권장 용량으로 다시 접종합니다. 특별한 간격을 띄우지 않고 접종 당일 재접종하며, 접종 부위를 달리하면 반흔이 이중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같은 부위에 접종합니다.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 대상자는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HBIG) 투여 후 얼마의 간격을 두고 BCG 백신을 접종해야 하나요?**

- 신생아에게 HBIG 투여 후 BCG 백신을 접종했을 때 BCG 백신의 효과가 감소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간격을 두지 않고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합니다. 참고로 BCG 백신은 항체 함유 혈액제제와 투여 간격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 **해외에서 귀국한 13개월 영아로, MMR 백신과 수두 백신 접종 후 얼마의 간격을 두고 BCG 백신 접종을 해야 되나요?**

- MMR 백신과 수두 백신 접종일로부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TST 후 결과에 따라 BCG 접종을 실시합니다. MMR 생백신은 이론적으로 TST의 반응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MMR 백신과 TST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MMR 백신 접종 후 최소 4주가 지난 후에 TST를 시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TST 시행 후 MMR 백신 등의 약독화 생백신 접종시 특별히 지켜야 할 간격은 없습니다.

• **TST 후 며칠 이후에, 혹은 며칠 이내에 BCG 접종을 해야 하나요?**

-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TST는 검사 당시의 결핵균 감염 여부를 판단하므로 가능한 빨리 접종하기를 권장합니다.

• **미숙아로 출생하여 출생 직후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한 달 전에 퇴원한 생후 4개월 영아에게 TST 없이 BCG 백신 접종해도 되나요?**

- 일반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BCG 백신 접종을 지연했다면 출생일로부터 3개월 미만까지는 TST 없이 BCG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숙아나 입원이 필요한 심한 질환이 있다면 퇴원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입원 사유로 TST를 미 실시 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 외부와의 차단 및 격리보호 되었을 것을 고려하여 비용상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BCG 백신을 접종했다면 적합한 의학적 소견을 입력하여 전산등록(비용상환 신청)합니다.

※ 의학적 소견 : 미숙아 출생 후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 입원일 및 퇴원일 등록

(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DTaP 4차 접종을 하지 않은 4세 아동의 접종일정은 어떻게 하나요?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4차 접종을 실시하고, 5차 접종은 생략합니다. 예방접종기록은 순차적으로 전산등록(DTaP 4차)시 비용신청되며, 이후 접종은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 접종합니다.

• DTaP 백신 접종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7세 아동의 접종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Td 백신으로 3회 접종(0, 1, 6개월 간격)을 완료*하되, 이 중 1회는 Tdap 백신으로 반드시 접종하고 가능하면 첫 접종을 Tdap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이후 11~12세에 Tdap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나, 10세 이후 Tdap 백신을 접종했다면 11~12세 Tdap 백신 접종은 불필요합니다.

※ (전산등록) Tdap 백신 접종은 <Tdap-6차>에, Td 백신 접종은 <Td(그외)>에 순차적 등록

• DTaP 백신 3차 접종일로부터 5개월 후 4차를 접종한 생후 18개월 아동은 재접종해야 하나요?

- 아니요. DTaP 3차와 4차 접종의 최소접종 간격은 6개월이나,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후에 4차 접종을 했다면 재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접종간격이 4개월 보다 이르게 시행된 접종은 무효가 되므로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재접종 시 디프테리아, 파상풍 함유 백신은 너무 많이 접종하면 접종부위에 국소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에 7세 이전에 총 6회를 초과하여 접종하지 않도록 이후 접종 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DTaP 단독 백신으로 1차 접종 후 DTaP-IPV 혼합백신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한가요?

- 동일 제조사 백신이라면 가능합니다. DTaP 백신은 제조사마다 백신 제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접종(1~3차)은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TaP 1차 접종을 단독백신으로 시작했다면 이전에 접종한 백신과 동일한 백신으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하도록 하며, 추가접종(4차, 5차)은 교차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 백신 수입, 유통 등의 어려움으로 동일 제조사의 백신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교차접종을 할 수 있으나 이전과 동일한 제품을 접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현재 유통되는 백신 중 보령바이오파마의 단독백신(DTaP)과 혼합백신(DTaP-IPV) 교차접종 가능

• 영유아 시기에 DTaP 접종을 완료한 10세 아동에게 DTaP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후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DTaP 접종을 완료한 10세 아동에게 DTaP 백신 접종은 유효접종으로 간주되므로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11~12세 Tdap 백신 접종은 불필요합니다.

※ 11~12세 Tdap 백신 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능

• **아이가 외국에서 DTaP 5차 시기에 Td 백신으로 접종하였다면 해당 접종은 유효한가요?**

- 아니요. 7세 이전에 접종한 Td 백신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방문연령 시기에 맞춰서 5차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 **DTaP 5차 접종을 지연한 7세 이상 아동에게 Tdap 백신으로 접종하려고 하는데, 약전에 Tdap 백신 중 부스트릭스는 10세 이상~성인까지, 아다셀은 11세~64세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신으로 접종하나요?**

- Tdap 백신 부스트릭스와 아다셀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 연령 내 사용가능한 허가 약물이 없어, 백일해의 발생 및 유행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 범위 초과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한 바 있습니다.

※ (2018년 10월) 백일해 발생 현황과 DTaP 접종력이 불완전한 어린이 대상 허가 범위 초과 사용 기준 권고안 안내

• **1차, 2차를 펜탁심으로 접종한 아이가 지연되어 생후 13개월에 3차 접종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펜탁심 접종이 가능한가요?**

- 생후 12개월 이후 DTaP, IPV, Hib 백신 접종이 모두 필요한 경우라면 접종 가능합니다.

• **생후 4개월 권장 접종을 5가 혼합백신(인파릭스아이피브이힙)으로 접종했는데 다음 접종 시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으로 접종 가능한가요?**

- 아니요. 다른 제조사 백신과 교차접종 시 면역원성과 안정성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며, DTaP 함유 백신은 제조사마다 백신 제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에 접종받았던 백신의 종류를 모르거나 해당 백신이 국내에 유통되지않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초 3회接种의 교차접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과거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교차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교차접종이 이미 발생한 경우 이전 접종과 적절한 간격, 최소 접종연령이 준수되었다면 재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전 접종한 백신이 사노피社의 5가 혼합백신(펜탁심)이라면 교차접종 가능

(4). 폴리오

• 폴리오 1·2차 접종 후 3차 접종 없이 2년이 지났는데 기초접종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 기존 2회 접종은 유효하므로 재접종하지 않으며, 가능한 빨리 3차 접종을 시행하며, 3차 접종이 4세 이후 시행되고 2차 접종과 최소 6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접종되었다면 4차 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차 접종이 4세 이전에 시행되었다면, 3차 접종과 최소 6개월의 간격을 유지하여 4세 이후 4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 4세 아이입니다. 아기수첩에 폴리오 1~3차 기록은 없고 작년에 1회 접종한 내역만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전 접종력이 확인되지 않고 3세 1회 접종력만 확인되므로 즉시 2차 접종을 실시하고, 6개월 뒤 3차 접종을 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합니다.

• 폴리오 예방접종을 생후 2, 4, 6개월에 해야 하는데 며칠씩 일찍 했습니다. 다시 해야 하나요?

- 최소 접종 연령 및 접종 간격이 지켜졌다면 재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보다 앞당겨 접종한 경우 면역 형성이 잘 되지 않으므로 재접종합니다.

• 9세 아이가 폴리오 예방접종이 없는 경우 몇 회 접종해야 하나요?

- 3회 접종합니다. 1차와 2차는 1~2개월 간격으로 시행하며, 3차 접종은 2차 접종 후 최소 6개월 뒤 실시합니다.

• 다른 나라에서 경구용 폴리오 백신을 2회(2, 4개월) 혹은 3회(2, 4, 6개월) 접종받은 소아가 귀국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장기간 거주할 나라에서 권장하는 일정에 따라 접종을 실시합니다. 표준예방접종 일정은 각 국가마다 유행하는 질병에 따라 역학적 특성, 질병 양상, 취약 연령 등을 고려하여 권고되므로 나라마다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구용/주사용 폴리오 백신은 어떤 조합으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 국외에서 OPV 백신(경구용 폴리오 생백신)으로 기초(1~3차)접종을 완료한 6세 아동입니다. 4세 이후에 3차 접종한 경우 4차 접종은 생략하나요?

- 아니요. 다른 나라에서 OPV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총 4회 접종합니다. 나머지 접종은 IPV로 실시하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5).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여러 종류의 Hib 백신 중 어느 것을 맞아도 상관 없나요?

- 종류에 상관없이 백신 효과가 모두 우수하여 어느 것을 접종하여도 좋습니다.

• Hib 백신 접종력이 없는 7세 소아입니다. 지금 접종해도 되나요?

- 일반적으로 60개월 이상 소아는 무증상 감염에 의해 Hib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므로 Hib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습성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질환들 중 무비증, HIV 감염 환자는 5세 이상이라도 1회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은 경우 이식 6~12개월부터 과거 접종력에 관계없이 4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접종합니다.

• 면역학적 관용이 생길 가능성으로 생후 6주 미만 영아에게 접종이 금지인데, grace period(4일 이내 오차) 내 접종한 것도 접종력이 인정되나요?

- 예. 실제 6주 이내 접종은 금지시되고 있지만, 그 근거가 3개의 신생아 접종 연구 중 1개의 연구에서 항체반응이 불량했기 때문인데 이 면역관용이 관찰된 백신은 국내에서 사용이 중지된 polyribosylribitol phosphate-Neisseria meningitidis outer membrane protein complex (PRP-OMP) 였습니다. 나머지 2개의 연구에서는 신생아에게 접종해도 문제가 없었으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PRP-T, HbOC로 수행되었습니다.

• 접종이 지연된 경우 연령별로 2회 또는 3회 접종을 권고하는데 접종횟수가 감소하여도 면역원성 및 효과에 문제가 없나요?

- 생후 2~6개월 접종 시작 시 모두 4회 접종, 생후 7~11개월 시작 시 모두 3회, 12~14개월 시작 시 2회, 15~59개월 시작 시 1회 접종합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 면역반응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늦게 접종하면 접종 횟수를 줄일 수 있지만, 접종 전 Hib 질환에 이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접종을 미루지 말고 2개월부터 접종해야 합니다.

• DTaP 백신과 폴리오 백신은 2차까지, Hib 백신은 3차까지 접종한 생후 15개월 아동이 Hib 4차 접종을 5가(DTaP-IPV/Hib) 또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 권장하지 않습니다. 5가(DTaP-IPV/Hib) 또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은 기초접종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어 있어, Hib 4차 접종 시 해당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건강한 5세(60개월) 소아가 B형간염, DTaP, IPV, Hib 백신 3차 접종을 위해 내원했습니다.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으로 접종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건강한 소아는 5세 이상에서 Hib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3차 접종은 B형간염 단독백신과 DTaP-IPV 백신(이전 접종과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각각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6). 폐렴구균

•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보건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등록업무 →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의료기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예방접종등록 화면을 통해 확인

• **폐렴구균 다당 백신이 소아에서 중이염과 부비동염을 예방할 수 있나요?**

-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은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 폐렴구균에 의한 중이염의 빈도를 어느 정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폐렴구균 다당 백신은 중이염과 부비동염에 대한 예방효과가 없습니다.

• **천식이 있는 환자는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나요?**

- 천식 환자는 폐렴구균 질환의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천식으로 진단받은 성인과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소아 천식 환자는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 **이전에 폐렴구균 접종력이 없는 비장적출 수술을 받기로 한 5세 소아는 언제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나요?**

- 가능하면 비장적출술 최소 2주 전까지는 단백결합 백신 또는 다당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응급 비장적출을 하는 소아는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곧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결합 백신은 2세 미만에서도 효과가 있으나, 폐렴구균 다당 백신은 2세 이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 **면역억제 치료를 받을 예정인 5세 이상 환자에게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해야 하나요?**

- 이전에 폐렴구균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가능하면 면역억제 치료 시작 최소 2주 전까지는 단백결합 백신 또는 다당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합니다.

• **폐렴구균 백신 접종 후 얼마가 지나야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다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해도 되고, 접종 전이나 후에 접종해도 됩니다. 불활성화 백신 간 또는 불활성화 백신-생백신 간에는 접종 간격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한 후 다당 백신을 최소 접종 간격인 8주보다 일찍 접종한 경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면역저하자, 무비증, 뇌척수액 누수 및 인공와우 이식 환자가 단백결합 백신 접종일로부터 8주 미만에 다당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이 다당백신 접종을 무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당백신 접종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다당백신을 다시 접종합니다.

• **2024년도(64세 7개월)에 의료기관에서 PPSV23을 접종한 1959년생인데, 5년 후 재접종을 하나요?**

- 아니요.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를 접종했는데, 이력이 있을 경우 PPSV23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예. 65세 미만에서 접종한 PPSV23 접종일로부터 5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65세 이상 연령에서 1회 재접종합니다.

• **65세 이후 PCV13을 접종받았다고 하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종기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PPSV23 접종이 가능한가요?**

- 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에 의거, 실시한 예방접종의 기록은 등록되어야 하나 성인 예방접종은 전산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피접종자가 PCV13을 접종했다면 접종일로부터 1년 후(최소 8주) PPSV23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접종력이 전산등록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 요청 안내

[참고] 담당주치의 상담이 필요한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보건소용)

•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군	질환명	아니요	예
정상면역성인	만성 심혈관 질환(고혈압 제외) ¹⁾ 만성 폐 질환 ²⁾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 알코올 중독 간경변을 포함한 만성 간 질환 흡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을 가진 자 ³⁾	검상구 빈혈 혹은 헤모글로빈증 무비증, 비장 기능장애 및 비장제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면역저하자	선천성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⁴⁾ HIV 감염 만성 신부전, 신증후군 백혈병, 림프종 전신적인 악성 종양 면역억제제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전신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 고형 장기 이식 다발성 골수종 호지킨병 조혈모세포이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1) 울혈성 심부전과 심근증 포함
- 2)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및 천식 포함
- 3)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환자나 면역저하자는 1차 다당 백신 접종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2차 다당 백신 접종이 권장됨
- 4) B세포(체액면역) 또는 T세포 결핍증, 보체결핍증(특히, C1, C2, C3, 및 C4 결핍증), 탐식구 질환(만성 육아종 질환은 제외)

상기의 기저질환자 접종 안내 (예진 의사 기록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13가/15가 단백결합백신 접종력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3가/15가 단백결합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 담당 주치의와 접종받을 백신(PCV13/15 또는 PPSV23) 및 접종시기에 대해 상담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음	<input type="checkbox"/>
• 담당 주치의의 상담을 안내하였으나 상담을 거부하거나 상담 받은 후에 23가 다당질백신 접종을 요구함	<input type="checkbox"/>

(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 로타텍은 각각 생후 2, 4, 6개월에 세 번을 접종하고, 로타릭스는 생후 2, 4개월에 한 번씩 두 번을 접종합니다. 두 가지 백신 모두 1차 접종 시작 최소 연령은 6주이고, 최대 연령은 14주 6일까지입니다. 최소 접종 간격은 4주이고, 마지막 접종 가능 연령은 8개월 0일입니다. 이와 같이, 접종 시작 및 완료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후 장겹침증 발생의 상대 위험도는 첫 번째 접종을 받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 생후 2개월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영아입니다. 이후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접종 간 8주 간격을 지키는 것을 추천하나, 지연된 경우 최대 생후 8개월되는 첫째날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 로타릭스(RV1) 2회, 로타텍(RV5) 3회(최소 4주 접종간격 고려)

• 생후 2개월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 이후 접종을 못한 채 생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접종해도 되나요?

- 아니요.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생후 8개월 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한 연령에서의 접종 후 장중첩증(장겹침증) 발생의 상대 위험도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접종하지 않습니다.

•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력이 없는 생후 15개월 영아인데, 접종 가능한가요?

- 생후 15주 0일부터는 1차 접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백신 모두 1차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은 생후 14주 6일입니다.

• 생후 15주 이상인 아이에게 우발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를 접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생후 15주 0일부터는 1차 접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생후 14주 6일이 지나서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을 시행했다면 일상적으로 권장되는 간격으로 나머지 접종을 시행합니다. 총 접종 횟수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생후 8개월 0일 이후에는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 두 가지 백신 1차 접종 가능 최대 연령 : 생후 14주 6일

※ 로타릭스는 2회, 로타텍은 3회 접종 필요

• **로타바이러스 1차 접종은 로타릭스(RV1)로 접종하였습니다. 2차 접종은 다른 백신으로 해도 되나요?**

- 아니요.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1가와 5가 두 종류입니다. 이 두 백신 간의 교차접종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전에 사용한 백신 종류를 전혀 알 수 없거나 백신 공급의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제품으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교차접종을 해야 한다면 5가 백신이 한번이라도 사용 되었거나 이전에 접종한 백신을 알 수 없을 경우는 총 접종 횟수가 3회가 되도록 접종합니다.

•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을 로타릭스(RV1)로 접종한 영아에게 2차 접종 시 로타텍(RV5)으로 교차접종을 한 경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두 가지 로타바이러스 백신 간 교차접종은 안전성, 면역원성, 효과 등에 관한 연구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우발적인 교차접종은 접종력을 인정하여 재접종은 필요하지 않으며, 3차는 가급적 직전 차수 접종에 사용한 로타텍(RV5)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합니다(총 접종 횟수가 3회가 되도록 함).

•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나요?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 예,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DTaP, Hib, IPV, B형간염, 폐렴구균 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의 동시접종은 연구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 간격이 없습니다.

• **미숙아가 퇴원하여 BCG 접종하려고 하는데, 로타바이러스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나요?**

- 예, 동시접종 가능합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경구용 생백신으로 비경구용 생백신(MMR, MMRV, 수두, 대상포진, 황열, 일본뇌염 생백신, BCG) 및 인플루엔자 생백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상호 간의 접종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 **백신 복용 시 혹은 복용 후 토하거나 뱉어도 재접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나요?**

- 백신 복용 시 또는 복용 후 토하였을 때 다시 한 번 더 접종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이 없습니다. 각 백신은 구토를 고려한 용량으로 제조되어 있어 백신을 토하거나 뱉어내도 재접종하지 않으며 권장되는 일정에 따라 남아있는 다음 접종을 모두 실시 하도록 합니다.

• **미숙아에게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나요? 가족 중 면역저하자나 임신부가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해도 되나요?**

- 백신을 접종받을 영아가 미숙아로 출생한 경우나 가족 중 면역저하자 또는 임신부가 있는 경우에도 백신 접종이 금기사항은 아니며 접종 가능합니다.

(8).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생백신인 MMR과 수두 백신(또는 일본뇌염 생백신)의 접종 간격은 얼마나 뒤야 하나요?**

- 주사용 혹은 비강 내 투여 생백신은 서로 동시에 접종하지 않는 경우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하여야 합니다. 예방접종의 최소 접종 간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면역이 잘 형성되지 않으며, 따라서 생백신의 접종 간격이 4주 미만인 경우 두 번째 투여된 백신은 인정되지 않으며 마지막 생백신 접종일로부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재접종해야 합니다. 다만, 경구용 생백신의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 간격은 없습니다.

• **홍역이 유행할 경우 7개월 된 아이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 주위에 홍역 환자가 있거나 홍역 유행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생후 12개월 이전이라도 생후 6개월 경과 시 접종 가능합니다.

• **생후 12~15개월에 MMR 백신 1차 접종 후, 홍역이 유행하여 2차 접종을 3세에 실시한 경우 추후 2차 접종을 다시 해야 하나요?**

- MMR 2차의 최소 접종 연령은 생후 13개월이며 1차와의 최소 접종 간격은 4주로, 이 경우 2차 접종으로 간주하며 더 이상의 추가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수혈을 받고 2개월 후 MMR 백신을 접종하였는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예. 면역글로블린 및 혈액제제는 백신의 면역원성을 저해하므로 종류와 양에 따라 접종시기의 지연이 필요하며, 혈액제제의 종류와 투여량에 따라 투여 3~11개월 후 재접종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맞은 MMR 백신은 접종 횟수로 포함하지 않으며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다만 세척 적혈구 (washed RBCs) 수혈을 받은 경우는 접종간격을 둘 필요가 없어 재접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일본에서 MR 2회 접종을 완료한 9세 아동입니다. 귀국 후 MMR 접종을 다시 하는 것이 좋은가요?**
 - MR 백신은 유행성이하선염이 제외된 홍역-풍진 백신이므로 유행성이하선염의 예방을 위해 MMR 백신의 2회 접종을 완료합니다.
- **어렸을 때 MMR 2회 접종을 완료한 가임기 여성이 풍진 항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과거 1~2회 접종했으나 풍진에 대한 항체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MMR 백신을 1회 더 접종합니다. 단, 총 접종 횟수는 3회를 넘지 않도록 하며, 이후 추가적인 풍진 항체검사를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9). 수두

- **지연한 수두 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과거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고 접종력이 없는 12세 이하 아동은 1회 접종이 필요하고,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 과거 수두병력 및 접종력이 없는 13세 이상 아동은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필요
- **1세 생일이 되기 2일 전에 수두 백신 접종 가능한가요?**
 - 아니요. 수두 백신은 최소 접종연령의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 생일 되기 전에 한 접종은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 **수두 백신을 접종받은 소아가 접종 4일 전 수두 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예방접종이 효과가 있을까요?**
 - 수두에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수두 환자에 노출된 경우, 노출 후 3일(혹은 5일) 이내 수두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기간 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70~100%에서 수두 발생을 예방할 수 있거나 수두가 발생하더라도 중증도가 낮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수두 접종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대상포진을 앓는다는 것은 과거에 수두를 앓았다는 증거이므로 수두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수두와 MMR 백신 접종 시 지켜야 할 접종 간격이 있나요?

- MMR 백신과 수두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나, 만일 두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하지 않으면 최소 4주 이상의 접종 간격을 유지하여 접종합니다.

• 수두 백신이 수두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 수두 백신은 약독화된 생백신입니다. 백신 접종 후 3주 이내에 접종자의 4~6%에서 수두와 비슷한 발진이 나타날 수 있는데, 평균 5개의 발진(수포가 아닌 반구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한 수두에 걸리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 수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나요?

- 예.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백신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사례를 보면 백신 바이러스보다는 야생주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족 내 접촉을 통한 백신 바이러스 전파가 드물게 보고되었는데, 백신 접종자에서 접종 후 발진이 나타난 경우였습니다.

• 수두 예방접종이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 있나요?

- 예. 하지만 수두에 걸린 경우보다 드물며 경하게 앓게 되고, 중한 합병증은 생기지 않습니다.

(10). A형간염

• 17개월 아이입니다. 아이 예방접종일정표에 보면 A형간염을 3월, 9월에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는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접종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A형간염 접종은 추후 몇 살에 접종하나요?

- A형간염 백신은 계절에 따라 접종하는 것은 아니며, 생후 12개월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는데 권장하는 접종 연령은 생후 12~23개월입니다. 모두 2회 접종을 하는데 2차 접종은 제품에 따라 6~18개월 후에 접종합니다.

• 3세 소아인데 1차 A형간염 백신을 2년 전에 접종하고 2차 접종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접종하나요?

- 접종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정한 횟수(2회)만 접종하게 되면 충분한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으며, 가능한 빨리 2차 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 **A형간염 백신의 2차 접종을 실수로 3개월 만에 했습니다. 보호자에게 2차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 3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 간격으로 3번 접종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 A형간염 백신의 2차 접종 시기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두 1차 접종 6개월 이후 실시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면역을 얻기 위해 잘못 접종한 날로부터 최소접종간격인 6개월을 두고 재접종을 해야 합니다.

• **A형간염 백신의 접종 전이나 후에 항체검사를 해야 하나요?**

- 백신 접종 전 항체검사의 실시 여부는 백신 가격과 검사 비용 간의 경제적 요인 및 인구의 항체 보유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백신 접종력이나 A형간염의 이환력이 없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40세 미만에서는 검사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40세 이상이라면 백신 투여 전 검사를 시행하여 항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 **중국에서 A형간염 약독화 생백신으로 1차 접종했는데, 2차 접종은 국내 유통 중인 불활성화 백신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 아니요. WHO 자료에 따르면 A형간염 약독화 생백신은 1회 접종이 권고되므로 중국에서 약독화 생백신으로 1회 접종했다면 A형간염 접종 완료자로 판단합니다.

(11). 일본뇌염

• **일본뇌염 접종이 지연되어 2세에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지금 3세인데 앞으로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백신 종류에 따라 일정이 달라집니다. 생백신인 경우 지금 바로 2차 접종을 시행하여 완료합니다. 불활성화 백신인 경우 바로 2차 접종을 시행하고 6개월 후에 3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3차 접종이 4세 이후에 시행되었다면 6세 추가접종 없이 12세에 4차 접종 후 종료합니다.

• **42개월 된 아이로 2년 전 불활성화 백신을 2차까지 받았다면 향후 접종은 어떻게 하나요?**

- 지금 바로 3차 접종을 시행하고, 6세, 12세에 각각 1회 추가접종을 시행합니다.

• **성인이 될 때까지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불활성화 백신의 경우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11개월 후 3차 접종을 합니다. 생백신의 경우 키메라 백신으로 1회 접종합니다.

• **약독화 생백신 1차 접종 후 11개월에 2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약독화 생백신 1차 접종 후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한 경우 재접종이 불필요합니다.

• **약독화 생백신 1차를 11개월에 접종했다면, 생후 12개월에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WHO에서 약독화 생백신은 8개월부터, 키메라 바이러스 백신은 9개월부터 접종하도록 권장하며, 우리나라에선 12개월에 접종을 추진하지만 9개월 이후 접종되었다면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 **10세 이후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최소 접종 간격을 지키지 않고 접종한 경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10세 이후 4·5차 접종 시, 최소 접종 간격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간 교차접종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두 약독화 생백신의 교차접종 연구 결과에 따라 교차접종이 가능하므로, 2차 접종을 국가 지원백신으로 교차 접종하면 비용지원 가능합니다.(단, 2차 접종을 국가 미지원 백신으로 접종 시 비용지원 불가)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간 교차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2023. 8. 7.~)

• **일본뇌염 1차를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하고 2차 시기에 불활성화 백신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 아니요.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 간 교차접종 효과 등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으로 1차 접종했다면, 2차 접종도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 간 교차접종은 접종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불활성화 백신 1차란에 전산등록 필요) 비용상환도 제외됩니다. 다만, 첫 교차접종 이후 접종은 두 가지 백신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접종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세 이상에서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접종 시 0.7ml 백신이 없어 0.4ml 백신 2vial을 사용하여 접종해도 되나요?**

- 아니요. 식약처 사용허가 권장기준에 따라 3세 이상은 반드시 0.7ml 백신을 사용하여 권장 용량(0.5ml)을 접종합니다. 이에, 0.4ml 백신으로 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 0.4ml로 접종했다면 0.7ml로 빠른 시일 내에 재접종 필요(비용지원가능)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접종을 지연하여 9세에 접종한 아동은 5차 접종을 해야 하나요?**
 - 예.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5차 접종은 필요합니다. 다만, 4차와 5차 접종의 최소접종 간격(5년)을 고려하여 접종해야 하므로 5차 시기 연령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용지원은 제외됩니다.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을 지연하여 4세에 접종한 아동이 6세에 4차 접종하면 해당 접종력이 인정되나요? 이후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니요. 3차 접종을 4~9세에 실시했다면 다음은 12세에 접종해야 합니다. 이룬접종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비용상환 불가하며, 재접종은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12세에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1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지난번 맞은 HPV 백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HPV 백신 접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나요?**
 - HPV 백신은 가능한 동일한 백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접종한 백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의 HPV 백신을 택하여 남은 횟수만큼 추가접종을 하여 완료합니다.
- **개인적 사정으로 HPV 백신 접종일정을 서둘러야 하는데 접종 횟수와 간격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나요?**
 - 첫 접종을 시작한 나이를 기준으로 접종 횟수가 결정됩니다. 15세 미만 첫 접종을 받은 경우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15세 이상에 첫 접종을 받았으면 총 3회 접종합니다. 2회 접종 시 1차와 2차는 최소 5개월 간격을 두어야 하며, 3회를 접종할 때 1차와 2차는 최소 4주, 2차와 3차는 최소 12주, 1차와 3차는 최소 5개월의 간격을 두고 접종하여야 합니다.
- **HPV 1차 예방접종을 받고난 뒤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태아에게 영향은 없을까요? 2차 접종을 받아야 할까요?**
 - HPV 백신 임상시험 시 임신부는 접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일부 접종자에서 임신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의 임신 결과를 평가하였을 때 기형을 비롯한 태아 안전성은 접종군과 대조군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HPV 백신 접종과 관련된 태아 안전성이 충분히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임신부에게는 HPV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며, HPV 백신 접종은 임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연기되어야 합니다.

• **11세 여아에게 3개월 간격으로 HPV 4가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접종 안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HPV 4가 백신은 14세까지 1차 접종 후 최소 5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차와 2차 접종 간 최소접종 간격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총 3회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최소 접종간격을 미준수한 2차 접종은 비용지원이 되지 않으며, 3차 접종은 2차 접종과 최소 12주 이상, 1차 접종과는 5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합니다.

• **HPV 1차 접종 후 18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처음부터 재접종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처음부터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차수부터 접종하여 완료합니다. 초회 접종 연령에 따라 2차 또는 3차 접종을 완료합니다.

• **12세에 HPV 1차 접종을 하고 15세에 2차 접종 시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처음부터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차수부터 접종하여 접종을 완료합니다. 이 경우 총 2회의 접종으로 완료합니다.

• **HPV 비용지원 확대 대상자인 12세 남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HPV 2회(0, 6개월 간격)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합니다.

※ HPV 국가예방접종 부대사업으로 운영중인 '여성청소년 표준건강상담'은 초경 등 여성 관련 내용으로, 남성청소년은 미해당되며 상담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과거 HPV 9가 백신으로 유료접종한 경우 2차 시기 4가 백신으로 접종 가능한가요?**

- HPV 백신간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접종자(보호자)가 무료접종을 원할 경우 동의하에 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차접종은 비용상환 신청시 수동처리가 필요하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Q&A게시판)에 별도 요청 필요

(13).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독감을 일으킬 수도 있나요?**

- 예방접종 사업 대상 백신인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은 바이러스 성분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성이 없습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은 접종으로 70~90%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효과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백신은 감염 예방 이외에도 중증질환과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가 사람마다 서로 다른가요?

- 연령대와 임신 여부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합니다.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심각한 질병, 입원, 사망의 위험을 현저히 낮춥니다. 특히 50~60%의 입원 예방효과와 80% 수준의 사망 예방효과가 알려져 있어 중증질환 및 사망을 낮추기 위해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62~66%의 감염예방효과가 있으며 중증질환을 일으키는 심각한 인플루엔자 감염은 75% 수준으로 예방합니다. 임신부의 경우 40% 수준의 입원 예방효과와 함께, 태아에게 항체를 전달하여 임신기간과 출산 후 영아에게도 첫 몇 개월간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12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2회 접종이 필요한 소아의 경우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 9월에 접종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 전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12월 이후라도 미접종자의 경우 유행 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보통 11월에서 다음 해 4월이고, 예방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리며, 면역 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12개월) 지속됩니다. 따라서, 너무 이른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다음 해 3~5월경에 항체가 방어 수준보다 낮아지면서 감염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게 접종을 하면 인플루엔자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필요한가요?

- 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력은 접종한 다음 해에 감소하며, 유행 주 항원성의 변화를 맞추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해마다 유행이 예측되는 균주를 포함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접종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 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약 2주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나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전이라면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종한 백신의 바이러스와 당해 유행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추가로 접종해도 되나요?

- 아니요.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접종한 9세 미만의 소아가 아니라면 매 절기 1회만 접종합니다.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허가사항에 준하여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번 절기에 인플루엔자로 진단받고 치료받아 완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 예. 인플루엔자 백신은 3가지 인플루엔자 백신 주를 포함하는데, 1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다른 유형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지 않으며,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백신에 포함된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후 6개월 이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나요?

- 예. 생후 6개월 미만 연령은 인플루엔자 백신接种의 유효성, 안전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얻지 않은 대상입니다. 따라서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같이 지내는 가족 및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임신기간 동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 예. 적극 권고합니다.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도 접종 가능합니다.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 위험이 크므로 이를 예방하고, 또한 임신 중 접종으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로 전달되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도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임신부 예방 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 **26개월 된 아기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였는데 1회만 접종하였습니다. 올해 두 번 접종을 해야 하나요?**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첫해에 1회만 접종받은 경우 그다음 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4주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2회 접종을 권고합니다.
-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접종을 같은 날 시행해도 되나요?**

- 예. 만일 동시 접종을 하는 경우 접종 부위를 달리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부 인플루엔자 대상자 여부를 서류로만 확인하면 되나요? 해당 서류 사본 등을 보관해야 하나요? 보관해야 한다면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 산모 수첩, 임신 확인서, 임신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하고, 예방접종력 입력 시 예방접종 당시 임신주수 및 출산예정일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서류는 별도로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 **65~69세, 70~74세 등 어르신 사업기간 예외인정 접종 중 각 연령대별 사업 시작 시기 전에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예. 단, 연령대별 사업 기간 준수 및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접종해도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사업 개시일 이전에 접종한 건은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접종대상자의 연령 및 접종 횟수에 따른 사업 시작일 이후에 접종된 건부터 비용상환이 가능합니다. 단, 접종 내역의 전산 등록은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성인이 고혈압 등 타 질환으로 진료와 예방접종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더라도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예. 진료비와 무관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시행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임신부가 정기검진 등의 진료와 예방접종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더라도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예. 진료비와 무관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시행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 기간 내에 생후 6개월이 되는 소아의 경우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 사업 대상은 당해 2월 말 기준 생후 6개월 도래자까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 기간이 4월 30일 까지로 지정된 이유는 잦은 병치레로 예정된 일정에 접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흔하게 발생하여 2월 말 기준 6개월 도래자의 접종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과거 5년간 5월에 유행주의보 해제), 접종 후 항체 형성 시기(2주~4주), 2회 접종 시 간격(4주)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 완전 접종을 목표로 어린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생후 24개월 어린이가 3세 이상으로 허가된 3가 백신을 접종하였을 때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백신별로 허가연령이 다르므로 허가연령을 준수하여 접종해야 합니다. 2025-2026 절기 3세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백신은 ①일양약품: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②한국 백신: 코박스인플루PF주이며, 생후 6~35개월 대상자에게 해당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는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14). 장티푸스

• 장티푸스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접종을 원하는 경우 권장해야 하나요?

- 접종은 가능하나, 다만 금기사항 및 주의사항,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접종해야 합니다.

• 과거에 장티푸스를 앓았는데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 장티푸스를 앓았던 경우에도 재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위험군 여부와 감염 위험성 등을 따져 선별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합니다.

• 장티푸스에 걸린 환자의 가족입니다.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 장티푸스균을 1년 이상 보균하면서 소변·대변을 통해 계속 균을 배설하는 사람을 만성보균자라고 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2차 감염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족이나 보균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사람인 경우 예방접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5). 신증후군출혈열

•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을 11세 아동이 접종을 원할 경우 접종이 가능한가요?

-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은 19세 이상 고위험군 성인에게 허가되었고, 소아에서 시행한 임상시험에서는 6세까지 접종한 바 있으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는 소아연령에서의 발생 빈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증상도 비교적 경미하므로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신증후군출혈열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 예. 두 가지 이상의 불활성화 백신이나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므로 신증후군출혈열과 인플루엔자 백신 간 동시접종은 가능합니다.

(16). 코로나19

• 확진 후 2개월 만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유효접종으로 인정되나요?

- 확진일과 관계없이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접종하였다면 유효접종으로 인정됩니다. 단, 확진자의 경우 자연면역을 고려하여 확진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접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마지막 접종이 9월 1일인 경우 마지막 접종일 이후 90일이 되는 날인 11월 30일부터 접종 가능

•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65세인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되나요?

- 코로나19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및 승인 사항에 따라 12세 이상이라면 과거 접종력에 상관없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백신으로 접종이 필요할까요?

- 신규 백신은 유행하는 변이주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백신으로 이전 접종력에 상관없이 신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성인과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 및 중증 위험이 높고, 면역 지속기간이 3~6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매년 신규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 다른 백신 접종 시 고려해야 하는 간격이 있나요?

- 인플루엔자 백신과의 동시 접종으로 인한 면역 간섭과 안전성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 되었으므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외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경우에도 권장되는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둘 근거는 없으며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없나요?

- 모든 알레르기 반응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백신이나 주사행위, 백신의 구성 성분과 관련이 없는 알레르기 반응은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다음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접종 후 30분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백신 접종 금기대상
 - 트로메타민(트리스(히드록시메틸)와 동일성분),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 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심근염·심낭염을 앓았던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없는 심근염·심낭염의 회복(①완전한 증상 소실, ②심장회복의 근거에 대한 검사 정상) 이후로는 접종이 가능하며,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와 상의 후 접종 바랍니다.

•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이 있는 경우 다른 해열진통제를 먹어도 되나요?

- 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 완화를 위해 파라세타몰(Paracetamol) 또는 아세트아미노펜 (acetaminophen) 계열의 진통제 또는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같은 소염제가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진통소염제 효과에 대한 연구 및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전에 필러를 시술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예. 다만, 필러 시술자에서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얼굴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mRNA백신 접종 후 얼굴부종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인데 증빙서류 없이도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접종기관에 본인이 면역저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제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진의사가 예진 과정에서 면역저하자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 **모더나 백신을 두 번 접종하는 스케줄 중에 생일이 지나 현재 12세가 된 경우, 남은 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나요?**

- 모더나 백신(0.5mL)으로 1회 접종받으면 접종이 완료됩니다.

(17). 엠폭스

• **해외여행 예정입니다. 엠폭스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현재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은 18세 이상 성인에서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노출 전·후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HIV 감염자도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3세대 백신은 HIV 감염자에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 접종이 가능하며, 예방접종 전 의료진과 상의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엠폭스는 임신부에게서 태아·신생아로 감염이 가능한가요?**

- 감염된 임신부의 태반을 통해 태아 감염이 가능하며, 분만 중 산모와의 초기 신체적 접촉을 통해 신생아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4). 부대사업 관리 문의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

• (지원대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등) 자녀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내역 관리를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검사가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예방접종등록 화면 접종일에 보라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인적정보 하단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란은 공란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맞나요? 이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과거 수첩(쿠폰발급) 대상자 중 예방처치일정 미완료자가 전산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공란으로 보여집니다.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독 후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관리 메뉴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독완료 체크 후 대상자승인 처리 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관리로 전환되며 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사업으로는 더 이상 비용지원이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사업관리 종료자도 공란으로 보여짐

• (지원대상) 2013년 이전 출생아로 과거 쿠폰지원 대상자입니다.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올해(2026년) 사업 대상자인 2013년 이후이후 출생아는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용지원을 위해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구독 후,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에 전환 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방법)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동의서를 구독 후 예방접종 통합 관리시스템 예방접종등록 화면에서 사업 참여여부 체크 시 참여할 수 있으며, ①산모의 B형간염 검사결과와 ②면역글로불린 투여내역, ③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등록업무 → 예방접종 등록에서 피접종자 정보 입력 및 저장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산모 검사 결과지, 면역글로불린 투여 내역,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완료

• (참여방법)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 예. 반드시 산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구득해야만 사업 참여 및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 2014년 이전 사업참여자 중 관리가 진행중인 기존 대상자(쿠폰발급자)는 전산 등록이 불가능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후 전산등록 전환·승인 이후 등록 및 비용상환 가능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구득한 기관에서 5년 간보관. 단, 관리 중 대상자는 관리 종료 시까지 보관 필요

• (참여방법) 대상자가 뒤늦게 참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등록하나요?

- 출생 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뒤늦게 참여를 원하는 경우 당해 사업 대상자라면 중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간 참여자는 보건소에서만 등록할 수 있으며, 대상자 등록 이후 예방처치 일정부터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됩니다.

※ 기신청(지급) 내역은 변경되지 않으며, 1차 접종부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으로 비용 청구를 원한다면 비용환수 후 1차접종부터 재등록 필요

※ 신규대상자 신청 시 필요정보 및 서류 : 사업대상자 분만정보(임신기간, 분만방법, 출생체중 등), 해당아 임신 당시 산모의 검사결과지,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보건소 전산등록방법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등록 → 인적정보 조회 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사업 대상자 체크박스에 체크 후 필수정보 입력 저장

• (참여거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거부 시 어떻게 되나요?

- 산전 진찰기관 또는 분만기관에서 B형간염 양성 산모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안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B형간염 예방접종 비용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참여승인) 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로 신생아를 등록하였습니다.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B형간염 대상자관리 메뉴에서 관리 상태가 신규인 아동을 선택하여 산모 검사 결과와 검사 결과지 사본을 확인 후 대상자승인 버튼을 눌러 승인합니다. 대상자 승인 완료 이후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B형간염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대상자관리

- **(예방처치) 비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감염자인 산모입니다. 출산 후 아기에게 면역 글로불린을 바로 투여하였으나 B형간염 1차 예방접종은 6일 후에 접종하였는데 괜찮을까요? 또, 모유 수유 시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 산모가 B형간염 만성 감염자인 경우 출산 후 12시간 이내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및 백신의 동시 접종이 원칙이나, 즉각적인 예방에 역할을 하는 것은 면역글로불린이므로 6일 후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아기에게 나쁜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아기에게 예방조치를 실시한다면 모유 수유를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예방처치) 항원·항체검사를 EIA, CIA, ECL 등 권장하는 정량검사법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사업에서 권장하는 항원·항체 정량검사법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항원 또는 항체검사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시행 시 비용상환이 불가능합니다.

- **(예방처치) 기초 1~3회 접종 완료 후 1차 항원·항체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1차 재접종을 실시한 아동입니다. 2차 항원·항체검사를 하지 못하고 2차 재접종을 시행하였는데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검사 실시기준에 따른 진행순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비용지급이 불가능합니다. 1차 재접종 후 반드시 2차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를 바랍니다.

- **(결과등록) 항원·항체검사 결과 항체가 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입력하여 수정하려고 하는데 결과등록내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항원·항체검사 결과가 항원(음성)/항체(양성) 또는 항원(양성)/항체(음성)이면 전산등록과 동시에 사업이 종료되어 의료기관 등록화면에서는 접종력만 확인됩니다.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정보수정 또는 삭제 요청 후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등록) 산모의 인적정보를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수정할 수 없나요?**

- 산모의 인적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검사결과지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B형간염 민원처리를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2). HPV 표준여성청소년 건강상담

• (협약서) 의료기관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를 업로드 했는데 보건소에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 의료기관에서 계약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와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확인증을 모두 등록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서) 최초 계약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백신공급기관이 변경된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백신 공급처 변경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건소 승인 이후부터 변경 정보가 반영되니, 승인 지연 시 관할 보건소로 계약 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계약신청관리 → 변경협약서 업로드

• (협약서)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협약서의 백신공급기관이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련 양식에 백신공급기관 정보를 작성하여 백신수급과(043-719-6816)에 연락 바랍니다.

※ 양식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공지사항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공급방법 안내'

• (협약서) 의료기관에서 협약업체(백신공급기관)가 변경되었는데, 협약업체를 변경하지 않고 접종하거나, 협약업체를 변경한 후 기존 협약업체에서 공급받은 백신으로 접종하여 백신비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협약업체로 조회 후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접종건에 대해 등록된 협약업체를 변경하고, 조달계약업체에 변경된 협약업체를 통보하고 백신비 정산(정정) 조치 요청합니다.

• (오등록) HPV 백신 접종력 등록 시 백신정보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미 비용지급 됐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접종내역을 삭제하고 재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비용지급된 내역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차감·삭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질병관리청 담당자에게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HPV 접종 내역 삭제) 보건소는 ①지급한 시행비를 환수하고 ②삭제할 접종정보 및 해당 의료기관 백신 계약정보를 아래 양식에 작성하여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043-719-6816)에 연락 바랍니다.

백신종류	피접종자명	주민번호	접종일	백신비 청구일	백신비 지급일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 연락처	제조번호	협약 공급업체	

(백신비용) 질병관리청에서 내역 삭제 후 조달계약업체에 통보, 보건소는 조달계약업체에 해당 백신비를 환급 또는 정산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비가 지급된 경우 상담비를 환수하지 않고 새로 등록하는 접종력에 지급 정보 이전 처리

• **(지원내용) 12세 여아에게 건강상담 또는 HPV 예방접종서비스를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위탁의료기관은 반드시 건강상담과 HPV 예방접종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사업 대상자 본인이 상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서비스만 제공 가능

• **(지원내용) 예방접종 대상자가 건강상담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 대상자가 건강상담 점검표의 건강상담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표시한 경우 건강상담을 거부한 것으로,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화면 하단에 '건강상담 동의안함'에 체크하여 저장합니다. 또한 건강상담을 시행하지 않은 건은 건강상담비용(진료비) 청구가 불가하니 주의합니다.

• **(지원내용) 의료급여자(1종·2종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건강상담비용(초진진찰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 12세 여성청소년에게 HPV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진료 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면 진료비 청구 시 요구되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건강상담비용(진찰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자의 보험자부담금 청구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안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주민등록말소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은 HPV 예방접종과 건강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등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HPV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상담대상자(12세)가 아닌데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 12세 여아는 초경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시기로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HPV 확대 대상자 대부분은 초경 시기가 지나 상담을 권고하지 않으며, 건강상담비도 지원 불가능합니다.

※ HPV 국가예방접종 부대사업으로 운영 중인 '여성청소년 표준건강상담'은 2026년 기준 지원 대상은 2013-2014년생 여성청소년 해당

• **(지원대상) 저소득층 대상자가 예방접종등록시스템 행복e음으로 자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행복e음으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접종 당일 발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류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연금(차상위초과부기급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 **(지원대상) 저소득층 여성 대상자가 1차 접종 후 저소득층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자격 상실 후 접종내역을 등록해도 비용상환이 되나요? 다음 접종도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 HPV 저소득층 사업 대상은 접종 당일의 저소득층 계층 여부를 확인 후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종 당일 저소득층임이 확인되었다면 예방접종 지원 가능합니다. 중간에 자격이 상실 되면 저소득층 자격 상실 통보일 다음날부터는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급확인) 상담비 지급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 메뉴보기 →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 상담비지급결과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급확인) 건강상담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은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상담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급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 상담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정보를 우선 확인하고, 피접종자 관할 보건소에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① 접종내역 등록 시 상담동의여부 등록정보

② 건강보험 청구 시 상담코드 기재여부

* 코드(상병분류기호 R688, 특정내역구분 MT002, 상담대상자코드 F012) 누락 건은 질병관리청에서 확인 불가하므로 코드 기재 후 재청구 필요

③ 접종비 지급심사 결과(실시기준 미준수 등 비용상환 제외 건은 상담비 지급 불가)

④ 진료일(요양개시일)과 접종일자 동일여부

⑤ 접종비 및 상담비 청구시점

* 접종비와 상담비 모두 시행 당일 청구하지 않고, 청구시점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담비 지급 지연될 수 있음 주의

⑥ ①~⑤ 모두 정상 확인 시 심평원 심사년월 확인 후 질병관리청 Q&A 문의

• (진찰료 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일반 1	건강보험 이외 의료급여, 보훈 대상자 포함 여부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이외 의료급여, 보훈 포함
일반 2	외래 및 입원 시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라 예방접종과 진찰·상담이 실시된 경우 본인부담률 산정 방법	외래·입원 구분에 따른 각각의 본인부담률 적용
수가 1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 시 야간·공휴 가산 적용 여부	현행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가-1-가. 초진 진찰료 산정과 동일하게 야간·공휴·토요 가산 적용함
수가 2	같은 날 동일 의사에게 HPV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제공하는 진찰·상담 이외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료받은 경우 진찰료 산정 방법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에 따라,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에 따른 진찰·상담에 대한 진찰료 1회만 산정 ※ 다만,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별도 질환을 진찰한 경우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 가능(분리청구)
수가 3	예외인정 대상(예 : 면역저하자에게 3회 접종하거나 조혈모세포이식 등 타당한 의학적 사유로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의 경우 진찰료도 3회 산정 가능한지 여부	표준 여성청소년 건강상담 시 발생하는 진찰료는 대상자당 최대 2회까지 인정
수가 4	HPV 예방접종 시행일 외 다른 날짜에 방문하여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을 하는 경우 진찰료 인정 여부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는 예방접종 시행 당일 동시에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청구 1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 시 기재하는 상병분류기호는?	R688(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
청구 2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 시 기재내역은?	특정기호 F012(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 대상자)

연번	질의	답변																														
<p>청구 3</p>	<p>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 시 기재된 본인 일부 부담금은?</p>	<p>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사업 예산으로 지급)</p> <p><건강보험 의원(외래) 작성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675 374 1259 566"> <thead> <tr> <th>요양급여 비용총액 2</th> <th>요양급여 비용총액 1</th> <th>본인일부 부담금</th> <th>청구액</th> <th>특정내역 구분</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MT002</td> </tr> </thead> <tbody> <tr> <td>15,310</td> <td>15,310</td> <td>4,500</td> <td>10,810</td> <td>F012</td> </tr> </tbody> </table> <p>1) 요양급여비용총액2 = 진찰료금액 2)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 기재 15,310(요양 급여비용총액1) × 30%(외래본인부담률) = 4,500원(100원 미만 절사) 3) 청구액 = 요양급여비용총액 - 본인일부부담금</p> <p><의료급여2종수급권자 의원(외래) 작성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675 889 1259 1081"> <thead> <tr> <th>요양급여 비용총액 2</th> <th>요양급여 비용총액 1</th> <th>본인일부 부담금</th> <th>청구액</th> <th>특정내역 구분</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MT002</td> </tr> </thead> <tbody> <tr> <td>15,310</td> <td>15,310</td> <td>1,000</td> <td>14,310</td> <td>F012</td> </tr> </tbody> </table> <p>1) 요양급여비용총액2 = 진찰료금액 2)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의 2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기재 = 2종 수급권자 그밖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 1,000원 3) 청구액 = 요양급여비용총액 - 본인일부부담금</p>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구분					MT002	15,310	15,310	4,500	10,810	F012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구분					MT002	15,310	15,310	1,000	14,310	F012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구분																												
				MT002																												
15,310	15,310	4,500	10,810	F012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구분																												
				MT002																												
15,310	15,310	1,000	14,310	F012																												
<p>청구 4</p>	<p>HPV 예방접종 시행 당일 진찰·상담 외 다른 행위(검사, 처치 등)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청구방법</p>	<p>명세서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p> <table border="1" data-bbox="675 1364 1259 1546"> <thead> <tr> <th>구분</th> <th>특정내역구분</th> <th>특정내역</th> </tr> </thead> <tbody> <tr> <td>예방접종</td> <td>MT002</td> <td>F012</td> </tr> <tr> <td>다른 행위 (검사, 처치 등)</td> <td>MT001</td> <td>R</td> </tr> </tbody> </table>	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예방접종	MT002	F012	다른 행위 (검사, 처치 등)	MT001	R																					
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예방접종	MT002	F012																														
다른 행위 (검사, 처치 등)	MT001	R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V. 부록

5). 비용상환

(1). 공통

• 계약 체결 후 비용상환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후 예방접종 건부터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보건소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승인한 비용상환 참여일 기준

• 비용 지급에 사용할 계좌정보를 변경하고 싶는데 가능한가요?

- 예. 위탁계약 체결 이후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신청 메뉴에서 통장 사본을 다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업로드한 통장 사본을 보건소에서 승인한 이후부터 변경된 계좌정보로 비용이 지급됩니다.

• 위탁의료기관의 비용상환 절차와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 시 자동으로 비용상환이 신청되며, 행정안전부 주민 정보시스템에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약 1일 소요) 후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접수·심사 후 지급합니다.

※ 단, 실시기준 미준수, 백신제조번호 미등록 등 불완전한 접종내역은 비용상환의 신청이 불가능

• 예방접종의 실시 후, 비용상환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비용상환 신청 기한은 2015년 폐지되었으나, 중복접종의 방지를 위해 접종 당일 전산등록을 권고합니다(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 지급).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과거 접종력이 없고 보호자도 접종이력을 기억하지 못해 우선 접종을 시행하였으나, 나중에 보호자의 예방접종수첩 등으로 접종력을 확인했다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접종 당시 과거 접종력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비용상환이 인정되나, 원칙적으로 과거 접종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시한 중복접종은 비용상환이 불가능합니다.

•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의학적 소견(재접종)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예.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이식 후 재접종이 필요하며,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예방접종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했다면 비용상환이 가능합니다.

※ (예) 12세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이식일로부터 3년간(36개월 하루 전까지) 비용지원 가능

• 백혈병 등의 혈액종양 또는 고형종양으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받은 경우 재접종 시 비용 상환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 이전에 접종받았던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은 불필요하나, 면역저하 상태 동안 접종한 불활성화 백신은 면역기능이 회복된 이후에 재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이 필요했다면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접종등록방법 : 중복등록할 차수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추가 등록하고, 의학적소견을선택(면역저하 상태 동안 받은접종의 재접종(항암치료 후 등))하거나, 필요에 따라 상세사유를 작성하여 신청

•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접종했는데 비용상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백신잔량 또는 접종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잔량) 백신잔량이 0인 경우에는 비용상환이 신청되지 않으니 중복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기록을 우선 등록한 후, 관할 보건소에서 백신 재분배 및 입고등록을 실시합니다. 재분배 후 의료기관은 기존 접종기록의 완전 삭제 후 접종정보(실제 접종일 등록, 제조번호 등)를 재등록합니다. (접종정보확인) 의료기관에서 접종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비용상환 신청되지 않으니 접종력을 완전히 삭제 후 재등록합니다. 만약, 비용신청이 안 된다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Q&A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비용상환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 보건소 비용상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환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합니다.

• (이의신청) 비용상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보건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 결정기한 만료 5일 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기준

• B형간염 기초접종 후 항체검사 결과가 음성이라 재접종 시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기초접종 완료 후 일률적인 항체 검사를 권장하지 않으며, 해당 검사 결과에 따른 추가접종은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다만, B형간염 고위험군(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 받아야 하는 환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등)은 검사가 필요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재접종이 필요하다면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HBsAg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출생 시 체중 2.0kg 미만으로 태어난 경우 B형간염 비용 상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산모의 HBsAg 상태를 알 수 없거나 양성인 산모에게서 출생 시 2.0kg 미만인 신생아는 총 4회의 접종이 필요하며, 4회 모두 비용지원 됩니다.

[접종일정] ①분만 직후(12시간 이내) 접종(기초접종 횟수에 미포함), ②생후 1개월에 1차 재접종*, ③생후 2개월에 2차 접종, ④생후 6~7개월에 3차 접종

* 1차 재접종 등록 시 의학적 조건 : 이전 접종력 불인정으로 인한 재접종 > B형간염 미숙아 접종 > 출생 주수 및 출생 시 체중 입력

- 산모의 HBsAg이 음성이라면 총 3회 접종비용 지원
※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처치 대상은 예방접종 비용을 별도 관리

• 출생시 B형간염 1차 접종과 생후 2개월에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 1차 접종을 완료한 영아가 6가 혼합백신 2차 접종을 생후 5개월에 지연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6가 혼합백신으로 3차 접종시 비용상환이 가능할까요?

- 아니요, 비용상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가 혼합백신 2차를 지연된 예방접종으로 시행하게 되어, B형간염 3차 접종의 실시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3차 접종은 B형간염이 제외된 동일 제조사의 다른 백신(5가 혼합백신 등)으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B형간염 3차 접종의 최소접종연령 생후 24주(-4일)와 최소접종간격 2차-3차(8주) & 1차-3차(16주) 충족

• 과거 접종력이 없는 11세 아동에게 B형간염 접종 시 지원되나요?

-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11세 이상 연령은 1.0ml 백신으로 접종하고, 1.0ml 백신비용을 상환합니다.(2018. 8. 24.부터 지원 적용)

※ 전산등록 되지 않은 접종력을 우선 확인하고, 접종력이 없다면 기초접종 3회 가능

• 피내용 BCG 접종이 지연된 경우 TST 비용도 지원 되나요?

- 아니요. BCG 예방접종을 지연한 생후 3개월 이상의 연령은 결핵균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가 필요하나, 검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생아기에 BCG 접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파종 결핵의 고위험 연령대로 알려져 있는 5세 미만 어린이의 TST 결과가 음성이라면 피내용 BCG 지연접종 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피내용 BCG 예방접종 후 반흔이 없는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BCG의 반흔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접종을 완료했다면 반흔 유무로 재접종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재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 **생후 18개월에 DTaP 4차 접종을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고 4차(추가)에 등록했습니다.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DTaP 4차 접종 권장시기의 DTaP-IPV 혼합 백신 접종 시 DTaP 접종력은 유효하나, IPV 접종력은 최소접종 연령(4세)을 준수하지 않은 무효 접종으로 4~6세에 재접종을 실시합니다.

• **DTaP 접종을 완료한 10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했다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향후 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예. DTaP 접종을 완료한 아동은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접종하여야 하나, 우발적으로 10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했다면 유효접종으로 간주하므로 비용상환 가능하며, 11~12세 Tdap 백신은 생략 가능합니다.

• **DTaP 기초접종(3차)을 완료한 6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향후 접종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예. Tdap 백신은 7세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나, 우발적으로 DTaP 기초접종을 완료한 6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했다면 유효접종으로 간주하여 비용상환 가능하며, 향후 11~12세에 Tdap 백신을 접종합니다.

• **DTaP 기초접종(3차)을 미완료한 6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향후 접종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아니요. DTaP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6세 아동에게 Tdap 백신 접종은 무효접종으로 비용상환 불가하며, 오접종일로부터 최소 4주 간격을 두고 DTaP 백신으로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이후 11~12세에 Tdap 백신을 접종합니다.

• **8세에 Td 백신으로 기초 3회를 0, 1, 6개월 간격으로 접종한 아동이 11세에 Tdap 백신을 접종해도 되나요? 비용상환은 가능한가요?**

- 예. 11~12세 접종은 Tdap 백신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인해 권장접종간격(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6차 추가접종 시기인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으며 비용상환도 가능합니다.

• **DTaP 추가접종(5차)를 미완료한 7세 아동에게 Td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향후 접종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DTaP 접종이 지연된 7세 이상의 소아는 Tdap/Td 따라잡기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다만 7~10세에서 우발적으로 Tdap 백신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에도 접종력을 인정하여 비용상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12세 추가 접종시기에는 백일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Tdap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며, 백일해 백신 금기자 외 Td 백신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 **7세 소아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DTaP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하여 2차 접종일로부터 4주 후 3차 접종하였는데 비용상환 되나요?**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일정에 따라 7세 이상 소아는 DTaP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지만 2~3차 최소접종 간격(6개월)을 미준수 시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 DTaP/Tdap/Td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 7세 이상은 2~3차 최소 6개월 간격

• **8세 소아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Tdap-Td-Td(0-1-6개월 간격) 일정으로 접종 후 12세에 Tdap 백신으로 접종하면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한 7~9세 대상자가 Tdap/Td 따라잡기 일정을 준수하여 11~12세에 Tdap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 **9세 11개월 소아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Tdap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하여 10세 8개월에 Td 백신으로 3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12세에 Tdap 백신 접종하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서 10세 이후 Tdap 접종력이 없다면 Tdap/Td 따라잡기 일정을 준수하여 11~12세 Tdap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 **생후 2개월에 폴리오 백신 1차 접종 후 다음 접종이 지연된 4세 아동이 2차와 3차를 4주 간격으로 접종했는데, 이후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용상환은 가능하나요?**

- 4세 이상에서 폴리오 백신 3차 접종 시 2차 접종과 최소 접종간격(6개월)을 미준수했다면 오접종일로부터 6개월 이후 4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심사기준을 미준수한 3차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능하며, 4차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4세 이상에서 폴리오 백신 3차 접종 시 2차 접종과는 최소 6개월 간격

• **6세 소아가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 폴리오 접종을 시작하였고 2차 접종 4주 후 IPV 백신으로 3차 접종하면 비용상환 가능하나요?**

- 조혈모세포이식 후 폴리오 재접종 시 4세 이상의 2~3차 최소접종 간격은 6개월이므로 미준수 시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 **Hib 백신 접종력이 없는 6세 아동의 Hib 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한가요?**

- 침습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5세 이상 소아가 Hib 접종력이 없다면 1~2회 접종이 필요하며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침습Hib 감염의 고위험군 :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무비증(겸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HIV 감염, 초기 요소 보체결손증, 특히 IgG2 이형 결핍 등의 체액면역결핍질환 환자에서는 연령에 따라 1~2회 접종 가능(2회 접종 시 8주 간격)

• **폐렴구균 백신 접종력이 없는 6세 아동의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5세(생후 60개월) 이상 소아는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렴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면역저하자 등의 5세 이상 소아는 과거 접종력이 없으면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생후 24~59개월 연령에서 폐렴구균 백신 1차 접종을 15가 백신으로 시작한 경우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권장되는데 생후 58~59개월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2차 접종을 할 시기에는 60개월이 넘는데, 2차 접종비용지원 가능하나요?**

- 아니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5세(생후 60개월) 이상 소아는 폐렴구균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15가 백신으로 폐렴구균 1차 접종 후 2차 접종 연령이 5세 이상(생후 60개월)이면 2차 접종은 불필요하며,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 **면역저하 질환이 있는 3세 소아입니다. 이전에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4회 모두 접종하였고 폐렴구균 다당 백신으로 추가접종하면 비용지원 가능하나요?**

- 예.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등)은 13가 또는 15가 단백결합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였다라도 2세 이상에서 다당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며,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의 최대 접종가능 연령을 지나서 접종하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아니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가능한 최대 연령은 생후 8개월 0일까지이며, 최대 연령 이후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능합니다.

• **로타바이러스 백신 2차 접종 시 1차 접종에 사용한 백신과 다른 백신으로 교차하여 접종하였다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아니요.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교차하여 접종하면 비용상환 불가능합니다. 다만, 1차와 2차 접종 백신이 교차하여 접종된 대상은 3차 접종 시 RV 교차접종 예외인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차접종 시 RV5 백신이 한 번이라도 사용되었다면 총접종 횟수 3회가 되도록 접종하여야 하므로 3차 접종 시 직전 차수 사용 백신으로 접종하고 적합한 '의학적 소견(이전 교차접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행된 교차접종)'을 입력한 후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차접종 등록) 2차 접종에 사용한 백신으로 3차 접종 후 순차적 등록

※ 예 : RV1 > RV5 > RV5 3차 등록, RV5 > RV1 > RV1 2차 중복등록

• **MMR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소아가 가와사키병으로 1주 만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 받았습니다. MMR 백신 재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예. MMR 백신접종 후 2주 안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면 백신의 효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면역글로불린 주사 후 최소 11개월 뒤에 재접종을 권장합니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재접종은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유행 상황이 아닌데, 생후 11개월에 MMR 백신 1차 접종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아니요. 1차 최소 접종연령(생후 12개월)을 미준수한 이른접종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비용상환 불가능합니다. 최소 접종연령보다 이른접종은 무효로 간주하고 재접종해야 하며, 재접종은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MMR 1차 최소 접종연령은 4일 이하 오차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 적용 제외(2023. 8. 7.)('예방접종의 실시 기준과 방법' 지침 개정(제6판))

• **홍역 유행 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면 생후 12개월 이전에 MMR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나요? 비용상환은 가능한가요?**

- 예. 홍역 유행 상황 시 해당 유행지역에 거주하는 생후 6~11개월 영아는 MMR 가속접종이 필요하므로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가속접종은 접종 횟수에 포함 시키지 않고 권장 접종연령(생후 12개월 이후)에 2회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총 3회 접종).

• **1세 생일이 되기 1일 전에 MMR 백신 1차 접종하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MMR 백신 1차 접종은 최소접종 연령의 단축인정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 생일이 되기 전에 접종한 경우 비용지원이 불가합니다.
※ MMR 1차최소 접종연령은 4일 이하 오차(grace period) 적용 제외(2023. 8. 7. ~)(「예방접종의실시기준과 방법」 지침 개정(제6판))

• **9세 소아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수두 백신 1차 접종 후 4주 뒤에 2차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일정을 준수한 재접종은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9세 소아는 수두 백신 1차 접종 후 최소 3개월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시행하며, 실시기준 미준수 시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 후수두 접종 : 13세 미만은 최소 3개월 간격, 13세 이상은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필요

• **2026년 HPV 비용지원 확대 대상인 2014년생 남성청소년이 올해 2회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내년에도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014년생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 연령을 매년 한 연령씩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26년) 2014년생 → (2027년) 2014~2015년생 → (2028년) 2014~2016년생 → 17세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6). 백신 수급·관리

• (인플루엔자)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받은 백신을 어린이(생후 6개월~13세) 또는 임신부에게 접종해도 되나요?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민간개별구매 방식으로 구매한 백신(어린이·임신부용)과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공급받은 백신(어르신용)을 구분하여 접종해야 합니다. 그 외 어린이·임신부, 어르신 백신 모두를 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공급받는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사업 대상별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 (인플루엔자)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위탁의료기관 백신 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보건소에서 지역 내 인구수, 목표접종률, 위탁의료기관 대상별 사업 초기 3주 이내 접종 건, 총공급량, 잔여량 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위탁의료기관별 백신 배정량을 결정합니다.

•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에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백신의 예상 소요량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작성 시 사업 기간 내 소요량을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나요?

- 백신 예상 소요량 작성 시 사업기간 내 소요량을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작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사업 기간)에 의료기관 내원자 수, 지난 절기 백신 공급량·사업 초기 3주 이내 접종 건·총사용량·회수량, 백신 보관 가능량 및 예진 의사 1명당 하루 100명이라는 상한 조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백신 포장단위가 10도즈이므로 최소 10도즈부터 공급이 가능하며, 날개로는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의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의 백신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위탁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예상 수요량을 보건소에서 검토·확정하여 백신 배정량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백신 배정량의 90~95%는 사업 시작 1주일 전까지 의료기관으로 공급이 완료되며, 그 외 5~10%는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의료기관의 추가수요가 있을 시 공급하게 됩니다(단, 백신 배정률은 지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 기간 내 의료기관의 백신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사도를 통해 백신을 추가공급 요청하면 질병관리청에서 검토 후 추가 공급을 실시합니다.

• (인플루엔자) 공급받은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백신을 모두 소진하고 백신 추가 신청 건의 공급이 늦어지는 공백기가 생긴다면 의료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다른 백신으로 먼저 접종한 뒤 추후에 백신을 공급받아도 되나요?

- 아니요. 국가사업용으로 공급된 백신 외에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백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신이 소진되기 전 관할 보건소에 추가공급 요청을 통해 사전에 백신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백신을 사업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해 백신이 남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나요? 의료기관에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 신청한 백신이 남을 경우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 남은 백신은 보건소에서 전량 회수 예정입니다. 과다하게 백신을 신청하여 사업 종료 후 백신이 많이 남거나, 백신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재분배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음 절기 백신 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백신이 파손되거나 바늘이 오염되어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 반품이 가능한가요?**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제품은 백신을 공급한 업체를 통해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인수 이후 의료기관 보관 실수로 백신이 파손되거나 오염된 경우 위탁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으로 접종 또는 반납해야 하며,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해당 백신비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의원급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어린이·임신부 예방접종사업 백신 공급은 민간개별 구매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추가 구매(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로부터 백신을 재분배(추가공급) 받아 접종할 수 있나요?**

- 예. 이 경우 보건소로부터 사전현물공급 백신을 재분배(추가공급) 받아 접종이 가능하며, 단, 사전현물공급 백신으로 실시한 예방접종은 시행비만 지급됩니다.

※ 보건소는 재분배 전산 등록 시점 이후 시행비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위탁의료기관(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백신 소진 완료 확인 후 재분배 실시(재분배 등록 시 의료기관 보유물량으로 접종한 경우라도 시행비만 지급처리됨)

• **(인플루엔자) 민간개별구매 방식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은 어떤 진료과인가요? 의원급 의료기관 내 여러 진료과가 있는 경우 어떤 공급 방식을 적용받나요?**

- 민간개별구매 방식은 어린이·임신부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소아청소년과만 해당됩니다. 아동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의원급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기타 과의 경우 사전현물공급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여러 진료과가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표개설자의 진료과가 소아청소년과인 경우 민간개별구매 방식을, 타 진료과인 경우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을 적용합니다.

-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은 제품별로 허가사항이 다른가요?**
 -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은 허가연령이 상이한 제품이 있어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시행 전 예진 의사와 상담 후 해당 연령에 맞는 백신으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관리) 65세 이상 백신이 파손되거나 바늘이 오염되어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품이 가능한가요?**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제품은 백신을 공급한 업체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인수 이후 의료기관 보관 실수 또는 접종 과정 중 백신이 파손되거나 오염되면 자체 보유 물량으로 대체하거나, 대체가 어려우면 보건소에서 백신비를 환수(공문 또는 고지서)합니다.

7). 이상반응

-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나요?**
 - 질병관리청은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을 감시하고 있으며, 중증 이상반응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예방접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나요?**
 - 이상반응 신고를 받게 되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행정지원 → 예방접종 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원/보건소 신고관리에서 신고합니다.
-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인터넷 신고를 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확인완료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병원/보건소 신고관리로 전환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사망 등 중증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나요?**
 - 중증이상반응 신고를 받게 되면 위의 방법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를 우선하고, 58P 내용에 따라 신속 조사 여부를 확인 후에 '중증이상반응 신고관리'에서 다시 한 번 중증이상반응 신고를 하면 됩니다.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행정지원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중증 이상반응 신고관리

• **예방접종한 부위가 빨갱게 부어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 후 주사부위의 통증, 단단하게 굳음, 빨갱게 부어오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저절로 회복됩니다. 다만, 며칠간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지속되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 **너무 많은 접종은 면역체계에 부작용을 가져온다는데 사실인가요?**

- 예방접종으로 항체를 만들 때에는 우리 몸 면역체계의 아주 일부분만이 사용되며, 예방접종은 면역체계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 **백신이 자폐증 등 질병을 유발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아니요. 과학적 연구 및 문헌고찰 등에 의하면 백신이 자폐증이나 다른 행동 장애,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백신에 포함된 티메로살, 알루미늄 성분이 위험하다는데 사실인가요?**

- 백신에 첨가된 첨가물은 백신의 효과를 증대하거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적은 양을 사용하며, 어떠한 첨가물도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중인 백신에는 티메로살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백신 개발 시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사실인가요?**

- 아니요. 백신 개발시 안전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합니다. 판매전에는 반드시 여러 차례의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사용허가 이후에도 이상사례,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에 의한 위험보다 백신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아니요. 예방접종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질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얻을 가능성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감염병은 지역사회 면역수준이 낮아지면 다시 유행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여러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안전하나요?**

- 예. 대부분의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같은 날 접종하면 병원을 자주 방문하실 필요가 없고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으면 예방접종을 하면 안되나요?**

- 아니요. 아토피가 심한 경우에도 예방접종은 안전하며, 백신성분 외의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 **기침, 콧물, 미열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하면 안되나요?**

- 아니요.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상이 있거나, 중이염이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혹은 38℃ 미만의 미열이 있는 등 경미한 질환을 앓고 있을 때에는 예방접종 예정대로 진행하셔도 안전합니다. 다만, 중등도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을 때에는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후 미열, 통증 등 이상사례가 생겼다면, 다음 예방접종을 하면 안되나요?**

- 아니요. 예방접종으로 접종부위에 미열, 통증 등 가벼운 이상증상이 생겼더라도 예방접종 금기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백신 접종 후 혹은 특정 백신성분에 대하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했던 경우에는 해당 백신의 접종은 금기사항이므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역이 유행하여 MMR 접종을 실시하였는데, 접종 4일 후 몸에 발진이 나타나며 홍역에 감염되었습니다. 이상반응인가요?**

- 아니요. 홍역의 잠복기는 약 12일 정도로 이 동안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 경우 예방접종을 받기 전 홍역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역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으로 나타나는 발진은 대개 접종 후 7~10일이 경과한 후 나타납니다.

•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의 과거接种의 기억이 불명확하고, 과거接种기록도 확인되지 않아 예방접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제로 접종하였다면 반복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상반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나요?**

- 이전 접종력을 모른다면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접종하도록 합니다. 국소반응은 첫 번째 접종보다 두 번째 접종 후에 더 흔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기는 하지만,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국소반응 발생 후 5일 이내 소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3회 이상 접종에 대해서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전신반응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1% 미만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후 6~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2일간 지속됩니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해보상 신청 기준이 있나요?

-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시 보상 결정 처리 절차와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피해보상 심의 결과 보상으로 결정되면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보상금을 피해보상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일부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30만원 기준으로 보상결정처리 절차가 나뉘어집니다.

※ 보상 관련 세부 사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참고하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043-913-2217, 719-8367)로 문의

본인부담금	보상결정처리 절차
30만원 미만	①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② (보건소) 보상 관련 구비서류,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제출 → ③ (시·도) 피해조사 후 인과성 심의 및 결과 통보* → ④ (질병관리청) 피해보상금 지급 * 시도 → 보건소 → 신청자
30만원 이상	①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② (보건소) 보상 관련 구비서류 → ③ (시·도) 기초피해조사 → ④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정밀 피해조사 후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 ⑤ (질병관리청) 결과통보* 및 피해보상금 지급 * 질병관리청 → 시도 → 보건소 → 신청자

8).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1). 기관인증서 관련

- 전산으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로그인 시 이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기관정보에도 기관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나요?

- 예.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은 개인인증서로 하고, 이후 전자계약 시에는 의료기관 정보에 개인인증서가 아닌 기관인증서를 등록해야 계약 시 서명이 가능합니다.

- 계약에 필요한 기관인증서는 어떤 인증서를 등록하면 되나요?

- 한국정보인증사이트에서 발급한 공동(기관)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인증서 갱신 시 의료기관정보 갱신(재등록) 필요

- (보건소) 기관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내 기관정보관리 메뉴의 '보건기관 정보 관리'에서 기관인증서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갱신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보건기관 정보관리 메뉴 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우측 상단의 '예방접종관리' > 화면 좌측의 '국가예방 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기관정보관리 > 보건기관 정보 관리

- (의료기관) 기관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내 의료기관정보관리 메뉴에서 기관인증서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갱신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인증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기관정보 내 사업자번호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정보관리 메뉴 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우측 상단의 '예방접종관리' > 화면 좌측의 '국가 예방 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 의료기관정보에서 기관인증서 등록을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사업자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기관정보에 등록된 사업자번호와 기관인증서의 사업자번호가 다른 경우입니다. 의료기관정보 메뉴 왼쪽 상단의 사업자번호(숫자10자리)를 확인하여 올바른 번호로 변경 저장 후 기관인증서를 다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가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사업자번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발생할 경우 인증서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인증서 등록을 완료했는데 계약신청(승인) 메뉴에서 전자서명 단계에서 “서명에 실패했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관인증서 등록 이후에 기관인증서를 재발급(갱신)한 경우는 기존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전자서명이 불가능합니다. 작성 중인 전자문서를 닫은 후 기관정보에 등록된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은 인증서로 갱신(재등록)한 후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료기관 정보 변경

• 의료기관의 이전 등으로 인해 위탁의료기관의 요양기관 코드번호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내정보’에서 회원 탈퇴 후 변경된 소속기관으로 신규 가입하여 필요한 업무권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요양기관 정보로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소만 이전된 경우에는 ‘권한부가정보’에서 예방접종권한 미승인 처리 후, 이전한 관할 보건소를 승인기관으로 재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사업자번호, 연락처 등 의료기관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방법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관리’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방법 ②>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 관할보건소, 요양기관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위탁계약 해지 및 재체결필요

• 예방접종 전산등록(IR) 의료기관의 기관정보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 관리’에서 정보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위탁계약정보 외 정보(예진의사, 접종자, 기관인증서 등)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수정 가능

(3). 권한 관련

• 예방접종관리에 대한 권한 신청 시 “권한정보가 부적합 합니다” 등의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여 신청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구’ → ‘호환성기기설정’ → ‘kdca.go.kr’ 추가 후 재신청합니다.

• **(의료기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인증서 로그인을 했는데 메뉴에 ‘예방접종관리’ 폴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가입완료) 후 화면 좌측의 ‘권한정보’에서 예방접종관리업무에 대한 권한 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권한이 승인되면 메뉴에서 예방접종 관리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관리업무 권한을 승인처리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의료기관을 조회했는데 해당 기관이 검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보건소에서 예방접종관리업무 권한 승인 후 의료기관에서 다시 로그인하여 부가정보를 입력해야 조회됩니다.

• **시스템 사용자가 전근 등의 이유로 소속기관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내정보’에서 탈퇴 후 변경된 소속기관으로 신규 가입하여 필요한 업무 권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인증서 로그인을 했는데 메뉴에 ‘예방접종관리’ 폴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가입완료) 후 화면 좌측의 ‘권한정보’에서 아래 예방접종관리 업무의 권한 승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용자는 ‘예방접종관리 User(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 사용자는 ‘예방접종관리 User(보건지소/진료소)’의 권한을 신청·승인받은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인적정보 관리

•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형식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합니다. 어떻게 등록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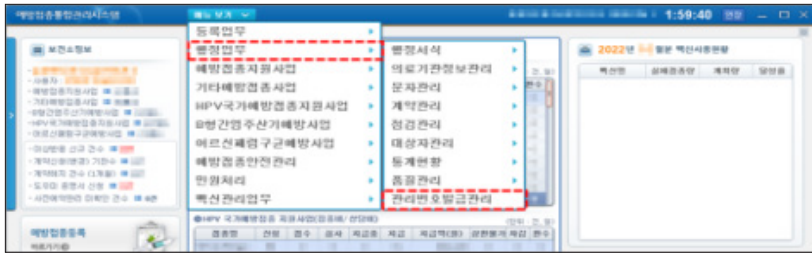
-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맞는지 보호자에게 재확인하고, 올바른 주민등록번호임에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질문과답변’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피접종자의 인적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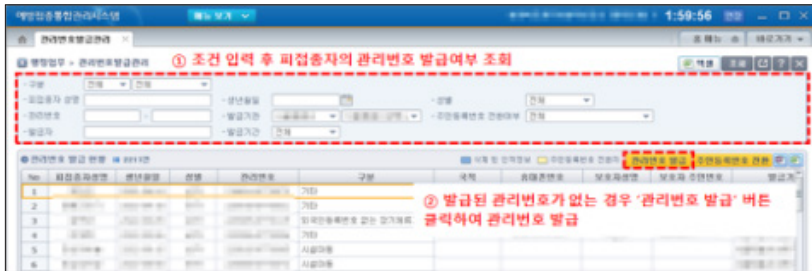
- 등록된 피접종자의 인적정보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 (차트프로그램)에서도 수정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미발급자, 시설아동, 미등록 외국인의 접종내역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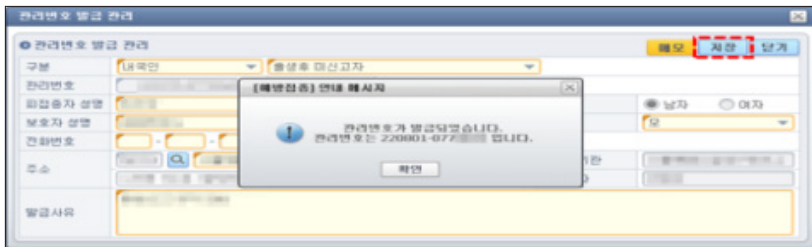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예방접종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메뉴보기' → '행정업무' → '관리번호발급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우선 기존에 발급된 적이 있는지 피접종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으로 조회합니다. 발급된 번호가 있다면 기존 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는 '관리번호 발급'을 클릭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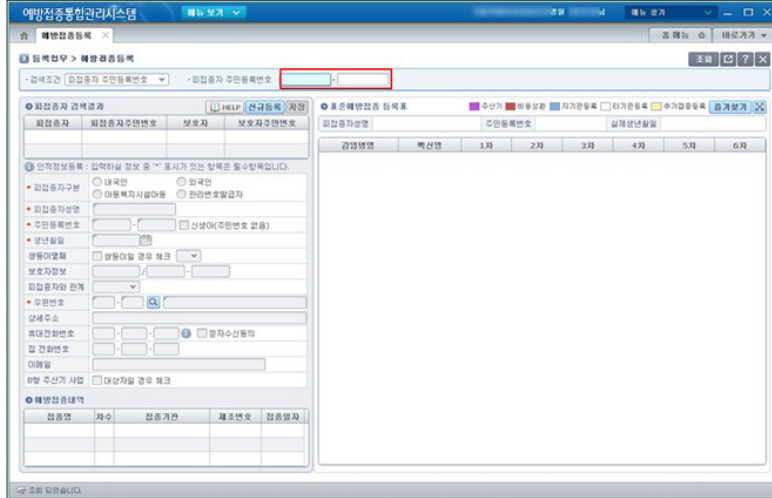


③ '관리번호 발급 관리' 창에서 구분(내·외국인, 발급사유), 피접종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 정보,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여 관리번호 발급을 완료합니다.



④ 발급된 관리번호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기입하여 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등록 면제자는 내국인에 준하여 비용지원되며,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관리번호 발급 후 접종 가능(단, 3개월 미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관리번호 발급 불가)



•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의 접종내역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 모(母)의 인적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신생아 인적정보를 등록하며, 1개월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발급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피접종자의 이름은 수정할 수 없나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일반민원'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접종력이 등록된 이후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거쳐 다음날 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어떻게 하나요?

-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을 희망하면 생년월일 증빙서류로 확인 후 시스템의 '예방접종 등록'의 '생년월일'란에 실제 출생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6개월 이상 차이나면 보건소에서 수정되지 않으므로 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 내 '질문과 답변 > 예방접종시스템 관련 문의'를 통해 수정 요청

(5). 예방접종 등록

• 접종내역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재접종한 기록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동일백신, 동일차수에 중복등록이 필요하면 해당 접종차수 접종일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접종내역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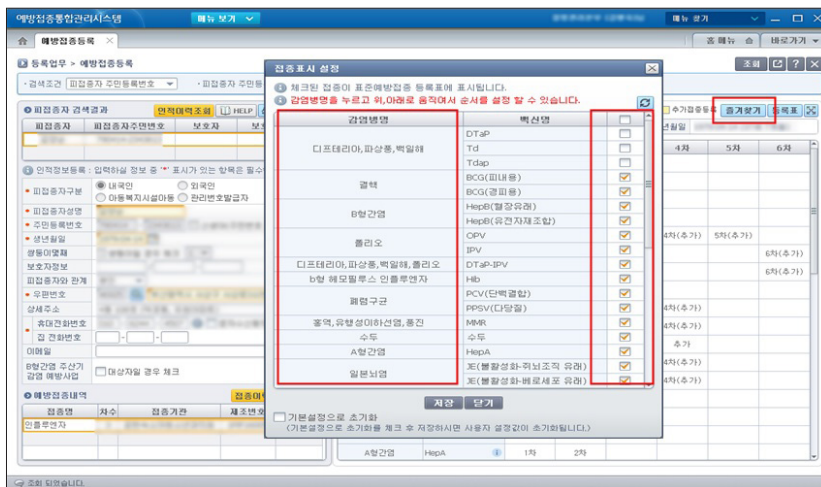
※ 접종정보가 중복으로 등록되면 접종일 박스가 노란색으로 변경됨

• 접종내역 중 백신제조번호가 9999는 무엇인가요?

- 접종내역 등록 시 백신제조번호가 미입력된 경우로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내역을 등록하면 백신제조번호가 9999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표준예방접종 등록표’는 의료기관에서 자주 등록하는 접종만 따로 설정할 수는 없나요?

- 현재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등록화면 오른쪽 상단의 ‘즐거찾기’를 클릭하여 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을 선택하거나 감염병 명을 Drag&Drop하여 순서를 변경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 (의료기관)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등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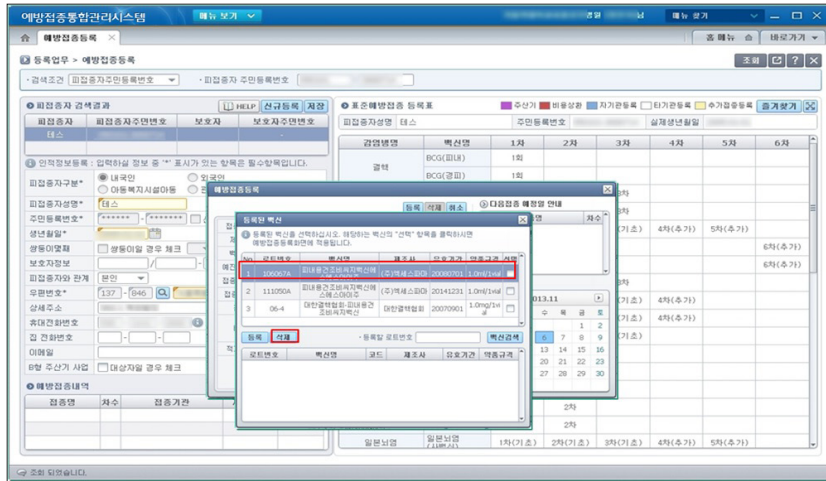
- <방법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 정보관리’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방법 ②>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위탁계약정보 외 기관정보(전자서명용 기관인증서 등) 직접 수정 가능

• 접종내역 등록 시 매번 백신제조번호를 검색해야 하나요?

- 자주 사용하는 백신제조번호를 설정(등록/삭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화면의 차수 선택 시 생성된 팝업창에서 '등록된 백신' 검색 후 조회목록에서 해당 백신의 제조번호를 선택 후 '등록'해 상단 목록에 추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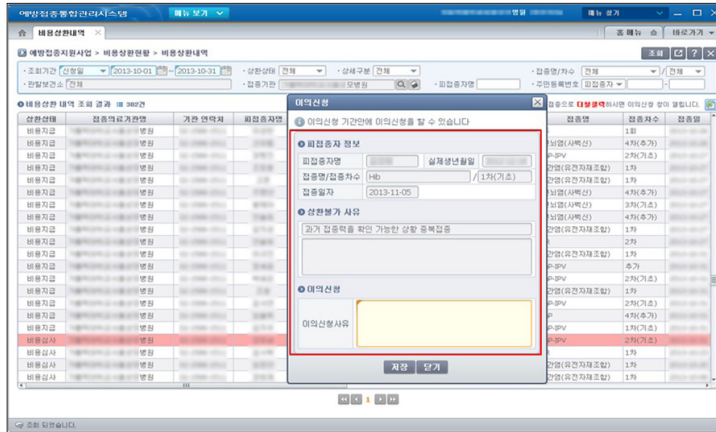
(6). 비용상환

• (의료기관) 과거 접종력을 조회하였는데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용상환 신청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기록이 등록된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중복접종은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타당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B형간염 고위험군,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등)는 의학적 소견을 입력하면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비용상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비용상환내역’ 메뉴에서 비용상환 신청건 중 상환불가로 심사된 내역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상환불가 내역’을 더블클릭 후 ‘이의신청 팝업창’에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저장하면 완료되며, 이의신청된 내역은 보건소에서 확인 후 재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 폐업 의료기관의 과거 비용신청된 내역은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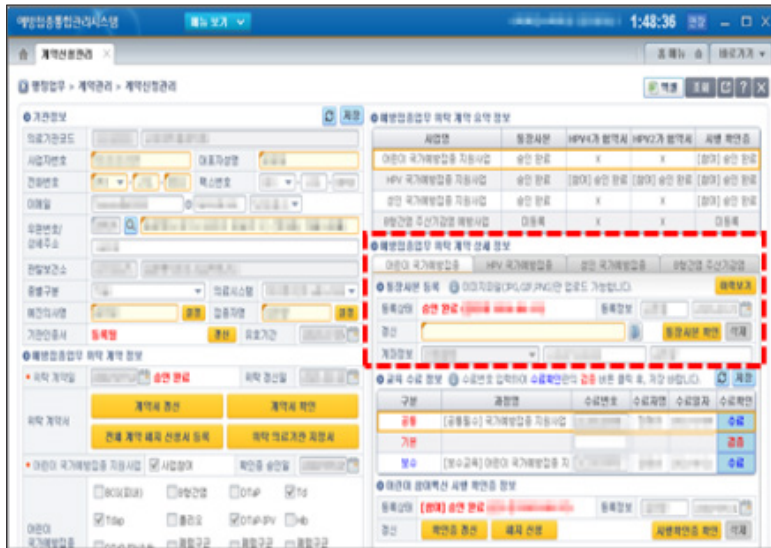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폐업기관 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비용상환 신청건에 대한 행정안전부 오류내역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안부오류 내역’에서 내역 조회 후 수정 할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여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내용을 수정 후 ‘수정’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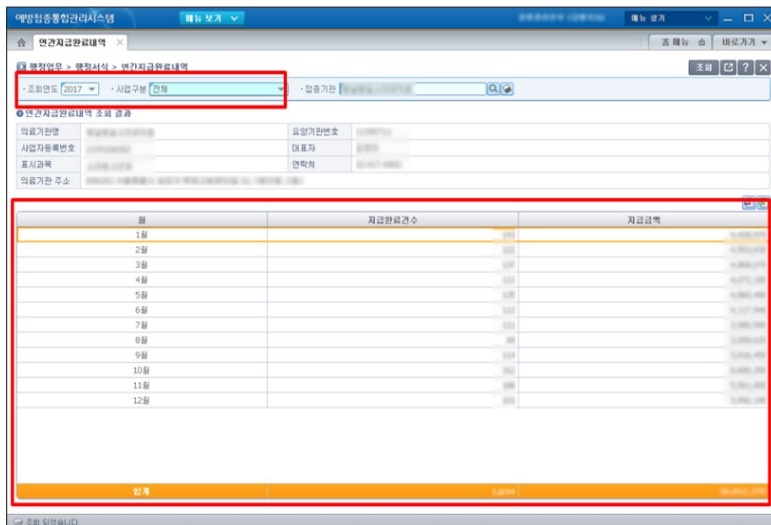
• (의료기관) 비용상환 지급계좌번호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 관리’ 메뉴에서 등록된 계좌정보 확인 후 통장사본을 새로 등록하고, 관할 보건소에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담당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 승인 관리’ 메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통장사본 정보를 확인 후 승인처리합니다.



• (의료기관) 1년간 비용상환 지급받은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느 메뉴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의 '메뉴보기' → '행정업무' → '행정서식' → '연간지급완료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환결정이 아닌 예외인정, 상환불가, 전문심사의뢰는 반드시 한 건씩 처리해야 하나요?

- 예, 그렇습니다. 예외인정(의학적 소견 입력), 상환불가, 전문심사의뢰 등은 반드시 개별심사를 하여야 하며 일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 비용상환 신청한 내역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예방접종 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비용상환내역'을 클릭하면 비용상환 신청, 심사, 지급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기관정보관리의 계약서 갱신일이 지나면 해당 의료기관은 비용상환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예, 위탁계약서 갱신일이 지나면 해당 의료기관은 비용상환 신청이 불가능(접종력 등록은 가능)하므로, 반드시 만료일 이전 계약 갱신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서 갱신 후 접종력을 다시 등록하면 비용신청 가능합니다.

• 어떤 경우에 전문심사를 의뢰하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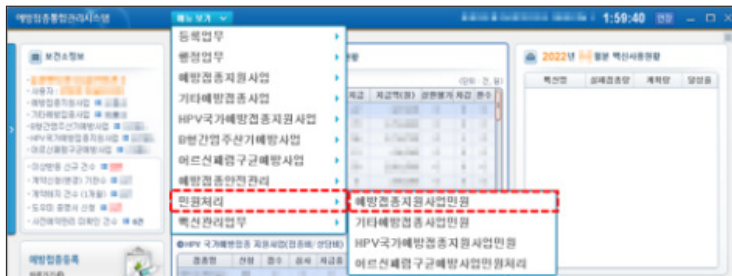
- 해당 보건소에서 피접종자의 기저질환 등으로 상환결정 판단을 하기 어려우면 질병관리청에 전문심사의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심사의뢰 시에는 반드시 요청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전문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해당내역의 비용상환 심사를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또는 「국가예방접종 지침」 등에서 판단 가능한 지연접종, 이른접종 등은 전문심사 의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기관별로 비용상환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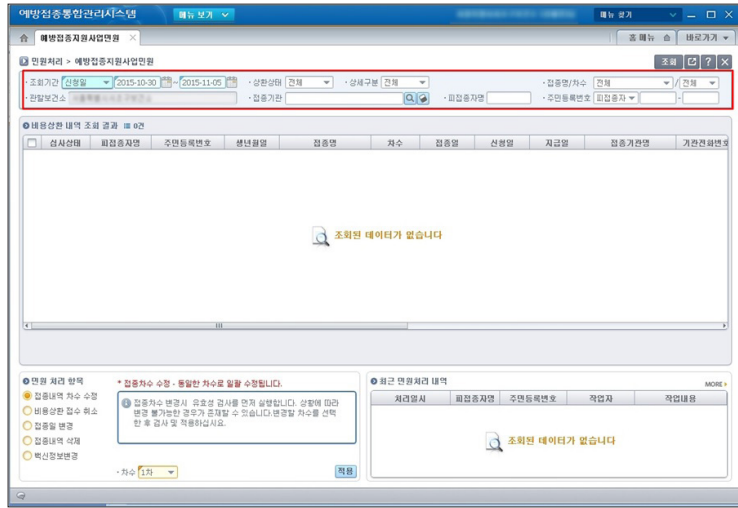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의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비용상환현황' 및 '비용지급관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비용상환 신청내역에서 접수취소, 접종차수변경, 접종내역삭제 등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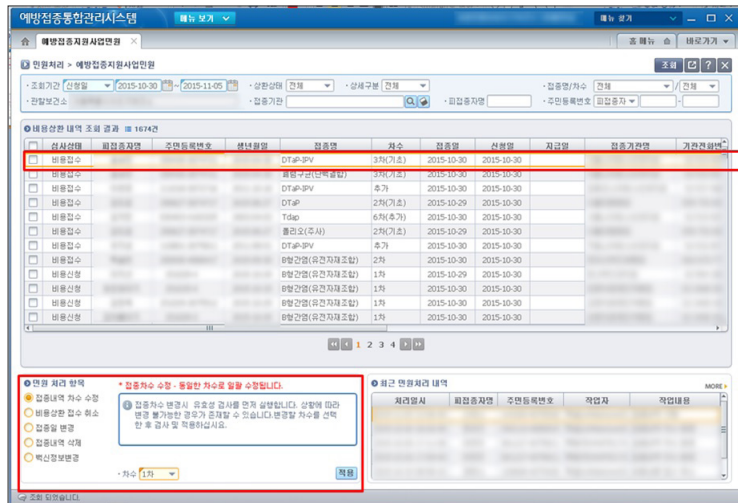
- 비용상환 신청내역 변경은 민원처리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합니다.
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 '메뉴보기' → '민원처리' → '예방접종사업민원'을 클릭합니다.
※ 사업별로 민원처리가능



②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해당내역을 '조회' 합니다.



③ 수정이 필요한 내역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하단의 민원처리 항목에서 처리항목을 선택 후 '적용'을 클릭하면 유효성검사 후 처리가 완료됩니다.



• 비용상환 접수 누락 또는 상환결정 후 비용지급 안된 내역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의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미접수/미지급' 메뉴에서 비용상환 접수 누락 내역 및 비용지급완료가 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목적 및 개요

II.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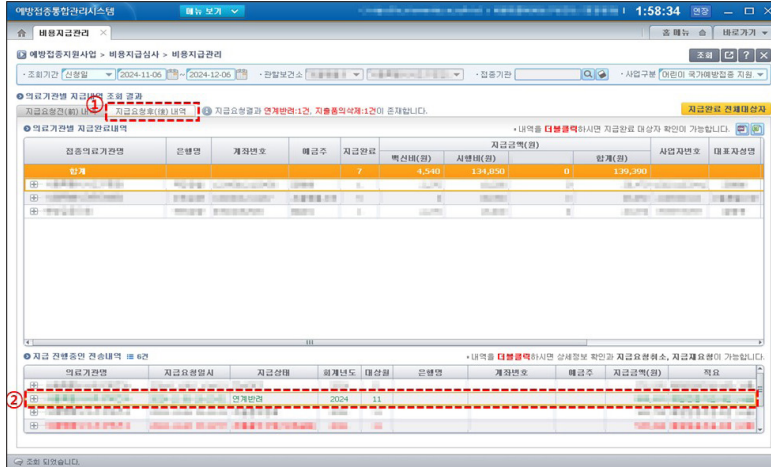
III. 운영 관리

IV. 계약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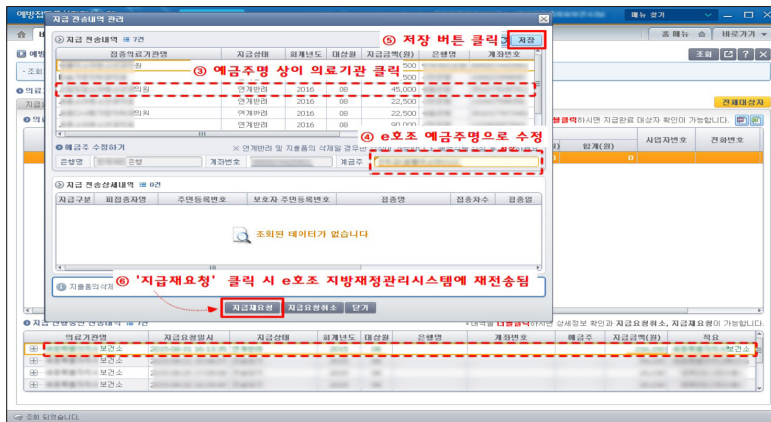
V. 부록

•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반려된 내역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 ① 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비용지급관리'에서 '지급요청 후 내역'을 클릭합니다. ② 하단의 지급진행 중인 전송내역에서 '연계반려' 내역을 선택하여 오류계좌 정보를 수정합니다.



② 수정완료 후 지급재요청을 클릭하여 다시 요청합니다.



•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대량계좌 오류내역을 반려하였습니다. 반려 후 오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계좌검증 오류 시 오류내역을 저장하지 않고 연계 반려하면 계좌검증 오류내역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계좌검증 오류내역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용지급관리' → 지급요청전 탭에서 지급재요청한 후 대량계좌검증을 다시 해야 합니다.

•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계좌검증 시 예금주명이 아닌, 은행계좌번호나 은행명 오류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예금주명이 오류이면 기존방식대로 반려하여 예금주명을 수정한 후 지급 재요청을 하면 되나, 계좌명이나 계좌번호 오류이면 다음의 절차 순으로 처리합니다.

①e호조 연계 반려 → ②반려된 내역을 더블클릭 → ③지급 요청 취소 우선 처리 → ④계좌정보 수정 → ⑤비용지급관리 메뉴의 지급 요청 전 내역 탭에서 지급요청 완료 → ⑥e-호조 시스템에서 계좌검증

• **비용차감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환수를 해야하면 시스템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 비용환수기능은 e호조 연계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작업(공문시행 및 고지서 발부)으로 비용을 환수처리 후, 아래 절차에 따라 환수한 접종건을 상환불가 또는 삭제 사용 가능합니다.

- (상환불가)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지급심사 → 비용환수관리 메뉴에서 처리
- (오지급된 비용상환건 삭제) 비용차감관리 또는 비용환수관리에서 처리한 후 예방접종지원사업 민원처리메뉴에서 접종내역 삭제 가능

(8). 교육시스템 관련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에 로그인시 “권한이 없습니다.” 또는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가 맞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 로그인하여 왼쪽의 ‘권한정보’에서 ‘교육관리 사용자(학습자)’ 권한을 요청하여 승인받은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교육시스템 관리자 변경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시스템 관리자 권한은 보건소의 위탁의료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1~2인에게 부여되므로, 시스템의 ‘예방접종관리’ → ‘행정지원’ → ‘기타지원’ → ‘교육관리자변경 요청관리’ → ‘조회’ 클릭 → 공지에 안내된 절차 및 양식에 따라 관리자 변경 신청

• **위탁의료기관의 수수료는 어디에서 출력할 수 있나요?**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에서 위탁의료기관 예진의사 교육 수수료 현황 관리가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로그인 → ‘관리자시스템’ → 통계모니터링 → ‘회원별교육신청/수수료현황’ → 이름&기관명 검색 → 이름 클릭 → 수수료부 확인

• 보건소 대상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수료증은 어디에서 발급 받나요?

- 수료여부는 교육시스템 홈 화면 상단의 ①'수료증 출력(또는 수강과정)' 메뉴의 ②'수강종료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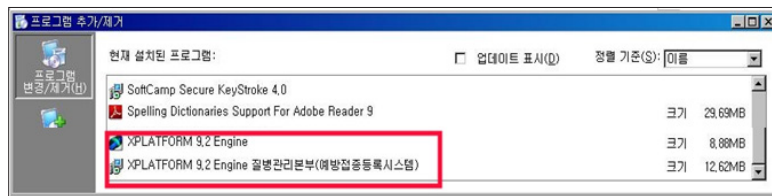
•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예방접종 내역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의료정보업체에 질병관리청으로 전산등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업데이트 요청하신 후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에서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기록(비용사업) 연계가 가능한업체명 : 비트컴퓨터, 브레인컨설팅, 네오소프트뱅크, 다솜정보, 유비케어, 포인트닉스, 전능아이티, 병원과컴퓨터, 중외정보기술, 메디칼소프트, 메디컴코리아, 엠디소프트, 금우뱅킹소프트, 포닥터, 케이컴, 서전정보개발, 나은소프트, 대일전산, 메트로소프트, 엔지테크, 지누스, 자인컴, 메딕슨, 이헬스플러스, 뉴마테크, 지센커뮤니케이션,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XPLAFORM 9.2 Engine', 'XPLAFORM 9.2 Engine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등록시스템)'를 삭제합니다. 삭제 완료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해당 업무 경로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재설치 안내에 따라 진행을 완료하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

(보건소용)

창간: 2009년 1월

발행: 2026년 1월

주소: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팩스: 043-719-8379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ISBN 979-11-6860-659-3(93510)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

보건소용